

---

#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 최종보고서

---

2017. 3.

사업수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  
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한다.

2017. 3. 31.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명호 (한국식품연구원)

참여연구원 : 오승용 (한국식품연구원)

최성욱 (한국식품연구원)

이현성 (한국식품연구원)

김유리 (한국식품연구원)

오정민 (한국식품연구원)

김혜현 (한국식품연구원)

권은지 (한국식품연구원)

이슬이 (한국식품연구원)

이슬기 (한국식품연구원)

강나을 (한국식품연구원)

최수진 (한국식품연구원)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	1
2. 연구 필요성 .....	3
2.1. 기술적 측면 .....	3
2.2. 경제·산업적 측면 .....	4
2.3. 사회·문화적 측면 .....	8
3.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10
3.1.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유기) 원료 함량에 따른 인증기준 .....	10
3.2. 국내 친환경(유기) 원료 대량 소비처 대상 친환경(유기) 인증제도 부재 .....	11
3.3. 국내 유기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미비점 정비 .....	12
3.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검토 필요 .....	13

## 제 2 장 본론

### 제 1 절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표시기준 정비 .....

1.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또는 제한적표시제도 개선 방안 .....	15
1.1.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별 유기 원료함량에 따른 인증표시제도 운영현황 .....	15
1.2. 유기원료 함량기준 70~95%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	20
1.3. 유기농산물의 원료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기준 개선방안 .....	21
2. 무농약 농산물등 및 유기·무농약 혼합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23
2.1.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의 국내 관리제도 현황 .....	23
2.2. 국내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시장규모와 유통현황 및 전망 .....	24
2.3. 무농약농산물등과 이들의 가공식품 관련 외국의 유사 인증제도 현황 .....	29
2.4.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35
2.5.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	51

### 제 2 절 친환경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

1. 국내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 운영 현황조사 .....	35
2. 외국의 친환경 또는 유기 관련 음식점등의 인증제도 운영현황 .....	69
3.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 관련 음식점등에 대한 설문조사 .....	79
4. 친환경식당등 친환경농산물 대량소비처 대상 인증·표시제 도입방안 .....	82

### 제 3 절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 범위 확대 .....

1.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의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22
1.1. 국내외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 시장 현황 .....	23
1.2.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의 인증 도입 방안 .....	23
3. 기타 유기 가공식품 인증 표시제의 도입 .....	25
3.1. 기타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검토 .....	25

### 제 4 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2.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의 도입 .....	22
2.1.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의 검토 .....	23
2.1.1.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현황 .....	23
2.1.2.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	23
2.2.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 방안 .....	23

### 제 5 절 비식용 유기 가공품 표시제 도입 .....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표시제의 도입 .....	27
1.1. 유기 섬유 및 섬유 가공품 인증 표시제 검토 .....	25
1.1.1. 국내외 유기 섬유 산업 현황 .....	25

1.1.2. 유기 섬유 관련 외국 인증제도 사례 .....	25
1.2. 유기 섬유 및 섬유 가공품 인증 표시제 도입 방안 .....	27
1.3.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 검토 .....	27
1.3.1. 유기 세제 산업 현황 .....	25
1.3.2. 국내외 유기 세제 관련 인증제도 .....	25
1.3.3.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25
1.4.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	27

### 제 3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부록 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개선안 .....	339
부록 2. 국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조사 결과 .....	380
부록 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기준 농관원 고시안 .....	380
부록 4. 유기 양봉 인증기준 개선안 .....	411
부록 5. 설문조사 결과 요약 .....	469
부록 6.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	501
부록 7.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농관원 고시 .....	508
부록 8.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 .....	508
부록 9. 유기·친환경 음식점 인증안 .....	508
부록 .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	508
참고문헌 및 자료 .....	508

# 요 약 문

- 제 목: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 표시기준 설정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16년 5월 3일 ~ 2017년 3월 31일
- 연구책임자: 김 명 호 (한국식품연구원)
- 참여연구원 및 담당분야

담당 분야	참여연구원	직 급	소 속
연구 총괄	김 명 호	본부장	한국식품연구원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연구	오 승 용 오 정 민 최 수 진*	책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과 유기 반려동물용 사료 인증기준 설정 연구	최 성 욱 김 혜 현*	책임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비식용 유기가공품 (섬유,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기준 설정 연구	이 현 성 권 은 지*	선임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유기 및 무농약 음식점등 인증제도 도입 연구	김 유 리 강 나 율*	선임기술원 위촉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I. 제목

###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 표시기준 설정방안

##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2013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에서 정한 친환경 및 유기 농산물과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인증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와 '비식용 유기가공품(섬유, 세제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유기 인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한계성 해소가 필요함
- 또한 같은 법률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저농약 농산물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로 제한되어서 친환경농업의 위축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신설과 유기 또는 무농약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음식점등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특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는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관계로 수입 유기사료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국내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산업의 보호와 외국의 수입 유기사료의 유기표지에 따른 소비자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인증기준의 설정을 통한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유기양봉 및 양봉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의 부재는 수입 유기벌꿀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반면, 소규모 국내 유기 양봉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면서 국제기준과 조화된 양봉 및 양봉제품에 대한 유기 인증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부터 유기 및 무농약 인증 농산물 인증실적과 인증농산물 출하량이 감소세로 전환된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등의 가공품(비식용 포함) 및 외식산업 대상 인증제도의 확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증대상 범위를 현행 원료함량 기준 9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70~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표시 기준 마련

-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 현행 규정상 제한적 유기표시 대상인 유기원료 함량 70~94% 제품을 유기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해외사례 검토, 업체 의견수렴, 시장성 조사 등을 통한 비유기 원료 (6~30%) 사용범위, 유기 표시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등을 거쳐 인증 기준 마련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관계자 의견수렴, 유통시장조사, 첨가물 등 허용범위 설정, 인증기준 개발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 2. 식당 등 대량소비처 친환경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 도입

- (단기대책) 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은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조리·판매업체는 원료사용 여부만 표시하는 방안 검토
- (장기대책) 친환경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제도 도입
  - 음식점 인증은 식당의 친환경 원료 사용수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달리 하고, 사용 원료 종류 등을 게시하는 방안
  - 제조·가공업체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조리·판매업체는 식당·음식점 인증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 3. 유기농산물 활용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 범위 확대

- 별꿀 등 수요는 높으나 국내기준 부재로 소비자에 혼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하여 제도권 관리 추진
  - (현황) 국내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외국 인증을 받은 제품 (가공품 포함)이 표시제 형태로 수입
  - 수입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제정 품목을 설정하고 국제기준 및 세계 주요국가 인증기준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 마련
  
- 비식용 화훼, 와인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식용화훼는 현행 기준에 따라 인증이 가능하므로, 비식용 화훼를 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 와인·전통주 등에 적합한 제조공정 및 천연첨가물 이용범위에 대한 실태조사·기준제정을 통해 인증 추진방안
    - \* 소비자, 업계 의견수렴, 해외사례 조사, 유통·판매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4. 양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인증제 도입

-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 유통실태를 조사,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시장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
  - 제도 도입 시 해외 애완용 사료 생산업체의 국내인증 취득에 대비해 수입·통관 과정 중 인증여부, 표시사항 등 점검시스템도 검토
  
- 소비자, 관련업계 의견수렴 통해 인증제 도입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인증기준 마련, 제도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 제도 시행 시 관련업계의 애로가 없도록 시행 유예기간 설정 등 검토



## 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시제 도입

- 세제, 섬유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유기표시 적법화를 위한 표시기준 마련
  - 미국·EU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토대로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부터 우선 도입을 검토
  - \* 소비자 조사결과('15.8) 우선순위는 세제, 여성용품, 섬유, 화장품 등 순
  - 국내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및 해외사례조사 등 통해 품목별 유기원료 함량별 적정 표시기준 마련

## IV. 연구개발 결과

### 1.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표시 기준 마련

-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품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제한적 유기표시대상인 유기원료 70% 이상 95%미만 사용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미국 농업부의 국가유기프로그램(NOP)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EU와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여타 국가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CODEX에서도 특정 성분함량이 70% 이상이면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는 허용하지만 인증의 대상은 아님.
  - 실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70~95% 함유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비율은 전체 인증품의 3%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경우에도 이들 제품에 대한 인증수요는 거의 없었고 현행 제한적 표시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였음.
  -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협정에서도 제한적 유기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 제품은 동등성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기 원료함량에 따른 인증대상의 확대보다는 현행 '제한적 표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다만, 제

한적 유기표시를 하는 경우, 주원료의 함량이 70% 이상인 경우에 그 함량표시와 함께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등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2011년 이후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면서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인증면적이 연평균 5.4%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타개하면서 동시에 국내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함.
  -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현재 세계 82개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유기를 제외한 친환경(무농약, 무항생제 등)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일본과 미국, 중국 및 우리나라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현재까지는 중국에서만 운영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에는 “녹색식품 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산품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식품 인증제도내에서 등급구분을 두어서 “A급”은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농약” 인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AA급”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농약” 인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1차 생산물에 대한 가공품까지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1992년에 농림수산성 통지문으로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횟수를 감소시킨 수준에 따라 “감농약” 또는 “감화학비료”와 “무농약” 또는 “무화학비료”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2007년에 같은 통지를 최종 개정하여 현재는 이들을 통칭하여 “특별재배농산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 절감을 한 내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무농약” 또는 “무화학비료”의 표시는 금지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2009년에 항생제와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사육 전 기간 동

안 동물 부산물 사료를 급이하지 않은 축산물(식육, 가금육, 알)을 대상으로 “Never Ever 3(NE3)”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업부 농산물마케팅청(AMS)의 품질평가과(QAD)에서 운영하였지만, 동 제도의 법률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2015년 11월 13일에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 NE3 인증제도 역시 1차 생산되는 식육까지만 그 강조표시를 허용하여 가공품에는 적용하지 않았음.

- 한편,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 소비자는 78.2%, 친환경 인증기관은 74.8%가 각각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51.6%만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우려와 유기가공식품과의 시장차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형마트의 친환경상품코너와 친환경상품 전문매장 등 8개 유통점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무농약농산물등을 함유한 가공식품 300여종을 수집하여 신선농축산물을 제외한 18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무농약농산물등의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단일 원료를 사용한 단순가공품 59종은 100%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주원료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22종은 95% 이상을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었으며, 34종의 제품(18.8%)은 70~95%의 원료가 무농약농산물등이었으며, 37종의 제품은 50~70%의 원료를 무농약농산물등을 사용하였고, 29종의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이 50% 미만인 제품이었음.
- 무농약농산물등의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나머지 주원료를 대부분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유기 가공식품으로 구성하는 특색을 보였으며, 이들 원료의 선택은 국내에서의 조달가능성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친환경” 강조표시를 위하여 인증대상 가공식품의 원료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원료가 아니면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이들의 함량이 9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유기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원료함량이

70~95%인 가공식품에 대한 제한적인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되, 제한적 표시의 기준은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세부 표시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의 제한적 표시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가공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허용물질과 생산방법 등의 인증기준은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식품산업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별표 등의 개정(안)을 도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하였음.

## 2. 식당 등 대량소비처 친환경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 ○ 국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 현황 조사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는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007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황색, 청색, 녹색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주황색의 경우 쌀은 무농약 이상 100%, 채소류는 근채류 및 엽채류의 90% 이상을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청색의 경우 황색 기준에 추가하여 과실류는 총 사용량의 90% 이상, 과수류는 총 사용량의 50% 이상을 각각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실류는 수입산 사용을 금지하며, 잡곡류 역시 50% 이상을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녹색의 경우에는 청색 기준 외에 육류는 총 사용량의 90% 이상을 국내산 무항생제 축산물 이상을 사용하고, 양념류도 90% 이상을 국내산 무농약 이상의 인증농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을 사용하되 국내 인증 농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자연산 원료를 9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말까지 총 41개소가 지정이 되었지만, 원료의 국내산 요구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반납 또는 취소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장을 발굴하여 지정을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여 확산이 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전라남도도는 별도의 “친환경 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침”을 조

례로 제정하여 별도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서는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70% 이상의 식재료를 전남도산 친환경인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증기준으로 정하여 별도의 인증표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쌀과 채소 사용 음식점과 살, 채소 및 축산물 사용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24개 업소를 인증하는데 그치고 있음.

○ 해외의 유기음식점 또는 유사 급식시설 인증제도 운영현황 조사

- 해외의 경우 국가단위 유기 음식점 인증제도는 덴마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덴마크에서의 유기식당은 식재료 중에서 유기식재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30~60%, 60~90%, 90%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동색, 은색, 금색의 국가 인증로고(Organic Cuisson Label)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외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유기식당 또는 친환경 식당 인증제도를 정부단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고, 민간 인증기관이 자체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당을 인증하고 있음.
-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는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시행하고 있는 “생명을 위한 식품(Food for Life) 급식 인증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음식점과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업소를 모두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인증제도는 금, 은, 동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가급적이면 신선 식재료를 현장에서 바로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음식점에 적용되는 국가표준과 법령에 맞는 양질의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식재료를 조달하되 지역 생산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색 인증을 위해서는 제공하는 음식의 75% 이상이 신선 식재료로 바로 조리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식육은 영국의 동물복지기준에 맞는 가축에서 얻어진 것이어야 하고, 해양보존위원회(Marine Conservation Society)가 어획을 금지한 어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계란은 방사 닭에서 얻어진 것이어야 하며, 유전자변형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음용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계절 또는 계절음식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식재료의 출처 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공급자가 식품안전 표준을 제대로 준수함을 보장

하고, 조리원들이 동 제도와 조리기술에 숙련되어 있어야 함. 은장 및 금장의 경우에는 동장의 기준에 추가하여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은장은 전체 식재료의 5% 이상, 금장은 15% 이상이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가 건강식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 생산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수준을 평점으로 부여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은장 또는 금장을 결정함.

○ 국내 친환경인증 농식품 대량소비처 관리방안 도출

- 즉석식품제조·판매업과 제과점영업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제조·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관리제도 도입은 필요없음.
- 유기 또는 친환경 음식점등(집단급식업소 포함)에 대한 인증은 현행 국내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인증제도 운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증사업장 유지를 위한 가격부담과 음식의 맛에서의 차별성 부족 등을 감안하고, 해외 유사 인증제도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정 식재료별로 해당 음식점등에서 연간 사용비율이 95% 이상인 경우에 “유기(또는 무농약등) 식재료(해당 명칭 표시) 사용” 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음식점등에 대한 유기 또는 친환경 인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전체 식재료에서 차지하는 유기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식재료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에 인증을 하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인증식재료의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 대안으로서 영국 Soil Association 이 운영하는 음식점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등급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친환경 인증 식재료의 비율에 따른 등급기준은 덴마크의 인증구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3. 유기농산물 활용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 범위 확대

○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국내에서는 꿀벌의 평균 행동반경이 2.5 ~ 3.5 km인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당시에는 유기농 밀원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기축산 인증기준에서 유기양봉에 대한 인증기준을 배제하였지만, 이는 실제 수입산 유기양봉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를 제한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한봉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양봉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유기양봉에 대한 인증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32뿐만 아니라,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인도 등의 국가표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양봉과 함께 양봉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을 고려하면서 국내 유기 양봉업의 운영환경을 감안한 인증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유기축산 인증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음.

#### ○ 비식용 화훼, 와인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비식용 화훼는 역시 유기농산물로 분류되며, 국제 및 외국의 인증기준에서도 유기 화훼에 대한 별도인증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현행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
- 와인·전통주 등의 인증기준 신설 역시 이들 주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허용물질 목록에서 정한 것만으로도 인증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해외에서도 유기 주류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허용물질 목록에서 와인에 대한 이산화황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감안하는 한편, 국내 전통주 생산업자(명인협회 및 전통주진흥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별도 기준의 설정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4.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 유통실태 및 해외 인증기준 조사

-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은 세계적으로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여서 2011년 586억 USD에서 2017년에는 748억 USD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됨(트랜스퍼렌시 마켓 리서치).
- 국내의 경우 2012년 도매가 기준 1,500억 원(소매가 기준 2,500억 원) 규모에서 2017년에는 8,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농협연구소, 2013)하였고, 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58%가 수입품이 차지했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네슬레, 퓨리나 등의 외국계 브랜드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는 유기농사료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최근에는 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이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유기농 사료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용 사료 중에서 “유기”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 NOP 인증로고가 전부이지만, 실제 미국 NOP는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가 초안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실제 법령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는 반려동물용 사료 자체를 유기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으로 국가별로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한 사례는 없음.

#####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 실시방안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의 인증대상은 실제 국내에서 유통 및 소비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 및 고양이용 사료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 인증제도의 운영은 기존 유기식품등의 운영절차를 준용하되,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 하단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음.
- 실제 인증기준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허용물질 목록도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목록



을 준용하였음.

- 외국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인증 및 관리절차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기존 절차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도 기존 절차에 준하게 함으로써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기존업체의 애로사항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제도시행은 2017년 6월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5. 비식용 유기가공품 표시제 도입

### ○ 세제, 섬유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 2015년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비식용 유기가공품 중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된 세제, 여성용품, 섬유 및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을 제외(법률에서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한 품목별 인증제도준 도입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
- 이 중에서 여성용품은 실제 제품의 패드부분의 재질에 대한 인증을 통해 유기표시를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유기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섬유 및 섬유제품으로 분류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화장품을 제외한 개인보호용품과 통합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종류별로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없었으며, 실제 시장에서의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별로 자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인증을 실시하는 실정임.
- 따라서,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유기” 표시를 위한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의 법정 인증제도보다는 민간 자율의 합리적인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제도를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 유기 섬유 및 섬유제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6%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88.6%는 국가공인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유기 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소비자의 88%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에 생산업체는 33%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차이가 있었음. 공인인증마크의 선호도는 국내 소비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국가 인증제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음.

○ 유기 섬유 및 섬유제품 인증기준 설정 및 제도 운영방안 연구

- 유기 섬유제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표준은 미국의 유기무역협회(OTA)와 독일의 IVN(독일내 섬유사업체 연맹),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 및 일본유기인증협회(JOCA)가 공동으로 구성한 세계유기섬유표준 국제작업반(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International Working Group)이 2006년에 최초로 개발한 세계유기섬유표준(GOTS)으로 2013년에 제4판이 공표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2017년 3월 1일에 제5판이 개정공표되었음.
- GOTS표준은 섬유 원료 생산이후의 원사생산에서부터 봉제에 이르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며, 우너료의 유기적 순수성 유지 이외에도 환경경영요구사항 및 윤리적 요구사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인증대상은 유기 섬유 원료 함량 70%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GOTS표준은 섬유 가공제품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으로 미국의 NOP나 IFOAM에서도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유기인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업무는 GOTS 사무국이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증로고도 보유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유기 섬유제품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2003년에 미국에 본부를 설치한 섬유산업계 및 인증기관 등의 연맹체로서 국제 비영리법인인 TextileExchange(TE)는 유기 면화에 대한 공급망에서의 함량 강조표시에 대한 진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표준을 제정하여 유기 면제품 중심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TE는 섬유 공급망에서의 섬유 제품 중에 함유된 유기 원사함량 표준을 정한 OCS(Organic Content Standard, Ver. 2.0, 2013)과 최종 제품 중에 함유된 재활용 자재 함량을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를 강조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인 RCS(Recycled Claim Standard, 2013) 및 세계 섬유 재활용 표준(Global Recycled Standard, Ver. 3.0, 2014)의 3가지 표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에 대한 인증인 OCS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GOTS의 함량기준을 충족하면 GOTS 인증에서 원료 검증이 면제될 수 있으며, TE는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이 운영하는 국제유기인증원(IOAS)에 등

록되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TE는 유기 섬유원료 함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인증을 하는 반면, GOTS는 섬유가공제품을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인증제도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유기 면화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여서 실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도 국내 유기농업 활성화에 직결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인증제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섬유 가공품의 경우에는 GOTS 인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국내 유기섬유 가공품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사 생산에서부터 제직, 재봉 및 봉제 등의 단위 공정이 수직계열화된 실정에서 최종 완제품에 대한 GOTS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TE에 따른 함량강조표시와 GOTS에 따른 최종제품 인증을 모두 허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따라 섬유 및 섬유가공제품의 유기 인증제도를 법정 인증제도로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한 권한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유기표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기준 설정 및 제도 운영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화장품은 친환경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0호(2014.12.24. 제정)로 정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원료 함량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에서 유래한 것이면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표시제로 관리되고 있음.
- 유기농 화장품을 제외한 유기농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은 현재 친환경법령에서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서 생산자의 자율표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 표준으로 유기농 세제 또는 개인보호용품의 인증기준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어서 민간 자율 인증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의 인증기준은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 실제로 주요 국가별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에서 세제 또는 개인 보호용품을 별도의 인증기준으로 설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화장품 기준을 준용하거나 욕실용품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증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21일에 제2판으로 공표한 코스모스(COSMOS) 표준으로서 이는 독일의 BDIH, 프랑스의 COSMEBIO & ECOCERT, 이탈리아의 ICEA와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이 공동으로 설립한 벨기에에 등록된 국제비영리법인(AISBL)이 제정한 유기 및 천연물 화장품 표준으로서, 최소한 유기 원료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이 가능함.
- 한편, 영국의 Soil Association은 “건강 및 미용제품”에 대한 유기 표준을 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표준은 2015년 3월에 최종 개정된 Ver. 16.6판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표준의 적용대상은 허브류 제품, 천연 및 허브 의약부외품, 욕실용품, 피부보호제품, 화장품 및 향수로 정하였고, 특히 욕실용품에는 거품제, 혼합유, 유화제품, 젤류, 화장비누, 액상제품, 풀, 연고, 향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사람이 식용가능한 제품은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이 인증대상이며, 기타 욕실용품이나 세제 등은 2015년 판 COSMOS표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의 유기세제 및 개인보호용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법정 인증제도보다는 유기 섬유 및 섬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유기 양봉 및 벌꿀제품의 인증기준 설정을 통해 국내 유기양봉업자의 인증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과의 동등성 인정협정 대상을 벌꿀을 포함한 양봉 전체로 확대하는데 직접 활용이 가능함
- 반려동물용 유기 사료의 인증기준 설정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인증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 수입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표시허용을 대체하여 국내법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로 활용 가능

-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신설을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확대 정책수단으로 직접 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과 가공식품 산업의 동반성장 달성 가능
- 유기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대량소비처인 음식점 및 집단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인증제도의 단계별 도입을 통해 국내산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에 활용
- 기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국제표준에 준하는 국내 등록제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에 활용

#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2013년 6월 2일에 발효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법”이라 함)」에 따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내 유기식품 관리체도가 인증제로 통합·관리되면서, 동시에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유기식품과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과 비식용유기가공품(화장품 제외)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2항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양봉 및 양봉제품 제외),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및 거래인증에 대한 기준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8월 26일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통합 규정하면서 부문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과 비식용 유기가공품(양축용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유기 섬유 및 섬유제품,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등)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은 규정되지 않아서 인증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친환경농식품 등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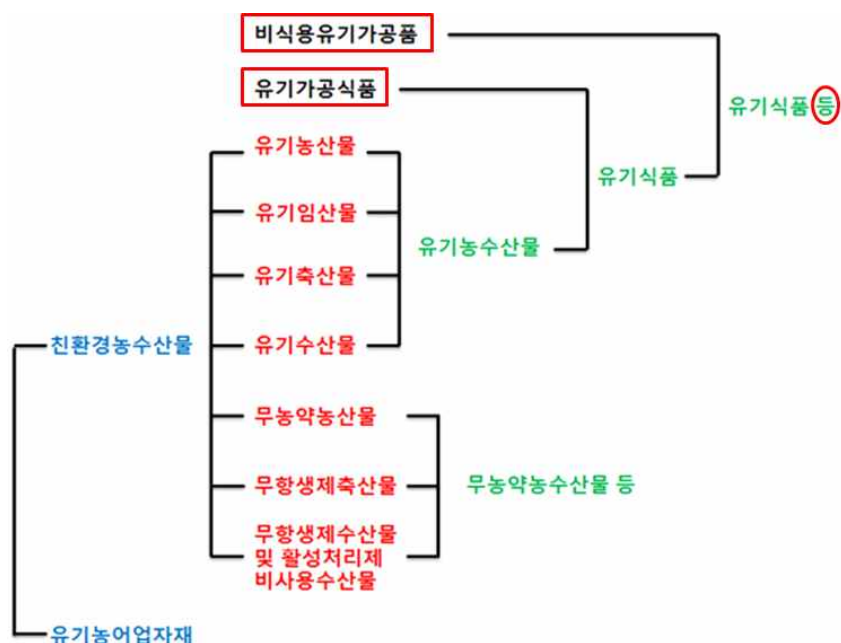


그림1. 친환경 농식품 등의 구성 현황

또한 친환경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을 무농약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여 같은 부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11에서 이들에 대한 개별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친환경법에서는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이나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정하지 않아서 이들 가공식품이나 가공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생산자의 자율표시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3년에 개정하여 시행된 친환경법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저농약 농축산물등의 인증제도가 2012년부터 신규 인증을 전면 중단하면서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전면 폐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저농약 인증을 받던 농축산물은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인증으로 전환하거나, 인증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특히, 과수류 또는 축산물에서 저농약 또는 저항생제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의 인증면적과 인증품 생산량이 2012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가 2014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기식품을 제외한 친환경농축산물은 무농약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과 이들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또는 사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농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함께 친환경 및 유기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표시제도의 도입과 집단급식업소를 포함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및 유기 인증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량에 따른 인증·표시기준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농축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유기 및 친환경 농축산물의 가공산업 활성화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70~95%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에 대한 자율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방안이 부재하여 이의 인증제도로의 편입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유기식품 인증제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양봉 및 양봉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의 마련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포함한 섬유, 세제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표시기준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법률의 완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친환경 농축산업과 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의 필요성

### 2.1. 기술적 측면

친환경 및 유기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과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친환경(유기 포함)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되는 제품이 친환경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자격을 갖춘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이며, 1924년에 독일의 Rudolf Steiner박사가 농업강연에서 “바이오다이내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 1972년에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이 설립되면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인증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1974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업 관련 법률을 채택한 이래로 1985년에는 프랑스가, 1989년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각각 유기식품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기준은 개별 국가의 법률 정비와 함께 자국의 유기농업 환경에 맞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1980년에 IFOAM이 기본규격 초판을 발간한 것이 효시이며 이를 토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99년에 지침문서(CAC/GL - 32)로서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국제유기시장접근촉진기구(GOMA)는 이들 국제표준과 함께 개별 국가의 표준이 서로 조화되어 유기식품의 원활한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등성평가 절차를 개발하고 지역별 통일규격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유기) 인증제도는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농업환경에 따른 차이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면서 생물체 및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며, 보편적인 환경과 생존의 기회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원칙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실천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생산품의 특성에 적합한 인증기준의 설정이나 합리적인 표시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 국내 친환경법에서는 유기축산 중에서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유기섬유나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또는 반려동물용 사료 등과 같은 비식용 가공품이나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농축산물 가공품의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친환경 농어업 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의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미설정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나 합리적인 친환경 표시기준의 설정을 통해 법률의 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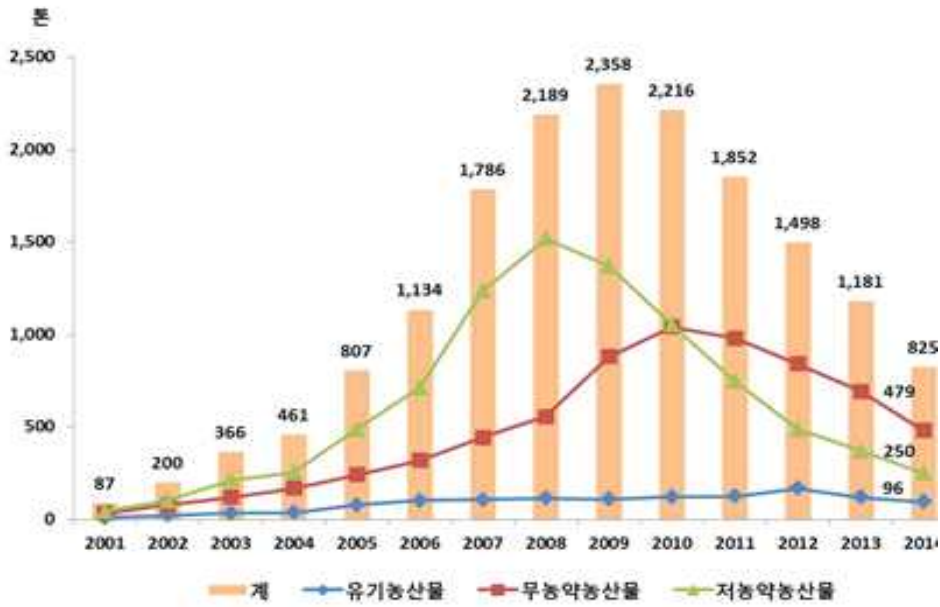


## 2.2. 경제·산업적 측면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01,688 ha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저농약 인증제도의 단계적 폐지(2012년 이후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인증면적이 연평균 5.4%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0 % 및 2.5%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에는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강화의 영향으로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표 1 및 그림 2 참조), 특히 저농약 인증제도가 전면 폐지된 2015년부터는 저농약 과실류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장규모도 2014년보다 18.8% 감소한 1조 2,718억 원까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편 2015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육성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육성시책이 효과를 발생하면 2024년까지는 전체 농산물 거래액의 약 12%에 해당하는 4조371억 원까지 다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구 분		2000	2009	2010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
유 기	농가 수(호)	353	9,403	10,790	16,733	13,963	11,633	4.3
	면적(ha)	296	13,343	15,517	25,467	21,210	18,306	6.5
	출하량(톤)	6,538	108,810	122,243	168,256	119,290	95,694	-2.5
무 농 약	농가 수(호)	1,060	63,653	83,136	90,325	89,992	56,756	-2.3
	면적(ha)	876	71,039	94,533	101,657	98,233	65,061	-1.7
	출하량(톤)	15,694	879,930	1,039,576	841,513	691,238	479,441	-11.4
저 농 약	농가 수(호)	1,035	125,835	89,992	36,025	22,797	16,776	-33.2
	면적(ha)	867	117,306	83,956	37,165	22,209	16,679	-32.3
	출하량(톤)	13,174	1,369,034	1,053,702	488,466	370,898	250,348	-28.8
합 계	농가 수(호)	2,448	198,891	183,918	143,083	126,752	85,165	-15.6
	면적(ha)	2,039	201,688	194,006	164,289	141,652	100,046	-13.1
	(면적비중)	(0.1)	(11.6)	(11.3)	(9.5)	(8.3)	(5.9)	
	출하량(톤)	35,406	2,357,774	2,215,521	1,498,235	1,181,426	825,482	-18.9
경지면적(ha)		1,888,765	1,736,798	1,715,301	1,729,982	1,711,436	1,691,113	-0.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그림 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시장규모 전망(2009)

표 1 및 그림 2에서 보듯이 2012년 이후 저농약 농산물의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3년부터 친환경 인증 내실화 활동이 강화되면서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의 출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농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의 신규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동시에 유기가공품도 현행 95% 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제품만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거나 제한적 유기표시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친환경 및 유기농업의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 미비된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의 인증기준 설정을 통한 제도도입뿐만 아니라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2014년도에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국내 비식용유기가공품 소비자인지도 및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전 인지도는 25% 수준으로 낮았음에도 실제 구매 경험율은 64%로 높게 나타났고, 주로 민간 인증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서 국가 공인 인증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82%로 매우 높았고, 이는 특히 비식용 유기가공품 구매경험자가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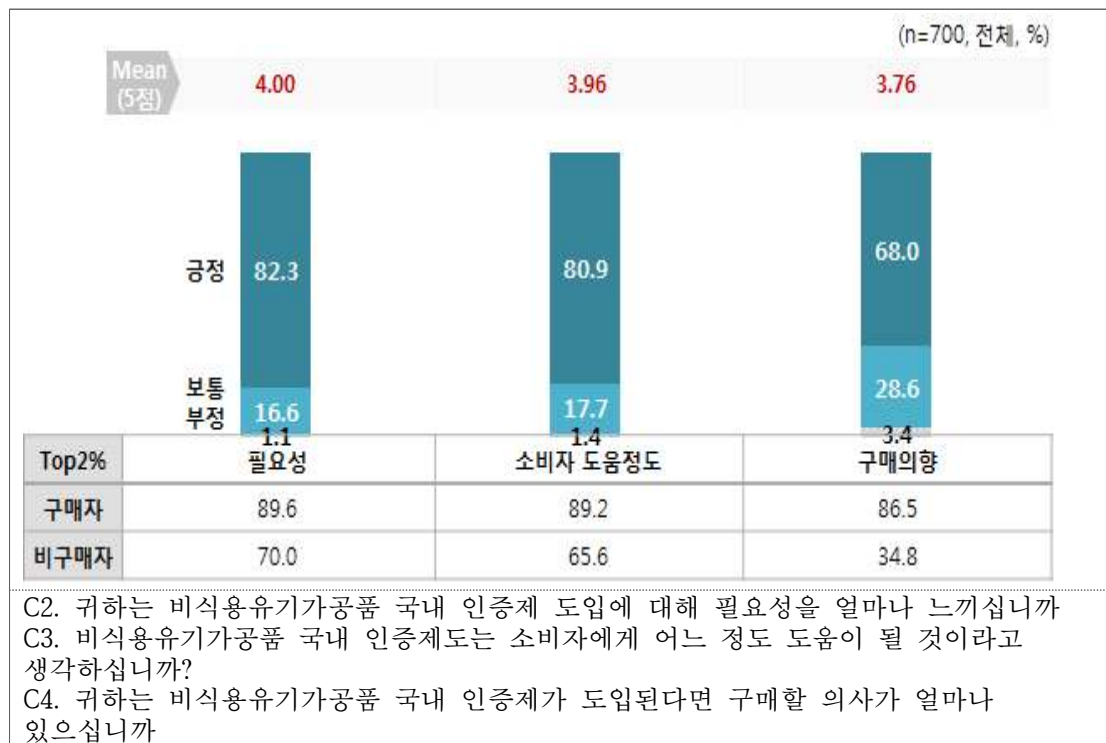


그림3. 비식용가공품 국내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또한 일부 해외인증기관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와 비교해서 국내 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증제도의 신뢰성은 국내 또는 해외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의견은 해외와 국내가 각각 5.6%와 6.7%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도 국내 인증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 참조). 이와 함께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개인 세정용 제품, 섬유제품 및 완구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용 사료의 경우에는 미국 NOP의 경우 별도의 인증기준 없이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단위 인증기준을 보유한 국가는 없지만 인증기관에서 독자적인 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쳐서 국가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로 나타났다.(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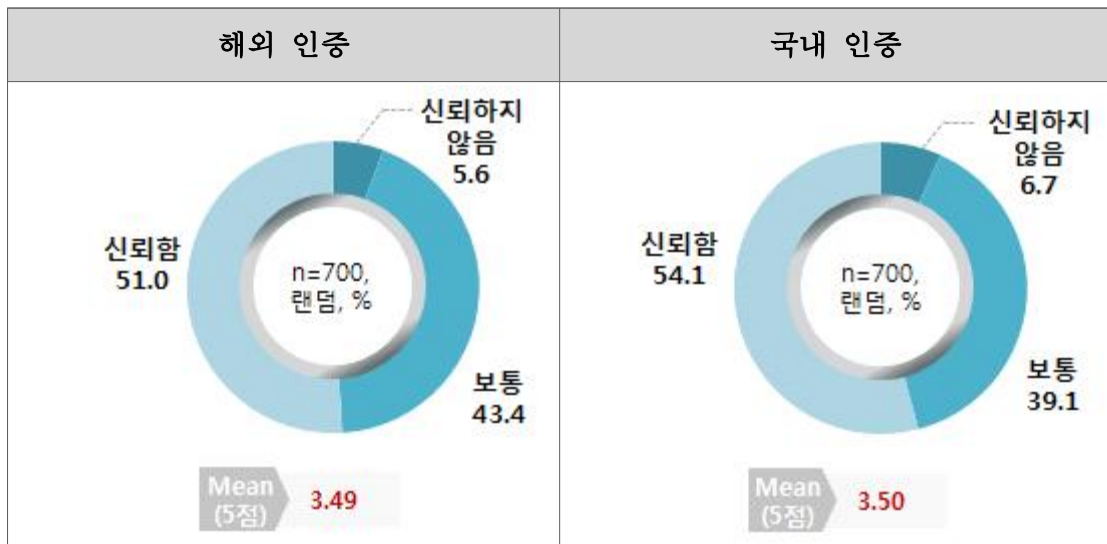


그림 4. 비식용 유기가공품 해외인증제도와 국내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표 2. 비식용가공품 국내 인증제도 도입 대상품목 우선순위

구분	섬유제품	세정제품	애완사료	완구	기타	전체
빈도	58	315	4	44	2	423
백분율(%)	13.7	74.5	0.9	10.4	0.5	100.0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현재 4.5%에서 8%까지 확대하여 시장규모를 현재 1조4,000억 원에서 2조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기 및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개선뿐만 아니라 인증 농식품의 대량 수요처인 급식 및 외식산업의 인증제도 적용과 다양한 비식용 가공품의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 및 가공품의 소비자 신뢰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공산업과 외식산업 및 수출 분야의 적극적인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핵심 추진체계는 그림 5,와 같다.

특히 동 육성계획에서는 1차 농산물 생산 육성에 집중하던 정책 추진 체계를 친환경가공식품 산업기반 확충과 동시에 외식·수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인

증·표시 기준을 마련하고(2016), 가공업체 컨설팅·R&D·맞춤형 원료 정보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가공-외식-수출-관광 등과 연계한 품목별 성공사례를 매년 10개씩 발굴·확산시켜 나갈 예정인 바,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현행 인증·표시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림 5.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핵심 추진체계

### 2.3. 사회·문화적 측면

2012년에 메가리서치가 실시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83.5%가 국내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은 모두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국내 인증제도에 따른 추가 인증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6%이었고, 이 경우에 인증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 제품가격의 수용 가능한 인상률은 8.62%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수단으로서 국내제도에 따른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증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경우의 수용가능 인상률은 평균 8.62%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체재를 소비(관행제품 구입의사 표시 응답자가 45.3%)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중복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동등성인정 제도의 활용과 함께 동등성인정 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제도운영 이력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면서도, 유기식품의 시장규모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의 진작을 위해서도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에 맞는 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 NOP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축산물 원료 함량에 따른 차별화된 인증제도의 도입이나 제한적 유기표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환경부가 주도하여 일반 공

산품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친환경 인증제도는 제품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서 인증로고는 그림 6.과 같다. 이러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친환경상품의 적용대상 제품은 생산업체의 환경보호 노력과 함께 제품별로 사무용 전자기기(복사기, 프린터 등)의 친환경 상품 인증 시험,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시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붙박이가구 흡착·흡방습 건축자재 시험,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 인증시험, 공기살균기의 살균력 시험 등 각각 제품에 적합한 인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여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용 기기부터 가정용 비품까지 총 147개 종류의 다양한 제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증마크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제품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친환경 농축산물과 이들 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상품 인증제도와는 구분되는 별도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음료용기 제품을 생산하는 테트라팩이 2015년에 전 세계 12개 국가의 소비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5% 이상이 음료를 구입할 때, 친환경 포장재 표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제품이 친환경적 요소를 충족하는지는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인증로고를 확인하여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환경부 친환경상품 인증마크

또한, 소비자의 웰빙 및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요구사항을 실천하려는 생활양식은 다양한 친환경 식품 및 비식용 가공품 전반에 대한 수요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국내 친환경 농업과 가공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도 원료 또는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표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 3.1.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유기 원료 함량에 따른 인증표시 기준 차이

1980년에 IFOAM이 유기농업에 관한 기본표준을 제정한 이래로 개별 국가의 정부도 유기농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법정 인증제도로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들 국가별 인증제도의 호환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에 관한 CODEX 지침문서(CAC/GL-32)를 1999년에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별 유기인증제도와는 별개로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은 1997년에 IFOAM의 기본표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인증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1997년에 국제 유기인증원(IOAS;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을 미국에 설립하여 IFOAM의 유기농표준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확산에 기여하여 왔다.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곧 국제기구로서의 IFOAM과 CODEX의 유기 인증제도에 대한 명확한 표준 설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IFOAM 기본표준에 따른 인증제도에서는 “유기”라는 표현을 유기원료의 함량기준에 따라 인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유기로 인증된” 또는 이와 동등한 표시를 하면서 인증기관의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기 원료의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유기”로 표시할 수 없고, 제품의 성분 등 표시면에 “유기원료로 제조”와 같은 완화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DEX GL-32에서도 유기 원료 함량 95% 이상인 경우에 “유기”의 단독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유기 원료 함량이 70~95%인 경우에는 개별 회원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 표시규정을 정하여 제한적인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유기식품 생산 환경에 따른 차이점을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국제기구의 유기 원료 함량에 따른 기준이 모든 국가별 제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주요 국가의 인증기준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 원료 함량을 기준으로 95% 미만인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현재까지는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제한적 표시기준은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EU는 함량에 따른 표시규정은 정하지 않고 원재료 목록 표시에서 특정 원료가 유기 성분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수렵 또는 어획된 원료임을 표시하거나 또는 그 원료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또는 캐나다에서는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유기” 라는 표시의 독립적인 사용은 금지하며 주표시면의 제품명에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과 같은 서술문 형태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성분목록에서 “유기농” 또는 “유기” 라는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확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CODEX 등의 국제기구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유기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국내의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EU와 마찬가지로 유기 농축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만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70 ~ 95 %의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주 표시 면에 그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기 및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 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국내 유기 및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70~95%의 친환경(유기)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주 표시 면에서의 표시 허용을 위하여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나 제한적 유기표시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유기식품을 제외한 친환경농축산물은 무농약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만 존치하는 상황에서 무농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특이적인 무농약 및 무항생제 인증 확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 3.2 국내 친환경(유기) 원료 대량 소비처 대상 친환경(유기) 인증제도 부재

국내 친환경 농산물 대량소비처 대상 인증제도는 2006년 5월에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우수 전용식당 지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7년부터 우수식당 지정업무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도입된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동 제도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대량소비처 발굴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친환경농산물자조금협회가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실적이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40개소 미만의 식당을 지정하는데 그치고 있고, 지정된 식당마저도 식재료 조달 자체의 어려움과 가격대비 고객만족도 저하 등의 이유로



제대로 운영이 불가하여 자진 반납하는 등으로 21개소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운영효과가 미미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3.3 국내 유기 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미비점 정비

우리나라 친환경육성법에서는 유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기축산 인증기준에서는 양봉에 대한 기준이 국내 양봉생산 환경에서는 꿀벌의 행동반경(2.5~3.5 km)이 내에서 완전한 유기 또는 천연 밀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인증대상에서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유기 벌꿀 및 기타 양봉생산물의 인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중에 벌꿀을 함유하는 제품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된 유기벌꿀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기준이 없는 관계로 수입되는 유기벌꿀에 대한 국내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이 불가능하여 동등성인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서 개별 국가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국내산 벌꿀 및 양봉 생산물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양축용 축산사료에 대한 유기 인증기준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증기준이 없어서 유기인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반려동물 중에서는 개 및 고양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유기사료의 수요가 특히 높다는 점에서 개 및 고양이용 사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용 유기 사료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2015년에 녹색소비자연대가 농식품부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수요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유기 세계 및 개인보호용품과 유기 봉제완구 또는 여성보호용품 등을 포함한 유기 섬유 및 섬유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표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경우 현재까지는 세계 주요 국가별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 설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련 표준의 검토와 실제 개별 국가의 인증제도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인증제도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유기” 라는 용어의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유기섬유의 경우에는 2013년에 설립된 국제유기섬유표준 작업반(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Working Group)이 제정한 국제유기섬유표준(2014

년 3월에 4차 개정완료)에 따라 동 작업반이 승인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GOTS 표준에서는 섬유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기준 외에도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기섬유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특성상 생산의 글로벌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 여러 단계에 걸친 염색·가공제의 사용 등이 유기섬유제품의 생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되어 국제 기준을 설정하기 까다롭지만, GOTS는 원면을 가공, 방적, 편직, 직물, 염색 및 가공, 프린트, 재단 및 봉제 등 제품의 생산 단계별 기준을 가지고 단계별로 유기섬유 제품임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기섬유제품에 대한 공식 유기 인증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농업부 NOP의 경우 면화, 명주, 양모 등을 전체 원료의 95% 이상 사용하고 유기 취급 기준에 맞게 가공 및 취급한다면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GOTS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유기’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C834/2007(유럽연합의 유기인증제도)에서는 유기섬유의 경우에는 EU의 유기 인증표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지만, 자율적인 관리규정에 따라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GOTS에 따라 심사, 인증, 사후관리, 표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섬유 제품들은 대부분 GOTS 인증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및 표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기가공품 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권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동등성 측면에서도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유기 인증제도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에 비해 국내 유기인증 대상 품목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상호동등성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기인증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유기인증 수입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범위 확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 3.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검토 필요

우리나라 친환경육성법에서는 유기 농축산물에 대한 전환기간 규정은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전환기간 동안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도입할 당시부터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저농약(일본의 감농약, 감화학비료) 및 무농약(일본의 무화학비료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제도를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유기농업을 실시하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제도가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저농약 또는 무농약 농축산물 생산에 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유기 농축산물

과의 시장 차별성 부재로 유기농축산물의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에 따른 신규인증을 중단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하여서 2016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물은 무농약(무항생제 포함) 또는 유기농축산물만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2012년부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인증면적이 연평균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와서 당초 정책목표인 저농약 농축산물의 무농약 농축산물 또는 유기 농축산물로의 전환효과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실제 이러한 인증면적의 감소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친환경 농업 전반의 위축현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환경에서 유기농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서 괴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시중에서 생산자의 자율표시로 특정 무농약 농축산물을 15% 이상 함유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그 사실을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농약 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인증기준의 설정을 통한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제2장 본론

### 제1절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표시기준 정비

#### 1. 유기가공식품 산업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대상 범위 확대 또는 제한적표시제도 개선 방안

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대상으로는 유기농산물등의 원료 함량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총 원료 함량의 95 %이상인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유기농산물 소비확대와 유기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려면 제품 원료의 함량에 따른 인증대상 범위의 확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의 개정을 통한 표시규제의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별 유기식품 인증제도에서 특히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원료 함량에 따른 관리방식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1.1.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별 유기 원료함량에 따른 인증·표시제도 운영현황

##### 가. 미국

미국의 유기식품 인증 및 관리제도는 유기식품생산법(1990)에 근거하여 제정된 CFR Part 205<국가유기생산프로그램(NOP)>에 따라 1993년부터 국가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기식품생산법의 § 6505(적법성 요구사항)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산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고, 미국 농업부의 유기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농업부 장관이 이 기준과 최소한 동등한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을 다루는 지침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기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었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유기적으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 대비 유기원료 함량 50% 이상인 제품 중에서 주 표시면에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재료”임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농업부 장관이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와 보건후생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제품과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대비 유기원료 50% 미만인 제품 중에서 농업부 장관이 NOSB 및 보건후생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재료 목록에 “유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한 제품은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액이 5,000달러 이하인

농산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업인도 이 기준의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CFR Part 205의 Subpart B § 205.100에서는 유기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 원재료 함량 기준으로 ‘100%’, ‘유기(실제 원료함량 기준 95% 이상)’ 또는 ‘유기(특정 원료 또는 식품군)으로 만든(최소 함량기준 70% 이상에 해당)’ 이라는 표시를 하려는 제품은 유기식품 생산법에서 기준적용을 면제한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인 경우에는 나머지 사용되는 비유기 원재료인 경우에도 유기식품 인증기준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식품첨가물 등은 국가 허용물질 목록에서 허용하는 것만 사용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 인증기관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국가 유기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반면, 유기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미만인 제품은 주 표시면에 ‘유기’ 라는 단어를 표시할 수 없고, 원재료 목록에만 인증 받은 원료의 명칭과 그 함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NOP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70~95% 유기원료 사용제품의 인증 비율은 미국의 NOP 인증기관 중 하나인 QAI의 경우 163개 인증 가공식품 중에서 9개 제품에 불과하여 전체 인증제품의 5.5%에 불과하였고, 95개 인증기관 중에서 실제로 대다수 인증기관은 이에 대한 인증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인증제품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나. 캐나다

캐나다의 유기식품 관리는 캐나다 유기제품규정(C-OPR, 2009)에 근거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관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을 유기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유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캐나다 국가유기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4 (1), OPR]. 다성분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원재료 목록에서 유기 원료가 식별되어야만 한다[25(b), OPR]. 또한, 인증 받은 제품은 인증기관의 명칭을 표시해야만 한다[25(a), OPR].

캐나다의 경우, 가공식품의 원재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 100%인 경우에는 ‘유기원료 함량 %’ 를 표시하거나 ‘유기’ 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95% 미만에 해당하는 유기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 유기원료 함유’ 로 주표시면이나 광고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24 (2), OPR]. 이 경우에는 해당 유기원료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국가 유기로고 또는 ‘유기’ 라는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원료’ 라는 단어는 해당 원료의 함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크기의 동일한 활자체를 사용하면서 두드러 보이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고[24 (2), OPR], 해당 원료는 원재료 목록에서 ‘유기’ 로 식별되어야만 한다[25(b), OPR].

또한, 유기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미만인 제품인 경우에는 목록에서만 ‘유기’로 식별 표시할 수 있으며, 국가 유기로고나 ‘유기’ 또는 ‘해당 % 유기원료 함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24(3), OPR].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기 원료 함량기준 95% 이상인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인증 받은 유기식품에는 국가 유기로고와 인증기관명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70 ~ 95% 미만인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 원료 (특정) %함유”라는 표현을 주표시면에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기’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강조 표시할 수 없고, 해당 함량을 표시한 원재료는 제품의 원재료 목록에서 식별되어야만 한다.

#### 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유기식품 관리제도는 2007년에 전면 개정된 EU공동이사회(Council) 규정인 (EC) No. 834/2007을 기본법으로 하여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인증기준 및 관리절차 등은 EU집행위원회(Commission) 규정인 (EC) No. 889/2008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U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대상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기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원료의 95% 이상인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는 EU 유기로고와 함께 인증기관의 고유 식별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받은 유기 가공식품 중에서 유기원료 함량이 100%인 제품인 때에는 ‘100% 유기’라는 강조표시를 주표시면에 할 수 있지만, 95% 미만인 제품은 사용한 유기원료와 그 함량 및 이들의 합을 원재료 목록에서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70% 이상 95% 미만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종전 규정(EEC No. /91)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특정 원료명)”을 그 함유 %와 함께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였지만, 2006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표시를 함량 제한 없이 유기 원료 함량 표시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의 생산방법이나 허용물질 등은 유기식품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재료 목록에서도 해당 유기 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EU 유기로고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 라. 호주

호주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기식품 생산 및 인증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은 없으며 일반적인 식품법과 공정거래법을 기본으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통해 유기식품을 관리하면서 표시의 진실성과 거래증명을 통한 관리만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식품 유형별로 자체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호주 정부가 유기제품 수출표준으로 1992년에 제정하고, 1998년에 2차 개정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서 2015년 2월 1일에 최종 개정

(Ver. 3.6)된 “유기 및 생태역학적 생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호주의 농업수자원 부가 관리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최소 인증기준으로 적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모든 유기식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호주의 8개 인증기관이 모두 이 국가표준을 국내에서 인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 표준에서는 전환기를 포함한 모든 유기 및 생태역학적 제품은 승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에 ‘유기’ 또는 ‘생태역학적’이라는 표시(‘전환기’ 포함)를 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제품에는 인증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또는 인증번호와 인증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로고를 포함하여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표시해야만 한다. 특히 인증 받은 제품의 원재료목록에 표시하는 원재료는 그 유기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체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만 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에 함유하는 유기 원재료의 함량 기준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 또는 용량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의 표시는 ‘100% 유기 또는 생태역학’, ‘유기 또는 생태역학(함량기준 95% 이상)’이나 ‘(특정) % 유기 또는 생태역학적(특정 원료/통상명)으로 만든’이라는 3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기 또는 생태역학적 원료 사용량이 전체 제품중량 또는 용량의 70% 미만인 제품에 사용된 유기 또는 생태역학적 원료는 원재료 목록에서 다른 원재료와 동일한 서체의 동일한 활자크기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제품 총량의 70% 이상의 물을 가수한 제품인 경우에는 전체 제품 용량대비 유기 원재료의 백분율을 별도로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차산업부(MPI)가 공정거래법(1996)과 공식유기보증프로그램(OOAP)에 따른 유기제품표준(OP 1, 2 및 3)을 통해 내수용 유기식품 및 수출용 유기식품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중 OP1(Ver.2, 2005)은 유기제품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의 인정과 지정 및 능력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OP 2(Ver.2, 2005)는 유기제품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OP 3(Ver.2, 2005)는 유기제품 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공식적인 국가 인증 로고는 없다. 따라서 에 따라 뉴질랜드 공식 유기보증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제품에 표시할 수 없다.

뉴질랜드 내에서의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도는 유기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인 제품으로서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부 원재료만 유기인증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목록에만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 미만인 제품의 주 표

시면에 “유기” 라는 표시를 하려면 해당 유기 원료의 함량과 함께 표시하면서 원재료 목록에 유기 원료와 그 함량을 명기하여야만 한다.

#### **바. 일본**

일본은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는 “농림물자의 규격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유기 표준(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을 근거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총량의 95% 이상을 유기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기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청이 관장하는 ‘식품표시법’에서는 인증 받은 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함량과 관계없이 “유기 원료 사용” 사실을 제품의 모든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유기JAS 인증을 받은 해당 유기원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100%인 경우에는 함량표시 생략 가능)하여야만 하지만 외국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 원료 사용” 사실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CAC/GL-32)**

세계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99년에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GL-32로 제정하였고, 이 표준은 2001년과 2003년, 2004년 및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와 2012년 및 2013년에 이르기까지 총 5번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져서 세계 각국의 유기식품에 관한 국가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95% 이상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는 “유기”라는 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70% 이상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유기 원료 사용” 강조표시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기가공식품의 생산기준에 준하는 방법과 허용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 자체는 의무 요구사항이 아니다.

#### **아. 국제유기농운동연맹(IFOAM)의 기본표준(IFS)**

1972년에 설립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2012년에 최종 개정(Ver. 2.0)한 기본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 국가별 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에서도 지침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동 표준에서는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강조표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을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유기원료 함량이 70 ~ 95% 미만인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함량 백분율과 함께 “유기 원료 (함량)%로 만든” 이라는 표현과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증을 받아서 인증기관의 로고와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기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원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의 원재료 목록에만 표시할 수 있게 하면서 “유기 원료 사용” 강조표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기준으로 95% 이상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서 ‘유기’ 강조표시와 국가 인증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70 ~ 95% 미만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기’ 라는 강조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이나 다른 국가의 표시기준과는 달리 ‘유기 원료 (특정함량)% 사용’ 이라는 강조표시도 주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표시 제한성을 강화하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유기농 함량별 유기표시 방법

유기 원료 함량	임의 표시사항							의무표시 원재료함량표시 - (원료목록)
	유기 100%	유기가공식품	‘유기’ 용어 제한적 표시				인증기관명칭·로고	
			제품명	주표시면	보조표시면	원재료 목록		
100%	○	○	○	○	○	○	○	●
95%이상	×	○	○	○	○	○	○	●
70~95%	×	×	×	×	○	○	×	●
70%미만	×	×	×	×	×	○	×	●

### 1.2. 유기원료 함량기준 70 ~ 95%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기식품 관리제도에서는 외국 및 다른 국 제기구의 유기표준과는 달리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총량의 70 ~ 95% 미만으로 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이나 제품명에 그 사실을 표현할 수 없게 하는 제한적 유기표시를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자가 70 ~ 95% 미만의 유기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하는 동시에 특히 국내산 유기 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년 9월에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를 통해 유기가공식품 이해관계자 6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 유기 원료 70 ~ 95% 미만 함유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해 소비자(201명 응답)는 인증된 제품의 경우 가격은 10%까지 추가 지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48.3%로 가장 많았고,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51명 응답)는 응답자의 52.9%가 신규 인증제도 도입을 반대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37명 응답)은 응답자의 62.2%가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보다는 기존의 제한적 유기표시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기 원료 함량에 따른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한적 유기표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표시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1.3. 유기농산물등의 원료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기준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에 관한 관리규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유기표시를 위한 유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유기농축산물 함량계산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우리나라 제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한 유기가공식품에 국한하며,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 원료의 총합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전체 제품 중량의 70% 이하로 사용한 제품인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원재료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 원료의 총합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국가 유기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적으로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7에서는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위표시 등

에 대한 벌칙은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수단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한편, 이러한 우리나라의 제한적 유기표시제도는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지 않는 캐나다나 EU, 일본 등의 기준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식품 중에서 70 ~ 95% 미만의 유기원료를 함유하는 유기농식품의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 유기농식품 중에서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유기JAS인증을 받은 원료(농림물자의 규격화에 관한 법률에서 일방동등성을 인정하여 수입되는 유기 원료는 제외)를 70 ~ 95%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비율과 함께 주표시면에서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별도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방식의 표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CODEX 및 IFOAM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여 제한적 유기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령체계에서 제한적 유기표시대상 제품 중에서 유기원료 70 ~ 95% 미만 사용제품에 대한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기’ 표시를 허용하면서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허용물질의 사용기준을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유기농식품의 허용물질만 사용하게 하고, 실제 제조가공방법도 유기농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준용하도록 요구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시중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 유기표시기준의 개선(안)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제한적 유기표시기준(시행규칙 별표 7) 개선(안)**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p>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p> <p>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li> <li>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농식품</li> </ol> <p>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li> <li>2)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단독 사용. 다만, 특정 원료가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함량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기 (원료명)과</li> </ol>

함량 %” 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 2.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 가.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 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유기 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때에는 이들 2가지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통칭하는 명칭 옆에 해당 원료명을 괄호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 “유기농 쌀 70% 함유 쌀과자”, “유기농 과일(포도 및 사과) 70% 함유 주스” 등)
- 3)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삭제)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

- 1)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한적 유기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한적 유기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유기농축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2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려는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등은 별표 1의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유기가공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에 등재된 것에 한하며, 별표3의 제4호에서 정한 인증기준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무농약농산물등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

### 2.1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의 국내 관리제도 현황

2013년 6월 2일 발효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그동안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내 유기식품 관리제도가 인증제로 통합·관리되면서, 동시에 같은 법

를 제19조제1항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수산물(이하 ‘무농약 농산물등’ 이라 한다)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이들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는 정하지 않아서 실제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의 농식품부소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11에서는 무농약농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및 이들의 취급자에 대한 인증기준만 정하고 있고,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 법률의 정비과정에서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유기식품을 제외한 친환경농축산물은 무농약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만 존치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과 이들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또는 사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농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친환경(유기) 인증제도는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농업환경에 따른 차이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면서 생물체 및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며, 보편적인 환경과 생존의 기회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원칙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실천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생산품의 특성에 적합한 인증기준의 설정이나 합리적인 표시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 국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는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농축산물 가공품의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친환경 농어업 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의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기술기준의 설정을 통해 법률의 완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2. 국내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시장규모와 유통현황 및 전망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과 대비하여 12.9% 증가한 총 3조2,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에는 친환경농식품 시장은 6조 6,000억 원 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도 국내 친환경농식품 시장에서 유기 농산물은 16.5%인 5,364억 원, 유기 가공식품이 13.3%인 4,355억 원, 무농약 농산물등 시장이 47.9%인 1조 5,627억 원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친환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Euromonitor, 2014).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2012년에 4,355억 원에서 2020년까지는 6,817억원 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중에서 국내 생산되는 유기가공식품 중에서 국내산 유기농 원료의 사용 비율은 평균 15~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여(표 2.1 참조)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의 시장진입 확대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원)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국내 생산	1,843	2,696	3,219	3,712	4,184	4,937	5,445	5,867
(국산 원료)	296	382	480	549	626	790	977	1,203
(수입 원료)	1,547	2,314	2,739	3,162	3,558	4,147	4,468	4,663
수입완제품	315	471	558	644	724	844	910	950
<b>합 계</b>	<b>2,158</b>	<b>3,167</b>	<b>3,777</b>	<b>4,355</b>	<b>4,908</b>	<b>5,781</b>	<b>6,355</b>	<b>6,817</b>

\* 국산원료는 유기 인증 재배면적의 증감율을 반영하였고, 유기 재배면적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가 되게 한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추정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2)

또한, 국내 전체 식품 산업의 규모는 163조 7,452억 원(2014년)인데 이 중 유기 가공식품의 규모는 5,531억 원(2014년)으로 전체 가공식품 시장의 0.34% 수준에 불과하다. 무농약 농산물 시장은 유기농산물 시장의 약 2.9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농약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도 이에 준하여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의 2.9배라고 가정할 경우 16,76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과 함께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업체와 제품수는 2010년에 222개 업체의 1,017개 제품이었던 것이 2015년 말에는 768개 업체의 4,773개 제품으로 4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무농약 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 전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중에서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유통시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전문매장 6개소(아이쿱생협, 두레 생협, 올가, 초록마을, 헬로네이처, 한 살림 등)와 대형 유통매장 2개소(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실제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온라인 매장을 통한 검색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고, 조사된 300여개 제품별로 표시사항을 통해 제품 원료 중에서 친환경 원료의 비율과 구성내용을 전수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100% 사용한 신선 농축산물의 단순가공품(건조 채소류, 포장육 등)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250종 이었고, 그 중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포장 단량만 다른 제품과 묶음판매 제품에서 중복되는 제품 또는 유통점포만 다른 제품 등을 제외한 실제 제품명에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농축산물을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는 가공식품은 183종(중복 제외)이었고, 이들 가공식품의 친환경 원료 함량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은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보듯이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원료 1~2가지만을 단순하게 사용한 100%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은 63종으로 모두 단순 가공식품(다류, 두부, 과채주스, 삶은 나물, 건 나물, 절임류, 분말가루 등)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였고, 유기원료를 포함한 친환경 원료 함량이 95% 이상 100% 미만인 가공식품이 27종

(14.8%)이었고, 70% 이상 95% 미만의 친환경 원료 함량을 가지는 가공식품은 42종(23%), 50%이상 70% 미만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이 36종(19.6%)이었고 나머지 15종(8.2%)의 제품은 친환경 원료 함량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제품이 65.6%를 차지하였고, 친환경 원료 이외의 원료로는 대부분 국내산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분쇄 가공육, 즉석 조리식품, 식육가공품 등은 푸레, 소스, 씨즈닝 등이 친환경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들 원료는 제품 전체 원재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명이 아닌 단순한 주표시면 또는 다른 표시면에 무농약 농산물등의 함량(대부분 15% 미만)과 함께 이들을 포함한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2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유통제품 조사결과 요약

무농약 등 이상의 원료(무농약, 무항생제, 유기) 원료를 함유하는 가공식품						
친환경 원료 함량	50% 미만	50% 이상 70%미만	70% 이상 95%미만	95% 이상 100%미만	100%	합 계
개수 (개)	15	36	42	27	63	183
점유율 (%)	8.2	19.6	23.0	14.8	34.4	100.0

조사한 8개 유통업체에서 실제 유통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의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제품의 50% 이상이 친환경 원료함량 9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품명이나 제품의 주표시면에 ‘무농약’ 또는 ‘친환경’ 문구를 제품명이나 주 표시면에 표시하는 등으로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친환경 원료를 함유하기만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강조표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오도 또는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표 2.3 및 그림 2.1 참조).

표 2.3 원료 함량별 대표 사례 제품

무농약등함량	대표 제품명	유통점
35%이하	ORGA 지짐군만두 (무항생제돼지고기27.38%, 우리밀22.88%, 양배추(국산) 9.25%)	올가
50%이하	무농약쌀로만든안심쿠키 (무농약 쌀가루32.3%,유기농 우유12.9%,황설탕, 무항생제전란액, 메이플 시럽, 버터)	홈플러스
75%이하	닭가슴살버거패티 (무항생제닭가슴살66.51%, 빵가루, 현미유, 소금, 조미소스)	한살림
95%이하	무항생제오리로만든훈제오리슬라이스 (오리(무항생제,국내산) 91.02%, 오리구이용 염지제(유기농설탕 63.4%, 후추, 생강, 고춧가루, 마늘분말, 양파분말), 천일염)	초록마을
95%이상	무농약우영차 (무농약우영100%)	홈플러스



## 자연주의 친환경

신뢰, 안전,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여 어떤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믿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무농약 현미 스틱 미숫가루

### Roasted Grains Powder

상품명 : 무농약 현미 스틱 미숫가루 내용량 : 600g (20g × 30개)  
 식품의 유형 : 즉석섭취식품 원재료명 및 함량 : 무농약 현미(국산) 32%,  
 현미보리(국산), 현미잡쌀(국산), 볶음백태, 쌀, 갈색실링, 볶음검정콩, 옥수수,  
 찰흑미, 밀, 수수 대두, 밀 함유  
 유통기한 : 옆면하단 별도표시일까지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내면)  
 제조원 : 청오건강농업회사법인 (주) 3공장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584번길 62-1 / (031)761-1050  
 유통전문판매원 : (주)이마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377(성수동2가) /  
 (02)380-5678 반품 및 교환장소 : 구입처 및 제조원

그림 2.1. 국내 유통중인 제품 주표시면 및 원재료 목록에서의 무농약 표시 사례



아울러, 가공식품의 친환경 기준에 대해서도 개별 전문매장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체 브랜드와 로고를 친환경 제품의 강조표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전문매장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강조표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의 예에서 보듯이 A업체의 경우 ‘자연주의’ 라는 브랜드를 공통 로고로 사용하면서 “친환경 인증제도에 기초한 1차 생산품 중심의 신선 및 가공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기도 하며, 한살림의 경우 “한살림 유통망을 생산하는 암탉의 닭다리 순살과 한 살림 기준에 맞는 신선한 채소, 양념류를 버무리려 만들었습니다.” 와 같은 강조표시를 양념닭고기에 표시하는 등으로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무농약, 자연 또는 친환경 표시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한 강조표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무농약등 농산물 가공식품에서 친환경 원료 이외의 원료를 선택하는 현상은 필요한 친환경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다음 고려요소는 원료가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때에는 전체 제품 중에서의 친환경 원료 함량기준과 함께 무농약농산물등 이외에 유기농산물등도 허용할지 여부와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함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여 제한적 무농약등 가공식품의 표시를 허용할 것인지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친환경 원료의 함량을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으로 제안하면서 함량계산에 포함시키는 원재료는 무농약농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이들을 95%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과 함께 유기농산물등(가공식품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기로 한다. 다만,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의 제한적표시는 원칙적으로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 용어의 제한적 표시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농약농산물등’ 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 함량계산에서는 ‘무농약농산물등 및 이들의 가공식품중에 함유된 무농약농산물등의 합계 함량’ 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가적으로 무농약등농산물 가공식품에서 허용 가능한 원료를 ‘무농약농산물등’ 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제도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원료확보의 제한성 때문에 실제 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며, 이는 특히 단순 원재료 사용제품이 아닌 복합 원재료 가공식품에서 공급제한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의 경우에 한하여 인증에 필요한 원재료 함량기준을 하향(70% 이상) 조정하여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을 인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농약등 농산물이 없는 경우의 사용가능한 원재료로 ‘국내산 농산물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WTO체제 하에서 비관세기술장벽의 설치라는 문제로 귀결되어 외국 정부와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3 무농약 농산물등과 이들의 가공식품 관련 외국의 유사 인증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1997년에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등의 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농약(축산물의 경우에는 항생제. 이하 같다), 저화학비료, 무농약, 무화학비료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이 국내 관행농업을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초기부터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 이후 2002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동 제도는 법정 인증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2년에 법률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규 인증을 전면 중지하고 2015년 이후에는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현재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제도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기 농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생산되는 농산물등에 대한 ‘전환기 유기’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저농약 또는 무농약 농산물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제도’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제도’ 및 미국의 ‘NE(Never Ever) 3’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차 생산되는 농산물만 인증대상으로 하여 가공식품은 그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제도는 A급과 AA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A급은 우리나라의 저농약농산물과 비슷한 수준이고, AA급은 무농약농산물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까지도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NE3’ 인증제도는 1차 생산되는 축산물에서 무항생제, 무호르몬 및 동물성 부산물사료 비사용의 3가지 방법으로 사육한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축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정육이나 원유 또는 계란만을 그 인증대상으로 하여 가공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제도는 실제 법령에서 시행근거가 없어서 2015년 12월 1일자로 폐지한 제도이다. 이들 3개 국가의 제도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인증제도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제도는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에서 1992년에 제정한 행정규칙(2007년 3월 최종 개정,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률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율 운영 제도이며, 실제 제도 운영은 각 지자체의 농정국이 담당하며, 기준 적합성의 확인에 필요한 검사 또는 검정업무는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배농산물’이란 해당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의 관행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화학비료의 질소성분 사용량을 50% 이하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절감대상 농약(유기농업에서 허용하는 농약 이외의 합성농약)의 사용 횟수가 50% 이하가 되게 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절감대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인 경우에도 ‘특별재배농산물’로 일괄하여 표시하여야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로 강조표시(예; 절감대상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무농약 농산물’ 처럼 ‘무농약’이나 ‘무 화학비료’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에는 일체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감 농약’ 또는 ‘감 화학비료’의 표시도 감소시킨 비교기준이나 그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제도에서 적용되는 절감대상 화학적 합성농약의 구분기준은 그림 2.2와 같고,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 대상은 표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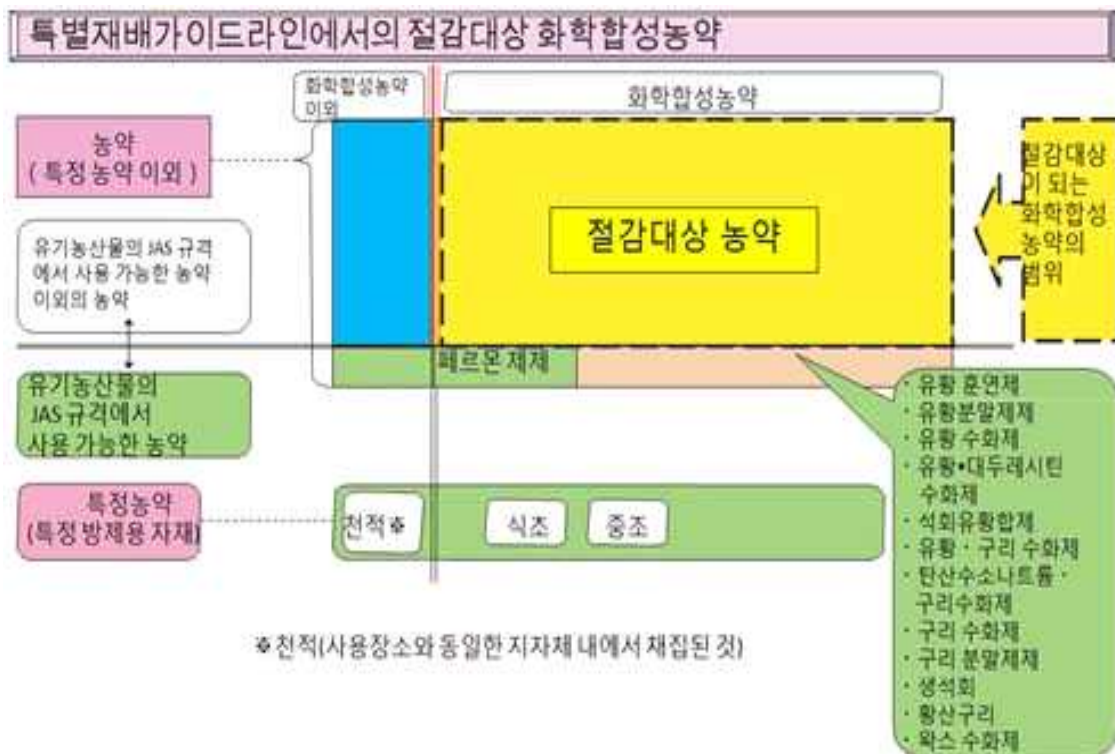


그림 2.2 특별재배농산물에서 절감대상 농약의 구분 기준

표 2.4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가 가능한 대상

		절감 대상 농약		
		불사용	50% 이하 절감	관행수준
화학비료 (질소성분)	불사용	특별재배농산물		적용범위 외
	50% 이하 절감			
	관행 수준	적용범위 외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서 가공식품은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공하지 않은 채소류와 과일류, 건조 처리한 곡류, 두류 그리고 차 등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농업활동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소시켜 농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농산물 생산으로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도모하면서 농업과 소비자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공유를 통한 소비확대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은 [부록 1]과 같다.

#### 나. 중국의 무공해식품 및 녹색식품 인증제도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는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제도 운영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무공해식품과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의 3단계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무농약과 유기 이외에 2015년 이후에 폐지된 저농약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친환경농어업 또는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은 무공해농산품과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에 대한 개별 행정법규를 정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식품과 개념이 유사한 농식품을 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2.5 참조). 다만, 이들 3가지 구분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두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농식품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에서의 유기 농식품은 유기 농식품과 전환기 농식품으로 구분되며, 유기식품이란 생산·가공·판매과정이 국가표준(GB/T9630-2005)에 적합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먹거나 소비할 수 있는 생산품을 의미한다. 유기 전환기 농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식품과 동일한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유기 농식품 인증을 획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농약농산물 개념과 유사한 녹색식품은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으로 구분된다. AA급 녹색식품이란 생산 지역의 환경이 산지 환경 표준(NY/T391)에 적합하고,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합성 비료, 농약, 동물 약품, 사료첨가

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부합해야하며 전문 인증기관(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 등)의 인증을 거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생산품으로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A급 녹색식품은 생산지역의 환경이 AA급 녹색식품과 동일한 산지 환경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 준칙과 생산 활동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화학 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농식품이다. 또한, 생산품의 품질은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에 적합하면서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식품이다. A급 녹색식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 이후에 폐지된 저농약 농수산물과 유사하다.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은 환경평가, 생산과정, 생산품의 범주별로 평가요소가 다르다. 환경평가에 있어서는 AA급 녹색식품은 단일 지수법으로 평가하고 각 평가항목의 수치가 관련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A급 녹색식품은 종합 지수법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항목 환경검사의 종합 오염지수가 1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생산과정에서는 AA급 녹색식품의 경우, 화학합성 비료, 농약 및 식품첨가제의 사용이 금지되어있지만 A급 녹색식품은 제한된 종류의 화학합성물질을 제한된 양, 제한된 기간, 제한된 방법으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AA급 녹색식품의 최종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각종 화학적 합성농약과 식품첨가물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하지만, A급 녹색식품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화학 합성물질의 잔류량이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1/2 이하까지 검출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의 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무공해농산물이란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의 품질이 무공해농산물관리법에 따른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하여 무공해농산품 인증표지의 사용을 허가 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을 의미한다. 무공해농산물은 생산지의 환경과 생산과정, 최종 제품에 대한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합성농약, 비료, 동물약품, 첨가물 등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한다.

이들 3가지 유형별 인증로고는 그림 2.3과 같으며,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 구성 개념도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 중국의 친환경/유기 인증로고(왼쪽부터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무공해농산품,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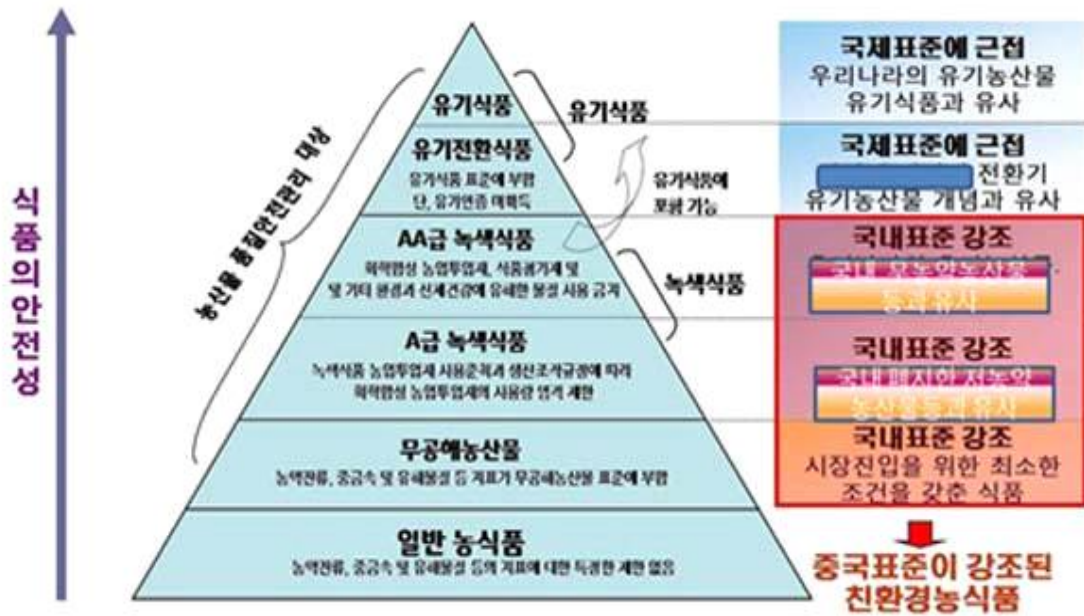


그림 2.4.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 구성 개념도

표 2.5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관련 법령 체계표

구분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총괄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 - 2002.4.29. 공포·시행	녹색식품 표시 관리방법 - 1993.1.11. 공포·시행	유기생산품인증관리방법 - 2004.11.5. 공포 - 2005.4.1. 시행
주요표준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절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 및 생산품인증 일체화 업무 공정규범 -무공해농산물 표시 관리방법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시한 규정 -무공해농산물 전문 검사기관 관리방법	-	유기 생산품 인증 실시 규칙 - 2005.6.1. 공포·시행

### 다. 미국 Never Ever(NE) 3 인증제도

Never ever 3 인증제도는 미국농업부 농산물 마케팅청(AMS)에서 진행하는 Process Verified Program의 NE3 Marketing Program으로써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NE3 인증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식육, 가금육, 계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검증 서비스로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성장촉진제 같은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축사육의 전 기간 동안 동물성 부산물 사료를 급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미리 밝힌 바와 같이 식육, 가금육, 계란과 같은 1차 생산 축산물에만 적용하며, 가공식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NE3 인증을 위해서는 사료첨가제로서 비타민, 소금을 포함한 광물질만이 허용되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인 경우에는 “Product of the USA” 라는 추가적인 인증을 해 주면서 운영되어 왔지만, 제도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1월 13일 USDA 고시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미국 NE3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은 표 2.6과 같고, 그 인증로고는 그림 2.5와 같다.

표 2.6 미국 프로세스 검증 프로그램의 NE3 인증요구사항

USDA 프로세스 검증 프로그램 Never Ever 3		
1-무 항생제	2-무 성장촉진제	3-무 동물 부산물(사료)
<p>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까지 사료, 물 또는 주사를 통한 일체의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질 수 없음.</p> <p>여기에는 낮은 농도 (치료효과 이하의 처방)이나 치료를 위한 농도의 설폰아마이드 또는 이온투과체(ionophores)의 처치가 포함된다.</p> <p>그렇지만, 항 콕시듐증 제제로서 기생충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이온투과제는 허용될 수 있다. 이하의 주 1 참조.</p> <p><b>질병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 처치를 하되 인증 프로그램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만 한다.</b></p>	<p>천연호르몬, 합성 호르몬을 포함한 성장호르몬, 발정억제제, 베타작용제(beta agonists) 또는 기타 합성 성장촉진제의 투여는 출생에서부터 도축 시까지 금지된다.</p>	<p>포유동물 및 가금류의 부산물은 사료로 허용되지 않는다.</p> <p>이들 부산물은 가축 폐기물(예; 가금류의 깔짚) 및 9 CFR 301.2에서 정의한 부산물(예; 식육 및 지방을 포함한 도축/수확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산물)을 포함한다.</p> <p>어류 부산물과 비타민 및 영양보충제는 허용할 수 있다. 주 2 및 주 3 참조.</p>
<p>NE3 금지물질의 처치를 받은 모든 가축은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p>		
<p>주 1: 항 콕시듐증 치료제로서 이온투과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기생충 퇴치 및 구제 계획을 제시하여야만 하고, 기생충 감여미를 위해 독시킴증 제제로서 이온투과체의 사용에 관한 특정 FSIS 표시 요구사항에 적합해야만 한다.</p>		
<p>주 2: 어류부산물을 급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문서에서 선언해야만 하고, 농산물마케팅청 웹사이트에 게시해야만 한다.</p>		

주3: 비타민과 소금을 포함한 무기질은 이 프로그램의 사료첨가제로 간주하지 않으며, NE 3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4: 이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을 받은 미국산 가축은 “미국산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림 2.5 미국 농업부의 프로세스 검증 및 NE3 인증제도의 인증 로고

#### 2.4.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친환경농업이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2012년부터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요 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공급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표시 또는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은 소비자의 경우는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추출하였고, 무농약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시중 유통품 조사결과로 파악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체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및 친환경인증기관은 각각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 개발을 하여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하여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최종 회수한 응답자 수는 소비자 201명, 무농약 가공식품 업체 62명, 유기 가공식품 업체 51명, 인증기관 37명이었다.

설문조사서의 문항은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원료 함량(95% 이상과 70~95%)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의 시행 필요성, 친환경 가공식품의 인증기준으로서 무농약 농산물의 최소 원료함량과 요구되는 최소 원료함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친환경 원료의 범위(무농약 단일 또는 유기 허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소비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사항 이외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가격 추가부담 의사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식품의 구분과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에 인증의 기준, 또한 그 범위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농약 가공품에 대한 별도인증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만이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8.9%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응답자별 구성과 개별 구분에 따른 응답자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은 75.7점이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응답자의 소득수준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결과는 표 2.7과 같았다.

표 2.7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201, %)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전체		(201)	0.5	2.5	18.9	49.8	28.4	75.7
성별	남성	(100)	1.0	3.0	14.0	51.0	31.0	77.0
	여성	(101)	0.0	2.0	23.8	48.5	25.7	74.5
연령	20대	(30)	0.0	3.3	26.7	46.7	23.3	72.5
	30대	(46)	0.0	2.2	17.4	58.7	21.7	75.0
	40대	(62)	1.6	4.8	17.7	43.5	32.3	75.0
	50대	(54)	0.0	0.0	18.5	50.0	31.5	78.2
	60대 이상	(9)	0.0	0.0	11.1	55.6	33.3	80.6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원 이상	(27)	3.7	3.7	18.5	44.4	29.6	73.1
	300-499만원 이하	(75)	0.0	1.3	18.7	57.3	22.7	75.3
	500-599만원 이하	(55)	0.0	1.8	23.6	47.3	27.3	75.0
	600-799만원 이하	(22)	0.0	9.1	13.6	40.9	36.4	76.1
	800만원 이상	(22)	0.0	0.0	13.6	45.5	40.9	81.8
가구 구성원 수	1명	(5)	0.0	0.0	40.0	40.0	20.0	70.0
	2명	(24)	0.0	0.0	16.7	58.3	25.0	77.1
	3명	(53)	1.9	7.5	20.8	54.7	15.1	68.4
	4명	(95)	0.0	1.1	20.0	45.3	33.7	77.9
	5명 이상	(24)	0.0	0.0	8.3	50.0	41.7	83.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인증제도의 운영방식(국가인증제도, 민간인증제도 또는 이들의 병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6.7%가 국가 인증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고, 민간 인증제도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6.4%로 가장 낮았으며 35.9%의 응답자는 두 가지 제도를 절충한 형태(인증제도 등록제)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대별로 국가 인증제도의 선호도는 20대(56.7%) 또는 30대(65.2%)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44.4%)를 나타내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주도의 인증제

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증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는 표 2.8과 같았다.

표 2.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운영방식 선호도 조사결과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 도	국가인증제 와 민간인증제 를 병행	민간인증제 도	기타	
<b>전 체</b>	<b>(201)</b>	<b>56.7</b>	<b>25.9</b>	<b>16.4</b>	<b>1.0</b>	
성별	남성	(100)	62.0	22.0	16.0	0.0
	여성	(101)	51.5	29.7	16.8	2.0
연령	20대	(30)	56.7	13.3	26.7	3.3
	30대	(46)	65.2	23.9	10.9	0.0
	40대	(62)	51.6	25.8	22.6	0.0
	50대	(54)	57.4	33.3	7.4	1.9
	60대 이상	(9)	44.4	33.3	22.2	0.0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원 이상	(27)	63.0	22.2	14.8	0.0
	300-499만원 이하	(75)	57.3	30.7	10.7	1.3
	500-599만원 이하	(55)	60.0	18.2	21.8	0.0
	600-799만원 이하	(22)	54.5	27.3	18.2	0.0
	800만원 이상	(22)	40.9	31.8	22.7	4.5
가족 구성원 수	1명	(5)	40.0	40.0	20.0	0.0
	2명	(24)	45.8	29.2	25.0	0.0
	3명	(53)	66.0	20.8	13.2	0.0
	4명	(95)	57.9	25.3	15.8	1.1
	5명 이상	(24)	45.8	33.3	16.7	4.2

한편,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사용가능한 원료와 그 최소 함량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만으로 95%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55.7%로 가장 높았지만, 무농약농산물등과 유기 원료를 모두 사용하여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도 43.8%로 나타나서 이들 두 결과간의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무농약 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인증기준의 설정대상(원료의 친환경적 순수성 유지, 제조가공 공정의 친환경성 유지 및 보관·운송·유통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인증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고,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 공정까지만 친환경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인증기준만 설정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45.8%로 나타나서 두 응답간의 차이는 5.9%에 불과하여서 이들 두 가지 답변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허용 가능한 원료의 범위와 최소 함량 및 인증기준 설정범위에 대한 세부 조사결과는 각각 표 2.9 및 표 2.10과 같다.

표 2.9 무농약 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 허용범위 및 최소 함량 기준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무농약 원료의 95% 이상 사용 시 인증	유기농 원료와 무농약 원료 혼합 95% 이상 사용 시 인증	기타
전 체		(201)	55.7	43.8	0.5
성별	남성	(100)	57.0	43.0	0.0
	여성	(101)	54.5	44.6	1.0
연령	20대	(30)	73.3	26.7	0.0
	30대	(46)	60.9	39.1	0.0
	40대	(62)	45.2	54.8	0.0
	50대	(54)	57.4	40.7	1.9
	60대 이상	(9)	33.3	66.7	0.0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59.3	40.7	0.0
	300-499만 원 이하	(75)	56.0	42.7	1.3
	500-599만 원 이하	(55)	50.9	49.1	0.0
	600-799만 원 이하	(22)	54.5	45.5	0.0
	800만 원 이상	(22)	63.6	36.4	0.0
가족 구성원 수	1명	(5)	60.0	40.0	0.0
	2명	(24)	41.7	58.3	0.0
	3명	(53)	58.5	41.5	0.0
	4명	(95)	55.8	43.2	1.1
	5명 이상	(24)	62.5	37.5	0.0

표 2.1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원료	원료+가공공정 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 의 친환경
전 체		(201)	2.5	45.8	51.7
성별	남성	(100)	1.0	39.0	60.0
	여성	(101)	4.0	52.5	43.6
연령	20대	(30)	3.3	60.0	36.7
	30대	(46)	2.2	32.6	65.2
	40대	(62)	1.6	53.2	45.2
	50대	(54)	1.9	40.7	57.4
	60대 이상	(9)	11.1	44.4	44.4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0.0	37.0	63.0
	300-499만 원 이하	(75)	4.0	46.7	49.3
	500-599만 원 이하	(55)	1.8	54.5	43.6
	600-799만 원 이하	(22)	0.0	59.1	40.9
	800만 원 이상	(22)	4.5	18.2	77.3
가족 구성원 수	1명	(5)	0.0	0.0	100.0
	2명	(24)	0.0	37.5	62.5
	3명	(53)	3.8	41.5	54.7
	4명	(95)	3.2	53.7	43.2
	5명 이상	(24)	0.0	41.7	58.3

또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및 유기원료의 함량에 대하여 인증에 필요한 최소 함량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95%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1.2%이었고, 70~95%와 95% 이상의 두 가지로 차등화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36.3%로 나타탄서 유기 가공식품 인증기준과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표 2.11 참조)되었다.

표 2.11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최소 원료함량기준에 따른 차등제도 선호도 조사결과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95% 이상 친환경원료 사용 인증기준	70~95% 친환경원료 사용 인증기준을 추가한 2 가지 수준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 인증기준을 추가한 3가지 수준
전 체		(201)	51.2	36.3	12.4
성별	남성	(100)	55.0	36.0	9.0
	여성	(101)	47.5	36.6	15.8
연령	20대	(30)	50.0	40.0	10.0
	30대	(46)	63.0	26.1	10.9
	40대	(62)	41.9	45.2	12.9
	50대	(54)	55.6	31.5	13.0
	60대 이상	(9)	33.3	44.4	22.2
가정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77.8	14.8	7.4
	300-499만 원 이하	(75)	53.3	38.7	8.0
	500-599만 원 이하	(55)	43.6	40.0	16.4
	600-799만 원 이하	(22)	31.8	59.1	9.1
	800만 원 이상	(22)	50.0	22.7	27.3
가족 수	1명	(5)	60.0	40.0	0.0
	2명	(24)	62.5	25.0	12.5
	3명	(53)	50.9	37.7	11.3
	4명	(95)	51.6	34.7	13.7
	5명 이상	(24)	37.5	50.0	12.5

아울러, 차등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로고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제한적 무농약 농산물등 가공식품 표시’ 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농약 농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원료의 최소 함량기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9.2%는 최소한 80% 이상이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13.9% 이상의 응답자는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차등 인증제도를 실시하거나 제한적인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무농약농산물등 이외의 원료는 4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결과의 세부 내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또는 제한적표시 허용에 필요한 무농약 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원료 함량 최소 요구수준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평균
전 체		(201)	6.5	6.0	4.5	13.9	69.2	77.0
성별	남성	(100)	6.0	5.0	1.0	12.0	76.0	80.7
	여성	(101)	6.9	6.9	7.9	15.8	62.4	73.3
연령	20대	(30)	0.0	3.3	6.7	26.7	63.3	81.5
	30대	(46)	8.7	10.9	4.3	8.7	67.4	72.8
	40대	(62)	11.3	6.5	4.8	14.5	62.9	73.1
	50대	(54)	3.7	3.7	3.7	11.1	77.8	81.2
	60대 이상	(9)	0.0	0.0	0.0	11.1	88.9	84.7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11.1	7.4	3.7	3.7	74.1	76.5
	300-499만 원 이하	(75)	4.0	4.0	2.7	17.3	72.0	80.9
	500-599만 원 이하	(55)	7.3	7.3	9.1	14.5	61.8	73.1
	600-799만 원 이하	(22)	4.5	0.0	4.5	22.7	68.2	77.7
	800만 원 이상	(22)	9.1	13.6	0.0	4.5	72.7	73.5
가족 구성원 수	1명	(5)	0.0	20.0	20.0	0.0	60.0	69.2
	2명	(24)	0.0	0.0	4.2	12.5	83.3	86.5
	3명	(53)	7.5	3.8	3.8	11.3	73.6	78.1
	4명	(95)	4.2	8.4	5.3	15.8	66.3	76.5
	5명 이상	(24)	20.8	4.2	0.0	16.7	58.3	68.8

한편,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 인증제품 대비 5%까지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는 대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까지 추가 지불 하겠다는 응답자가 36.3%이어서 소비자는 5~10%까지는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는 추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다. 세부 조사결과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품 구입 시 가격 추가 지불의사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전 체		(201)	8.5	41.3	36.3	9.0	5.0
성별	남성	(100)	10.0	38.0	38.0	8.0	6.0
	여성	(101)	6.9	44.6	34.7	9.9	4.0
연령	20대	(30)	3.3	43.3	30.0	10.0	13.3
	30대	(46)	13.0	32.6	47.8	2.2	4.3
	40대	(62)	8.1	41.9	32.3	11.3	6.5
	50대	(54)	5.6	44.4	38.9	11.1	0.0
	60대 이상	(9)	22.2	55.6	11.1	11.1	0.0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11.1	51.9	29.6	3.7	3.7
	300-499만 원 이하	(75)	13.3	37.3	37.3	9.3	2.7
	500-599만 원 이하	(55)	1.8	47.3	32.7	12.7	5.5
	600-799만 원 이하	(22)	4.5	45.5	36.4	4.5	9.1
	800만 원 이상	(22)	9.1	22.7	50.0	9.1	9.1
가족 구성원 수	1명	(5)	0.0	80.0	20.0	0.0	0.0
	2명	(24)	20.8	33.3	33.3	4.2	8.3
	3명	(53)	9.4	47.2	35.8	0.0	7.5
	4명	(95)	6.3	37.9	37.9	14.7	3.2
	5명 이상	(24)	4.2	41.7	37.5	12.5	4.2

이와 함께 인증기준의 설정범위(원료와 가공과정 기준만 적용 또는 여기에 포장 및 유통과정 기준 추가)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는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 인증기준의 설정범위에 따른 가격상승을 소비자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격 추가지불의사 설문조사에서는 원료와 가공공정에 대한 인증기준만 설정하는 경우에 응답자의 30.8%는 5% 추가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44.8%는 10%까지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하여서 기본적인 인증제품에 대한 가격 추가 지불 의사와 유사한 결과(75.6%가 5 ~ 10% 범위에서 추가 지불 가능)를 나타내었고, 유통과정까지 추가한 인증기준을 적용한 인증제품에 대한 응답자의 인증제품 추가 가격 지불 의사 조사결과는 5%까지 추가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7.4%로 17.4%포인트 감소한 반면, 10%까지 추가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3%로 8% 포인트 증가하였고, 15%까지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4% 포인트 증가한 15.4%로 나타나서, 인증관리 비용의 증가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지만, 역시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 상승 수준은 5 ~10% 수준이 가장 높은(70.7%)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에 대한 조사결과의 요약표는 표 2.14 및 표 2.15와 같았다.

표 2.14 원료 및 가공공정의 친환경 인증기준을 적용한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가격 지불 의사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전 체		(201)	6.5	30.8	44.8	10.9	7.0
성별	남성	(100)	7.0	27.0	46.0	11.0	9.0
	여성	(101)	5.9	34.7	43.6	10.9	5.0
연령	20대	(30)	3.3	23.3	50.0	13.3	10.0
	30대	(46)	10.9	28.3	47.8	4.3	8.7
	40대	(62)	3.2	25.8	46.8	14.5	9.7
	50대	(54)	5.6	42.6	38.9	11.1	1.9
	60대 이상	(9)	22.2	33.3	33.3	11.1	0.0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11.1	44.4	33.3	3.7	7.4
	300-499만 원 이하	(75)	6.7	30.7	44.0	13.3	5.3
	500-599만 원 이하	(55)	1.8	30.9	49.1	10.9	7.3
	600-799만 원 이하	(22)	4.5	31.8	50.0	9.1	4.5
	800만 원 이상	(22)	13.6	13.6	45.5	13.6	13.6
가족 구성원 수	1명	(5)	0.0	40.0	40.0	0.0	20.0
	2명	(24)	8.3	41.7	41.7	4.2	4.2
	3명	(53)	9.4	32.1	47.2	0.0	11.3
	4명	(95)	3.2	30.5	44.2	18.9	3.2
	5명 이상	(24)	12.5	16.7	45.8	12.5	12.5



표 2.15 유통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의 인증기준을 적용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구입 시 가격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전 체		(201)	6.5	27.4	43.3	15.4	7.5
성별	남성	(100)	7.0	23.0	43.0	18.0	9.0
	여성	(101)	5.9	31.7	43.6	12.9	5.9
연령	20대	(30)	3.3	20.0	46.7	13.3	16.7
	30대	(46)	8.7	28.3	47.8	10.9	4.3
	40대	(62)	4.8	27.4	38.7	19.4	9.7
	50대	(54)	7.4	29.6	42.6	18.5	1.9
	60대 이상	(9)	11.1	33.3	44.4	0.0	11.1
가구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상	(27)	7.4	40.7	44.4	3.7	3.7
	300-499만 원 이하	(75)	9.3	24.0	44.0	16.0	6.7
	500-599만 원 이하	(55)	1.8	27.3	45.5	18.2	7.3
	600-799만 원 이하	(22)	0.0	36.4	27.3	31.8	4.5
	800만 원 이상	(22)	13.6	13.6	50.0	4.5	18.2
가족 구성원 수	1명	(5)	0.0	20.0	80.0	0.0	0.0
	2명	(24)	8.3	41.7	33.3	12.5	4.2
	3명	(53)	9.4	30.2	47.2	5.7	7.5
	4명	(95)	4.2	23.2	42.1	23.2	7.4
	5명 이상	(24)	8.3	25.0	41.7	12.5	12.5

이와 함께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타 의견으로는 투명한 인증시스템 운영과 철저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원료의 친환경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친환경 농식품 생산자, 가공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아서 인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1차 농축산물 생산자 10개소(가공업 병행) 및 가공식품 생산자/취급자/유통업자 52개소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면담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2.6%, 필요하다는 응답이 29.0%로 전체적으로 5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22.6%이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서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보다는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들 응답자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은 59.7점으로서 소비자 대비 10점 포인트 이상 낮았고, 특히 가공업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이 52.1점으로 1차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보다는 약 10점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의 주된 이유는 신규 인증제도 도입보다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정 원료의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표시만으로도 시장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인증기준에 충족하는 무농약농산물등의 원료를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조사 결과의 세부사항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생산·가공·유통업자 대상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결과

(Base: 전체, N=62, %)

구분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00점 평균
전체		(62)	9.7	16.1	22.6	29.0	22.6	59.7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13.3	20.0	20.0	20.0	26.7	56.7
	취급자	(47)	8.5	14.9	23.4	31.9	21.3	60.6
대분류	1차생산자	(10)	20.0	20.0	10.0	0.0	50.0	6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16.7	16.7	33.3	8.3	25.0	52.1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8.5	14.9	19.1	36.2	21.3	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인증제도 운영방식으로서 국가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 또는 이들의 병용(등록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는 국가인증제도가 4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지만, 민간 인증제도의 선호도는 8.7%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국가인증제도와 민간 인증제도를 혼용하는 등록제에 대한 선호도는 41.3%로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선호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대부분 국가주도로 운영되었다는 측면에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인증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지만,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등록하여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증제도 운영방식 선호도에 대한 생산업체 설문조사결과와 세부사항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선호도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구분		사례 수	국가 인증제도	국가인증제 민간인증제 병행;등록제	민간 인증제도	기타
전체		(46)	45.7	41.3	8.7	4.3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0)	40.0	50.0	0.0	10.0
	취급자	(36)	47.2	38.9	11.1	2.8
대분류	1차생산자	(6)	66.7	33.3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8)	50.0	50.0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6)	41.7	41.7	11.1	5.6

또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인증에 필요한 원료의 허용범위(무농약농산물등 이외에 유기 원료 허용여부)와 친환경 원료 함량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친환경 원료 함량 기준 70 ~ 95% 제품 인증여부), 인증로고의 표시를 허용하게 해야 하는 친환경 원료 함량수준과 실제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설정대상 범위(원료, 가공과정, 보관 및 운송과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이하와 같았다.

먼저,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친환경 원료 함량에 따라 70~95%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1%가 95%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70 ~ 95%의 친환경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에는 응답자의 16.1%만이 찬성하여 인증제도 도입 시에는 95% 이상인 제품만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70 ~ 95%의 친환경 원료함유 인증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응답자 중에서 제조·가공업자가 33.3%로서 1차 생산자의 20%, 취급자 및 유통업자의 11.6%보다는 높았지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원료 함량별 차등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18과 같다.

한편,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 제품 제조·가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허용범위에 유기식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유기식품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이 모두 각각 43.5%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실제 무농약농산물등의 1차 생산자와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기식품을 원료로 사용하게 허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취급·유통업자는 유기식품의 허용에 차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여 입장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무농약농산물의 소비확대 측면을 고려하여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는 유기식품도 원료로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허용가능 원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19와 같았다.

표 2.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62, %)

구 분		사 례 수	친환경원료 95% 이상만 인증	친환경원료 함량 70%~95% 구간 인증 추가(2종)	친환경원료 함량 70%미만까지 추가 인증(3종)
전 체		(62)	71.0	16.1	12.9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53.3	33.3	13.3
	취급자	(47)	76.6	10.6	12.8
대분 류	1차생산자	(10)	80.0	2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58.3	33.3	8.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70.2	12.8	17.0

표 2.19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허용가능한 친환경 원료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구 분		사 례 수	유기농식품 사용을 허용하여 인증	무농약 농산물등으로만 제한하여 인증	기타
전 체		(46)	43.5	43.5	13.0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0)	70.0	30.0	0.0
	취급자	(36)	36.1	47.2	16.7
대분 류	1차생산자	(6)	83.3	16.7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8)	75.0	12.5	12.5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6)	36.1	50.0	13.9

또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설정범위(원료, 원료+가공공정 또는 원료+가공공정+보관·유통)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3가지의 경우에 대해 각각 29%, 35.5% 및 35.5%로 나타나서 최소한 원료 단독만의 인증기준 설정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었고, 가공기준만 추가하자는 의견과 보관 및 유통조건에 대한 기준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의

견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인증기준의 완전성과 소비자 신뢰성을 감안하고, 생산자는 제조·가공단계까지만의 인증기준 설정을 원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었지만, 취급·유통업자는 유통단계까지를 포함시켜 인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원료뿐만 아니라 최종 보관 및 유통단계에 대한 인증기준을 모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증기준 설정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2.20과 같다.

표 2.2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설정범위

(Base: 전체, N=62, %)

구 분		사 례 수	원료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성	원료+가공공정+보관 유통단계경
전 체		(62)	29.0	35.5	35.5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20.0	60.0	20.0
	취급자	(47)	31.9	27.7	40.4
대분 류	1차생산자	(10)	30.0	40.0	3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25.0	50.0	25.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29.8	31.9	38.3

마지막으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서 친환경 원료 함량에 다른 인증로고를 사용하게 하려면 무농약등 농수산물의 함량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7.4%가 최소한 9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1차 생산자와 취급자는 이에 대한 지지율이 90% 이상이었는 데 반하여 실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유는 실제 무농약농산물등으로만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인증로고의 사용 허용에 필요한 무농약농산물등의 최소 함량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2.21과 같다.

기타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인증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확실한 관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무농약/무항생제 원료의 의무 사용비율 설정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의 표시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인증로고의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2.2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최소 함량

(Base: 전체, N=62, %)

구 분		사 례 수	40~70% 미만	70~90% 미만	90~100%	평균
전 체		(62)	17.7	16.1	77.4	88.0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46.7	33.3	46.7	78.0
	취급자	(47)	8.5	10.6	87.2	91.2
대분 류	1차생산자	(10)	10.0	0.0	90.0	90.9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16.7	25.0	66.7	86.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19.1	17.0	76.6	87.5

#### 다.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농약농산물 인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생산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먼저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표 2.22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6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다는 대답이 2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별 답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7.6점으로 파악되었고, 필요 없다는 응답자도 4개소에 달하였다.

표 2.22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37, %)

구 분	사 례 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전 체	(37)	10.8	16.2	8.1	21.6	43.2	67.6

이와 함께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6%가 국가주도의 인증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답하였고, 29.7%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특정 단체가 개발한 인

증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민간 인증제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고, 품목별로 민간 인증제도와 국가 인증제도를 병행하자는 답변이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2개 이었다(표 2.23 참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가주도의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과반수에 미달하였지만,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답한 2개소를 제외하면 과반수 이상이 국가인 증제도로서의 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2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도 (정부 운영)	국내 업종 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민간인증제도)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필요 없음
전 체	(37)	48.6	29.7	16.2	5.4

한편,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서 사용가능한 원료의 허용범 위는 무농약농산물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48.6 %)이 가장 많았지만, 유기 농 축산물 원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45.9%)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표 2.24). 이러한 차이는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자입장에서는 제품의 차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지만, 실제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유기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도 원료의 사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2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 시 인증	필요 없음
전 체	(37)	48.6	45.9	5.4

그리고, 인증제도의 운영에서 친환경(유기 포함) 원재료의 함량에 따라 95% 이상 을 기본 인증으로 하면서 70 ~95%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5.7%가 친환경원료 함량 95% 이상의 가공식품만 인증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답하였고, 18.9%의 응답자는 친 환경원료 함량 70~95%의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여서 유 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증의 대상은 원료 함량 95%이상인 가공식품

만 대상으로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표시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2.25 참조). 또한, 이 경우에 인증로고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친환경원료 함량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소한 친환경원료 함량 95% 이상인 제품에만 인증로고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표 2.26 참조), 이러한 대답은 결국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인증제도 운영이 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5.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필요성**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친환경원료 95% 이상만 인증	친환경원료 70~95% 사용제품도 인증실시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제품 표시기준 추가 설정
전 체	(37)	75.7	18.9	5.4

**표 2.2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 최소 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95%	90%	70%
전 체	(37)	86.5	8.1	5.4

아울러,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에 실제 인증에 필요한 인증기준의 설정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설문에서는 무농약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자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원료 및 제조가공기준에 대해서만 설정하자는 응답자가 전체의 59.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40.5%는 보관 및 유통단계까지 포함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설정범위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27 참조). 그러나 실제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소비자 요구사항을 감안하면 인증기준은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실제 인증제도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비자의 이해가 쉬우면서도 정확한 인증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심사원 양성 등도 병행되어야 하며, 유기가공식품과의 시장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2.27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설정 대상범위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전 체	(37)	59.5	40.5

## 2.5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국내 친환경농산물 및 이들의 가공식품 산업현황 조사결과와 함께 외국의 유사 제도 조사결과와 국내 핵심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요약하면, 사용가능한 원료는 무농약농산물등뿐만 아니라 유기농식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친환경 원료 함량은 95% 이상이어야 하며, 원료함량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보다는 친환경 원료함량 95% 이상인 가공식품으로 제한하여 인증제도를 적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원료 중에서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제도의 운영방식은 국가 주도의 법정 인증제도가 바람직하며 인증기준과 설정범위는 현행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원료에서부터 유통까지를 포괄하여 설정하면서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허용물질목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친환경육성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누락되어 있는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정의와 그 인증제도 및 절차의 설정 및 세부 인증기준과 허용물질 목록 등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들 모두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가. 친환경농어업육성법령 개정(안)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제도운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정의)의 제4호(유기식품)의 정의 다음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무농약식품’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제2호에서 정한 무농약농수산물등과 무농약가공식품(무농약농수산물등이나 제4호에서 정한 유기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법 제34조 내지 제36조를 무농약농수산물등과 그 가공식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준용하는 관련 조항들과 벌칙 등을 포함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

련 조항을 모두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2.28과 같다.

**표 2.28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의2. “무농약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제2호나목에서 정한 무농약농수산물등과 무농약가공식품(무농약농수산물등이나 제4호에서 정한 유기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제2조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을 “무농약식품, 유기식품등”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를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에”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을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으로 한다.</p> <p>제4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p> <p>제5조 중 “유기식품등 또는”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또는”으로 한다.</p> <p>제6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p> <p>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li>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li></ol>
---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기식품등” 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신고하여야” 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 을 “제7항” 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6조제6항”을 각각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만 해당),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식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을 “(무농약식품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을 “무농약식품의 인증대상과 무농약식품의 생산, 제조·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을 “무농약식품을 생산, 제조·가공”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을 “무농약식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각각 “무농약식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식품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식품”으로, “이하 “무농

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를 “이하 “무농약식품표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식품표시”로 하며,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제2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4조제5항”을 각각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이상의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도출하였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 시행에 필요한 인증기준(안)과 제한적 표시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한 기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표 2.29와 같다.

#### 표 2.29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과 본문 후단 중에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어업등’으로 하고, 제2호의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로 하며, 제3호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을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식품등’으로 한다.

제4조제5호에서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을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식품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의 제3호에서 ‘친환경농어업 기술’을 ‘친환경농어업등의 관련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로 하며,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를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자 또는 영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4의 제1호의2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또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은 표 2.30과 같다.

#### 표 2.3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무농약식품”이란 제2호의 “무농약농산물”과 이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4조의 제6호 및 제7호 본문의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을 ‘무농약식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의 인증대상’으로 하고, 제1항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농약가공식품(가목 또는 나목의 농축산물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 인증기준’으로 하고, 제1항의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을 ‘무농약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으로, ‘별표 11’을 ‘별표 11과 별표 11의2’로 각각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 인증의 신청 등’으로 하고, 제1항 단서조항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42조의 본문 단서조항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 인증업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를 ‘무농약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또는 무농약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및 이들을 취급하는자’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의 인증기관 지정’으로 하고, 본문 말단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을 ‘무농약식품의 표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본문 괄호 안의 “무농약농산물등 표시”를 ‘무농약식품등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무농약농산물등표시의’는 ‘무농약식품등표시의’로 하고 그 단서조항의 “유기표시”는 “유기등표시”로, “무농약농산물등표시”는 “무농약식품등표시”로 각각 대정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70조제1항 본문의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72조의 제1호에서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유기식품등 또는 무농약식품’으로 하고, 제2호의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를 ‘친환경농업,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식품등의 분야에서’로 한다.

## 나.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안)

가.항에 따른 법령 개정(안)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실제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안)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무농약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에 대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의 허용물질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허용물질목록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과 동일한 범위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설정하되, 현행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시행규칙 별표 11) 중에서 무농약가공식품의 특성에 맞게 원료의 허용기준이나 기타 용어들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인증기준(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무농약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설정에서 고려한 것은 사용가능한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을 준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안)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안)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에 따른 별표 11의2>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 및 제품의 친환경적 순수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나. 가공원료	1) 무농약가공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식품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 등은 별표 1의 제1.항 다.목 각 호에서 정한 물질이어야 함 2)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식품,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전체 원재료 함량의 5% 이내에서 관행적으로 생산된 식품과 별표 1의 제1.항 다.목 각호의 허용물질을 사용할 수 있음
다. 가공방법	모든 원료와 반제품 및 최종 제품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무농약식품이나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다른 농수산물등 또는 그 가공식품으로부터의 오염이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무농약가공식품이 제조·가공·취급되는 시설이나 설비에서 원료 또는 설비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종 제품에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무농약가공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무농약가공식품의 순수성과 품질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하되, 가급적이면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할 것
사. 무농약 가공식품	사업자가 무농약 가공식품의 원료나 제품을 수송 또는 운반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



심사 사항	구비 요건
의 수송 및 운반	하여야 하며, 수송 또는 운반 과정동안 무농약가공식품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사업자는 별표 4의 제2항에서 정한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할 것

이상에서 도출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산 친환경농산물등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인증대상이 되는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에서 허용할 수 있는 원료를 무농약농산물등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 2.31의 나.항 및 다.항에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문구를 모두 삭제하면 기타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운영방식에서 원재료 함량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의 운영은 소비자를 제외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 및 취급업자와 인증기관 등 모두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감안할 때,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함량이 70~95%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원료 함량에 대한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인증제도의 명칭이 무농약 가공식품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제한적 강조표시를 적용하기 위한 원료는 무농약농산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면서, 유기가공식품의 제한적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 제한적 무농약식품 표시기준(안)을 시행규칙 제45조와 관련하여 별표 7의2로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32와 같다.

**표 2.32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표시의 기준(안)**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 7의2 신설〉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표시의 기준(제45조제3항 관련)
<p>1. 제한적 무농약표시의 일반원칙</p> <p>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p> <p>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가공식품</p> <p>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p> <p>1) 해당 제품에 별표 12에 따른 무농약식품의 표시</p> <p>2)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단독 사용. 다만, 특정 원료가 제한적 무농약표시를 할 수 있는 함량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p>

에는 “무농약 (원료명)과 함량 %” 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 2. 무농약농산물등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 가. 70퍼센트 이상 무농약농산물등인 제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 무농약식품이어야 한다.

2) 무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원료의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무농약 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때에는 이들 2가지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통칭하는 명칭 옆에 해당 원료명을 괄호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 “무농약 쌀 70% 함유 쌀과자” , “무농약 과일(포도 및 사과) 70% 함유 주스” 등)

3)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식품의 총 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등을 사용한 제품

1) 특정 원재료로 무농약농산물등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무농약”이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무농약식품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한적 무농약표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한적 무농약표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식품, 비식용가공품)에 사용된 무농약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등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2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려는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등은 별표 1의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유기가공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에 등재된 것에 한하며, 별표11의2 제4호에서 정한 인증기준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농약가공식품의 인증제품 및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방법을 요약하면 표 2.33과 같다.

표 2.33 국내 무농약가공식품의 무농약 원료 함량별 표시방법

무농약 원료 함량	입의 표시사항						인증기 관명칭 ·로고	의무표시 원재료함 량표시 - (원료목록)
	무농약 100%	무농약 가공 식품	'무농약' 용어 제한적 표시					
			제품 명	주 표시면	보조 표시면	원재료 목록		
100%	○	○	○	○	○	○	○	●
95%이상	×	○	○	○	○	○	○	●
70~95%	×	×	×	△*	○	○	×	●
70%미만	×	×	×	×	×	○	×	●

= 제품명에 해당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함께 표시하면 사용가능

### 라. 기타 검토사항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표시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표시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인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이들의 가공식품으로 하면서, 인증에 필요한 최소 함량기준은 9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원료 제한성은 현재 유통되는 무농약농산물등의 가공식품 중에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증제도 도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와 특히 무농약농산물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증이 가능하여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유기 농수산물과 유기 가공식품까지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다만, 기존의 유기가공식품과의 시장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농약농산물등이나 이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최소 함유량을 일정 수준(50~70%)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나머지 원료를 국내산 관행 농산물이나 국내산 농산물등으로 가공한 가공식품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무농약농산물등의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99호)”에서는 특정 강조표시를 주 표시면에 하는 것은 원료의 함량과 무관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표시(예; ‘무농약 참깨 3% 함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정 성분명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의 함량이 1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농약 원료를 70 ~ 95% 함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유기가공식품과 함께 제품명에 표시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도입은 전체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무농약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서 무농약

농산물등의 판로가 확대됨으로써 친환경 농업인이 수취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면서 국내 친환경 식품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혼란방지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 제2절 식당등 대량소비처 친환경 인증 농식품 사용 인증·표시 제도 도입방안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 및 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친환경관련 표시 또는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의 음식점 및 급식업을 포함한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약 100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프랜차이즈업을 포함한 음식점영업이 80조 원, 급식 시장 규모는 18.9조 원(그림 3.1 참조)으로 각각 추산된다. 한편, 국내의 친환경 외식산업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없지만, 개별 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급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삼척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많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친환경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유치원의 급식시장 규모가 4.5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규모는 될 것이므로 국내 친환경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전체 외식산업시장의 약 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식산업에 대한 친환경 인증 또는 표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의 소비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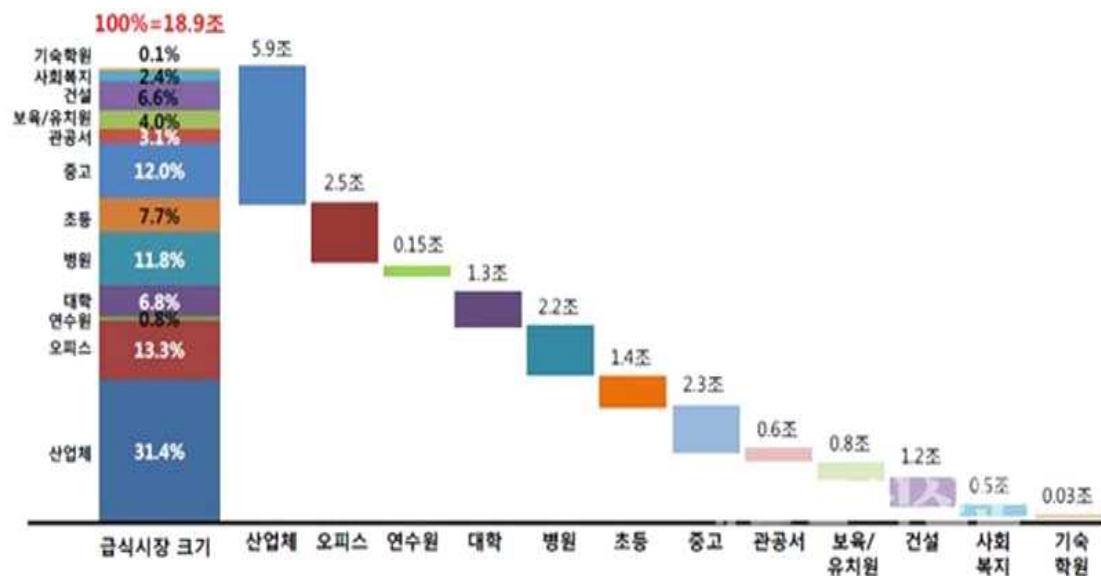


그림 3.1. 2013년 국내 전체 급식시장 규모

실제로 급식산업을 포함한 외식산업의 시장규모는 사회구조와 경제활동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공식품산업의 시장규모를 초과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바, 2012년 이후 위축되고 있는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규모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활로로서 음식점등에 대한 친환경 인증 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및 외국의 친환경 관련 음식점등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 집단 급식업소 및 외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표시제도 또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1. 국내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 운영 현황조사

국내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량소비처를 발굴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도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2007년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운영주체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가 개발되어 민간 주도로 지자체와의 협조 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이 제도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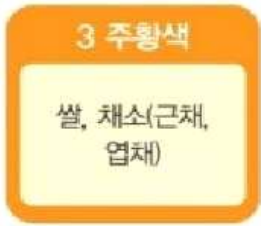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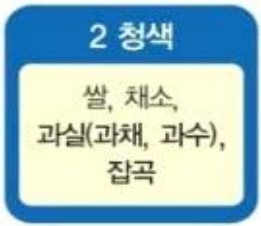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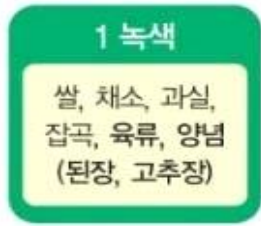
실제 제도운영은 별도로 정한 3가지 등급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에서 우수식당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를 개별 지자체가 모집하여 별도로 구성된 지정심사반이 등급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사업장을 우수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지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지정 유효기간 중에 매년 1~2회의 불시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 가.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 기준 및 등급구분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의 등급구분은 주황색, 청색 및 녹색 표지로 구분하는 3개 등급제로 구분되며, 주황색이 3등급, 청색이 2등급, 녹색이 1등급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등급구분은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서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대상 품목의 수에 따라 구분되며, 공통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점수에서의 합격기준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등급별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한 요구수준은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쌀은 무농약 이상의 인증품을 100%, 채소류는 근채류 및 엽채류의 90% 이상을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청색은 주황색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과실류의 총 사용량 90% 이상, 과수류는 총 사용량의 50% 이상을 각각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한다. 더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실류의 경우에는 수입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잡곡류의 50% 이상을 무농약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의 경우에는 청색의 기준에 덧붙여 육류의 총 사용량 90% 이상을 무항생제 축산물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하고 양념류 역시 90% 이상을 국내산 무농약 이상의 인증 농산

물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양념류에서 국내 인증 농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자연산 원료로써 90%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등급별 의무사용 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등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주황색)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청색)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녹색)
 <p>3 주황색 쌀, 채소(근채, 엽채)</p>	 <p>2 청색 쌀, 채소, 과실(과채, 과수), 잡곡</p>	 <p>1 녹색 쌀, 채소, 과실, 잡곡, 육류, 양념(된장, 고추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은 무농약 이상 쌀을 100%이상 사용할 것</li> <li>○ 채소류(근채, 엽채)는 무농약 이상 농산물을 90%이상 사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우수식당(주황색)의 조건 포함</li> <li>○ 과실류(과채, 과수)는 저농약 이상으로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박, 참외 등의 과채류는 저농약 이상을 90% 이상 사용할 것</li> <li>- 방울토마토, 토마토 등의 과채류는 무농약 이상을 90%이상 사용할 것</li> <li>- 과수류는 전체 사용량의 50%이상을 저농약 이상으로 사용할 것</li> <li>-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제외하고 수입산 과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li> </ul> </li> <li>○ 잡곡류는 저농약 인증을 50%이상으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우수식당(청색)의 조건 포함</li> <li>○ 육류는 Non-GMO 사료로 사육을 기본으로 전체 사용량의 90% 이상을 국내산 무항생제 축산물 및 유기축산물로 사용할 것</li> <li>○ 양념류는 전체사용량의 90%이상을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것을 사용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원료가 없는 경우는 국내산 및 자연산 원료를 90% 이상 사용할 것</li> </ul>

출처: 2014년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신청 안내

이와 함께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적인 세제의 사용, 물리적 방법을 통한 소독, 일회용품을 배제, 화학합성제품 및 화학조미료, 첨가물이 첨가된 양념류를 피하고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 및 대표가 친환경적인 마인드와 인식을 가져야 하는 등의 공통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 3.2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을 위한 공통 평가기준과 배점표

항목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매우미흡
1. 등급별 평가비중 (60점)	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가?	20	16	12	8	4
	채소류 사용기준을 준수하는가?	20	16	12	8	4
	과실류 사용기준을 준수하는가?	5	4	3	2	1
	잡곡류 사용기준을 준수하는가?	5	4	3	2	1
	육류(축산물)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는가?	5	4	3	2	1
	조리시 천연조미료 및 자가제조 조미료를 사용하는가?	5	4	3	2	1
2. 기타 평가비중 (40점)	식당분위기 및 종업원들의 위생은 청결한가?	10	8	6	4	2
	종업원들의 서비스의 정도는 어떠한가?	5	4	3	2	1
	식기 및 조리도구는 친환경소재인가?	5	4	3	2	1
	일회용품의 사용을 근절하고 있는가?	10	8	6	4	2
	실내외에 친환경농업 홍보가 적절한가?	5	4	3	2	1
	종업원과 주인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의지 및 지식이 있는가?	5	4	3	2	1
(가산점) 지역내 소비	지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계약재배 등)하는가?	5	4	3	2	1
<b>총 점</b>						

(출처 : 2014년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 안내)

표 3.2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할 때는 표 3.3과 같은 공통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표 3.3 친환경우수식당 지정을 위한 공통기준

평가지표	세부 평가 고려사항
□친환경 마인드·친환경농업 인식정도	주방의 세제 및 소독의 방법 : 세제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소독은 화학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방법을 취할 것. 일회용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식기는 멜라민 수지 등의 화학적 합성제품의 사용을 피할 것. 화학조미료 및 첨가물이 첨가된 양념류의 사용을 피할 것 (녹색등급에 한함) 대표자와 종사원이 친환경농산물의 개념과 우수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손님에게 설명이 가능할 것. 식당 자체 내 혹은 외부 위탁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실시 여부(친환경산물인증 이해 및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등)



평가지표	세부 평가 고려사항
□ 친환경·유기농업 홍보	고객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자연적으로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홍보물 및 홍보 거치물(판넬, 액자, 거치물) 등을 게시하고 있을 것.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미생물농법 등 친환경농업 소개 등 친환경 채소와 과일 종류를 손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게시 식재료의 구입처 및 산지(생산자)를 표시할 것 지역내(근거리) 친환경농산물 소비 인센티브 부여
□식당 내의 분위기	친환경농산물 이미지와 부합되게 깨끗하고 청결한 식당분위기일 것 식당 내·외부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고 아늑함과 포근함으로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제공
□식당 청결조건	화장실 및 주방의 청결도가 우수하고 종업원 복장 및 위생상태가 양호 할 것. 식당 내·외부가 청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
□식당 이용 고객 수와 만족도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며 단골 고객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것 식당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 직원의 서비스와 메뉴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
□음식의 품질조건	고객 및 선정위원의 음식에 대한 품질 평가가 우수할 것. 음식이 깔끔하고 정갈하여 시각적인 부분도 우수할 것.

그러나, 실제 친환경 우수식당 지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까지 총 41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원료의 국내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가 어려워져 자진반납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2014년까지는 24개 음식점만 운영되고 있었고, 2016년 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개소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정대상 음식점등을 발굴하여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정받은 음식점등에 대해서는 지정현판의 제공 이외에는 추가적인 지원수단이 없고 제도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실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현황은 표 3.3과 같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도의회를 통해 “친환경 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침”이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적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최근의 6개월 간 월 평균 70% 이상의 식재료를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품을 사용하는 것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표지를 부여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친환경음식점 인증제도에서는 쌀·채소 사용 음식점, 쌀·채소 및 축산물 사용 음식점 등으로 친환경 식재

료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시 2014년 기준 24개의 업소만이 인증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2013년 현재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현황

	지역	연도	호(등급)	상 호	주 소	연락처
1	서울	'07	2(녹색)	청미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9	02)2681-0567
2		'08	5(녹색)	에코밥상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94 후빌딩 2층	02)736-9136
3		'09	10(녹색)	문턱없는 밥집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02)324-4190
4		'11	23(청색)	성미산밥상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3-5 이레빌딩 2F	02)336-0317
5		'12	24(녹색)	오가페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85번지	02)737-2813
6	경기	'12	27(녹색)	완이네작은밥상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20	031)955-6162
7	인천	'08	6(녹색)	산들바람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산47-34	032)502-0633
8		'12	26(청색)	연미정 가든	(임시휴업중)	
9	충북	'09	9(녹색)	생명살림 들리	충북 청주시 운천동 1482번지	043)268-3702
10		'09	13(녹색)	산아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949-2번지	043)646-3233
11	전남	'09	14(청색)	육정한정식	전남 목포시 미할로 8	061)243-0012
12	대구	'10	18(녹색)	이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950-3 1층	053)784-5620
13		'10	19(녹색)	충체보리한우식당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2-2	053)657-2002
14	광주	'11	22(청색)	학사농장유기데이	광주광역시 서구 마락동 165-62	062)384-6202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친환경음식점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의 적용대상을 영업신고를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월 평균 70% 이상의 친환경 인증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되, 세부 인증구분은 친환경 쌀·채소 사용 음식점과 친환경 쌀·채소·축산물 사용 음식점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인증 관리는 6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른 평가를 중심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외국의 친환경 또는 유기 관련 음식점등의 인증제도 운영현황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 대한 해외의 인증제도는 EU와 호주, 미주국가 및 남미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인증제도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민간 인증기관들이 자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인증제도로써 개별 음식점을 인증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덴마크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국가 유기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북유럽의 스웨덴에서도 국가 공인 유기 인증제도인 KRAV 인증제도(27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유기식품협회로서 그 회원기관은 농업인과 가공업자, 교역업자 및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및 동물복지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스웨덴의 유기인증제도 운영 대표기관임)에 따라 유기 레스토랑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가. 스웨덴 KRAV의 음식점등 인증제도

스웨덴의 유기인증제도 운영 주체인 KRAV는 그 인증표준에서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한 표준을 KRAV-Standard 내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표준의 목표는 KRAV 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이 KRAV 마크를 부착한 식품을 보다 많이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초기에 전체 식재료 중에서 낮은 비율의 유기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단계별로 유기인증 식재료의 사용비율을 증대시키려는 사업자의 요구에 맞게 인증기준을 등급 화하여 정하고 있다. 등급 구분기준은 해당 음식점등에서 조달하는 식재료의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인증 받은 식품의 비율로 결정하며, KRAV 이외의 EU 인증을 받은 식재료도 유기 식재료로 인정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인증 수준인 레벨 1은 최소한 25% 이상(제한적으로 15% 이상도 가능)의 유기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레벨 2는 50% 이상, 마지막 단계인 레벨 3은 최소한 90% 이상의 인증 식재료를 각각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이 KRAV 인증제도 및 유기적인 생산방법을 숙지하여야만 하고, 해당 음식점등이 인증 받은 레벨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만 한다. 또한, 매일 제공되는 메뉴에 당일 식재료 중에서 KRAV 인증을 받은 식재료가 무엇인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음식점 밖으로 배달되는 케이터링 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KRAV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메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음식점등에 대한 KRAV 표준의 적용 대상은 모든 형태의 급식업소, 음식점 및 배달음식업이나 배달용 반조리 가정식(HMR)이 해당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 인증을 받으려는 음식점등은 유기 식재료의 조달 및 사용 이외에도 친환경 세계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 등과 같은 전반적인 친환경 활동도 추구하여야만 한다.

음식점등에서 KRAV 인증을 받을 때의 인증 범위는 해당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만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부만을 적용할 때는 회계 관리에서 해당 식재료와 음식 등의 구분관리가 가능하여야만 하고, 심지어는 시간대별(예; 아침 메뉴) 또는 영업 형태(예; ‘바’에서 음식제공 부문에 국한)별로 제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증 받은 부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만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영업과 같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시설 단위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음료 또는 커피와 같은 단순 품목의 자체 공급활동은 조리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KRAV 인증을 받으려는 음식점등에서는 세계야생동물보호협회(World Wildlife Fund)의 수산식품 가이드에서 정한 어획금지 어종과 GMO를 함유하는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만 하고, 동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가능한 식재료는 표 3.4와 같다.

**표 3.4 음식점등의 KEAV 인증을 위해 허용되는 식재료**

인증 구분	허용하는 식재료
KRAV 인증	모든 인증을 받은 식품
EU 유기인증	식물성 제품 허용가능
MSC* 인증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KRAV표준의 부록 2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만 사용한 제품

\* Marine Stewardship Council(지속가능한 수산식품 대상 인증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음식점등의 사업자는 최초 인증심사를 신청할 때 표 3.5의 구분에 따라 본인이 허용되는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인증구분의 레벨을 인증기관에게 제시하고 그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표 3.5 음식점등의 KRAV인증 수준별 최소 허용식재료 조달비율(금액 기준)**

인증 수준	허용하는 식재료의 최소 조달비율
LEVEL 1	허용하는 식재료 조달비용이 식재료 총 조달금액의 25% 이상*
LEVEL 2	허용하는 식재료 조달비용이 식재료 총 조달금액의 50% 이상
LEVEL 3	허용하는 식재료 조달비용이 식재료 총 조달금액의 90% 이상

\*제한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15%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도 있음.

음식점등에 대한 KRAV 인증은 스웨덴 내에서 특히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집단급식소가 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0개 이상의 업소가 인증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KRAV 인증로고는 그림 3.1과 같으며, 음식점등의 등급별 인증로고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KRAV 공식 인증로고(메뉴의 식재료별 인증표시에 사용)







그림 3.2 음식점등의 등급별 KRAV 인증로고

#### 나. 덴마크의 유기 음식점등 인증제도

덴마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차원에서 유기농 음식점등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2009년도에 현재의 환경식품부(당시에는 농수산식품부)가 개발한 인증제도로서 덴마크의 공식 유기인증제도인 “Ø 인증제도”의 자매 제도(Cuisine Ø)로서 개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대형 급식업소와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도이다. 유기농 식재료의 조달비율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Organic Cuisin Label”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당시 농업수산식품부, 현 환경식품부가 대규모 급식업소를 중심으로 유기 생산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주방, 레스토랑, 카페, 병원, 학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인증로고는 금, 은, 동의 3가지로 구분되며 유기 식재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덴마크 수의식품검사청은 특히 공공기관의 급식소에서 유기 생산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민간 급식업소와 일반 음식점에서도 크게 선호되고 있다. 2015년 4월까지 이미 1,000개 이상의 음식점등이 인증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유아원과 학교 및 병원과 같은 공공급식소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음식점등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유기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대형 급식업소 등에서 보다 많은 유기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형 급식업소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유기 식재료의 비율에 따라서 30~ 60%, 60~90% 및 90~100%의 인증로고(동색, 은색, 금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받아서 표 3.6과 같은 인증로고의 하나를 표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식재료의 사용비율에서 계산되는 유기식재료는 덴마크 유기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Ø 인증)을 받은 식재료 이어야 하지만, EU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동등한 유기 식재료로 인정을 한다.

표 3.6 덴마크 유기음식점등 인증로고(Organic Cuisson Label)와 일반 유기 인증로고

유기식재료 사용비율	30~60 %	60 ~ 90 %	90 ~ 100 %	<덴마크 유기로고>
인증로고	 30-60% økologi	 60-90% økologi	 90-100% økologi	 Stats-kontrolleret økologisk

2016년 현재 90~100%의 유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248개이고, 3가지 등급에 따른 전체 인증업체는 1,900개 이상으로 유기농 음식점등 인증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덴마크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라는 개념의 공공 식품관리 시스템이 정립되어 왔고, 이는 유기식품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덴마크 국민의 84% 이상이 국가 유기로고를 잘 인지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제도 확산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덴마크의 유기식품 인증로고인 Ø-logo는 1990년에 세계 최초로 덴마크 유기규정 및 EU 유기규정에 준거하여 정부 인증로고로 도입되었고, 전체 인증제도의 운영을 덴마크 정부(덴마크 수의식품청)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공공기관의 급식소에서 조리되는 식품의 식재료 대부분을 유기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병원, 학교, 유치원 및 요양원과 같은 덴마크 공공기관에서는 매일 약 500,000식의 음식이 조리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기 식재료의 사용 확대는 2020년까지 유기 농지를 배증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의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의 일부 대기업들도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유기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유기 음식점등의 인증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의 음식점 조리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2004년부터 “New Nordic Cuisine” 운동을 통해 북유럽 국가(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전통 및 퓨전 음식에서 지역 생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반영되는 기본 개념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지역 먹거리와 천연 및 제철 먹거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운동이다. 이는 직접적인 유기 식재료의 사용보다는 지역생산 농산물과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식품과 새로운 식품 모두의 식재료로 적극 사용하자는 운동으로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所)” 운동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로컬푸드 운동’ 과 유사한 제도이다.

#### 다.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의 친환경 음식점등 인증제도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는 덴마크 이외에는 없으므로, 친환경 음식점등의 해외 인증제도 사례 중에서 민간 인증제도의 대표 주자로서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운영하는 “생명을 위한 식품(Food for Life) 급식 인증제도” 와 탄소 신탁 표준(Carbon Trust Standard)을 따르는 “지속가능한 급식업 표준(Sustainable Catering Standard)” 을 조사하였고, 이 중에서 특히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에 직접 관련되는 “Food for Life” 인증제도를 국내 인증제도 도입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식재료의 대량 소비처인 학교, 병원 등과 일반 집단급식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인증은 일반 음식점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영국 토양협회가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 역시 덴마크의 국가 인증제도나 스웨덴의 KRAV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동장, 은장, 금장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토양협회의 지속가능한 급식업 표준에 따른 인증제도는 신뢰성 있는 신선한 식재료의 사용을 보증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공중보건 규정에 적합하면서 국가 식품 및 영양가이드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윤리 경영의 원칙에 따른 식재료 구매활동과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 사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토양협회는 별도의 “Food for Life 표준위원회” 를 설치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부여하는 인증로고의 등급별 로고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영국 토양협회의 “Food for Life” 급식업 인증로고

이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의 제공을 위해 토양과 식물 및 동물의 건강보호를 추구하면서 지역에서 제공되는 제철 식재료의 사용을 강조하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재료의 사용과 함께 신선한 조리식품의 제공을 추구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장마크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표 3.7과 같은 12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3.7 동장(Bronze Mark)의 “Food for Life” 인증기준의 기본 요구사항

구 분	요 구 사 항
1.0	급식업체는 식품 및 영양에 관한 국가 표준 또는 지침에 대한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1.1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전체 메뉴 중에서 최소한 75% 이상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장 또는 지역 거점 주방에서 바로 조리할 것
1.2	모든 식육은 영국의 동물복지표준을 충족하는 농장으로부터 얻어져야 함
1.3	해양보존협회(Marine Conservation Society ; MCS)의 ‘어획금지 어종’ 목록에 등재된 어류를 제공하지 말 것
1.4	계란은 방사 사육된 닭에서 얻어진 것일 것(2015.1.31. 신설)
1.5	바람직하지 못한 첨가물이나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말 것
1.6	유전자변형 성분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1.7	음용수는 무료로 충분히 제공할 것
1.8	메뉴는 계절 및 제철 생산물을 위주로 구성할 것
1.9	식품의 조달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1.10	모든 식이 및 식문화 요구사항에 맞는 메뉴를 제공할 것
1.11	모든 납품업자가 해당하는 식품안전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증할 것
1.12	급식 종사자는 신선식품의 조리과 본 인증마크에 대해 기술훈련을 제공 받을 것



특히, 제철 식재료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여 해당 주방이나 지역 거점 주방에서 바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의 거점 주방은 해당 급식소와의 거리가 20마일 이내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바로 조리된 음식의 경우에도 냉동하여 배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즉석 조리식품의 개념에서는 파스타를 제공할 때 가해지는 소스를 자체 조리하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스타 면을 해당 주방에서 조리한 경우에도 즉석에서 조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표 3.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해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은 금지되며, 식이 및 식문화 요구사항은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용 음식, 종교식품(예; 할랄, 코셔) 등의 제공을 말한다. 한다. 또한, 식품안전 표준은 해당 공 급자에게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등을 말한다.

**표 3.8 “Food for Life” 급식 인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등**

유 형	식품첨가물 등의 명칭
착색료	E102 tartrazine E104 quinoline yellow E107 yellow 2G E110 sunset yellow E120 cochineal, carminic acid, carmines E122 carmoisine E123 amaranth E124 ponceau 4R E129 allura red E131 patent blue V E132 indigo carmine E133 brilliant blue FCF E151 black PN
향료	E621 L-글루타민산나트륨 E635 5'-시티딜산나트륨
감미료	E950 아세설팜 K E951 아스파탐 E954 소듐 사카린
보존료	소듐벤조에이트
트랜스지방	특히 경화지방

한편, 금장 및 은장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면 동장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품, 고객이 보다 쉽게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생산자를 우대하는 3가지 부문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 획득한 점수가 150점 이상이면 은장, 300점 이상이면 금장을 부여한다. 3가지 부문별 세부 평가사항은 표 3.9와 같다.

표 3.9 “Life for Food” 금장 및 은장 인증을 위한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사항

평가분야	세부 평가사항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 인 식품조달	유기농, 방목사육, 공정무역, LEAF 인증, 해양관리협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 MSC) 인증 어류 및 해양보존협회(MCS)에서 허용하는 ‘식용 어류’ 를 조달하면 가점을 부여함 은장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메뉴의 식재료 중에서 최소한 5%는 유기 식재료이어야 함 금장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메뉴의 식재료 중에서 최소한 15%는 유기 식재료이고, 식육 및 가금육의 5% 이상이 방목된 것이어야 함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고 고객이 건강하게 함	고객이 보다 편안하고 쉽게 건강한 식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점을 받는다. 이는 공중보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련의 부가적인 조치를 취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다.
지역 생산자 우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에 대한 구매 금액이 영국의 평균 구매금액 이상으로 지출하는 총 금액에 대해 1페니당 1점의 점수를 부여받는다. 이 인증을 받은 메뉴에 대한 조사결과는 £1 소비될 때마다 £3 이상의 사회적 투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실증되었고, 이는 주로 지역 식품생산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고용증대의 형태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식료품 조달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의 평가항목별 결과에 따라 은장 인증을 받으려면 공통기준(동장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각각의 배점 기준별 최소 배점 이상을 획득하여 총점이 15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금장 인증을 받으려면 은장과 같은 방법으로 세부 배점기준별로 최소 배점을 충족하면서 총점 3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은장 및 금장의 평가사항별 배점기준과 최소 획득 의무점수는 표3.10과 같다.

표 3.10 “Food for Life” 은장 및 금장 인증을 위한 배점 기준표와 최소 요구점수

은장 인증에 필요한 배점기준과 최소 획득 요구점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최소요구점수
동장 인증기준의 전체 요구사항(13개 항목)	적합
전체 식재료 조달비용 중 유기식재료 조달비용 최소한 5% 이상(필수)	25점

윤리적 및 환경 친화적 식재료(유기, 방목사육, MSC, MCS의 '식용 가능 러류', Fewwdom Food, 공정무역 또는 LEAF 등의 인증품) 조달	15점
건강식을 용이하게 해주는 단계별 조치 실시	20점
이상 3개 배점기준별 추가 가산점	90점
<b>총점</b>	<b>150점 이상</b>
<b>금장 인증에 필요한 배점기준과 최소 획득 요구점수</b>	
<b>평가항목별 배점 기준</b>	<b>최소요구점수</b>
동장 인증기준의 전체 요구사항(13개 항목)	적합
전체 식재료 조달비용 중 축산물 식재료 1가지를 포함한 유기식재료 조달비용 최소한 15% 이상(필수)	75점
전체 식재료 조달비용 중 방목 돼지고기 및 가금육 조달비용 최소한 5% 이상(필수)	20점
<b>금장 인증에 필요한 배점기준과 최소 획득 요구점수</b>	
<b>평가항목별 배점 기준</b>	<b>최소요구점수</b>
윤리적 및 환경 친화적 식재료(유기, 방목사육, MSC, MCS의 '식용 가능 러류', Fewwdom Food, 공정무역 또는 LEAF 등의 인증품) 조달	25점
건강식을 용이하게 해주는 단계별 조치 실시	50점
이상 3개 배점기준별 추가 가산점	150점
<b>총점</b>	<b>300점 이상</b>

이 중에서 식재료 조달비용은 인증 신청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메뉴를 변환하는 주기(분기 또는 연도별 등)를 설정하여 인증기관에 제시하면 그를 확인하여 신청한 기간별 식재료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배점기준별 가산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식재료 조달의 가점 기준

- 유기 식재료 조달비용이 전체 조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당 5점(다만, 은장은 유기 식재료 5% 이상, 금장은 1가지 이상의 축산물을 포함한 유기식재료 조달비용 15% 이상은 의무사항임)
- 방목 사육된 식육의 조달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당 4점(금장인 경우에는 최소한 5% 이상이 의무사항이며, 계란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됨)
- MSC(해양관리위원회) 인증품/해양보존협회의 '식용가능 어류'에 대한 지출비용 1%당 4점
- Freedom Food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가금육 및 어류에 대한 지출비용 1%당 3점
- 공정무역 인증품에 대한 지출비용 1%당 3점
- LEAF 인증식품에 대한 지출비용 1%당 2점

다만,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식재료 구입비용이 전체 식재료 조달비용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하는 전체 돼지고기 또는 가금육은 방목된 것이어야 함

## 2) 건강한 식사를 용이하게 하는 활동

급식업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급식업체에 전체 조치단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적인 활동범위별로 가산점을 부여함.

- 식육 메뉴가 없는 날 또는 채식주의자의 날과 같은 행사당 20점
- 고기 섭취를 절제하기 위한 조치 1건당 20점
- 소금 섭취 최소화 조치 1건당 20점
- 잔반 줄이기 조치 1건당 20점
- 제대로 먹기 지원활동 1건당 20점
- 음식 섭취 장려 활동 1건당 20점
- 제공하는 빵의 50% 이상이 통곡인 경우 10점
- 진짜 빵(Real Bread)을 제공하는 경우 10점
- 과실류가 디저트보다 가격이 싼 경우 10점

## 3) 지역식품 생산자 우대조치

- 지역내에서 생산된 신선 식재료 구입비용 1%당 3점
- 영국에서 생산된 신선 식재료 조달비용이 전체 신선 식재료 조달비용의 59% 이상인 경우 1%당 2점

이상의 해외 친환경 또는 유기 음식점등의 인증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도 운영 주체가 국가이거나 민간이거나 간에 음식점 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친환경 또는 유기 식재료의 사용비율에 따라 등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기 음식점 인증제도에서도 유기 식재료 이외의 식재료 조달을 다양한 친환경적인 식재료나 유사 민간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식재료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친환경 음식점 인증제도에서는 지역식품이나 국내산 식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소비자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음식점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 관련 음식점등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하여 국내 음식점 유형별로는 한식당, 부식가게, 빵집, 떡집 및 카페 등으로 구성된 100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인증제도에 관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

용은 국가인증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여부와 영업의 종류별로 현행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의 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를 국가 인증제도로 도입하는데 대한 찬반의견 조사결과에서는 52%가 찬성을 하여 과반수가 조금 넘는 찬성률을 보였으며, 한식당 및 부식가게(70개소)는 54.3%가 찬성의사를 표시한 반면, 빵집이나 떡집 및 카페(전체 30개소)는 46.7%만이 찬성을 하여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으며,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음식점 인증제도를 국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시급한 요구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표 3.11 참조).

표 3.11 친환경 음식점등 인증제도의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여부

(Base: 전체, N=100, %)

구 분	사례수	반대	찬성	
<b>전 체</b>	<b>(100)</b>	<b>48.0</b>	<b>52.0</b>	
<b>대분류</b>	한식당, 반찬가게 등	(70)	45.7	54.3
	빵집, 떡집, 카페 등	(30)	53.3	46.7
<b>한식당, 반찬가게 등</b>	한식당	(63)	46.0	54.0
	반찬가게	(7)	42.9	57.1
<b>빵집, 떡집, 카페 등</b>	빵집	(10)	40.0	60.0
	떡집	(10)	60.0	40.0
	카페	(10)	60.0	40.0

반대의견을 표명한 응답자의 반대 사유로는 응답자의 25%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 답했고, 제도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증기준의 과도한 엄격성 및 기존 민간 인증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3가지가 각각 14.6%로 나타났으며,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성 확보곤란과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부담이 각각 10.4%로 나타났고, 기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표 3.12 참조)

표 3.12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

(Base: 국가인증제 도입에 반대 응답자, N=48, %)

구 분	사례 수	신뢰도 낮아서	실효성 의심스러워서	평가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민간인증제도로 충분해서
<b>전 체</b>	<b>(48)</b>	<b>25.0</b>	<b>14.6</b>	<b>14.6</b>	<b>14.6</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2)	25.0	18.8	9.4	12.5	
	빵집, 떡집, 카페 등	(16)	25.0	6.3	25.0	18.8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29)	24.1	20.7	3.4	13.8	
	반찬가게	(3)	33.3	0.0	66.7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4)	50.0	0.0	75.0	0.0	
	떡집	(6)	0.0	0.0	16.7	33.3	
	카페	(6)	33.3	16.7	0.0	16.7	
구 분		사 례 수	단가상승으로 인한 메뉴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이 비싸 운영이 어려워져서	업종/규모등에 따른 현실성 떨어져서	좋은 식당과 나쁜식당으로	지나친 간섭이 우려 되어서
전 체		(48)	10.4	8.3	6.3	4.2	4.2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2)	6.3	9.4	6.3	3.1	6.3
	빵집, 떡집, 카페 등	(16)	18.8	6.3	6.3	6.3	0.0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29)	6.9	10.3	6.9	3.4	6.9
	반찬가게	(3)	0.0	0.0	0.0	0.0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4)	0.0	0.0	25.0	0.0	0.0
	떡집	(6)	33.3	0.0	0.0	16.7	0.0
	카페	(6)	16.7	16.7	0.0	0.0	0.0

한편, 국가인증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그 사유로서 국가인증으로 인한 신뢰도 상승과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 제공에 대한 신뢰 제공이 각각 응답자의 30.8%와 26.9%로 전체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의견에서도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준다는 답변이 가장 중요한 찬성사유로 파악되었다.

또한, 음식점 70개소를 대상으로 현행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에 따른 평가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9%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현행 평가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는 항목별 평가기준의 최소 요구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특히 양념류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빵집이나 떡집 또는 카페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평가기준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응답자가 60%로 오히려 음식점 영업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빵집 등의 경우에 인증제도 도입 시의 평가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원재료 조달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에

대한 평가기준과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인증제도는 그 자체를 국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인증기준은 보다 세분화하면서 제도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한 제도 인지도 제고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친환경 우수식당의 인증제도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등급화를 실시하여 단계별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비율을 제고하면서 로컬푸드 운동이나 공정거래 또는 기타의 친환경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4. 친환경식당등 친환경농산물 대량소비처 대상 인증표시제도 도입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전체 농산물 시장의 3% 미만인 상황에서 유기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등(급식업 포함. 이하 같다)을 인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품위생법의 영업종류에 따른 즉석식품제조·판매업과 제과점영업 등과 같이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증·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즉석에서 단순한 조리(커피 추출, 생과일주스 제조 등)를 통해 비록 원료농산물의 형태는 변형되는 경우에도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제도에 따른 “취급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유기를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의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 점유율은 2009년에 처음으로 10%대를 초과한 11.9%였고, 이후 연평균 5% 내외로 신장하다가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이후 현재까지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음식점등 영업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국가 또는 민간 인증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유기식품의 생산 및 소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유기음식점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집단 급식소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제도를 개발하여 유기식재료 사용비율을 30 ~ 60%, 60~90% 및 90% 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유기 원료의 최소 사용비율이 15% 이상이면 인증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친환경 우수식당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른 인증등급의 구분은 실제 국내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을 약간 상회하는 15 ~ 50%를 최저 등급으로 하고, 50 ~ 90% 와 90% 이상의 3가지 등급으로 인증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최소 요구함량 이외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영국의 토양협회가 적용하고 있는 등급별 인증기준과 평가점수제를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제 국내 식재료시장의 유통환경과 음식점등의 식재료 조달실태 및 우선 적용 대상 업종의 선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현행 친환경우수식당 지정제도에서 적용하는 평가기준에서 일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저농약 폐지 이후에도 저농약 요구 등)를 개정하면서, 특정 품목별로 친환경 인증품 100% 사용 요구수준을 50~70%, 70~95% 및 95% 이상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인증방식을 혼합한 특정 품목 중심(쌀 및 채소류, 쌀 및 과채류, 쌀 및 과채류와 육류 등)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방안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업체의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식품위생 요구사항의 준수와 소비자의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기여도 등도 추가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유기 원료 95% 이상이라는 하지만, 음식점등의 영업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이하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 메뉴별로 그 식재료의 친환경 식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메뉴 중에 함유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비율이 95% 이상인지 여부로만 인증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의 메뉴별 구분관리와 해당 메뉴의 실제 판매량에 대한 구분관리가 전제조건으로 성립되어야 하지만, 실제 음식점등의 영업장에서 이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행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제도에서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등급별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은 표 3.13 또는 표 3.14와 같다.

**표 3.13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인증기준 개선(안) -제1안**



구분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주황색)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정색)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녹색)
기본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음식점등에서 조달하는 전체 식재료 구매금액 대비 친환경(무농약 이상) 식재료의 조달금액이 50% 이상일 것</li> <li>○ 쌀은 무농약 이상만 사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음식점등에서 조달하는 전체 식재료 구매금액 대비 친환경(무농약 이상) 식재료의 조달금액이 70% 이상일 것</li> <li>○ 쌀은 무농약 이상 100%, 과채류는 무농약 이상을 50% 이상 사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음식점등에서 조달하는 전체 식재료 구매금액 대비 친환경(무농약 이상) 식재료의 조달금액이 90% 이상일 것</li> <li>○ 축산물은 전체 사용량의 50%이상을 무항생제 축산물 이상으로 사용할 것</li> </ul>
추가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말 것</li> <li>○ 친환경 식재료 중에서 유기식재료 구매금액이 20% 이상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말 것</li> <li>○ 친환경 식재료 중에서 유기식재료 구매금액이 20% 이상일 것</li> </ul>
공통요구사항	세제 및 소독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되, 식기 등에 잔류하지 않을 것		
	일회용품의 사용을 하지 말 것		
	식품첨가물은 유기가공식품에서 허용하는 것만 사용할 것		
	식재료의 구입 및 사용실적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것		
	친환경 농산물 이외의 식재료는 지역 생산물, 국내 생산물, 수입 유기농산물의 순으로 우선 조달할 것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위생기준을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양호한接客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전체 메뉴의 70% 이상은 현장에서 바로 조리하여 제공할 것		
	무항생제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가축에서 얻어지는 축산물을 친환경 축산물로 인정함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피하고, 설탕 및 소금 섭취량 감소운동에 동참할 것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의 우너산지 등 이력정보를 관리할 것		

표 3.14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인증기준 개선(안) -제2안

심사 사항	구비 요건
-------	-------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식재료 관리	1) 사용되는 식재료는 인증 등급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유기농 또는 무농약농산물등 또는 이들의 가공식품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거래증명서 또는 인증서 사본으로 보증할 수 있을 것 2) 무농약 농산물등 이상의 식재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유기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식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등급 기준	무농약 농산물등 이상의 식재료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금장은 전체 사용 식재료의 90% 이상, 은장은 70%이상 90%미만, 동장은 50% 이상 70% 미만을 사용함을 대조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음식점 등 운영 관리	현행 친환경 우수식당 지정제도의 공통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인증제도 운영 등	이 표에서 정한 인증기준과 동등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협회 또는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5]의 인증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특기사항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로 단계별 편입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인 인증기준 개선(안)은 제시하였지만, 실제 제도시행은 민간 인증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설정된 인증기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관리능력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인증제도를 등록한 이후에 인증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인증의 난립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의 고시를 통해 민간 인증제도의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인증제도의 명칭을 “친환경 음식점등”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증로고는 인증기관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음식점등의 인증제도에 대한 적용범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과 집단급식업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휴게음식점업(제과점 등)의 경우에는 전체 식재료가 아닌 특정 메뉴별로 유기 또는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인증방식의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메뉴별로 해당 식재료와 최종 음식의 제조·조리 과정 및 해당 메뉴가 구분관리가 가능한 때에는 해당 품목 또는 메뉴별로

인증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 3 절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 확대

유기 농산물은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외국의 유기 식품에 비하여 좁은 범주만을 인증하였다. 그리하여 유기 농산물에서 인증대상을 확대하여 유기적으로 생산하는 여러 제품들을 보호하고 그의 생산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벌꿀 등 수요는 높으나 국내 기준이 부재한 제품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 중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표시제 형태로 수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수입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제정 품목을 설정하고 국제 기준 및 세계 주요국가 인증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명확한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식용 화훼는 현행 기준에 따라 인증이 가능하지만 비식용 화훼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와인 및 전통주 등에 적합한 제조 공정 및 천연 첨가물 이용 범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추진하였다.

#### 1.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의 인증

##### 1.1 국내외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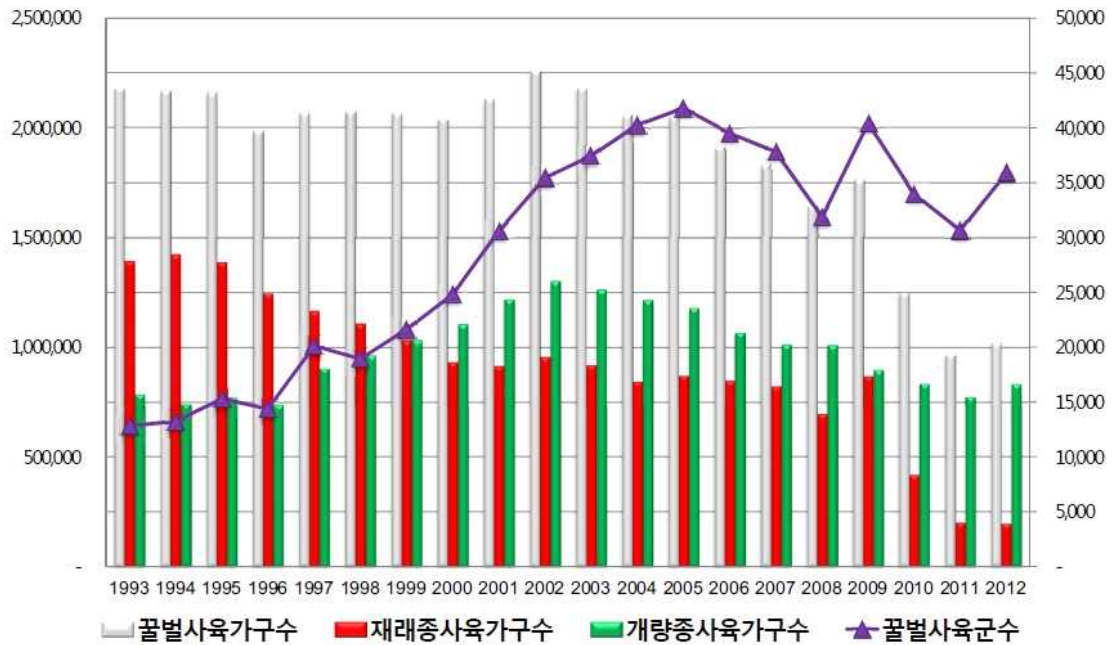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국 양봉농가는 2만 579호로 벌꿀의 총 생산량은 3만 4,543톤에 이른다. 한 호당 평균 벌꿀 생산량이 1,679kg이며 한 개의 봉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은 19.2kg이다.

표 40. 우리나라 양봉 현황

구분	세부내역	2008	2009	2010	2011	2012
개량종	사육 가구수	20,282	17,985	16,689	15,516	16,662
	사육 봉군수	1,550,558	1,606,536	1,526,400	1,430,583	1,646,025
	년간 생산량(톤)	26,327	22,272	23,982	20,936	
재래종	사육 가구수	13,846	17,373	8,353	4,012	3,917
	사육 봉군수	314,128	382,805	171,827	100,756	149,172
	년간 생산량(톤)	1,256	756	345	202	
계	사육 가구수	34,128	35,358	25,042	19,528	20,579
	사육 봉군수	1,864,686	1,989,341	1,698,227	1,531,609	1,795,197
	년간 생산량(톤)	27,583	23,028	24,327	21,137	34,54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가축통계)

벌꿀의 개방화와 기후변화로 꿀벌 사육 가구 수가 2015년 19,000호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국내 양봉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3), 기타가축통계

그림 43. 우리나라 양봉 생산 현황

또한 외국의 유기 양봉의 수입으로 국내 양봉 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 농가에서 판매하는 꿀이 대부분 브랜드가 없고 품질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강현수, 2014) 그에 비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외국 양봉제품과 비교하면 국내의 양봉제품은 경쟁력이 낮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유기 양봉 산업의 육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꿀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꿀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많은 수준이며 한국양봉농협에 의하면 06~11년 꿀 소비량은 약 11%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양봉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벌꿀 소비량 변화(1996~2011)

구 분		1인당 소비량(g) (A)	인구수(천명) (B)	총 소비량(톤) (A×B)
1996		186.2	45,525	8,476.8
2001		580.4	47,357	27,486.0
2006		470.9	48,372	22,778.4
2011		715.4	49,779	35,611.9
연평균 증가율 (%)	'96-'01	32.9	1.0	34.2
	'01-'06	△5.1	0.5	△4.6
	'06-'11	11.0	0.7	11.8

한국양봉농협

그림 44. 우리나라 벌꿀 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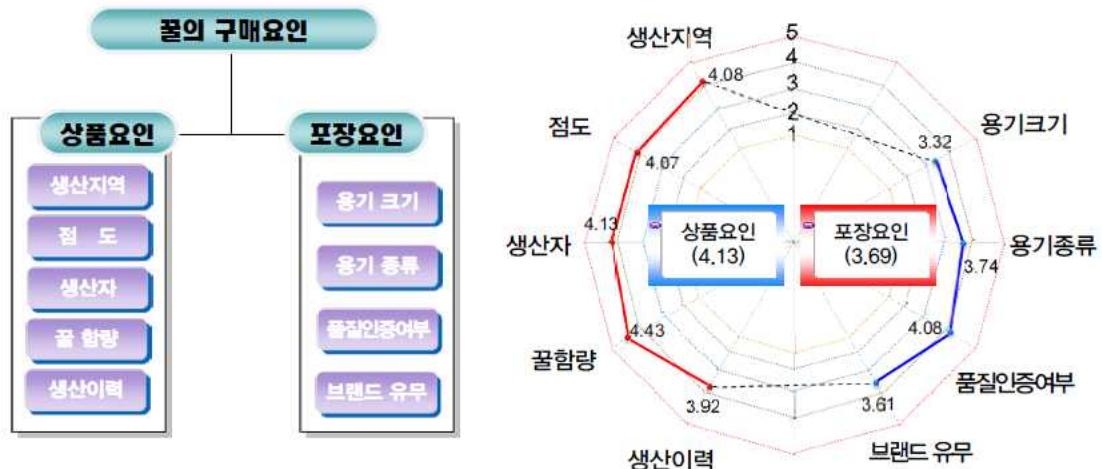


그림 45. 소비자의 꿀 구매요인 설문조사결과

출처: 강현수(2014).

그 뿐만 아니라 농진청 및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 양봉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친환경 양봉 전문기술 교육 당시에 참석인원이 예상 참가인원의 1.5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친환경 양봉에 대한 농가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연구원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꿀 구매요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는 꿀 함량 그 뒤로는 생산자와 품질인증여부로 나타나, 품질인증을 받은 양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기인증에 양봉제품을 도입할 경우에 양봉 농가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외국에서는 유기양봉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32(GL-32) 뿐만 아니라,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인도 등의 국가 표준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CODEX에서는 양봉 및 양봉제품을 특별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양봉기준 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양봉제품의 기준에 양봉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EU는 유기 양봉 특별 규정에 양봉제품 생산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기타 대다수의 국가에서 유기 양봉 표준 내에 양봉 제품의 특별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7 CFR part205so에서는 양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 41. 주요 국가 및 인증기관 별 양봉관련 인증기준

국가/국제기구	인증 표준/인증기관	양봉+양봉제품	양봉
CODEX	GL-32	0	
IFOAM	Standard&Guideline	0	
독일	Bioland	0	
	Biopark	0	
	Naturland		0
아일랜드	Orgnic Trust	0	
오스트리아	Ernte fur das Leben	0	
이탈리아	AIAB	0	
핀란드	LUOMU	0	
스웨덴	KRAV		0
룩셈부르크	Verenegung fur Biologesche	0	
네덜란드	SKAL	0	
포르투갈	AGROBIO	0	
	UKROFS	0	
영국	Organic Farmers and Growers	0	
	The Soil Association	0	
스위스	VSBLO-Bio Suisse	0	
호주	NASAA	0	
캐나다	CGSB-32.310-2006	0	

여러 타 국가에서 유기 양봉에 대한 인증 기준이 설립되어 있어 이전에도 유기 양봉기준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국내 꿀벌의 평균 행동반경이 2.5~3.5km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시에 유기농 밀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인증기준에서 배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봉에서 꿀벌 응애, 노제마 병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최근까지 농가들이 항생제 등의 약제로 이를 대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시중 벌꿀의 25%에서 잔류항생제 수치가 식품공전의 최대 잔류허용량 이상으로 검출되어 벌꿀 항생제 파동이 발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진단 및 친환경 약제 등의 친환경 신기술의 개발로 지금까지 국내 유기양봉이 어려웠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에 양봉제품이 도입된다

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기양봉 산업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다.

유기 식품의 양봉제품으로의 인증범위 확대를 통해 양봉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양봉 농가의 고소득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양봉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지자체에 체험관광, 외식업 등 연계산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양봉제품을 가공하여 2차 제품을 생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하고자 하였다.

## 1.2. 유기 양봉 및 양봉제품의 인증 도입 방안

우선적으로 수입량 및 국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제정 품목을 설정하였다. 그에 이어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에서 유기 양봉에 대해 설정한 일반원칙 또는 통칙, 전환기간, 벌통의 위치, 벌의 출처, 먹이, 질병관리 및 긴급처치, 벌집 및 기타자재, 벌꿀 또는 화분 및 로얄젤리의 획득방법, 기록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토대로 국내 유기 양봉업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유기축산 인증기준 개정안을 부록 2.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유기 양봉의 인증기준 도입을 통해 국내 유기 양봉업자의 인증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국과의 동등성 인정 협정의 대상으로 벌꿀을 포함한 양봉 제품 전체로 확대하여 인증제도의 활용이 기대되는 바이다.



## 2. 기타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 범위 확대

### 2.1. 기타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검토

비식용 화훼, 유기 임산가공품, 유기 전통주에 관련하여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그에 대한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 번째, 비식용 화훼의 경우 현재 유기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타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 기구에서 별도로 표준을 지정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현행의 유기 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작물의 윤작 및 간작 기준, 시비 기준, 병해충 방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유기 임산가공품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유기 인증기준 또는 표준으로 유기농 가구, 종이 및 완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 PEFC 인증 등 민간 인증기관의 산림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인증기준은 있으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인증이므로 유기인증원칙과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FSC 인증은 펄프나 제지 생산 공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나 물질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산림파괴를 막는 환경 친화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임산물을 가공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유기농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산물은 가공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유기농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판단되었다.

세 번째, 유기 전통주와 관련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현재 와인 및 전통주 등의 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대상 범위 확대에 있어 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타 국가에서도 유기 주류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다는 점, **와인의 허용물질에서 인산화황이 포함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 유통되고 있는 전통주에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고 제품에는 첨가물이 전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과 허용물질 목록만으로도 인증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명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추가해야 할 허용물질 또는 완화해야 할 제조공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통주진흥협회를 대상으로 유기주류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더니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협회에서는 회원사에서 술 품질인증이나 KS인증을 이미 받고 있고 술은 기호식품으로 맛을 위해 먹지 건강을 위해 먹지

는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기인증제도는 필요하지 않고 홍보 시에도 안전성이 아닌 맛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통주 생산업자의 실태조사에서도 별도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증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제 4 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 2.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의 도입

#### 2.1.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의 검토

유기 반려동물 사료를 유기 가공식품 인증대상에 새로이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의 유통 실태 및 해외인증 기준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인증제도의 실시 방안을 고안하였다.

##### 2.1.1.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2년 전체가구의 25.3%(약 454만여 가구)를 차지하고 10년 동안 해마다 3~4%가량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가구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과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2026년 전체 인구의 20.8%가 고령자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1인가구 증가 전망

단위 : 가구, %

구 분	2000	2010	2020	2030
독거노인 가구	543,522	1,021,008	1,512,082	2,338,354
(구성비)	(3.7)	(6.0)	(8.0)	(11.8)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표 42. 독거노인 가구 수 및 구성비율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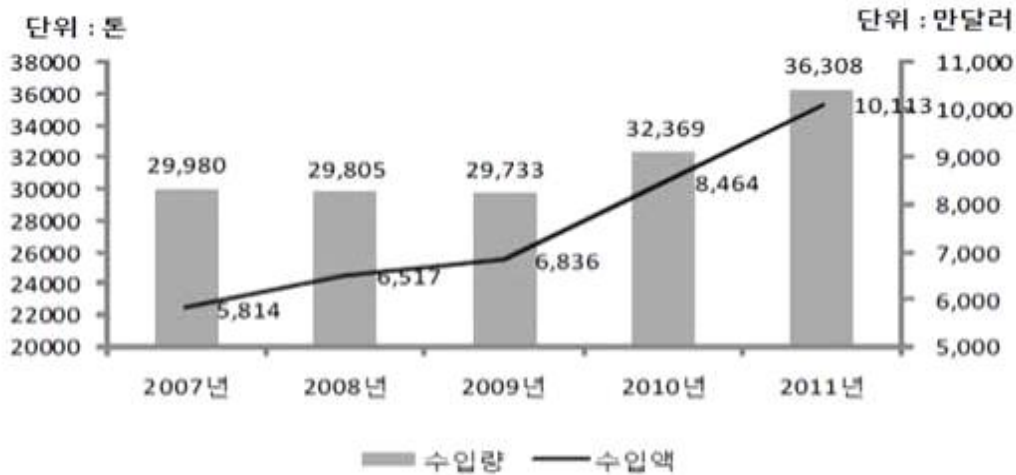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독신자와 노년층이 증가하고 이들의 소외감이 심화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그에 따른 업체별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사료는 일반 가축 사료와 달리 반려동물의 노화, 비만관리 등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고급제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기업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참여로 브랜드 중심의 제품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전문화와 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43. 2016년 연간 유기 애완사료 수입 현황

번호	신고자 업체명	구분	제품명	중량(KG)
1	(주)미래자원ML	배합사료	오가닉 피드-애니멀 피드 7(Organic Feed Animal Feed-7)	72,000.00
2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Organix W/M Adult Dog Food	435.44
3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Organix G/F Chicken & Potato(Healthy Adult Indoor Cat Food)	1,706.00
4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Organix Turkey & Seafood	366.74
5	버드샵	배합사료	오가닉펠렛(Top Organic Pellet)	435.36
6	petnpeople	배합사료	유기농래빗펠렛(BTerra Organic Rabbit Pellet)	718.49
7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Organix G/F Chicken & Potato(Healthy Adult Indoor Cat Food)	2,721.54
8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Organix W/M Adult Dog Food	435.45
9	kp생활건강	단미사료	오가닉 펫코코(ORGANIC PETCOCO)	70.20
10	pet&people	단미사료	오가닉미도우헤이(Organic Meadow Hay)	4,049.67
11	올가피아	배합사료	반려견유기사료(Organic Pellet Feed Stuff)	216,000.00
12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애완큰개사료1호(Organix Chicken & Brown Rice Recipe)	35.70
13	동아엘지(주)	배합사료	애완육성고양이사료4호(Organix Chicken & Brown Rice Recipe)	27.30
14	kp생활건강	단미사료	오가닉 펫코코(ORGANIC PETCOCO)	453.60
15	(주)페 피아이십 일	단미사료	오가닉치킨 스몰바이츠 ( SMALL BITES ORGANIC CHICKEN)	0.60
16	올가피아	배합사료	반려견유기사료(Organic Pellet Feed Stuff)	216,000.00
2016년 수입량 총계				515,456.09

(출처 : 한국단미사료협회 내부자료)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은 수입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12년의 전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58%를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 Purina Petcare), 마스(Mars Petcare Inc.) 등이 차지하여 국내에서 수입 유기사료 및 외국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2013))

그림 47. 2007~2011년 간 개, 고양이 사료 수입 실적

표 44. 2012년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추정

단위 : 백만원(도매가)

구분	애완동물 사료 시장규모				2012
	2006년 (A)	2007년 (B)	A,B평균 (C)	평균비중	
수입사료					
견사료(1)	48,304	51,725	50,015	30%	57,530
간식등(2)	22,652	28,870	25,761	29%	29,632
국산사료					
견사료(3)	49,200	52,342	50,771	39%	58,400
간식등(4)	3,178	4,540	3,859	3%	4,439
합계	122,162	134,944	128,553	100%	150,000

※ 2012년 : (1),(2),(3),(4)는 합계액(1,500억원)을 평균비중에 따라 환산한 수치

※ 견사료에는 일부 육견사료 포함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2013))

전체적인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량은 고양이 사료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을 대비하여 2012년 수입량이 고양이 사료의 경우에는 130.7%가 증가했고 반려견 사료는 14.9%가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보아 앞으로 국내 반려동물용 사료 시장이 2012년 도매가 기준 1,500억 원(소매가 기준 2,5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8,000억 원 규모로 성장 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용 사료 중 “유기”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은 미국 NOP 인증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의

NOP는 반려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가 초안 작업을 완료하였을 뿐, 실제 법령인 CFR part 205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NOP의 반려동물용 식품 인증은 축산용 사료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유기” 인증을 받은 반려동물용 사료가 유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기농인증(NOP, USDA)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가 5% 이내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유기 인증은 GMO가 불검출 되어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미국보다 더욱 엄격한 유기 기준이므로 현재 통용되는 반려동물용 사료가 우리나라의 유기 기준에는 부적절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주(主)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반려동물 주의 50%와 미국 반려동물 주 33%가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할 때 유전자 조작 재료의 포함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뽑았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주 역시 이러한 선택 요소를 가진다고 유추한다면 그러한 선택 기준에 비하여 미국의 유기농인증에 GMO가 허용된다는 점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8. 펫푸드 유형별 선호도

(자료 : 닐슨코리아, <http://www.nielsen.com/kr/ko/insights/2014/petfood-201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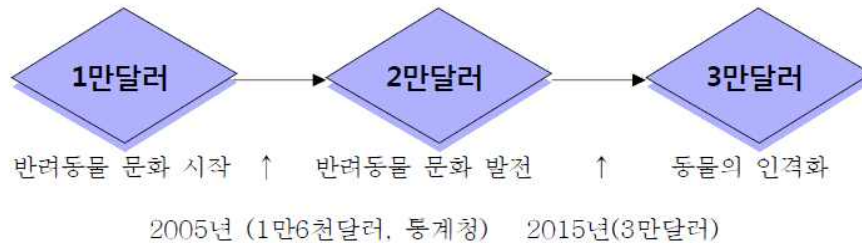
또한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유기농”으로 표기한 반려동물용 사료 중에 같은 종류의 원료를 유기농과 무농약 등급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제품이 유통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용 유기 사료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가에서 제시하여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혹은 국내산 사료에 만연한 혼란을 제거하고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표 45.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사료의 예시

품목	제품명	가격	원재료명		
			유기	무농약/무생제/활성처리제비 사용	일반
애완동물사료	ANF 유기농 오리귀리	21,900 원	식물성단백질, 통귀리, 해바라기씨박, 대두박, 보리, 비트펄프, 현미, <b>유기농쌀</b> , 소맥, 아마씨, 참깨박, 해바라기씨, 고구마, 녹두, 메밀, 당근, 호박, 호박씨	<b>친환경쌀</b>	미네랄믹스, 동물성단백질프리믹스, 정제계유, 치즈분말, 인산칼슘, 비타민믹스
애완동물사료	ANF 유기농 연어감자	21,900 원	식물성단백질, 통소맥, 해바라기씨박, 대두박, 보리, 비트펄프, 현미, <b>유기농쌀</b> , 소맥, 아마씨, 참깨박, 해바라기씨, 고구마, 녹두, 메밀, 당근, 호박, 호박씨	<b>친환경쌀</b>	미네랄믹스, 동물성단백질프리믹스, 야채믹스, 타우린, 구연산, 비타민믹스

국민 소득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발전단계



※ 농림부 가축방역과(2007. 4) 자료 일부 조정

그림 49. 국민 소득수준에 따른 애완동물 관련 인식 변화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화와 독신가구의 증가,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사육 의향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려동물이 현대인에 있어 가족, 친구,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함에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반려동물 용품의 구매, 서비스,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이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12년에는 약 9천 억 원에 이르고 GDP대비 0.07%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써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선진국형 산업 분야를 유기 반려동물 사

료 인증을 통해 육성한다면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시장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예견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품의 도축 및 가공 부산물을 육분화하여 반려동물의 사료로써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친환경 축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작용하여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 2.1.2.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소비자, 유기 가공식품 업체, 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기 반려동물 사료 인증(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원료 함량 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

유기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는 71.4점, 유기 가공식품 업체는 69.5점, 인증기관에는 72.3점으로 나타났다.

표 46.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의 필요성(반려동물 사료)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24.9	47.3	18.4	7.5	2.0
업체	13.0	11.7	11.7	5.2	0
인증기관	37.8	27.0	27.0	2.7	5.4

####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의 도입 방식에 대한 답변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기준의 도입 시에는 현행되는 양축용 유기 사료의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로써 관리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경우 62.7%가, 유기 가공식품 업체의 경우에는 39%, 인증기관은 67.6%가 답변했다. 그와 달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을 개발해야 한다는 답변은 소비자는 37.3%, 유기 가공식품 업체는 24.7%, 인증기관은 29.7%로 나타났다.

표 47.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응답자구분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소비자	62.7	37.3
업체	39.0	24.7
인증기관	67.6	29.7

[표 14]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소비자)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현행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반려동물용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b>전 체</b>	<b>(201)</b>	<b>62.7</b>	<b>37.3</b>
성별	남성 (100)	66.0	34.0
	여성 (101)	59.4	40.6
연령	20대 (30)	60.0	40.0
	30대 (46)	78.3	21.7
	40대 (62)	59.7	40.3
	50대 (54)	55.6	44.4
	60대 이상 (9)	55.6	44.4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70.4	29.6
	300-499만원 이하 (75)	62.7	37.3
	500-599만원 이하 (55)	60.0	40.0
	600-799만원 이하 (22)	63.6	36.4
	800만원 이상 (22)	59.1	40.9
가족 수	1명 (5)	20.0	80.0
	2명 (24)	70.8	29.2
	3명 (53)	66.0	34.0
	4명 (95)	61.1	38.9
	5명 이상 (24)	62.5	37.5

[표 47]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비식용 유기가공품 업체)

(Base: 전체, N=77, %)

구 분	사 례 수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사료와 차별화 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모름 / 무응답	
전 체	(77)	39.0	24.7	36.4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66.7	33.3
	취급자	(74)	40.5	23.0	36.5
대분류	1차생산자	(21)	57.1	19.0	23.8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39.1	26.1	34.8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42.6	24.1	33.3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61.5	15.4	23.1
	축산	(9)	44.4	22.2	33.3
	임업	(1)	100.0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47.4	21.1	31.6
	축산가공	(27)	33.3	25.9	40.7
	임업가공	(1)	0.0	10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판매	(42)	42.9	21.4	35.7
	유통	(34)	38.2	26.5	35.3

[표 67]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인증기관)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필요 없음
전 체	(37)	67.6	29.7	2.7

### 2.3.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 도입 방안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본래 100% 육류이어야 하지만 식물성 원료를 혼합하게 되면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어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미노산 제를 많이 첨가하고 있다는 점이 양축용 사료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기농식품 인증기준을 준용하였고, 허용물질 목록도 유기농식품의 허용 물질 목록을 준용하였다. (부록 @)

따라서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유기배합사료 중 보조사료 허용물질(아미노산제 포함)의 사용가능조건으로 “배합사료에 1퍼센트 미만 사용되는 보조사료 중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해당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이라 명시하여 화학 합성 원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별표 1의1호나항2)

외국의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인증 및 관리 절차는 기존의 절차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의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업체가 국내 인증 취득에 대비해 수입 및 통관 과정을 거치는 경우 그 제품의 인증 여부, 표시사항 등의 점검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제한적 유기 표시 허용도 기존의 절차에 준하게 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업체의 애로사항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반려동물 유기 사료 인증제도의 시행은 2017년 6월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유기 사료의 인증기준 설정을 통하여 국내 반려동물 유기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 수입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표시허용을 대체하여 국내법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절 비식용 유기 가공품 표시제 도입

###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표시제의 도입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에 앞서 그 인증대상에 대해서는 2015년 녹색소비자연대에 서 비식용 유기가공품 중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선정한 세제, 여성 용품, 섬유 및 화장품에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 해 품목별로 도입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중 여성용품의 패드 부분의 원료는 인증을 통해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이 관행이 므로 유기 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되어 섬유 및 섬유제품으로서 분류 하였다. 세제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화장품을 제외한 개인 보호용품으로 통합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비식용 유기가공품은 종류별로 별도의 인증기준을 설정하는 국가는 없으나 실제 시 장에서는 민간 인증기관이 각자 자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이를 통해 인증을 실시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유기 표시를 위한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 의 법정 인증제도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제도 를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옳다 사료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82.6%가 유기 섬유 및 섬유제품에 대한 인 증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88.6%가 국가공인제도를 선호한다고 답하였 다. 유기 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88%가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답하였지만 생산업체 에서는 33%만이 필요성에 동의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

#### 1.1 유기 섬유 및 섬유 가공품 인증 표시제 검토

##### 1.1.1. 국내의 유기 섬유 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의류 및 **준내구재?** 전체 연간 매출액 규모는 369,221십 억 원이며 유 기농 및 재생 섬유를 일컫는 친환경 섬유의 매출액은 200~300억 원으로 전체 시장 의 0.01%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친환경 섬유 제품의 바른 유통과 바른 소비를 목적으로 한국친환경섬유협회가 출범하여 이에 제이투엘에프에이, 해피랜드 F&C, 케이준컴퍼니, 신한방, 컨트롤유니온, 한중유니온 등 5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 여 친환경 섬유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섬유 생산은 2011년도에 8,422만 톤에 도달하여 처음으로 8,000만톤대를 기록

하며 전년도 대비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유기 섬유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유기섬유 시장은 성장률에 6~80%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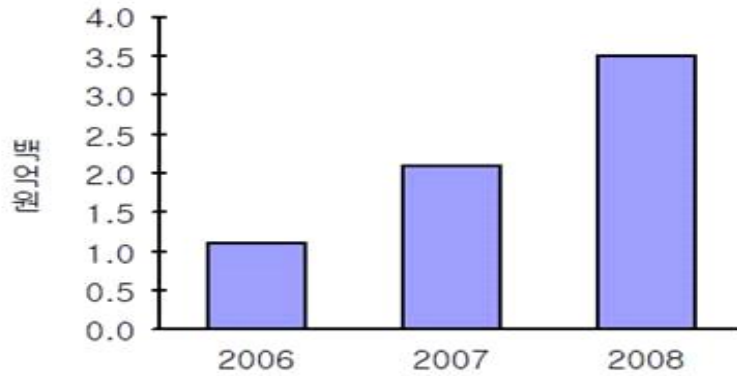


그림 53. 유기 섬유 제품 시장규모

표 48. 유기 섬유 제품 성장률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천만\$	백억 원	
2006	1.04	1.1	-
2007	1.90	2.1	83%
2008	3.20	3.5	68%
비고	1\$ = 1.100원으로 환산함		

하지만 너무 빠른 성장 탓인지 민간 및 해외 유기 섬유 인증마크들이 통일성이 없고 종류가 너무 많으며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 마크의 의미와 발행기관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의견이 2010년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그림 54. 유기인증마크의 의미와 발행기관에 대해 모르는 이유

또한 민간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섬유 제품은 원사만 인증을 받는 경우, 원단 및

염색까지 인증 받은 경우, 봉제가공 작업 인증까지 받은 경우 이 모든 경우를 ‘유기농 인증’ 제품이라 표기하고 유통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표 49. 시험대상별 인증 단계 현황

구분			인증단계			
상표명	상품명	제조업체	원사	원단 (염색가공)	봉제	판매 업체
타티네 소콜라	오가닉투어 7부내의	보령 메디앙스㈜				
밍크류	(8C)별오가닉 내의	㈜서양 네트웍스				
에프와	플래쉬칠무 오픈내의	아가방앤 컴퍼니				
안소바	위니오가닉 7부내의	해피랜드 F&C				
무나무나	무나무그로잉 7부유아복	지비스타일				
오가닉말	디노7부내의	㈜중동 텍스타일				
더오가닉 코튼	0C)무당벌레 7부남아내의	보령 메디앙스㈜				
알로엔루	반팔내의	(주)제로 투세븐				
아가방	봉고7부 오픈내의	아가방앤컴 퍼니				
해피랜드	페이스오가닉 7부내의	해피랜드 F&C				
u.	남아동편티 2매	롯데쇼핑㈜ 롯데마트				
데이즈 베이비	남아오가닉 7부내의	㈜신세계이 마트				
엘리엘로	오가닉티	삼성 테스코㈜				
침이침이	침이인형오가 닉남유아러닝	지비 스타일				
에코 오가닉	유기농 바디슈트긴팔	퓨어 베이비				
엔젤라 베이비	엔젤라오가닉 칠무내의	엔젤라				
워드 오가닉	자동차내의	워드 오가닉				
소미키즈	일쪽말유아 오가닉내의	소미키즈				
오가닉 트리	프리티 2종세트	오가닉 트리				
해피 오가닉	토끼내의	해피 오가닉				

### 1.1.2. 유기 섬유 관련 외국 인증제도 사례

유기 섬유와 관련한 외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개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 섬유에 대한 표준 또는 인증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기섬유를 인증대상에서 배제 하였다. NOP 및 EU에서는 GOTS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유기” 표시를 허용하였다. 국제적인 민간 인증기관에서도 GOTS 표준을 준용하고 있고, IFOAM에서도 유기섬유에 대해서는 GOTS 표준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GOTS란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ver 4.0-2014)(부록 ④)로 1차 섬유 원료에 대한 인증은 제외하고 원료 생산 이후 단계의 가공품, 봉제 완제품에 대한 인증만 실시하고 있다. GOTS는 2008년 설립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미국 OTA, 영국 Soil Association, 독일 IVN, 일본 JOCA가 작업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GOTS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섬유제품에 대한 사실 상의 국제 공인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GOTS는 국제 유기 섬유 표준 제정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로고 사용 관리 및 인증품 표시사항 관리도 시행하고 있다. GOTS는 유기 섬유 원료 함량을 기준으로 70% 이상 및 95% 이상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53. GOTS 인증 로고

GOTS 외에도 OCS(Organic Content Standard by Textile Exchange)라는 인증도 존재하는데 이는 유기 면화 및 아마 사용함량에 대한 인증만 실시한다. Textile Exchange는 2002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서 회원은 섬유산업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다. OCS라는 섬유 원료의 함량이 100% 또는 65% 이상인지에 따라 2가지 표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증과 세계 섬유 재활용 표준(Global Recycled Standard, Ver. 3.0), 재활용 자재의 함량을 추적, 확인한 결과를 강조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인 RCS(Recycled Claim Standard, 2013)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제품 표준인 GOTS 표준과 달리 원료함량 표준인 OCS는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OCS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GOTS의 함량기준을 만족한다면 GOTS인증 과정 중 원료 검증이 면제될 수 있다. OCS는 GOTS와 달리 사회적 요소, 환경적 요소 및 화학제에 대한 기준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표 51

에서 각 표준의 개요 및 그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표 50. GOTS 4.0과 OCS표준의 구성요소 비교

표준명	농장인증	공급망 사슬 인증	사회적, 환경적 기준 및 화학제	표시
GOTS 4.0	○	○	○	○
OCS	○	○		○



그림 54. OCS 표준 로고

표 51. GOTS와 OCS 표준의 개요

	GOTS	OCS
원재료	유기섬유	
공급망 사슬 추적 시스템	거래증명서	
가공과정에서 다뤄지는 환경적 문제	화학제 사용, 수 처리, 환경 정책	없음
가공과정에서 다뤄지는 사회적 문제	국제노동기구(ILO)규정 적용	없음
허용되는 강조표시 (N강조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유기(95%이상) 또는 X% 유기 재료로 제조	X% 유기 재배 면화 함유



## 1.2. 유기 섬유 및 섬유 가공품 인증 표시제 도입방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 섬유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자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0.6%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유기 섬유 인증제도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7.1%로 조사되었다. 또한 민간 인증 로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국가 공인 인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표 52. 유기 섬유 인증제도의 필요성

소비자 응답 구분	①매우	②약간	③보통	④별로	⑤전혀
필요성	33.8	46.8	16.4	3.0	0
구매 영향	21.4	55.7	18.9	3.5	0.5

또는

[표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생각 (소비자)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세제/소독제	(201)	52.7	35.3	9.5	2.5	-	84.6
화장품원료	(201)	53.2	28.9	16.4	1.5	-	83.5
종이/물티슈	(201)	49.8	35.3	12.4	2.0	0.5	83.0
개인보호용품	(201)	42.8	43.3	10.4	3.5	-	81.3
완구류	(201)	47.3	32.3	13.9	5.5	1.0	79.9
섬유류	(201)	33.8	46.8	16.4	3.0	-	77.9
애완동물사료	(201)	24.9	47.3	18.4	7.5	2.0	71.4

[표 2]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	보통	별로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100점 평균
세제/소독제	(201)	41.8	39.8	14.4	4.0	-	79.9
종이/물티슈	(201)	40.3	40.8	15.9	1.5	1.5	79.2
개인보호용품	(201)	35.8	43.8	17.9	2.5	-	78.2
완구류	(201)	32.8	40.3	21.4	4.5	1.0	74.9
섬유류	(201)	21.4	55.7	18.9	3.5	0.5	73.5

애완동물사료	(201)	24.4	37.8	24.9	10.0	3.0	67.7
--------	-------	------	------	------	------	-----	------



그림 55. 인증 주체에 대한 신뢰성 비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기 면화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도 국내 유기농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증제도를 원한다는 점,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섬유 가공품은 GOTS인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유기 섬유 가공품을 생산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원사 생산에서부터 제직, 재봉 및 봉제 등 단위 공정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어 최종 완제품에 대해 GOTS 인증을 획득하기란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를 감안하여 TE에 따른 함량 강조표시와 GOTS의 최종제품 인증을 모두 허용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여 통용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섬유 및 섬유가공제품의 유기 인증제도를 법정 인증제도보다는 권한 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에 유기 표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하였다.

### 1.3.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유기 화장품의 경우 친환경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0호(2014.12.24.제정)에서 정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원료의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에서 유래한다면 “유기농”이라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표시제로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화장품을 제외하고 유기농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은 친환경법령에서도 별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친환경 세제는 생산자의 자율표시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인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3.1. 유기 세제 산업 현황

세계 세탁세제 시장은 4,000억 원, 섬유 유연제 시장은 2,400억 원, 주방세제 시장은 2,000억 원으로 총 8,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기농 세제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마땅치 않으나 천연성분 위주의 유아 전용 세탁세제 및 유연제 시장규모가 240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친환경 세제 시장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라 가정할 경우 유기 세제 시장이 전체 세제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수준이다.

표 53. 세계에서 유통되는 유기농·친환경 세제 예

제품명	제조사/ 국가	원료		
		유기농	무농약	일반
소네트 액상 세탁 세제	SONETT OHG/독일	향유(유기농 야생식 물 추출) <1%		평지씨/해바라기씨 오일비 누 5~15%, 설탕계면활성제 5~15%(비이온계 계면활성 제/고급알코올계), 코코넛 오일 알코올 황산염(음이 온계 계면활성제/지방산계) 5~15%, 채소에서 추출한 알코올(에탄올) 1~5%, 피마 자유 <1%, 시트르산염 <1%, 라벤더에센셜 오일 <1%,
소네트 울&실 크 액상세제	SONETT OHG/독일	유기농 올리브오일 비누 15~30%, 향유 (유기농 야생식물 추출) <1%		설탕계면활성제 5~15%.(비 이온계계면활성제/고급알 코올계), 평지씨/해바라 기씨 오일비누 1~5%, 채소 에서 추출한 알코올(에탄 올) 1~5%, 시트르산염 <1%, 라벤더에센셜오일 <1%,
[소다산]독일 유기농1종 주 방세제_상콤 한 레몬향	소다산/독 일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물성 오일로 만 든 비누(함량정보없 음)		식물성 알코올(에탄올), 담 즙, 글리세린, 구연산, 엽 록소, 식물성 에센셜오일 (함량정보없음)
[소다산] 독일 천연 식초 냉 장고 청소세 제 1L	소다산/독 일	유기농식초(함량정 보없음)		사탕수수유래 알킬폴리글 루코시드, 구연산염, 물(함 량정보없음)
에코버블 유 기농 천연친 환경 주방세 제	엔 키 스/한 국	녹차추출물(함량정 보없음)		천연순비누계면활성제, 향 균제(함량정보없음)
[주방세제] 세 이프 유기농 발아현미	LG 생활 건 강	발아현미성분(함량 정보없음)		계면활성제,발효물 및 기타 (함량정보없음)
[라브르베르] 일룩 &찌든 때 제거 전용 세탁세제 (테 타성)	(주) 라브 르베르/프 랑스	사탕무, 올리브, 해 바라기, 유채, 옥수 수, 감자, 소금, 보 리, 쌀, 허브, 화훼 작물 등(함량정보없 음)		

국내에서는 유통업체 한 살림이 사탕수수 계열의 계면활성제인 카프릴리 글루콜(Caprylyl Glycol), 데실글루코사이드(DecylGlucoside), 비누만을 친환경 세제로서 판매하고 있으며 합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코코넛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포함되는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업체마다 각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확하고 단일한 인증기준이 잡혀있지 않아, 국내에서 친환경 세제로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명이나 주 표시 면에서는 유기농, 친환경이라 표기하나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유기농 원료가 극소량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표시를 남용하고 있다.

### 1.3.2. 국내의 유기 세제 관련 인증제도

유기 세제 역시 개별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인증기준이나 표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 인증기관들의 자체적 인증표준을 통해 비식용 유기 세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인증 표준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기준을 준용하거나 욕실용품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기 또는 천연물 화장품 표준으로는 2013년 10월 21일 제2판으로 공표한 코스모스(COSMOS) 표준이 있다. 이는 독일의 BDIH, 프랑스의 COSMEBIO & ECOCERT, 이탈리아의 ICEA, 영국의 Soil Association에서 공동으로 벨기에에 설립한 국제비영리법인 AISBL이 제정한 표준으로 최소한의 유기원료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에 인증이 가능하다. 코스모스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기 세제 및 기타 욕실용품 등에 대한 인증표준으로는 Soil Association의 Health & Beauty 유기인증 표준이 가깝다 할 수 있고, EU에서 1993년에 도입한 Eco label이 자율인증제도로서 일반 공산품에 적용된다는 점이 우리의 도입목적에 적합하여 참고할 수 있다.



그림 56. EU의 원료

먼저 Soil Association의 Health & Beauty 유기 인증 표준의 경우 허브류 제품, 천연

및 허브 생약제품, 혼합오일, 유화제품, 페이스트, 연고류, 젤류, 화장비누, 수화제품, 향수류를 포함한 욕실용품, 유아 보호용 제품, 화장품 및 향수가 적용대상이다. 이 인증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 법령의 요구사항에 적법해야 하며 그 외에 원재료의 가공과 제조, 표시, 성분조성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원료가 사람이 식용 가능한 제품일 경우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때 인증대상이 되며, 기타 욕실 용품이나 세제 등은 2015년판 COSMOS 표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3.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0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기 세제에 관련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88%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표 54. ①+②) 유기 섬유 인증제도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6%로 조사되었다.

표 54. 유기 세제 인증제도의 필요성(소비자)

소비자 응답 구분	①매우	②약간	③보통	④별로	⑤전혀
필요성	52.7	35.3	9.5	2.5	0
구매 영향	41.8	39.8	14.4	4.0	0

또는

[표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생각 (소비자)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세제/소독제	(201)	52.7	35.3	9.5	2.5	-	84.6
화장품원료	(201)	53.2	28.9	16.4	1.5	-	83.5
종이/물티슈	(201)	49.8	35.3	12.4	2.0	0.5	83.0
개인보호용품	(201)	42.8	43.3	10.4	3.5	-	81.3
완구류	(201)	47.3	32.3	13.9	5.5	1.0	79.9
섬유류	(201)	33.8	46.8	16.4	3.0	-	77.9
애완동물사료	(201)	24.9	47.3	18.4	7.5	2.0	71.4

[표 2]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	100점
----	-----	----	----	----	----	----	------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평균
세제/소독제	(201)	41.8	39.8	14.4	4.0	-	79.9
종이/물티슈	(201)	40.3	40.8	15.9	1.5	1.5	79.2
개인보호용품	(201)	35.8	43.8	17.9	2.5	-	78.2
완구류	(201)	32.8	40.3	21.4	4.5	1.0	74.9
섬유류	(201)	21.4	55.7	18.9	3.5	0.5	73.5
애완동물사료	(201)	24.4	37.8	24.9	10.0	3.0	67.7

그 뿐만 아니라 86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기 세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35.1%,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3%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55. 유기 세제 인증제도의 필요성(업체)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52.7	35.3	9.5	2.5	0
업체	22.1	13.0	6.5	1.3	0
인증기관	56.8	21.6	13.5	2.7	5.4

또는

[표 38]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비식용 유기가공품 업체)

(Base: 전체, N=77, %)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완구류	(77)	24.7	10.4	2.6	2.6	-	85.5
종이/물티슈	(77)	23.4	11.7	1.3	1.3	1.3	85.0
화장품원료	(77)	24.7	10.4	2.6	1.3	1.3	84.7
세제/소독제	(77)	22.1	13.0	6.5	1.3	-	82.6
개인보호용품	(77)	14.3	11.7	9.1	1.3	1.3	74.1
애완동물사료	(77)	13.0	11.7	11.7	5.2	-	69.5
섬유류	(77)	14.3	7.8	7.8	6.5	2.6	65.8

#### 1.4. 유기 세제 및 개인보호용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세계적으로 유기 세제에 대한 특별한 유기 인증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고, 소비자와 업체에서도 유기 인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는 바, 유기 세계 및 개인보호용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업체의 제품에 적용에 있어서 COSMOS 표준을 따르는 것은 국내 섬유 시장에서 불가능하다는 점과 **COSMOS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가 @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유기 세계 및 개인보호용품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OSMOS 기준을 참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알맞다 평가하였다. 또한 법정 인증제도보다는 유기 섬유 및 섬유가공품의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제로서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기 세계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세계 시장으로 친환경 농업을 견인하여 산업적,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혼란의 원인이 되는 남용 및 오용된 친환경 또는 유기농 표시를 바로 잡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부록 1] 일본의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최신판)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1992년 10월 1일 4 식유 제 3889호  
 개정 1996년 12월 26일 8 식유 제 4567호  
 개정 1997년 12월 25일 9 식유 제 4194호  
 개정 2001년 4월 1일 12 총합 제 1331호  
 개정 2003년 4월 1일 15 총합 제 950호  
 개정 2007년 3월 23일 18 소안 제 14413호  
 (총합식료국장, 생산국장, 소비·안전국장 통지)

제1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농산물(채소 및 과일(가공한 것을 제외함) 및 곡류, 두류, 차 등으로 건조 조제한 것을 말함)로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적용한다.

제2조 생산의 원칙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를 하려는 농산물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 및 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토양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농지의 생산력을 발휘하게 함과 함께 농업생산에서 유래하는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는 재배방법을 채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음 표의 좌측 칸에 기재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 같은 표의 우측 칸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용어	정의
특별재배 농산물	제2조의 생산원칙에 따르면서 다음의 1 및 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1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서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 횟수가 관행농업 수준의 50% 이하일 것. 2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서 사용된 화학비료의 질소성분 양이 관행농업 수준의 50% 이하일 것.
특별 재배 쌀	특별재배 농산물 중에서 쌀(도정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생산과정 등	해당 농산물의 생산과정(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 의한 종자, 종균 및 수확물의 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및 전번 작기의 수확



	후부터 해당 농산물의 재배 기간까지의 농장 관리를 말한다.
재배기간 중	특별재배 농산물의 생산과정등의 기간을 말한다.
관행농업 수준	1 농약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재배지가 속하는 지역의 동일 재배기간 동안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 횟수(토양소독제, 제조제 등의 사용횟수를 포함)를 말한다. 2 비료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재배지가 속하는 지역의 동일 재배기간 내에 해당 농산물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용된 생산과정 등에서의 화학비료의 질소성분 량을 말한다.
절감비율	1 농약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한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횟수가 관행농업 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 절감하였는지의 비율을 말한다 2 비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한 화학비료의 질소성분 량이 관행농업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의 비율을 말한다.
화학합성	화학적인 방법(생활환경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발효, 숙성 등의 화학변화를 제외함)에 의해 화합물 및 원소의 구조가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농약	농약관리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농약을 말한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천적 및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농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합성 농약	농약 중에서 유효성분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을 말한다.
절감 대상 농약	화학적 합성농약 중에서 농림물지의 규격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하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 비료 및 토양개량 자재(1999년 11월 14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005호)의 하나에 기재한 농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또한,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종자·종균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확보하기 이전에 사용된 화학합성농약은 제외한다. 다만, 종자 증식용 품종은 종자, 영양번식용 품종은 확보 가능한 가장 어린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비료	비료관리법(1950년 법률 제127호)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비료를 말한다.
화학비료	비료 중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을 말한다.
용기포장 류	농산물을 넣었거나 또는 포장되어 있는 물질로서 농산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대로 양도하는 것 또는 농산물을 결속하기 위한 테이프 또는 농산물에 부착하는 스티 등을 말한다.
표시표(팻 말)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농산물에 부착하는 표찰 등을 말한다.
재배책임	재배장에서 재배관리를 하는 자 또는 그 관리를 지도하는 자를

자	말한다.
확인책임자	재배의 관리방법을 조사하고, 관리 등에 관련된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자로서, 재배책임자에 의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미책임자	원료로 있는 현미를 도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미관리자	도정의 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 실적 등에 관련된 기록내용을 확인하는 자로서, 정미책임자에 의한 도정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특별재배 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

##### 1. 표시 및 옮겨 적기

특별재배 농산물에 대한 표시 및 옮겨 적기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 (1) 재배책임자 또는 확인책임자는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2 및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을 사용하여 유통단계에서 거래되는 단위별로 출하까지 하도록 한다.
- (2) 수입업자는 특별재배농산물을 수입할 때는 2 및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을 사용하여 유통단계에서 거래되는 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한다.
- (3) 정미책임자 또는 정미 확인자는 특별재배쌀을 도정등을 하여 새로운 용기포장류에 바꾸어 포장할 때는 재배책임자, 확인책임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에 표시한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옮겨 적음과 함께, 2의 (1)의 ⑤항 및 3의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한다.
- (4) (1) 내지 (3)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진 특별재배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1) 내지 (3)에 따라 표시가 이루어진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을 이용하여 표시 또는 옮겨적기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이에 따른 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배책임자, 확인책임자, 수입업자, 정미책임자 또는 정미확인자가 (1) 내지 (3)에 따라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에 표시한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가게 입구의 판넬 등에 옮겨 적은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 2. 표시사항

- (1)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하는 자(이하 ‘표시자’라 한다)가 일괄해서 표시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재배농산물의 명칭

- ②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요지
  - ③ 재배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④ 확인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다만, 재배책임자가 단체이고, 확인책임자로서 하는 업무가 재배책임자로서 하는 업무와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배책임자가 확인 책임자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⑤ 특별재배 쌀인 경우에는 정미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정미확인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⑥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2)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특별재배농산물인 경우에는 (1)에서 정한 것 외에 그 요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 (3) 절감대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특별재배농산물인 경우에는 (1)에서 정한 것 외에 그 요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절감대상 농약 이외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의3조 (3)에서 정한 재배관리 기록에서 해당 농약의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 (4) 질소성분을 함유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특별재배농산물인 경우에는 (1)에서 정한 것 외에 그 요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 (5) 절감대상 농약 또는 질소성분을 함유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특별재배농산물인 경우에는, (1)에서 정한 것 외에 절감비율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관행 농업 수준은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것(지역별로 정한 것을 포함함)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사용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외국인 경우에는 해당 수준은 지방공공단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것(지역별로 정한 것 포함)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준하는 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6) 절감대상농약을 사용한 특별재배농산물인 경우에는 일괄표시와는 별도로 생산과정 등에서 실제로 사용한 절감대상농약의 명칭, 용도 및 사용횟수를 표시하도록 한다.

### 3. 표시 방법

2에 나타낸 사항의 표시를 할 때는 표시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다.

- (1) 표시자가 일괄하여 표시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칸 안에 표시하도록 한다.
- (2) 특별재배농산물의 명칭  
「특별재배농산물」, 「특별재배○○(○○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로 기재하도록 한다.

- (3)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요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요지를 「농림수산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로 기재하도록 한다.
- (4) 재배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부서명,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 (5) 확인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부서명,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 (6) 정미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부서명,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 (7)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에서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요지  
「농약 : 재배 기간중 불 사용」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8) 절감대상 이외의 농약만을 사용한 특별재배농산물에서의 절감대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요지  
「절감대상농약 : 재배 기간중 불 사용」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9) 질소성분을 함유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특별재배농산물에서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요지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 기간중 불 사용」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10) 절감대상 농약의 절감비율 표시  
절감대상 농약의 절감비율 표시는 「절감대상 농약 : 해당지역 대비 ○○ % 절감」 또는 「절감대상 농약 : ○○지역 대비 ○○ % 절감」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11) 화학비료의 절감비율 표시  
화학비료의 절감비율 표시는 「화학비료(질소성분) : 해당지역 대비 ○○ % 절감」 또는 「화학비료(질소성분) : ○○지역 대비 ○○ % 절감」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12) 절감대상 농약을 사용한 특별재배농산물에서의 사용 농약 표시  
생산과정 등에서 사용한 절감대상 농약의 명칭, 용도 및 사용횟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 (13) (12)호에 따른 사용농약의 표시는 용기 혹은 포장의 일괄표시와는 별도로 보기 쉬운 위치 또는 별도로 첨부하는 표찰에 기재하도록 하고, 용기, 포장 또는 표찰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 입수방법을 일괄표시란 내에 게재하도록 한다.
- (14) 테이프, 썸 등에서의 약식 표시

상기 표시 이외에 특별재배농산물을 결속하기 위한 테이프, 특별재배농산물에 첨부하는 썬 등에 다음에 기재한 사항만을 기재한 약식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표시사항에 대해 해당 특별재배농산물의 포장재, 표시표 등을 사용하여 별도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다.

① 2의 (1)의 ① 및 ②

② 재배책임자의 이름 또는 확인책임자의 이름

③ ① 및 ②를 제외한 모든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 입수방법

(15) 표시방법의 예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와 같다.

#### 4. 유통관계자의 의무

(1)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진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해 그 후의 유통 단계에서 화학합성 자재의 첨가 또는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수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화학합성농약을 가지고 훈증처리한 경우를 포함)에는 유통관계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러한 첨가 또는 처리를 한 로트에 대해 해당 표시를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가 이루어진 특별재배농산물이 다른 농산물과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특별재배 쌀의 경우에는 도정 등의 단계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상황이 다른 쌀 또는 다른 재배책임자가 재배한 쌀이 혼입되는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해당 표시와 특별재배농산물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관계자가 그 표시를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표시의 옮겨 적기를 한 유통관계자는 재배책임자 또는 재배확인자가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에 표시한 내용을 필요에 따라 특별재배농산물을 양도할 때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류 또는 팻말을 보관하도록 한다.

#### 5. 표시금지사항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1) 일괄표시란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표시

(2)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에 「천연재배」, 「자연재배」 등의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와 혼동을 주기 쉬운 용어(다만, 종래부터 명확한 기준에 의한 농법으로 자연 등의 표시를 붙인 것에서 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함).

(3)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용어

(4) 통상적인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보다 현저하게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용어

- (5) 이 가이드라인의 표시사항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 (6) 해당 특별재배농산물의 재배방법, 품질 등을 오인시키는 문자, 그림, 사진 또는 기타의 표시
- (7) 「무농약재배농산물」, 「무 화학비료 재배 농산물」, 「저농약 재배농산물」, 「저 화학비료 재배농산물」 등의 표시

## 제5조 생산 및 출하의 관리방법

### 1. 생산 농장의 설정 조건

특별재배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정 구획의 농장(그 집합체를 포함함. 이하 「생산농장」이라 함)은 다른 농장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확인책임자에 의한 재배 관리방법의 조사 등이 수시로 가능한 장소로 설정하도록 한다.

### 2 생산자

특별재배농산물의 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함)는 재배책임자 및 확인책임자를 정하는 것과 함께, 그 생산 및 출하를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특별재배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체제 정비에 노력하도록 한다.

(2) (1)의 관리조직에 있어서는 생산자 및 생산농장의 등록을 함과 함께 등록된 생산농장의 재배관리상황 및 생산농장에서의 출하상황 등을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이 특별재배농산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등록을 취소하는 등을 통해 적절한 생산 및 출하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 3 재배책임자

재배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가 적절한 생산 및 출하를 하도록 재배관리 또는 그 지도를 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자는 재배책임자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1) 재배책임자는 생산농장에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 기재 예는 별지 4와 같이 한다.

생산농장이라는 사실

생산농장의 번호 및 면적

특별재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방법으로 바꾼 연월일

재배책임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담당

(2) 재배책임자는 특별재배농산물의 재배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재배계획을 작성하여 확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재배계획의 기재 예는

별지 5와 같다.

(가)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다) 확인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라) 현지 확인 예정 연월일 및 재배계획의 접수확인 연월일

(마) 생산농장의 번호 및 소재지

(바) 작물 명, 품종명 및 재배면적

(사) 작업계획

(아)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사용 목적별 사용예정 자재의 명칭, 사용량 및 사용시기

(자) 예상되는 수확량 및 출하량

(3) 재배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배관리기록을 작성하여 수확 종료 후 신속하게 확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재배관리기록의 기재 예는 별지 6과 같다.

(가)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다) 확인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라) 현지확인 연월일 및 재배관리기록의 수령 확인 연월일

(마) 생산농장의 번호 및 소재지

(바) 작물명, 품종명 및 재배면적

(사) 작업 실적

(아) 생산과정 등에 있어서 사용목적 별 사용자재의 명칭, 사용량 및 사용시기

(자) 수확량 및 출하량

(4) 재배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출하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별로 취합하여 확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출하기록의 기재 예는 별지 7과 같다.

(가) 작물명, 품종명, 생산농장 번호

(나) 생산자명

(다)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라) 확인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이름 또는 담당 부서명 및 소재지

(마) 출하기록의 수령 확인 연월일

(바) 수확면적

(사) 출하 연월일

(아) 출하 형태별 출하량

(자) 출하처

(차) 출하량 및 수확량

#### 4 확인책임자

확인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함으로써 재배책임자에 의한 재배관리 또는 그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책임자는 확인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배책임자와 다른 자로서 해당 지역의 농업에 정통하고 기술적 지도가 가능한 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1) 확인책임자는 재배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재배책임자와 현지 확인의 예정 등에 대해 검토함과 함께 생산자와 생산농장의 위치, 재배하는 작물명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2) 확인책임자는 재배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별지 5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지 및 기재내용이 특별재배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배계획서의 수령 확인란에 확인 연월일 및 확인 책임자의 이름(확인책임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명 또는 담당부서명)을 부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기재 누락 등이 있으면 해당 사항의 개선 지도를 하도록 한다.

(3) 확인책임자는 재배기간 중에 적어도 1번 이상은 생산농장에 가서 생산농장의 상황, 재배관리 기록의 기재상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결과 확인 책임자가 별지 6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배관리 기록의 현지확인란에 확인 연월일 및 확인책임자의 이름을 부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 결과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기재 불비사항 등이 있으면 개선지도를 하도록 한다.

(4) 확인책임자는 수확 종료 후에 재배관리기록을 제출받은 경우에 그 내용이 별지 6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지와 화학합성자재의 사용 등의 내용이 특별재배농산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배관리기록의 수령 확인란에 확인 연월일 및 확인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기재사항 불비 등이 있으면 개선지도를 하도록 한다.

(5) 확인책임자는 출하기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별지 7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출하기록의 수령확인란에 확인 연월일과 확인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기재사항 불비 등이 있으면 해당 사항의 개선지도를 하도록 한다.

(6) 확인책임자는 재배계획, 재배관리기록 및 출하기록을 수령한 후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 제 6 특별재배 쌀의 정미 확인방법

### 1 정미책임자

정미책임자는 별지 8에 따른 「특별재배 쌀 수불대장(이하 「대장」이라 함)」을 구비하여 특별재배 쌀의 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2.의 (1) 및 (2)에서 정한바에 따라 도정 등의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대장의 사본을 정미확인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2 정미확인자

정미확인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함으로써 정미책임자에 의한 정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정미확인자는 그 확인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정미책임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서 미곡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보유하여서 필요한 지도가 가능한 자가 되게 한다.

(1) 정미확인자는 특별재배 쌀의 도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도정시설 등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원료 현미의 입고량, 도정 등에 의해 얻어지는 정미의 수량, 도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모량 등을 대장과 제 4의 4 (3)에 따라 보관되는 표시표 등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포대에 포장한 정미 등에 부착된 표시와 내용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정미책임자는 확인결과 해당 도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장의 확인란에 확인 연월일 및 확인책임자의 이름(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명 또는 담당부서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결과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재사항에 불비사항 등이 있으면 해당사항의 개선지도를 하도록 한다.

(3) 정미확인자는 1에 따라 수령한 대장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4) 정미확인자는 (1)에 따라 표시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 때에는 그 확인을 하였다는 요지를 기재한 마크를 용기포장류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마크의 사용에 대한 기록 등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 제7 정보의 제공

생산자는 소비자, 유통업자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특별재배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배책임자, 확인책임자, 수입업자, 정미책임자 및 정미확인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재배방법과 자재의 사용상황, 확인방법 등에 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관리기록 등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한다.

## 제8 기타

국가, 지방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 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에 관한 조회와 민원 등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제4의 2 (5)에 따라 지방 공공단체가 관행 수준을 책정 또는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각 관행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히 재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지 1 특별재배농산물의 표시 예

예1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농산물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예2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 양상추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예3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농산물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예4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 쌀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정미확인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예5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 쌀	
절감대상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정미확인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예6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농산물	
절감대상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예7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농산물	
절감대상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당지 대비○할 감소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예8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 무	
절감대상 농약 ; 당지 대비○할 감소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불사용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현황주	

주 : 일괄표시란 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입수 방법을 기재함

예9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배추	
절감대상 농약 ; 당지 대비○할 감소	
화학비료(질소성분) : 당지 대비○할 감소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현황주	

주 : 일괄표시란 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입수 방법을 기재함

예10

농림수산성新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특별재배 쌀	
절감대상 농약 ; ○○지역대비○할 감소	
화학비료(질소성분) : ○○지역대비○할 감소	
재배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확인책임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정미확인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 □□ - ▽▽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현황주	

주 : 일괄표시란 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입수 방법을 기재함

(주) 수입품에서는,  
 수입업자 ○○○○  
 주소  
 ○○현○○정△△△  
 연락처 Tel  
 □□-□□-□□

를 일괄표시의 란 내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농산물 등에 관한 해설, 표시내용의 설명, 특별한 농법·자재의 명칭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괄표시의 란 밖에 하도록 한다.

별지 2 절감대상 농약 사용상황의 표시 예(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하는 경우)

예 별지1의 예8~예10의 경우

절감대상 농약의 사용상황		
사용자재명	용 도	사용 횟수
○○○○○	살 균	1회
□□□□□	살 충	2회
△△△△△	제 초	1회

(주) 사용 자재명은 원칙적으로 상품명 이 아니라 주성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으 로 한다. 이하 같다.

별지 3 약식 표시 예

예1

특별재배농산물  
농 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재배기간 중 불사용  
농수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출하조합  
(기타 표시사항의 정보입수방법을 기재)

예2

특별재배농산물  
농 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지역대비 ○할 감소  
농수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농협  
(기타 표시사항의 정보입수방법을 기재)

예3

특별재배농산물  
절감대상 농약 : 재배기간 중 불사용  
화학비료(질소성분) : ○○지역대비 ○할 감소  
농수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  
(기타 표시사항의 정보입수방법을 기재)

예4

특별재배농산물  
절감대상 농약 : ○○지역대비 ○할 감소  
화학비료(질소성분) : ○○지역대비 ○할 감소  
농수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시  
○○○○  
(기타 표시사항의 정보입수방법을 기재)

별지4 간판 표시 참고양식 예

특별재배농산물 생산공장 (농림수산성 신 가이드라인에 따름)		
농장번호 ○	면적	○아르
특별재배 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재배책임자	이름 ○○ ○○	



별지5 재배계획 참고 양식 예(특별재배 토마토의 경우)

○○년 특별재배토마토 재배계획

생 산 자 명	재 배 책 임 자 명	확 인 책 임 자 명	현지확인 예정 란	수 령 확 인 란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농장확인 ○년○월○일 관리상황 확인 ○년○월○일 수확상황 확인 ○년○월○일	○년○월○일 확인책임자명 ○○ ○○ 인

농장번호 소재지	작물명 (품종)	재 배 면 적	작 업 계 획		사 용 예 정 자 재						수확까지의 특별재배 유지 기간				
			작 업 명	년 월 일	시비·흙 덮기 등			병해충·잡초방제 등							
					명 칭	사용량	사용시기	명 칭	사용량	사용시기					
○○번 ○○시 ○○○ ○○-○	토마토 (○○○)	아르 ○	전작 수확	○년	○○○	톤	○월○일					○년○월부터  ○년○개월 간			
			종료	○월○일											
			기경(耕起)	○월○일											
			파종	○월○일									○○○	kg	○월○일
			옮겨심기(定植)	○월○일									○○○	kg	○월○일
제초	○월○일	○○○	kg	○월○일											
			수확	○월○일							예상수확량 ○○○kg 9○○kg/10a				
											예상출하량 ○○○kg 9○○kg/10a				

(주) 생산농장의 번호를 기재한 「생산농장 위치도」를 첨부할 것

별지6 재배관리기록 참고양식 예(특별재배 토마토의 경우)

○○년 특별재배토마토 재배관리 기록

생 산 자 명	재 배 책 임 자 명	확 인 책 임 자 명	현지확인 예정 란	수 령 확 인 란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농장확인 ○년○월○일 관리상황 확인 ○년○월○일 수확상황 확인 ○년○월○일	○년○월○일 확인책임자명 ○○ ○○ 인

농장번호 소재지	작물명 (품종)	재 배 면 적	작 업 실 적		사 용 예 정 자 재						수확까지의 특별재배 유지 기간	
			작 업 명	년 월 일	시비·흙 덮기 등			병해충·잡초방제 등				
					명 칭	사용량	사용시기	명 칭	사용량	사용시기		
○○번 ○○시 ○○○ ○○-○	토마토 (○○○)	아르 ○	전작 수확 종료 기경(耕起)	○년 ○월○일 ○월○일	○○○	톤	○월○일					○년○월부터 ○년○개월 간
			파종	○월○일	○○○	kg	○월○일					
			옮겨심기(定植)	○월○일	○○○	kg	○월○일					수확량 ○○○kg 9○○kg/10a)
			제초	○월○일	○○○	kg	○월○일					출하량 ○○○kg 9○○kg/10a)
			수확	○월○일								

주) 필요에 따라 사용 자재의 란을 만들.

별지7 출하기록 참고양식 예(특별재배 토마토의 경우)

○○년 특별재배토마토 재배관리 기록

생 산 자 명	재 배 책 임 자 명	확 인 책 임 자 명	현지확인 예정란	수 령 확 인 란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주소 ○○시 ○○-○ 성명 ○○ ○○ Tel ○○-○○○○○	농장확인 ○년○월○일 관리상황 확인 ○년○월○일 수확상황 확인 ○년○월○일	○년○월○일 확인책임자명 ○○ ○○ 인

수확 면적	출하 년월일	출 하 형 태 별 출 하 량							출 하 처	출하량 합계 (kg) ①+②+③	수 확 량 (kg)
		날개(kg) ①	묶음(kg) ②	상자(kg) ③	규격별 수량(상자)						
					L	M	S	계			
a	○월○일	○○	○○	○○	○	○	○	○○	○○○○	○○○	○○○
	○월○일	○○	○○	○○	○	○	○	○○	○○○○	○○○	○○○

별지8 특별재배 쌀 수불대장 참고 양식 예

○년 특별재배 쌀 수불대장

(단위 : kg, 개수)

도정 등 시설명						정미책임자 명							
주소 ○○시○○-○						주소 ○○시○○-○							
이름 ○○ ○○						이름 ○○ ○○							
Tel ○○-○○○○						Tel ○○-○○○○							
재배책임자 명						확인책임자 명							
주소 ○○시○○-○						주소 ○○시○○-○							
이름 ○○ ○○						이름 ○○ ○○							
Tel ○○-○○○○						Tel ○○-○○○○							
수입업자 명						정미 확인란							
주소 ○○시○○-○						○년○월○일 정미확인자 명 ○○ ○○ 인							
이름 ○○ ○○													
Tel ○○-○○○○													
산지						품종			산년				
연월일	검사 등급	현미 재고 량 kg	현미 매입 량 kg	현미 사 용 량 kg	정미 생 산 량 kg	유 보 율 %	정미 생산수량 포장 단량별 내역						
							15kg	10kg	5kg	3kg	2kg	1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무농약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무농약농수산물등과 무농약가공식품(무농약농수산물등, 유기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무농약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를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에”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을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4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5조 중 “유기식품등 또는”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6조제6항**”을 각각 “**제26조제8항**”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만 해당),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식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을 “(무농약식품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을 “무농약식품의 인증대상과 무농약식품의 생산, 제조·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을 “무농약식품을 생산, 제조·가공”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을 “무농약식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각각 “무농약식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식품””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식품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식품”으로, “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를 “이하 “무농약식품표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식품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식품표시””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4조제5항”을 각각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무농약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무농약농수산물등과 무농약가공식품(무농약농수산물등, 유기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u></p>
<p>5.·6. (생략)</p> <p>7. “허용물질”이란 <u>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u></p> <p>8. (생략)</p> <p>9. “사업자”란 <u>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u></p>	<p>5.·6. (현행과 같음)</p> <p>7. -----</p> <p><u>무농약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u>-----</p> <p>-----</p> <p>-----</p> <p>-----</p> <p>-----.</p> <p>8. (현행과 같음)</p> <p>9. -----</p> <p><u>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u> -----</p>

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에 ---  
-----  
-----  
-----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 ----  
-----  
-.

② -----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식품-----  
-----.

제4조(사업자의 책무) -----  
-----  
-----  
-----  
-----  
-----  
-----

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  
-----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  
-----  
-----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또는 -----  
-----  
-----  
-----  
-----  
-----  
-----  
-----  
-----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유  
기식품등, 무농약식품 -----  
-----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

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 설>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생략)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 -----  
-----  
-----  
-----  
-----  
-----  
-----  
-----  
-----  
-----  
-----  
-----

1. ----- 유기식품등, 무농약식품 -----  
-----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  
-----  
-----  
-----  
-----  
-----  
-----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략)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  
-----  
-----  
----- 신고하여야 하  
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⑧ ----- 제7항-----  
-----  
-----  
-----  
-----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생략)

<신 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  
-----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26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생략)

② ~ ④ (생략)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지,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8항-----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  
-----  
-----  
----- 제26조제8항-----  
-----  
-----  
-----.

② -----  
-----  
-----  
-----  
-----



③·④ (생략)

<신설>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무농약식품의 인증  
 제34조(무농약식품의 인증 등) ① -----  
 ----- 무농약식품-----  
 --.  
 ② -----  
 -- 무농약식품의 인증대상과 무농약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  
 -----  
 -----.  
 ③ 무농약식품을 생산, 제조·가공 ----- 무농약식품의  
 -----



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무농약식품  
을 -----  
-----  
-----  
-----.

④ -----  
-----  
-----  
-----  
-----  
-----  
-----.

----- “무농약식품”  
-----.

⑤ 무농약식품의 -----  
-----  
-----  
-----  
-----  
-----.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 “무농약식품”-----.

제35조(무농약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  
-----  
무농약식품의 -----  
-----  
----- 무농약식품  
의 -----  
-.

② -----  
-----  
-----  
-----  
-----  
-----  
-----  
-----  
----- “무농약식품”-----.

제36조(무농약식품의 표시기준 등) ①이하 “무농약식품표시”라 한다 -----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식품-----  
-----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 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푹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 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  
-----  
-----  
-----  
-----

② 무농약식품의 -----  
-----  
-----  
-----  
-----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폐업)  
(생 략)

<신 설>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폐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  
-----

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생략)

② ~ ④ (생략)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7항-----  
-----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  
-----  
-----  
-----  
---- 제44조제7항-----  
-----  
-----  
-----  
-----.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신설>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  
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

2. 제44조제7항-----  
-----

3. (현행과 같음)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의 장  
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제56조(수수료) ① -----  
-----  
-----

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  
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  
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부록 2.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조사 결과

### 1. 유통실태 조사 대상 및 방법

8개 유통점(이마트, 홈플러스, 한 살림, 초록마을, 아이쿱 생협, 두레 생협, 올가, 헬로네이처)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제품 별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행했다. 각 온라인 매장에서 ‘무농약’, ‘무항생제’라는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가공식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 2. 조사 결과 요약

조사에 있어서 제품 원료는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원료만의 함량과 무농약 이상의 원료의 함량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친환경 가공식품은 8개 유통업체에서 총 250여 개로 조사되었으나 그 중 중량만 다른 제품, 같은 제품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 같이 판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83개의 제품이 조사되었다.

183개의 제품에서 무농약 및 무항생제 원료의 함량만을 조사하였을 때는 59개의 제품이 100%, 22개 제품이 95%이상 100% 미만, 34개의 제품이 70%이상 95%미만, 37개의 제품이 50%이상 70%미만이며 29개 제품이 50% 미만의 원료를 함유하였다. 이때 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4개가 있어 이는 총합의 개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무농약 및 무항생제 원료 함량에 따른 가공식품 개수

함량	100%	95%이상 100%미만	70%이상 95%미만	50%이상 70%미만	50%미만
개수	59	22	34	37	29
백분율(%)	32.6	12.2	18.8	20.4	16
<b>총합</b>					<b>181</b>

이때 총 개수가 181개로 183개와 차이 나는 것은 ‘무농약’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결과에 나오는 제품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농약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가공식품이 2개 존재했기 때문이다.

표 2. 무농약 이상의 원료 함량에 따른 가공식품 개수

함량	100%	95%이상 100%미만	70%이상 95%미만	50%이상 70%미만	50%미만
개수	63	27	42	37	14
백분율(%)	34.4	14.8	23	20.2	7.7
<b>총합</b>					<b>183</b>

또한 실제로 유통되는 무농약 및 무항생제 가공식품은 무농약 및 무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원료가 유기농 원료이거나 국내산 원료이었다. 따라서 무농약 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을 무농약 농축산물의 원료 함량만을 따져 95%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45.1%의 가공식품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무농약 이상의 원료를 인증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49.2%의 가공식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3. 인증기준의 변화에 따른 변화율

함량	100%	95%이상 100%미만	70%이상 95%미만	50%이상 70%미만	50%미만
무농약 및 무항생제 원료(개)	59	22	34	37	29
무농약 이상의 원료(개)	63	27	42	37	14
변화율(%)	<b>+6.78</b>	<b>+22.73</b>	<b>+23.53</b>	0	<b>-51.72</b>
<b>총합</b>					<b>183</b>

다음의 표 4는 조사한 가공식품 제품명 및 제조업체, 그 함량을 나타낸 것이며 그 함량에 있어서는 무농약 이상의 원료 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 시장 조사 목록 (빨간 글씨의 경우 함량 계산이 부정확하다)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다류	무농약 매실로 담긴 항아리 숙성 매실청	그리올푸드 영농조합법 인	총합	100	무농약 매실(전남 구례) 50%, 유기농 설탕 50%
두레생협	다류	무농약유자로 만든 유자차	농업회사법 인(주)농부누 리	유자	100	유자50%(국내산) / 유기농설탕50%(수입산)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차	초록원	오미자추 출액	100	무농약오미자추출액(고형분2%이상, 국내산)51%, 유기농설탕49%
이마트	과자류	맘스케어 무농약쌀로 만든 까까	(주)프로엠	총합	100	무농약현미(국내산)80%, 무농약백미(국내산)16%, 유기농참쌀(국내산)2%, 유기농보리쌀(국내산)1%, 유기농수수(국내산)1%
이마트	서류가공 품	무농약 고구마로 만든 쫄득한 군고구마	(주)매홍	고구마	100	
이마트	기타식품 류	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동결 건조 사과칩	에이뷰	사과	100	
이마트	기타식품 류	무농약 상주곶감	홍살림푸드 급식센터	감	100	
이마트	곡류가공 품	국산무농약밭아들깨가 루	청오건강	들깨	100	
이마트	곡류가공 품	무농약쌀로 만든 바로먹는 누룽지	성찬식품	총합	100	무농약쌀90%(국산), 무농약현미10%(국산)
이마트	음료류	자연원 무농약 양과즙	(주)웰팜	양과즙	100	
이마트	곡류가공 품	무농약 그린 누룽지	(주)바른길태 양제과	쌀	100	
이마트	과자류	맘스케어 무농약쌀로 만든 까까(현미+백미)	(주)프로엠	총합	100	
이마트	과자류	맘스케어 무농약쌀로 만든 까까(햇넙과자)	(주)프로엠	총합	100	
이마트	다류	[쌍계명차]김동곤 명인이 만든 국화차	농업회사법 인 쌍계명차	국화	100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초록마을	음료류	무농약 감귤로 만든 감귤주스	(주)웰팜	감귤	100	감귤(제주산, 무농약) 100%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도라지청	거제사슴영 농조합법인	도라지농 축액	100	도라지농축액(국내산, 3년근이상 무농약, 고형분 60%이상)100%
초록마을	두부류	국내산 무농약 콩으로 만든 보글이 두부	안동농협더 햇식품사업 소	대두	100	대두(국내산, 무농약)100%, 혼합제제(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식물성유 지, 올리브유)
초록마을	두부류	국내산 무농약 콩으로 만든 부침이 두부	안동농협더 햇식품사업 소	대두	100	대두(국내산, 무농약)100%, 혼합제제(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식물성유 지, 올리브유)
초록마을	두부류	국내산 무농약 콩으로 만든 연한 두부	안동농협더 햇식품사업 소	대두	100	대두(국내산, 무농약)100%, 응고제(글루코노델타락톤, 염화마그네슘)
초록마을	두부류	국내산 무농약 콩으로 만든 순한 두부	안동농협더 햇식품사업 소	대두	100	대두(국내산, 무농약)100%, 응고제(글루코노델타락톤)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차	다익인터내 셔널	도라지차	100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쪽으로 만든 쪽차	다익인터내 셔널	쪽차	100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수국으로 만든 이슬차	다익인터내 셔널	수국잎차	100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등굴레로 만든 등굴레차	다익인터내 셔널	등굴레차	100	
초록마을	두류가공 품	무농약 콩으로 만든 콩비지	안동농협더 햇식품사업 소	대두	100	대두100%
아이킵생 협	음료류	무농약 포도로 만든 포도즙	해가들농업 회사법인	포도	100	
아이킵생 협	음료류	홍삼액	거제사슴영 농조합법인	홍삼추출 액	100	홍삼추출액100%[홍삼성분2.1mg/g, 고형분1.6%/6년근홍삼(국내산)]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두레생협	두부류	무농약콩두부(부침용)	콩세알	대두	100	대두(무농약국산콩)100%, 천연응고제(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두레생협	두부류	무농약콩두부(찌개용)	콩세알	대두	100	대두(무농약국산콩)100%, 천연응고제(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홈플러스	다류	[제임스티스폰] 프리미엄 우리차(유기농국화차)	다익인터내 셔널	국화차	100	
홈플러스	다류	[제임스티스폰] 프리미엄 우리차(무농약우영차)	다익인터내 셔널	우영차	100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오곡스낵1	(주)프로엠	총합	100	무농약현미(국내산)89%, 무농약백미(국내산)5%, 무농약참쌀(국내산)2%, 무농약보리(국내산)2%, 무농약차조(국내산)2%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오곡스낵2	(주)프로엠	총합	100	
헬로네이 처	기타식품 류	팍콘옥수수	우리농촌살 리기공동네 트워크	옥수수	100	무농약 옥수수 100%(국내산)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무항생제 풀먹은 우유	한들코리아	원유	100	친환경 무항생원유100%(제주도 다인목장산)
올가	장류	메주	농업회사법 인 (주) 순창성가정 식품	백태(흰콩)	100	백태(흰콩) 100%
올가	다류	볶은도라지차	동우당제약 (주)	도라지	100	무농약 인증 도라지 100%(국산)
올가	다류	작두콩차	동우당제약 (주)	작두콩열 매	100	
올가	두류가공 품	볶음땅콩	청오건강	땅콩	100	
올가	음료류	감귤주스	(주)웰팜	감귤	100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초록마을, 홈플러스	음료류	6년근무농약홍삼순액 진100	거제사슴영 농조합법인	홍삼	100	6년근 홍삼추출액[(무농약, 국내산), 고형분 1.6% 이상, 홍삼성분 2.1mL/g 이상 함유] 100%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무항생제 풀먹은 우유	한들코리아	원유	100	친환경 무항생원유100%(제주도 다인목장산)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한우사골곰탕	고삼농협	한우사골 뼈추출액	100	한우사골뼈추출액{고형분3.5%,무항생제한우뼈[사골51%,모듬뼈 49%/국산]19.56%,정제수}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사골곰탕	고삼농협안 성마춤푸드 센터	한우사골 뼈추출액	100	한우사골뼈추출액{고형분3.5%,무항생제한우뼈[사골40%,모듬뼈40%, 꼬리반골20%/국산]19.6%,정제수}100%
이마트	식용유지 류	우리농가수 무농약 들기름	새싹종합식 품(주)	들깨	100	들깨(국산)100%
이마트	곡류가공 품	무농약 귀리를 사용한 볶은 귀리가루	우수농산식 품	귀리	100	국산 무농약 귀리 100%
이마트	곡류가공 품	무농약 찹쌀가루	청오건강	찹쌀	100	무농약 찹쌀 100%(국산)
이마트	기타식품 류	무농약 우리밀 통밀가루	광의면 특품사업단 우리밀 가공공장	밀	100	무농약밀100%(국내산)
이마트	곡류가공 품	국산 12곡 무농약 미숫가루	청오건강	총합	100	유기농현미30%(국산), 무농약보리30%(국산), 무농약백태11%(대두,국산), 무농약 찹쌀현미10%(국산), 유기농옥수수8%(국산), 무농약약콩2%(대두, 국산), 무농약기장2%(국산), 유기농수수2%(국산), 유기농흑미2%(국산), 무농약검정콩1%(대두,국산), 유기농적두1%(국산), 유기농밀1%(국산)
이마트	식용유지 류	우리농가수 청결참기름	새싹종합식 품(주)	참깨	100	참깨(국산)100%
초록마을	음료류	무농약포도로만든포도 즙	한울식품영 농조합법인	포도	100	포도(무농약,국내산)100%
헬로네이 처	곡류가공 품	무농약 중기 2단계 쌀가루	아이보리	쌀	100	무농약백미(올해생산)100%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헬로네이처	곡류가공품	무농약 중기 1단계 쌀가루	아이보리	쌀	100	무농약백미(올해생산)100%
헬로네이처	곡류가공품	초기 쌀가루	아이보리	쌀	100	무농약백미(올해생산)100%
헬로네이처	곡류가공품	혼합15곡	흙누리조합 법인	총합	100	발아현미9%, 찰발아현미6%,찰발아흑미7%,잡쌀25%,찰보리18%,흑미7%,차수수3%, 적두3%,기장1%,청차조3%,약콩3%,간혹두1%,서리태2%,찰현미6%,백 태6%
헬로네이처	곡류가공품	청오건강의 무농약 발아 들깨가루	청오건강	들깨가루	100	들깨100%
헬로네이처	곡류가공품	청오건강의 무농약 찰쌀가루	청오건강	찰쌀	100	무농약 찰쌀 100%(국산)
올가	곡류가공품	간 들깨가루	청오건강	들깨	100	
올가	곡류가공품	울금가루	동우당제약 (주)	울금	100	울금가루(무농약인증 울금.국산100%)
행복중심 생협	곡류가공품	국산 무농약 마가루	청오건강	마	100	마100%(국내산/무농약)
행복중심 생협	기타식품류	무농약100%백밀가루	농업회사법 인(주)네니아	밀가루	100	백밀가루(무농약/국산)100%
이마트	기타식품류	무농약 우리밀 백밀가루	광의면 특품사업단 우리밀 가공공장	밀	100	무농약 밀100%(국내산)
이마트	조미식품	무농약 냉동다진생강	농업회사법 인 웰팜넷(주)	생강	100	국내산생강100%
아이쿱생협	음료류	사과즙	청암농산(법 인)	사과즙	99.9	사과즙 99.9%,비타민C 0.1%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웰빙현미과자	(주)바른길	현미	99.8	무농약현미(국내산)99.8%,효소처리스테비아(식물성감미료),소금(정 제염,국내산)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웰빙 오곡과자	(주)바른길	총합	99.8	무농약현미(국내산)88.8%,무농약백미(국내산)2%,무농약참쌀(국내산)1%,무농약흑미(국내산)5%,무농약보리(국내산)3%
이마트, 행복중심 생협	축산가공 품	[착한들]무항생제 한우 사골곰탕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한우뼈추 출액	99.8	무항생제 한우뼈 추출액 99.8%[한우사골(국산)9.78%,한우모듬뼈(국산)9.78%,정제수]가용성고 형분(3.5%),천일염(국산)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새콤한 친환경발효유	또나따목장	원유	99.8	국내산원유(99.8%), 유산균(0.2%)
행복중심 생협	축산가공 품	한우사골곰탕	안성마춤푸 드센터	한우뼈추 출액	99.8	국내산 무항생제 한우뼈추출액 99.8%[한우사골9.78%, 한우모듬뼈9.78%, 정제수], 천일염0.2%
아이쿱생 협	유	떠먹는 달콤 요거트	팜프레쉬	우유	99	우유96%(국내/무항생제축산물 제50-6-64호),유기농설탕3%,유산균배양액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스트링치즈	또나따목장	원유	99	국내산원유(99%),소금,렌넷,유산균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수제 플레인 크림치즈	영준목장	원유	98.9	원유98.9%(국내산 저온살균 원유85%),국내산 우유크림(15%),구연산,레닌,구운소금,잔탄검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수제 스트링치즈	영준목장	원유	98.41	원유98.41%(국산/제72-5-148호 무항생제축산물),유산균1.57%(이탈리아산),레닌(뉴질랜드산)0.02%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수제 할로우미 치즈	영준목장	원유	98.41	원유98.41%(국내산),스타터1.57%,레닌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옛맛 육포	(주)항진축산	소고기	98.39	무항생제 쇠고기(한우/국산)92.64%,유기갈색설탕5.44%,천일염(국산),유기농양 조간장0.28%,마늘분말,생강추출물분말,양파분말,후추추출물분말,유 기매실농축액(고형분65%)0.03%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한우 육포	(주)항진축산	소고기	98.39	무항생제 쇠고기(한우/국산)92.64%,유기갈색설탕5.44%,천일염(국산),유기농양 조간장0.28%,마늘분말,생강추출물분말,양파분말,후추추출물분말,유 기매실농축액(고형분65%)0.03%
이마트, 아이쿱 생협	축산가공 품	무농약 인증 사과로 만든 사과요거트	에이뷰	사과	98.163	사과(무농약:국산)77%,유기농플레인요거트15.8%[유기농원유(국산)95 %,유기농설탕3.5%,프락토올리고당,유산균],유기농포도당5.6%,펙틴, 비타민c
이마트	과자류	프로엠 맘스케어 유기농 까까 딸기	(주)프로엠	유기농원 료	98.05	유기농현미(국내산)71.75%,유기농백미(국내산)4%,유기농찹쌀(국내산 )1.6%,유기농보리(국내산)1.6%,유기농차조(국내산)1.6%,유기농딸기칩 (국내산)7%,유기농바나나칩(바나나:필리핀산)5%,유기농사과농축액( 미국산/70Brix)5.5%,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1.3%,비타민C(영구 산)0.5%,해조칼슘(영국산)0.1%,혼합뉴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 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 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0.05%
헬로네이 쳐	축산가공 품	닭가슴살 참나무 훈제	자연에벗	닭고기	97.743	닭가슴살(국내산)97.743%ODJ시즈닝[양파분(수입산),카레분(수입산), 간장분말(대두,밀),탈지분유(우유)],수퍼유산균발효액,토판염,미네랄
한살림, 두레생협	기타식품 류	부침가루	(주)우리밀	밀가루	97.45	무농약밀가루(국산/무농약) 97.15%, 감자가루(국산) 1.5%, 볶은소금(국산) 0.65%, 쌀가루 (국산) 0.4%, 유기농설탕 0.3%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이마트	축산가공 품	[다향오리]무항생제 훈제오리	(주)팜덕	오리정육	97.1	오리고기(국내산)97.1%,정제수,훈제오리시즈닝-FD[포도당,카제인나트륨(우유),정제소금(국내산),혼합제제(산도조절제),비프분말2호{비프분말2호베이스(쇠고기:호주산,정제소금:국내산)},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혼합제제(젖산나트륨,초산나트륨,이산화규소),정제소금(국내산),백설탕,폴리인산나트륨(산도조절제),비타민C,햇팜믹스,비프후레바(대두),천연색소(락색소),아질산나트륨(발색제)
헬로네이 처	축산가공 품	닭가슴살 허브	자연애벗	닭고기	97	닭가슴살(국내산)97%,허브로즈마리0.09%,내추럴치킨시즈닝[텍스트린,카레분말(밀,우유,땅콩),정제염,전란분(계란,대두분말)],수퍼유산균발효액,함수결정포도당
이마트	축산가공 품	[CJ프레시웨이]이츠웰 오리훈제	(주)다영푸드	오리정육	96.84	오리고기(국산) 96.84%,복합스파이스DY-01[백설탕,정제소금(국산),난백분말(계란:프랑스산),폴리인산나트륨,분말마늘,피로인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발색제)],코치닐추출색소,산도조절제
아이쿱생 협	축산가공 품	튼튼 닭가슴살 훈제	(주)맘씨	닭고기	96.6	닭고기(닭가슴살:국산)96.6%,천일염(국산),자연드림치킨염지제1.2%[구운소금(천일염/국산),분말간장(대두/국산),옥수수전분(옥수수/국산),유기농설탕9%,마늘분말],마늘분말(마늘/국산),생강분말(생강/국산)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초록마을	축산가공 품	무항생제 한우로 만든 한우육포	청미식품	쇠고기	95.27	쇠고기(무항생제,한우:국내산)85.84%, 유기농설탕6.86%, 유기농조청2.57%, 우리밀진간장[우리밀(밀:국내산),정제염(국내산),대두(국내산)], 매실액(매실:국내산), 천일염(국내산), 복합조미식품(한우참맛), 효모추출물(아로마일드), 유산균발효분말S, 마늘분말, 양파분말, 생강분말
이마트	축산가공 품	친환경 자연주의 무항생제 돈육 햄	(주)하림	돼지고기	95.19	돼지고기(국내산)95.19%,정제수,정제소금(국내산)1.9%,백설탕,비타민 C,전분(밀0,인산염 명신No5(산도조절제),가라기난
이마트	축산가공 품	친환경 자연주의 무항생제 돈육 햄	(주)하림	돼지고기	95.19	돼지고기(국내산)95.19%,정제수,정제소금(국내산)1.9%,백설탕,비타민 C,전분(밀),인산염 명신No5(산도조절제),가라기난
이마트	가공식품	무농약 마늘로 만든 흑마늘즙	이마트	발효흑마 늘추출물	95	무농약발효흑마늘추출물(고형분12%,국산)95%, <b>유기농아가베시럽(멕시코산),유기농배농축액</b>
이마트	조미식품	중가집 무농약 국산 다진마늘	대상(주)	마늘	98.7	마늘98.7%(국산),구연산,식염
이마트	곡류가공 품	배가미강 8곡 미숫가루	한국미강연 합유통(주)	총합	96	쌀겨[미강(무농약)]50%,현미[무농약]15%,멥쌀[무농약]10%,찰보리[무 농약]7%,백태[무농약]7%,찰현미[무농약]5%,쌀눈[국내산(배아)]3%,검 정콩[서리태(무농약)]2%,해조칼슘[식용해조(아일랜드)]0.97%,비타민D 3분말0.03%
헬로네이 쳐	기타식품 류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빵가루	우리밀	밀가루	93.98	무농약밀가루93.98%(밀/국산),백설탕,미강유(국산),효모,천일염(국산)
올가	축산가공 품	그린팜	성연식품(주)	돼지고기	93.77	돼지고기93.77%(국산),마늘(국산),프락토올리고당,천일염(국산,마하 탕),고구마전분(국산),인산염,후추분말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다류	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꿀유자차	초록원	유자	92	당침유자[무농약유자(국산)50%,유기농설탕50%]92%,벌꿀(국산)5%,유기농설탕2.3%,비타민C,무수구연산,카라기난
헬로네이 쳐	축산가공 품	수제 딸기 크림치즈	영준목장	원유	92	원유92% (국내산 저온살균 원유85%, 국내산 우유크림 15%), 딸기(국내산 딸기, 설탕), 구연산,레닌,구운소금,잔탄검
이마트	과자류	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현미로 만든 현미 쌀 스틱 과자	(주)바른길	현미	91.9	무농약현미쌀(국내산)86%,유기농설탕5.9%,쌀조청(쌀,엿기름국내산), 젤라틴(돼지고기),마아가린(식물성유지,옥수수유)
이마트	과자류	친환경 자연주의 무농약 보리로 만든 보리 쌀스틱 과자	(주)바른길	총합	91.9	무농약보리쌀(국내산)52%,무농약현미쌀(국내산)34%,유기농설탕5.9%,쌀조청(쌀,엿기름국내산),젤라틴(돼지고기),마아가린(식물성유지,옥수수유)
이마트	축산가공 품	[e-제주푸드]프리미엄 제주육포	명일축산영 농조합	돼지고기	91.82	돼지고기(무항생제 제주산)91.82%,포크저키시즈닝[정백당,포도당,비프엑기스분말-d(소 고기:호주산),하이미-1(향미증진제),mfoo알-1시즈닝,대두,밀]4.6%,갈 색설탕,D-소르비톨액,엔피에스[정제염95%,아질산나트륨(발색제)5%] ,매실엑기스[매실과즙50%:국내산],산도조절제,표고버섯엑기스(국내 산),소르빈산칼륨(합성보존료)
한살림, 두레생협	기타식품 류	튀김가루	(주)우리밀	우리밀	91.72	우리밀 91%(국산/무농약), 감자전분3.94%(국산), 볶은소금(국산), 참쌀가루(국산: 참쌀100%), 중탄산나트륨, 제일인산칼슘, 치차분말(치차열매,국산), 유기농설탕 0.7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맘스케어 무농약 쌀로 만든 인절미 스낵	(주)한일제과	백미	90.5188	무농약백미(맵쌀/국내산)53%, 무농약백태(국내산)13.6%, 유기농팜유(식물성유지100%/콜롬비아산)18.75%, 인절미씨즈닝-엔아이[유기농설탕35.5%(브라질산), 볶음콩가루32.3%(대두/미국산), 탈지분유12.5%(우유/미국산), 포도당10%, 유당5%(우유/미국산), 천일염, 옥수수유]14.56%
이마트	두류가공 품	허니버터 무농약 볶은 약콩	비엘에프씨	약콩	90.15	무농약약콩(대두, 국산)90.15%, 사양별꿀3.6%(사양별꿀(국산)90%, 잡화꿀(국산)10%), 프랄토올리고당, 허니버터맛씨즈닝0107(아카시아별꿀(국내산):0.045%, 가공버터(호주산):1.6%)(결정과당, 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 유청분말 우유:네덜란드산], 유청분말(수입산, 국내산), 정제소금, 크림버터혼합분말(유당, 유크림, 가공버터,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아카시아별꿀분말}, 허니버터향sh14-1184(합성착향료), 효소처리스테비아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오리 불고기 (간장맛)	농업회사법 인 (주) 다솔	오리육	89	무항생제 오리고기(국산)80%, 갈비양념{유기농 간장[대두(미국산), 소맥(아르헨티나산)]27%, 유기농설탕18%, 프락토올 리고당, 배푸레(배, 국산), 양파, 어간장(고등어, 국산)1%}20%
올가	과자류	콘팜칩	해오름식품	옥수수	88.41	무농약옥수수(국산)88.41%, 해바라기유(수입산), 황토알카리소금, 유기 현미분말 0.88%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홈플러스	축산가공 품	친환경훈제오리슬라이 스	(주)참프레	오리정육	88.15	오리육(국산)88.15%,참마베큐소스 [ 산들참베이스-에이(정제소금/국산),산들참베이스-비(양파/국산),산들믹스 { 산믹스(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간장 ],마리네이드브라인믹스 { 폴리인산나트륨,말토덱스트린,에리소르빈산나트륨(산화방지제),마리믹스-2 메타인산나트륨,아질산나트륨(발색제) },숯불갈비맛양념 [ 간장 { 파리옥시안식향산에틸(합성보존료) },함수결정포도당 외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건강한 훈제오리	(주)팜덕	오리육	87.3	무항생제 오리육(국산)87.3%,과일바베큐소스[간장(대두,국산),유기설탕25%,양파(국산),마늘,무화과즙(국산)3.5%,천일염,배푸레[배(국산)99.95%]1.5%,키위푸레(키위,국산)1.5%,농축사과과실즙(사과,국산)1%,복분자원액(국산)0.5%,매실엑기스,이스트엑기스분말,흰후추분말,너트맥분말,정제수]12%,내추럴향신믹스(셀러리분말,양파분말,검은후추분말)
헬로네이 처	서류가공 품	생 호박고구마칩	명성식품	호박고구 마	87	무농약호박고구마(국내산)87%,팜올레인유(말레이시아산),프락토올리고당,백설탕
이마트	다류	무농약 순꿀한라봉	초록원	한라봉	86	한라봉당절임[무농약한라봉(국산)50%,백설탕50%]86%,별꿀(국산)05%,백설탕,구연산,카라기난,비타민C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스모크 김밥햄	전북대 햄 (전북대학교 학교기업)	돼지고기	85.89	무항생제 돼지고기(국내산)85.89%,농추대두단백(대두/미국산),물엿,양파(국내산),대파(국내산),우리밀진간장(밀),난백분말(계란),정제염,흑설탕,마늘(국내산),폴리인산나트륨,백후추,참기름(국내산),생강분말,자몽중추출물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화이트 비엔나	전북대 햄(전북대학 교 학교기업)	돼지고기	84.77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84.77%,우유9.98%,정제염,생과슬리,유기농설탕0.8%, 농축대두단백(대두),난백분말(계란),마늘분말,너트맥아롬,폴리인산나 트륨,백후추,자몽종자추출물,생강분말,비타민C,콜라겐케이싱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무항생제 구워먹는햄	전북대 햄(전북대학 교 학교기업)	돼지고기	83.26	무항생제돼지고기(국산)83.26%,생양파(국산),생대파,농축대두단백( 대두),물엿,난백분말(계란),양조간장(밀),후설탕,정제염,생마늘,폴리인 산나트륨,참기름,백후추분말,자몽종자추출물,생강가루,올스파이스아 롬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무항생제 화이트부어스트 햄	전북대 햄(전북대학 교 학교기업)	돼지고기	82.56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82.56%,우유(국산)9.71%,계란,정제염,생양파,파슬리,유 기농설탕0.78%,농축대두단백(대두),난백분말,마늘가루,너트맥아롬, 폴리인산나트륨,백후추분말,메이스그라운드,자몽종자추출물,생강가 루,비타민C
헬로네이 쳐	축산가공 품	수제돈가스	일오삼식품	돼지고기	82	돼지고기(무항생제-국내산)82%,우리밀가루(우리밀,포도당,이스트,이 스트푸드,식염)4%,마늘(국산),양파(국산),계란(국산),소금,후추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오리 불고기 (고추장맛)	농업회사법 인 (주) 다솔	오리육	82	무항생제 오리고기(국산)80%,고추장불고기양념[고추장(고춧가루,국산)38%,프 락토올리고당,유기농설탕10%,사과퓨레(사과,국산),고춧가루]20%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통밀로 만든 통밀빵	(주)새롬식품	통밀	81.26	통밀(무농약,국산)69.23%,코팅액[유기농설탕(아르헨티나산)39.1%,쌀 조청{백미(국산),맥아,효소}연유{원유(우유),백설탕,유당(우유),말트덱 스트린},버터(우유,뉴질랜드산),레시틴(대두),태움.용융소금(국산)]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축산가공 품	[햇살푸드]무항생제 훈제 닭가슴살 소시지	(주)햇살푸드 시스템	닭고기	80.6	닭가슴살(국내산/무항생제닭고기)80.6%,양파(국내산),당근(중국산,베 트남산),유장분말,케이엠유-2,함수결정포도당,대두단백,탈지대두,콜 라겐케이싱,미담다시마장,정제염,폴리인산나트륨9산도조절제),코트 플티에이피(산도조절제)비타민C
이마트	곡류가공 품	무농약 우리쌀로 만든 누룽지 스낵	성찬식품	쌀	80	쌀(무농약/국산)74%,유기농설탕6%,올리고당10%,식물성유지(채종유: 캐나다)10%
초록마을	축산가공 품	무항생제 오리로 만든 오리불고기	다모아영농 조합법인	오리정육	80	오리정육(무항생제,국내산)80%,고추오리불고기양념(물엿, 양파(국내 산),고춧가루(국내산),양조간장(밀,대두),마늘(국내산),고추씨분말(국 내산),천일염(국내산),흑후추)20%
이마트	과자류	프로엠 착한쿠키 그레인칩 크랜베리건포도	(주)프로엠	유기농원 료	79.4	유기농밀가루[유기농강력분86.5%,유기농중력분13.5%(터키,호주)]32. 8%,유기농우유(유기농원류100%/국산)26.7%,유기농건크랜베리(미국) 10.6%,유기농건포도(미국)9.3%,콤플릿크라프트브레드50[밀가루,해바 라기씨,호밀,아마씨,대두,밀기울,밀글루텐,건조발효반죽,정제소금,대 두기울,맥아호밀가루,맥아보리가루,맥아보리추출물,알파아밀라아제[ (비세균성)함유/독일],유기농황설탕(브라질)3.6%,버터[(무가염)우유10 0%/국산],아몬드분말9미국0,자몽종자추출물(천연첨가제),건조효모( 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맘스케어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딸기웨하스	(주)프로엠	밀가루	78.62	무농약밀가루(밀:국산)46.27%,유기농팜유(콜롬비아산)23.61%,포도당 9.62%,유기농설탕8.74%,유당4.37%,리치화이트스위트(백설탕,식물성 가공유지,유청분말,코코아버터,유당,혼합탈지분유,분말유크림,레시 틴,유화제/우유,대두)3.15%,전란액(계란)1.58%, 말기분말1.49%,전지분유(우유)0.61%,정제소금0.2%,말트엑기스0.18%, 탄산수소나트륨0.1%,천연딸기향0.08%
헬로네이 쳐	축산가공 품	냉동 닭갈비	세계치킨	닭고기	77.5	무항생제닭고기(닭다리살,국내산)70%, <b>닭갈비양념{고춧가루(국내산)4 .47%,양조간장(밀,대두-국내산)2.51%,유기농설탕2.5%,조청(쌀,국내산 )2.2%,무농약마늘(국내산),무농약매실청(매실,국내산),황토소금(국내 산,OTA미국유기농협회등록제품),강황,후추,다시마육수(무,양파,다시 마,정제수)}</b>
홈플러스	축산가공 품	[올가니카]어네스트 훈제포크 오리지널	(주)에버프레 쉬	돼지고기	76.77	무항생제돼지고기(국내산)76.77%,치아씨드(파라과이)1.68%, <b>유기농설탕</b> <b>양어간장[멸치(국내산),천일염(국내산)],양조간장[콩(국내산),밀(국내 산),천일염(국내산)],마늘(국내산),생각(국내산),후추</b>
초록마을	조미식품	무농약 토마토로 만든 케첩	농업회사법 인 예산농산(주)	토마토	76.7	토마토농축퓨레[토마토(국내산, 무농약)100%]66% (고형분합량15%), 유기농설탕 10.7%, 현미식초[정제수, 주정, 현미당화농축액(현미99%:국내산, 액화효소, 당화효소/70brix기준), 발효영양원], 정제수, 이소말토올리고당, 감자전분(국내산), 정제소금, 잔탄검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너비아니	(주)풀잎라인	돼지고기	75.59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73.49%,두부[대두(국산)100%,천일염천연응고제100(조 제해수염화마그네슘,현미유,올리브유)]6.3%양파(국산),갈비조미액,조 직대두단백,유기설탕2.1%,대파,소맥전분,냉동마늘,냉동생강,정제소 금,발효농축액,밀분해추출물,흑후추분말
초록마을	절임류	무농약도라지절편진	거제사슴영 농조합법인	도라지	75	3년근 도라지(국내산, 무농약)50%, 별꿀(국내산)25%, 유기농설탕(태국산)25%
이마트	과자류	프로엠 착한쿠키 아몬드	(주)프로엠	유기농원 료	73.3	유기농밀가루[유기농박력분95%,유기농중력분2.5%,유기농강력분2.5 (터키,호주)]36.5%,버터[(무가염)우유100%/국산],유기농우유(유기농 원유100%/국내산)3.9%,유기농황설탕(브라질)15.9%,유기농아몬드(미 국)11.5%,아몬드분말(미국)7.7%,무항생제난황액(계란/국산)5.5%,자몽 종자추출물(천연첨가물),건조효모(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마트	과자류	프로엠 착한쿠키 그린티	(주)프로엠	유기농원 료	73.1	유기농밀가루[유기농박력분96%,유기농중력분2%,유기농강력분2%(터 키,호주)]51.6%,버터[(무가염)우유100%/국산],유기농황설탕(브라질)11 ,유기농우유(유기농원유100%/국내산)6.6%,무항생제난황액(계란/국 산)2.5%,유기농녹차가루(국산)2%,자몽종자추출물(천연첨가제),효모( 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치킨너겟	(주)풀잎라인	닭고기	72.46	무항생제 닭고기(가슴살, 국산)72.02%, 옐로우배터믹스[우리밀(밀, 국산), 옥수수분말(옥수수, 수입산), 박력분, 옥수수전분, 정제소금, 탄산수소나트륨, 구아검, 치자황색소, 향신료 올레오레진류], 변성전분, 대두유(대두, 수입산), 케이준시즈닝-P, 유기설탕0.44%, 정제소금, 흰후추분말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곡물로 만든 딸기 크리스피롤	(주)한일제과	무농약7곡 가루	70.23	무농약7곡가루(무농약현미45%, 무농약백미37%, 무농약보리10%, 무농약참쌀5%, 무농약흑미1%, 무농약차조1%, 무농약수수1%/국내산)40%, 유기농식물성유지(콜롬비아산)30%, 프리믹스-에스딸기5.5%[전지분유(우유/미국산), 유당(우유/미국산), 유기농설탕(수입산)15%, 포도당, 코코넛밀크파우더(수입산), 딸기과즙분말30(딸기(국내산)과즙고형분30%]1.54%, 이스트엑시스, 천연착향료(천연딸기향), DL-사과산, 해조칼슘)가공버터(우유/호주산)
헬로네이 쳐	축산가공 품	수제 리코타 치즈	영준목장	원유	70	원유70%(국내산무항생제원유), 유청28%(국내산/90℃ 이상 살균제품), 식초1.4%, 구운소금0.6%(국내산)
이마트	음료류	무농약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즙	(주)휴럽	도라지	85	무농약도라지추출액(고형분5%, 국산)85%, 유기농아가베시럽(멕시코산), 유기농배농축액(터키산)
이마트	음료류	무농약 산수유로 만든 산수유즙	(주)휴럽	산수유	85	무농약 산수유 추출액(고형분3%, 국산)85%, 유기농아가베시럽(멕시코산), 유기농배농 축액(터키산)
이마트	음료류	무농약 헛개로 만든 헛개즙	(주)휴럽	헛개나무 추출액	85	무농약헛개나무추출액(고형분2%, 국산)85%, 유기농아가베시럽(멕시코산), 유기농배농축액(터키산)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음료류	초록원 무농약 유자액기스	초록원	유자즙	75	무농약 유자즙(국산)45%, 유기농설탕(수입산)30%, 액상과당, 별꽃(국산)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옥수수로 만든 카라멜콘	(주)새롬식품	옥수수	58.81	옥수수30.43%(국산, 무농약), 유기농설탕28.38%(아르헨티나, 쿠바), 쌀엿조청{백미(국산), 맥아효소}, 생크림(우유, 국산), 버터(우유, 국 산), 태움·용융소금(국산)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요거팜 무농약 쌀로 만든 스낵플레이인	(주)프로엠	현미	69.26	무농약현미(국내산)56%, 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9%, 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 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 유청분말/네덜란드 산/우유), 유당(미국산/우유), 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4%, 요구 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6%, 코코아버터(벨기에산)3%, 비타민C(영국 산)0.8%, 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 비 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리움)0.02%
이마트	과자류	프로엠 착한쿠키 얼그레이	(주)프로엠	유기농원 료	69	유기농밀가루[유기농박력분96%, 유기농중력분2%, 유기농강력분2%(터 키, 호주)47.8%, 버터[(무가염)우유100%/국산], 유기농우유(유기농원유 100%/국내산)6.2%, 유기농황설탕(브라질)12.2%, 무항생제난황액(계란 /국산)2.8%, 얼그레이(스리랑카/천연베르가못향)2.3%, 자몽종자추출물( 천연첨가제), 효모(효모,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올가	과자류	쌀로만든 딸기맛 스낵	(주)프로엠	현미	68.48	무농약현미(국내산)56%, 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39%,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2%,딸기분말(국내산)6%,코코아버터(벨기에산)3%,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2%,비타민C(영국산)0.8%,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립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 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 플랜타륨)0.02%
이마트	축산가공품	[아워홈]무항생제계육으로 만든 치킨너겟	(주)아워홈	닭고기	68.14	무항생제닭고기68.14%(국산),정제수,너겟배터[밀가루(밀:미국산,호주산),소맥전분(밀:리투아니아산),미분,너겟프리믹스,향신료프리믹스12],너겟프리더스트[밀가루(밀:미국산,호주산),옥수수전분(옥수수:수입산)],건빵가루,옥수수전분,카놀라유1.49%,복합시즈닝-비,두류가공품,분말양파,레몬농축과즙액,분말마늘,정제소금,백설탕,혼합제제9산도조절제)
올가	축산가공품	ORGA 즉석 삼계탕	성연식품(주)	닭고기	67.7	무항생제 닭고기(국산)60%,정제수,유기농찹쌀(국산)7.7%,수삼(국산)1.5%,대추(국산)1%,밤,황기(국산)0.4%,당귀(국산)0.3%,은행,천일염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이마트	축산가공 품	[도드람한돈]무항생제 로 만든 돈까스(등심)	(주)진푸드시 스템	돼지고기	67.3	돼지고기(등심:국산)67.30%,빵가루18.60%[소맥분9밀,수입산0,마가린 9말레이시아산),쇼트닝,이스트후드,이스트]배터믹스TJ7.05%(변성전 분,밀가루9밀:미국산,호주산),전란분말(국내산,계란),프리믹스-3,향신 료베이스2호,마늘분말향신료베이스2호,마늘분말,난백분말(계란),정 제염,알파옥수수가루,알파옥수수전분,정백당,구아검,카놀라유}정제 수7.05%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쌀로 만든 안심쿠키 단호박	(주)프로엠	쌀가루	65.1	무농약쌀가루(쌀/국산)34.7%,버터[(무가염)우유100%/국산,호주],유기 농우유(유기농원유100%/국산)13.8%,유기농황설탕(브라질)8.3%, <b>무항 생제전란액(계란100%/국산)</b> ,요구르트분말(발효유분말),히게이아5종 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 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렛,락토바실러스플랜티럼),자몽추출물(천 면첨가제),건조효모(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유기농사과농축 액8.3%,단호박분말(국산100%)5.5%
올가	축산가공 품	ORGA 함박스테이크	(주)진영식품	돼지고기	64.79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64.79%,두부[대두(국산)100%,천일염천연응고제100(조 제해수염화마그네슘,현미유,올리브유)]9.84%,대파(국산)3.28%,양파( 국산)3.28%,당근(국산)3.28%,불고기양념P(밀),빵가루,백설탕,소맥전 분,정제수,비타셀WF200,마늘(국산)0.98%,분리대두단백,조식대두단 백,정제소금,비프엠알파우더,생강(국산)0.30%,밀분해추출물,후후추 분말,울스파이스로얄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헬로네이처	축산가공품	오리 양념불고기	선농생활	오리육	64.7	오리육64.7%(무항생제),고춧가루,참쌀고추장,진간장2.3%,마늘,쌀조청,유기농설탕1.2%,전생강,생강가루,후추,양파,사과퓨레,울금가루,다시마육수,대파
이마트	과자류	자연주의 무농약 우리밀 와플	(주)삼아인터 내셔널	밀가루	63.97	무농약밀가루(밀:국산)41.27%,가공버터{버터지방(우유:호주산)79%,코코넛오일3%,유고형분2%}24.76%,유기농설탕22.70%,전란랙(계란),정제염,통밀가루(밀:국산),바닐라추출물(천연착향료0.2%)
이마트	축산가공품	제주 황칠닭백숙	(주)농업회사 법인 청현	닭고기	63.44	닭고기63.33%,닭육수[정제수,닭발(국산)0.4%,생양파(국산),생각(국산),말티톨시럽,조미원후추,정제소금/고형분함량1.0%]28.61%,참쌀(국산)2.67%,팥쌀(국산)2.67%,마늘(국산)0.8%,수삼(국산)0.52%,밤(국산)0.25%,황기(국산)0.33%,황칠나무줄기(국산)0.67%,대추9국산)0.15%
올가	축산가공품	ORGA 등심 돈가스	(주)야미푸드	돼지고기	62.5	무항생제 돼지고기(등심/국산) 62.5%,우리밀 빵가루(밀(국산),정백당,버터[유크림(우유,국산)100%],생이스트,정제 소금}20.7%,유정란(계란,국산)5.6%,우리밀밀가루,정제수
올가	축산가공품	ORGA 치킨가스	(주)야미푸드	닭고기	62.5	무항생제 닭고기(가슴살/국산) 62.5%, 우리밀 쌀가루(밀(국산),정백당,버터[유크림(우유,국산)100%],생이스트,정제 소금}20.7%,유정란(계란,국산)5.6%,우리밀 밀가루,정제수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절임류	새우장	자하람	새우	62	새우(국산)39%,유기농간장[유기농대두(중국산)22.63%,유기농소맥(아르헨티나산)22.63%,천일염(호주산),주정,유기농아가베시럽1%]23%,정제수,양파,무,소주,청주,매실발효액[매실(국산)50%,흑설탕]2.2%,건조명태,마늘,건새우(국산)0.93%,다포리,설탕,생강,감초,다시마,월계수잎,후추
올가	축산가공품	ORGA 안심 돈가스	(주)야미푸드	돼지고기	61.1	무항생제 돼지고기(안심/국산)61.1% 우리밀 빵가루[밀(국산),정백당,버터[유크림(우유,국산)100%],생이스트,정제소금]18.8%,유정란(계란,국산)6.7%,우리밀밀가루,정제수
헬로네이처	과자류	우리밀이 빠띠쉐를 만나면 (리얼치즈)	리뉴얼라이프	현미	60.78	무농약현미(국내산)60.78%,리뉴얼화이트[유기농설탕62.4%,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정분말:네덜란드산/우유),레시틴(대두:유화제)]31.5%,치즈분말(덴마크산)4.94%,유기농설탕2.3%,죽염(국내산),혼합곡물발효효소0.05%
홈플러스	절임류	무농약 매실로 만든 자연향 청정 매실청	흙누리영농조합법인	매실	60	무농약매실 60%(국내산),정백당 40%
올가	축산가공품	ORGA 동그랑땡	(주)풀잎라인	돼지고기	57.94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56.34%,두부[대두(국산)100%,천일염천연응고제 100(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현미유,올리브유)],양파(국산)7.75%,당근(국산)5.28%,난백액,대파(국산)3.17%,조식대두단백,소맥전분,부추(국산)1.76%,유기설탕1.6%,정제소금,갯잎(국산)0.56%,냉동마늘,발효농축액,냉동생강,참기름,밀분해추출물,후추추분말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아기랑 소곤소곤 무농약 현미를 넣어 만든 감귤하트	농업회사법 인 리뉴얼라이 프(주)	현미	57.94	무농약현미(국산)57.94%,리뉴얼화이트[유기농설탕,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레시틴(유화제)],감귤분말(국산)2.36%,유기농설탕,요구르트분말(프랑스),쌀눈분말(국산)1%,비타민C0.35%,곡류효소함유제품
올가	빵류	ORGA 핫도그	(주)우양냉동 식품	돼지고기	57.41	소시지[무항생제돼지고기(국산)57.41%,에스에이-2,난백액(계란,국산),당근,대두단백]46.32%,핫도그믹스[일가루(밀,국산)66.15%,백설탕,옥수수전분(옥수수,수입산),혼합분유,소맥전분,산도조절제]41.15%,난백액,대두유,단호박분말,당근분태,양파분태,시금치분태
이마트, 홈플러스	잼류	복음자리 무농약 무화과로 만든 잼	(주)복음자리	무화과	57	무농약무화과57%(국산),정백당,이소말토올리고당,펙틴,비타민C,구연산
이마트, 홈플러스	잼류	무농약 유자와 감귤로 만든 잼	(주)복음자리	총합	57	무농약 감귤푸레49%(국산),무농약유자8%(국산)
이마트, 홈플러스	잼류	[복음자리]무농약 딸기잼	(주)복음자리	딸기	57	무농약딸기57%(국산)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요거팜 무농약 쌀로 만든 딸기스낵	(주)프로엠	현미	56	무농약현미(국내산)56%,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9%,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2%,딸기분말(국내산)6%,코코아버터(벨기에산)3%,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2%,비타민C(영국산)0.7%,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0.0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쌀로 만든 안심쿠키 우유	(주)프로엠	백미	55.8	무농약쌀가루(국산/쌀)32.3%,버터[국산,호주/(무가염)우유100%],아몬드분말(미국),유기농우유(국산/유기농원유100%),12.9%,유기농황설탕9브라질)8%,무항생제전락액(국산/계란100%),유기농메이플시럽(캐나다/당시럽류)2.6%,전지분유(원유100%/국산),요구르트분말(프랑스/발효유분말),히게이아5종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천연바닐라향(천연착향료),자몽종자추출물(천연첨가제),건조효모(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올가	과자류	인절미 스낵	(주)한일제과	총합	55.65	무농약쌀가루36%(백미/국산),무농약볶음대두분말9%(대두/국산),팥유25%(유기팥유/콜롬비아산),인절미씨즈닝-엔아이[유기농설탕35.5%(브라질산),볶음콩가루32.3%(대두/미국산,중국산),탈지분유12.5%(우유/미국산),포도당10%,유당5%(우유/미국산),천일염,옥수수유,탄산칼슘]30%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올가	과자류	쌀로만든 초코맛 스낵	(주)프로엠	현미	55	무농약현미(국내산)55%,다크초콜릿[코코아매스,정백당,코코아버터,레시틴(대두/유화제),천연바닐라향/싱가포르산]35%,아몬드분말(미국산)4%,코코아버터(벨기에산)3%,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1%,코코아분말(네덜란드산)1%,코코아분말(브라질산)0.3%,해조칼슘(아일랜드산)0.3%,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 에니멀리스 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0.02%
올가	과자류	쌀로만든 플레인 스낵	(주)프로엠	현미	55	무농약현미(국내산)56%,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39%,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4%,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6%,코코아버터(벨기에산)3%,비타민c(영국산)0.8%,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에니멀리스 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0.0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쌀로 만든 안심쿠키 오리지날	(주)프로엠	백미	53.6	무농약쌀가루(국산/쌀)36.2%,버터[국산,호주/(무가업)우유100%],아몬드분말(미국),유기농우유(국산/유기농원유100%)8.7%, <b>무항생제 전락액(국산/계란100%)</b> ,유기농황설탕(브라질)5.8%,유기농메이플시럽(캐나다/당시럽류)2.9%,요구르트분말(프랑스/발효유분말),히게이아5종혼합유산균9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자몽종자추출물(천연첨가제),건조효모(효모,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홈플러스	과자류	요거팜 무농약 쌀로 만든 레몬스낵	(주)프로엠	현미	53.6	무농약현미(국내산)53%,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9%,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6%,레몬농축분말[레몬농축과즙(고형분65%/미국산),덱스트린]4.5%,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2%,프로엠화이트후레이크[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0%,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유청분말(독일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2%,코코아버터(벨기에산)1%,비타민C1%,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0.0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요거팝 무농약 쌀로 만든 블루베리스낵	(주)프로엠	현미	52	무농약현미(국내산)52%,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9%, 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 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5%,동결건 조블루베리분말(동결건조블루베리주스농축물,말토덱스트린,이산화 규소/미국산)6%,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2%,프로엠화이트후레 이크[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0%,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 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유청분 말(독일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2%,비타민C1.2%,코코 아버터(벨기에산)1%,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 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 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0.0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요거팝 무농약 쌀로 만든 크랜베리스넥	(주)프로엠	현미	52	무농약현미(국내산)52%, 프로엠[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9%,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 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 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5%,크랜베리농축분말[크랜베리농축액(고 형분 40%/미국산),텍스트린]6%,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2%,프로엠화 이트후레이크[유기농설탕(콜롬비아산)30%,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 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 ,유청분말(독일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2%,비타민C1. 2%,코코아버터(벨기에산)1%,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치 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 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0.0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오곡블루베리스낵	(주)프로엠	총합	50	무농약현미분말(국내산)44.5%, 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35%,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질산/대두/유화제)]35%,동결건조블루베리분말[블루베리100%(칠레산)]4.2%,코코아버터(벨기에산)3%,블루베리맛분말[블루베리농축분말[블루베리주스농축액(미국산,블루베리100%)]68.75%]2.5%,블루베리향분말[블루베리향(합성착향료)]2.5%,무농약백미분말(국내산)2.5%,무농약참쌀분말(국내산)1%,무농약보리분말(국내산)1%,무농약차조분말(국내산)1%,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비타민C,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홈플러스	과자류	무농약 오곡 바나나스낵	(주)프로엠	총합	50	무농약현미(국내산)44.5%, 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35%,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 (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 질산/대두/유화제)]35%,바나나향분말5.3,바나나분말(에콰도르산)4.4% ,코코아버터(벨기에산)3%,무농약백미(국내산)2.5%,무농약찹쌀(국내 산)1%,무농약보리(국내산)1%,무농약차조(국내산)1%,요구르트분말(프 랑스산/우유),비타민-C,강황가루,혼합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리스에스피피,락토바 실러스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오곡 크랜베리 딸기스낵	(주)프로엠	현미분말	50	무농약현미분말(국내산)44.5%, 프로엠화이트[유기농설탕35%,코코아버터(싱가포르산),혼합탈지분유 (탈지분유,유청분말/네덜란드산/우유),유당(미국산/우유),레시틴(브라 질산/대두/유화제)]35%,코코아버터(벨기에산)3%,크랜베리맛분말(크 랜베리농축액(미국산/크랜베리100%)]37.95%],크랜베리향(합성착향료 )3%,크랜베리농축분말[크랜베리농축액(미국산/크랜베리100%)]37.95 %]3%,무농약백미분말(국내산)2.5%,말기향분말[말기후레바(합성착향 료)]1.5%,진공동결건조말기분말[말기(국산)100%]1.4%,무농약찰쌀분 말(국내산)1%,무농약보리분말(국내산)1%,무농약차조분말(국내산)1%, 요구르트분말(프랑스산/우유),레몬농축분말,비타민C,혼합유산균(비 피도박테리움비피덤,비피도박테리움브레베,비피도박테리움애니멀 리스에스피피,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락토바실러스플랜타럼)
이마트	축산가공 품	[도드람한돈]무항생제 로 만든 돈까스(치즈)	(주)진푸드시 스템	돼지고기	50	돼지고기(등심:국산)50.00%, 빵가루(소맥분(밀,수입산), 마가린(말레이시아산), 쇼트닝, 이스트후드, 이스트]25.00%, 모짜렐라치즈(수입산100%)[우유, 정제염, 배양약, 응용효소]16.67%, 정제수, 배터믹스[전분믹스][전분가공품(옥수수:수입산), 산도조절제, 밀가루(밀:미국산), 알파옥수수전분], 밀가루(밀:미국산), 양파분말, 정제염, 구아검]3.3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옥수수로 만든 스위트콘	(주)새롬식품	옥수수	49.5	스위트콘기지{찐쌀(유기농, 국산), 옥수수(무농약, 국산)30%}, 코팅액[쌀엿조청(쌀(국산), 맥아, 효소), 유기농설탕(수입산)19.5%, 기타설탕, 연유(원유(우유, 국산), 백설탕, 유당(우유), 말토덱스트린), 버터(우유, 뉴질랜드산), 레시틴(대두, 유화제), 태움·용용소금(국산)], 검정깨(국산)
올가	축산가공품	ORGA 치즈 돈가스	(주)야미푸드	돼지고기	47.5	무항생제 돼지고기(등심/국산) 47.5%, 자연치즈[원유(국산), 염화칼슘(중국산), 효소제제, 유산균(덴마크산)]21.43%, 우리밀빵가루(밀(국산), 정백당, 버터(유크립), 생이스트, 정제소금], 무항생제계란(국산), 우리밀 백밀가루, 정제수
이마트	다류	무농약 순꿀유자차	초록원	당침유자	45	당침유자90%[무농약유자(국내산)50%, 설탕50%], 벌꿀(국내산)5%, 설탕, 비타민C, 구연산, 카라기난(해초)
이마트	다류	무농약유자차	(주)복음자리	유자	40	무농약유자(국산)40%, 백설탕55%, 꿀(국산)5%
이마트	다류	[우리농촌]초록원 무농약 꿀유자차	초록원	유자	40	당침유자[무농약유자(국내산)50%, 설탕50%]80%, 벌꿀(국내산)5%, 설탕, 정제수, 비타민C, 구연산, 카라기난(해초)
초록마을	다류	무농약 유자로 만든 꿀유자차	초록원	유자	40	당침유자[무농약유자(국내산)50%, 백설탕]80%, 백설탕, 사양벌꿀(국내산)5%, 무수구연산, 카라기난, 비타민C
이마트	다류	복음자리 무농약 유자로 만든 차	(주)복음자리	당침유자	40	무농약당침유자80%[무농약유자50%(국산), 정백당50%]
이마트	다류	무농약순꿀 유자차	초록원	당침유자	28	당침유자[무농약유자(국산)50%, 설탕50%]56%, 설탕, 정제수, 벌꿀(국산)5%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합량	합량세부내용
올가	식육가공 품	ORGA 지짐군만두	(주)지엠에 프	돼지고기	27.38	무항생제 돼지고기(국산)27.38%,우리밀(국산)22.88%,양배추(국산)9.25%,부추, 절임배추(배추,천일엽),대과,양파,혼합제제(변성전분,글루텐,말토덱 스트린,밀가루),대두단백,난백,마늘,우리밀간장,참기름,유기설탕,유 화유자-피,버텍스아이지20,정제염,플레버라운드,후춧가루,군만두피 베이스,강황
이마트	다류	감식초가 들어가 더 맛있는 무농약 오미자차	초록원	오미자추 출액	23	무농약오미자추출액(국산)23%,감식초(국산)22%,유기농설탕(수입산), 액상과당,구연산,사과산
홈플러스	음료류	자임 제주에서 재배한 무농약 감귤&한라봉	농업회사법 인(주)자임	총합	20	정제수,유기농설탕8.25%,무농약감귤농축액6.75%(감귤과즙으로45%, 제주산),무농약한라봉착즙액5%(제주산),구연산,비타민C
홈플러스	음료류	자임 제주에서 재배한 무농약 감귤채소	농업회사법 인(주)자임	총합	18.436	정제수,유기농설탕8.736%,무농약감귤농축액4.5%(감귤과즙으로30%, 제주산),무농약당근주스농축액3.7%(당근즙으로18.5%,제주산),무농약 양배추착즙액0.5%(제주산),무농약브로콜리착즙액0.5%(제주산),무농 약콜라비 착즙액0.5%(제주산),구연산,비타민C
초록마을	음료류	국내산 무농약 마늘로 만든 흑마늘진액	영농조합법 인 푸른초장	마늘	9.4	정제수, 흑마늘(마늘:국내산,무농약)9.4%
올가	곡류가공 품	울금환	동우당제약 (주)	울금	48	무농약인증울금국산48%,쌀겨국산52%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감귤 샌드 웨이퍼	대조F&B	밀가루	함량미표기	무농약우리밀백밀가루(밀:국내산무농약),식물성유지[팜유(말레이시아산),야자경화유(야자유:인도네시아산),에스테르화유,대두유,팜올레인부분경화유,유화제(대두),합성착향료(버터향,밀크향),제이키피(글리세린,주정,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구연산,베타카로틴(합성착색료)](우유),백설탕,미분당,포도당,전분(옥수수:수입산),계란,식물성크림(우유),감귤분말(국내산),합성착향료(감귤향),정제소금,구연산,팽창제1,팽창제2,레시틴(대두),합성착향료(바닐린)
이마트	과자류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망고 샌드 웨이퍼	대조F&B	밀가루	함량미표기	무농약우리밀백밀가루(밀:국내산무농약),식물성유지[팜유(말레이시아산),야자경화유(야자유:인도네시아산),에스테르화유,대두유,팜올레인부분경화유,유화제(대두),합성착향료(버터향,밀크향),제이키피(글리세린,주정,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구연산,베타카로틴(합성착색료)](우유),백설탕,미분당,포도당,전분(옥수수:수입산),계란,식물성크림(우유),망고퓨레분말[망고퓨레(필리핀산,고형분15%),합성착향료(망고향)],합성착향료(망고향),정제소금,팽창제1,팽창제2,레시틴(대두),합성착향료(바닐린)
홈플러스	축산가공 품	훈제오리_800G(무항생 제1등급오리사용)	주식회사팜 덕	오리정육	함량미표기	무항생제오리육(국내산),정제수,훈제오리시즈닝-FD[카제인나트륨(우유),정제소금(국산,혼합제제(산도조절제],비프분말2호베이스(쇠고기:호주산,정제소금:국내산),정제소금(국내산),정백당,소르빈산칼륨(보존제),비타민C(산화방지제) 그 외

유통업체	식품유형	제품명	제조업체명	원료명	무농약 이상의 원료함량	함량세부내용
홈플러스	축산가공 품	무항생제오리로 만든 훈제오리	(주)모란식품	오리정육	함량미표기	오리고기(정육/국내산),오리스모크시즈닝M[정제소금(국산),생강분말 (중국산),산도조 절제, 아질산나트륨(발색제),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 진제)],농축대두단백(미국산),대두 함유

부록 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기준 농관원 고시안

□ 무농약가공식품(농관원 고시)

① 인증기준

8. 무농약가공식품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무농약가공식품 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의 가공 및 유통 또는 원료의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와 혼입 또는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무농약식품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무농약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원료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3)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농약식품등 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 (1)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 (2) (1)의 허용물질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의 원료 이외에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일반농산물 및 식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허용된 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일반농산물 및 식품을 혼합할 수 없으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포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실제 사용되는 허용원료와 비허용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 무농약가공식품 원료 비율의 계산법

$$\frac{I_o}{G-WS} = \frac{I_o}{I_o+I_c+I_a} \geq 0.95$$

$G$ :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 $G=I_o+I_c+I_a+WS$ )

$I_o$ : 허용 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무농약가공식품)의 중량

$I_c$ : 비허용 원료(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식품등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I_a$ : 비허용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WS$ :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4) 3)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데번호

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5) 물과 소금은 사용할 수 있고, 최종제품의 성분비율 산정시 제외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가공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p>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p> <p>나) 무농약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허용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p> <p>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p> <p>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p> <p>마) 비허용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허용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허용원료 비율만큼만 무농약가공식품 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p>
다. 가공방법	<p>1)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보조제 및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p> <p>2) 다음의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허용원료의 비율, 최종 생산물의 기준적합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p> <p>가)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입, 훈연 등을 말한다.</p> <p>나)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p> <p>3)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물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p> <p>4)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5)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p>6)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p>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p>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p> <p>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의 예방적 방법과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p>가)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말한다.</p> <p>나)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덩,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p> <p>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무농약가공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마. 세척 및 소독</p>	<p>1) 무농약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p> <p>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무농약가공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바. 포장</p>	<p>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무농약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p> <p>2) 포장재는 무농약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p> <p>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p> <p>4) 무농약가공식품의 오염이 우려되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p> <p>5)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된 인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p>
<p>사. 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p>	<p>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무농약가공식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p>



	<p>사용할 수 없다.</p> <p>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무농약가공식품이 무농약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p>
<p>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 보장</p>	<p>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p> <p>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무농약가공식품이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무농약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p> <p>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농약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p>

## ②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하는 방법

### 가. 표시방법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 표시 제품)	
	원료함량 95% 이상	원료함량 70%이상	원료함량 70%미만 (특정원료)
무농약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	○	X	X
주 표시면에 표시	○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표시	○	○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표시	○	○	○

비고 : 함량은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의 원재료를 말하며 이 표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의 정의 또는 의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

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 나. 표시에 관한 원칙

- 무농약가공식품에 유기원료가 사용되므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 무농약가공식품은 무농약가공식품 인증표시만 하도록 제한
- “제한적 무농약가공식품 표시의 기준”을 제정하여, 무농약농산물만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즉, 유기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무농약제한적 표시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표시방법 : ‘무농약’, ‘무항생제’ 표시마크 준용

부록 3. 유기 양봉 인증기준 개선안

유기양봉 인증기준(안)

3. 유기축산물 (양봉)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벌통의 취급과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li> <li>2. 채집 지역은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며 물을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li> <li>3. 천연 화밀, 감로, 화분 등은 주로 유기생산 식물이나 자연(야생) 초목에서 유래되어야 한다.</li> <li>4. 벌의 건강은 적절한 품종 선택, 좋은 환경, 균형 있는 먹이, 적절한 양봉 방식을 통한 예방조치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li> <li>5. 벌통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양봉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천연 소재로 이루어져야 한다.</li> </ol>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p>[양봉장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꿀벌을 위한 충분한 천연 화밀, 감로 및 화분 공급원과 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li> <li>2. 양봉장 위치로부터 반경 3 km 이내에는 화밀 및 화분 공급원은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작물 및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야 한다.</li> <li>3. 벌통은 금지된 물질, GMO 또는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잠재적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놓을 수 없다.</li> </ol> <p>[양봉 사용 벌집 및 자재의 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벌통 및 벌집은 기본적으로 환경 또는 양봉 제품에 오염의 위험을 주지 않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li> <li>2. 프로폴리스, 밀랍, 식물성 기름 등과 같은 천연 제품만 벌집에 사용할 수 있다.</li> <li>3. 새로운 이층을 위한 밀랍은 유기생산 단위체에서 얻어져야 한다.</li> <li>4. 벌통의 외부 표면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 다만, 중금속 성분이</li> </ol>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없는 페인트만 칠해야 한다.</p> <p>5. 유기 밀랍에 담긴 플라스틱 기초제는 허용된다.</p> <p>[관 리]</p> <p>1. 키초 벌집은 <del>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만들어야 한다.(삭제)</del></p> <p>2. 양봉 제품을 수확하기 위하여 벌집 안에 들어 있는 벌을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p> <p>3.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는 것과 같은 절단행위는 금지된다.</p> <p>4. 꿀 채취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학 합성 살충제의 사용이 금지된다.</p> <p>5. 훈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훈연 물질은 천연 물질이거나 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p> <p>6. 양봉으로부터 유래되는 제품을 추출하고 가공할 동안에는 가능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p>
라. 벌의 선택 및 입식	<p>1. 품종의 선택에 있어, 지역적 조건에 적응한 꿀벌의 적응력, 활동력,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2. 봉군은 유기 생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처음 도입된 벌은 유기생산 농장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b>극단적인 자연환경이나 병충해 등으로</b>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벌을 입식할 수 있다</p>
마. 전환기간	<p>1.. 유기양봉 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할 경우, 그 양봉 제품은 유기적으로 생산·판매될 수 있다.</p> <p>2. 전환기간 동안 비유기 밀랍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되어야 한다.</p> <p>3. 1년 동안 전체 밀랍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4. 유기적인 밀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양봉장으로부터 나온 밀랍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밀랍은 금지 물질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p>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p>1. 사업자는 유기인증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적합한 먹이와 물을 벌에게 제공해야 한다.</p> <p>2. 생산 말기 시점에 군락이 휴면기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꿀과 화분을 비축분으로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p> <p>3. 기후 또는 다른 예외적인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먹이 부족이 있을</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p>경우에는 관리자가 봉군에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당류를 사용해야 한다.</p>						
<p>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p>	<p>1. 벌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 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된다.</p> <p>가) 현지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강건한 품종의 이용  나) 필요할 경우, 여왕벌의 갱신  다) 정기적인 청소 및 장비의 소독  라) 밀랍의 정기적 갱신  마) 벌통에 충분한 화분과 꿀이 수집될 수 있는 가용성  바)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꿀벌 통의 체계적 검사  사) 필요하다면, 질병에 감염된 벌통을 격리된 지역으로 이동  아) 오염된 벌통과 재료를 폐기함</p> <p>2.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별표1 제1호나목3)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21 1146 1399 1469"> <thead> <tr> <th data-bbox="421 1146 561 1196">구분</th> <th data-bbox="561 1146 979 1196">병해충 방제</th> <th data-bbox="979 1146 1399 1196">양봉제품 가공</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1 1196 561 1469">물질</td> <td data-bbox="561 1196 979 1469">           젓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향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투스, 캄포 등)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td> <td data-bbox="979 1196 1399 1469">고령토(프로폴리스 추출)</td> </tr> </tbody> </table> <p>3. 예방 및 허용물질의 사용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다음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가) 식품치료요법과 동종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나) 합성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그 양봉 제품은 유기 제품으로 판매될 수 없다. 유기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벌통을 격리한 후 1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 수의학적인 처리를 한 경우, 모두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p> <p>4. 수벌집을 제거하는 관행은 응애류의 만연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p>	구분	병해충 방제	양봉제품 가공	물질	젓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향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투스, 캄포 등)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고령토(프로폴리스 추출)
구분	병해충 방제	양봉제품 가공					
물질	젓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향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투스, 캄포 등)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고령토(프로폴리스 추출)					
<p>아. 운송·도축.</p>	<p>1. 살아있는 벌과 함께 벌집에서 꿀을 추출하는 것은 금지된다.</p>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공과 정의 품질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양봉제품의 운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양봉제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3. 양봉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은 식품용 재질로 만들거나 밀랍으로 피막처리하여야 한다.</li> <li>4.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li> <li>5.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 양봉제품이 비유기 양봉제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한다.</li> </ol>

##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 ○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방법	온라인 및 팩스/이메일 조사와 직접 방문조사(식당)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조사표 타입</th> <th>응답자수</th> <th>표본 출처</th> </tr> </thead> <tbody> <tr> <td>T1 소비자</td> <td>201</td> <td>무작위추출</td> </tr> <tr> <td>T2 무농약가공식품 업체</td> <td>62</td> <td rowspan="4">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td> </tr> <tr> <td>T3 비식용유기가공품 업체</td> <td>86</td> </tr> <tr> <td>T4 유기가공식품 업체</td> <td>51</td> </tr> <tr> <td>T5 인증기관</td> <td>37</td> </tr> <tr> <td>T6 식당</td> <td>100</td> <td>친환경인증 식당 + 일반식당</td> </tr> </tbody> </table>	조사표 타입	응답자수	표본 출처	T1 소비자	201	무작위추출	T2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62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T3 비식용유기가공품 업체	86	T4 유기가공식품 업체	51	T5 인증기관	37	T6 식당	100	친환경인증 식당 + 일반식당
	조사표 타입	응답자수	표본 출처																
	T1 소비자	201	무작위추출																
	T2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62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T3 비식용유기가공품 업체	86																	
	T4 유기가공식품 업체	51																	
T5 인증기관	37																		
T6 식당	100	친환경인증 식당 + 일반식당																	
조사 기간	2016년 10월 13일 ~ 2016년 11월 17일(약 1개월)																		
조사 수행	(주)포커스컴퍼니																		

### ○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친환경가공품/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생각</li> <li>•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방식에 대한 의견</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운영 방식</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등록제도/인증제도 시행</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표준 인정</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li> <li>•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li> <li>•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li> <li>•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절량</li> <li>•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li> <li>•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li> <li>•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li> <li>•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li> <li>•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li> </ul>

구 분	세 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가공공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li> <li>•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할때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해야할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업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생산여부</li> <li>• 인증 받은 농산물</li> <li>•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할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업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부</li> <li>• 인증 받은 농산물</li> <li>•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인증</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시행품목</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업종단체 개발표준 인정범위</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li> <li>•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li> <li>•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방식</li> <li>•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할 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유기가공식품 차등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li> </ul>



구 분	세 부 항 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사용 인증제 추가에 반대 이유</li> <li>•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사용 인증제 추가에 찬성 이유</li> </ul>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조사(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li> <li>•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li> <li>•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li> <li>•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가장 좋은 방법</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등록제도 인증제도에 품목에 따른 시행에 대한 생각</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설정</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단체가 개발한 인증표준 인정에 대한 생각</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의 범위</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절량</li> <li>•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li> <li>•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li> <li>•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운영방식 및 기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의 범위</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li> <li>•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해야할 점</li> </ul>
친환경 농축산물사용 우수식당 인증제도 개선방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li> <li>• 우수식당 지정기준</li> <li>•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li> <li>•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 방안</li> <li>•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해야할 점</li> </ul>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s에 의해 분석됨
-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환산점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결과 요약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관련 조사

■ 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소비자>인증기관>업체**

응답자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소비자	.5	2.5	18.9	49.8	28.4	75.75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9.7	16.1	22.6	29.0	22.6	59.68
인증기관	10.8	16.2	8.1	21.6	43.2	67.57

■ 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국가인증제도 선호**

응답자구분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기타
소비자	56.7	25.9	16.4	1.0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45.7	41.3	8.7	4.3
인증기관	48.6	16.2	29.7	5.4

■ 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 **무농약+유기 기준 선호**

응답자구분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기타
소비자	55.7	43.8	.5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43.5	43.5	13.0
인증기관	48.6	45.9	5.4

■ 표 문2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원료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2.5	45.8	51.7

■ 표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응답자구분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이상의 친환경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	51.2	36.3	12.4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71.0	16.1	12.9
인증기관	75.7	18.9	5.4

■ 표 문7.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 **인증기관>업체>소비자**

응답자구분	40	50	70	75	80	90	95	99	100	평균
소비자										76.99
무농약가공 식품 업체	1.6	4.8	11.3	1.6	3.2	12.9	58.1	1.6	4.8	87.97
인증기관			5.4			8.1	86.5			93.25

주: 주관식 문항이므로 소비자 응답의 경우 구간이 다양하여 생략함.

■ 표 문21.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1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1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1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1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1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1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8.5	41.3	36.3	9.0	5.0

**비인증 대체품 대비 평균 7.145% 추가지불**

■ 표 문22. 원료+가공과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10%	15%	20%
6.5	30.8	44.8	10.9	7.0

**평균 7.795% 추가지불**

■ 표 문23. 원료+가공과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10%	15%	20%
6.5	27.4	43.3	15.4	7.5

**평균 8.16% 추가지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관련 조사**

■ 표 문2-1.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섬유류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33.8	46.8	16.4	3.0	0
업체	14.3	7.8	7.8	6.5	2.6
인증기관	51.4	27.0	13.5	2.7	5.4

■ 표 문2-2.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화장품원료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53.2	28.9	16.4	1.5	0
업체	24.7	10.4	2.6	1.3	1.3
인증기관	62.2	21.6	8.1	2.7	5.4

■ 표 문2-3.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개인보호용품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42.8	43.3	10.4	3.5	0
업체	14.3	11.7	9.1	1.3	1.3
인증기관	45.9	18.9	27.0	2.7	5.4

■ 표 문2-4.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세제/소독제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52.7	35.3	9.5	2.5	0
업체	22.1	13.0	6.5	1.3	0
인증기관	56.8	21.6	13.5	2.7	5.4

■ 표 문2-5.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완구류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47.3	32.3	13.9	5.5	1.0
업체	24.7	10.4	2.6	2.6	0
인증기관	51.4	21.6	16.2	5.4	5.4

■ 표 문2-6.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종이/물티슈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49.8	35.3	12.4	2.0	.5
업체	23.4	11.7	1.3	1.3	1.3
인증기관	48.6	27.0	13.5	5.4	5.4

■ 표 문2-7.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애완동물사료

응답자구분	①매우 필요하다	②약간 필요하다	③보통	④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전혀 필요하지 않다
소비자	24.9	47.3	18.4	7.5	2.0
업체	13.0	11.7	11.7	5.2	0
인증기관	37.8	27.0	27.0	2.7	5.4

■ 표 문3.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

응답자구분	등록제	모름/ 무응답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인증제
소비자	34.3	.5	24.4	40.8
업체	27.3	28.6	23.4	19.5
인증기관	35.1	5.4(불필요)	21.6	37.8

주: 소비자 및 인증기관의 경우 등록제와 인증제 답변의 차이는 95%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 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응답자구분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소비자	32.1	55.0	13.0
업체	45.5	36.4	12.1
인증기관	29.7	37.8	32.4

■ 표 문6.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응답자구분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함
소비자	67.2	32.3
업체	54.5	36.4
인증기관	59.5	37.8

■ 표 문8.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유기원료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5.5	43.3	51.2

■ 표 문9.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응답자구분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	40.3	45.8	13.9
업체	46.8	14.3	7.8
인증기관	64.9	24.3	10.8

■ 표 문10.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응답자 구분	60	70	75	80	85	90	95	100	평균
소비자									75.28
업체	1.3	13.0	1.3	3.9	1.3	13.0	23.4	3.9	85.83
인증기관		2.7			2.7	10.8	81.1		92.30

주: 주관식 문항이므로 소비자 응답의 경우 구간이 다양하여 생략함. 인증기관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50%에 대한 응답이 2.7임

■ 표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응답자구분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소비자		62.7
업체		39.0
인증기관		67.6

■ 표 문9.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1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1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6.5	29.4	48.3	9.5	6.5

평균 9.025% 추가지불

■ 표 문10.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6.0	30.8	44.8	12.4	6.0

평균 9.08% 추가지불

■ 표 문11.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0% (더 지불할 수 없다)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6.0	26.9	36.8	20.9	9.5

평균 10.06% 추가지불

□ 유기가공식품 차등인증제도 조사

■ 표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

응답자구분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	찬성한다
유기가공식품 업체	52.9	47.1
인증기관	62.2	37.8

□ 친환경식당 조사

■ 표 문1.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

반대한다(민간인증기관의 자체인증으로 관리해야 한다)	찬성한다
48.0	52.0



## □ 무농약 소비자조사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세제/소독제’가 100점 평균 8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세제/소독제’가 7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제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인증제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는 품목으로 애완동물사료가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설정)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인증)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품목은 화장품원료가 69.2점으로 가장 높음.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음.
-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음.
-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음.
- (차등 인증제도 관련)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시 70% 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음.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 수준) 최고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 수준으로 ‘80-100%’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시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를 관리 해야 한다는 비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유기화훼류 도입 시 현행 유기농업의 원칙 및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는 비율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응답자의 78.1%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 내에 유기와 무농약을 구분하고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

제도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도입 시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 기준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실시 시 추가 지불 가격으로 5%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음.
- **(원료+가공공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원료+가공공정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실시 시 추가 지불 가격으로 1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가격으로 10%를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시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80-100%’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조사

-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인증받은 농산물)**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80-100%’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으로 무농약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5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증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은 유기농 무농약 원료 혼합 95%이상 사용시 인증,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95% 친환경 원료 수준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비율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은 90-100%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비식용유기가공품 업체 조사

-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부) 친환경농산물 생산 하는 업체/농가가 인증 받은 농산물은 52.4%로 무농약이 가장 높음.
-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인증)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무항생제가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완구류’가 100점 평균 8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등록제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으로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음.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시행품목)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품목은 애완동물사료가 44.4점으로 가장 높음. 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품목은 ‘세제/소독제’, ‘완구류’가 5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국내 업종단체 개발표준 인정범위)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품목은 완구류가 83.3점으로 가장 높음.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해야한다는 품목은 섬유류가 5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유기원료+가공공정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차등 인증제도에 반대하며 95% 유기원료 수준 일원화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으로 90-100%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으로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9.0%로 가장 높음.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방식)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시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 제도로 관리가 44.2%로 가장 높음.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할 점)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인증제도 비중을 높여야함,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유기가공식품 업체조사

-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해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가 52.9%로 가장 높음.

## □ 인증기관 조사

-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유기농) 유기농 인증 품목으로 야채류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무농약) 무농약 인증품목으로 야채류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무항생제) 무항생제 인증품목으로 한우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제 추가 반대 이유)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62.2%가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증제 사용 찬성 이유) 응답자의 37.8%는 인증제 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등등성 인정 협정이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등등성 인정 협정이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의 국내유입만 증가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원료가 8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가장 좋은 방법)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증제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 섬유류, 개인보호용품, 세제/소독제, 종이/물티슈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설정)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설정에 대해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해야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로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음.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정량)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정량은 95%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현행 유기농

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인증제도로 관리해야한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정확한 기준 마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6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를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으로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해야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다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은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에 대한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95%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할 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반영해야함, 정확한 기준마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친환경식당 조사

-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여부)**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0%로 나타남.
-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 4명 중 1명(25.0%)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를 꼽음
- **(우수식당 지정기준 - 한식당, 반찬가게)**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남.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한식당, 반찬가게)** 항목별 평가기준에서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음.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한식당, 반찬가게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홍보가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10.0%), ‘친환경 농산물 가격인하 제도적 뒷받침’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수식당 지정기준 - 빵집)**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60.0%로 나타남.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빵집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유제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가장 높음.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빵집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를 확충’, ‘방부제 등 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이 20.0%로 가장 높음.

- **(우수식당 지정기준 - 카페)**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70.0%로 나타남.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카페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유기농, 유기농+공정무역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음.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카페)**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를 확충’, ‘방부제 등 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이 20.0%로 가장 높음.
- **(우수식당 지정기준 - 떡집)** 떡집 사업자 모두 우수식당 지정기준이 엄격하다고 응답함.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떡집)**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무농약 이상 쌀을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세분화’ (40.0%)의견이 가장 많음.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떡집)**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비싼 원재료로 인한 영입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이 20.0%로 가장 높음.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홍보가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1) 소비자

ID				
----	--	--	--	--



**친환경가공품/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소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Quota 확인란 ]

▶ <b>성별</b>	① 남성	② 여성				
▶ <b>연령</b>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b>가정 월평균소득</b>	① ~299만원 ② 300~499만원 ③ 500~699만원 ④ 600~799만원 ⑤ 800만원~					
▶ <b>가족 수</b>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b>지역</b>	① 서울 ② 인천 ③ 대전 ④ 대구 ⑤ 울산 ⑥ 광주 ⑦ 부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경북 ⑬ 경남 ⑭ 전북 ⑮ 전남 ⑯ 제주					

**□ Screen Question**

**SQ1.**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이내 **가공제품**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 ② 없다 →(조사 중단)

## ▣ 친환경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공산품을 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나 이는 탄소마일리지 표시제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 등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인증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미 농무성 NOP에서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도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공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 국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로고 예시 】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1)~(1-7)

☞ **작성요령** : 품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예를 제시함.

품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섬유류					
1-2. 화장품원료					
1-3. 개인보호용품					
1-4. 세제/소독제					
1-5. 완구류					
1-6. 종이/물티슈					
1-7. 애완동물사료					

### 【 예시 】

품목	예시			
섬유류	1) 성인의류	2) 유아의류	3) 침구류	4) 봉제인형
화장품원료	1) 화장품원료			
개인보호용품	1) 생리대	2) 면봉		
세제/소독제	1) 주방세제	2) 세탁세제	3) 소독제	
완구류	1) 신생아용품(달랑이, 치발기)			



종이/물티슈	1) 벽지, 장판	2) 물티슈
애완동물사료	1) 고양이통조림	

2. 구매의사 관련: 귀하께서는 제품이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을 받을 경우 비인증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품목(대분류)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품목	매우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	보통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섬유류					
2-2. 개인보호용품					
2-3. 세제/소독제					
2-4. 완구류					
2-5. 종이/물티슈					
2-6. 애완동물사료					

3.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등록제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 허용)
- ② 인증제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과는 별도로 직접 인증제도를 운영)
- ③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4. (문3의 '② , ③'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5. ※ 등록제와 인증제 관련: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 】**

등록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증제는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제와는 별도로 인증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것임.

품목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	인증제를 시행해야 함
	①	②
5-1. 섬유류		
5-2. 화장품원료		
5-3. 개인보호용품		
5-4. 세제/소독제		
5-5. 완구류		
5-6. 종이/물티슈		
5-7. 애완동물사료		

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 ②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함.
- ③ 기타( )

7. ※ 인증제의 표준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품목에 대해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품목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
	①	②
7-1. 섬유류		
7-2. 화장품원료		
7-3. 개인보호용품		
7-4. 세제/소독제		
7-5. 완구류		
7-6. 종이/물티슈		
7-7. 애완동물사료		

8.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참고 】**

가공과정, 유통단계의 친환경이란 유기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일례로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과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① 유기원료
- ②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9. 유기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유기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10.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만 인증되는 경우(9.)에 비해 가공공정의 친환경까지 인증되는 제품에 대해 얼마까지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11.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경우(10.)에 비해 유통단계의 친환경까지 인증되는 제품에 대해 얼마까지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③ 기타: ( )

16.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은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 인증제도」란 친환경(유기 포함)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제품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었다는 것을 인증기관이 평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식용 및 비식용 친환경가공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7.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 내에 유기와 무농약을 구분하고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1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②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③ 기타( )

20.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① 원료
- ②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21.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20.-①), 귀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22.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20.-②), 귀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유기원료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23.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20.-③), 귀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① 0% (더 지불할 수 없다)
- ② 5% (가격의 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0,500원까지)
- ③ 10% (가격의 1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000원까지)
- ④ 15% (가격의 15%를 더 지불: 예를 들어 원료+가공 인증된 가공품이 만원이라면 11,500원까지)
- ⑤ 20% (비인증 대체품 가격의 20%를 더 지불: 예를 들어 대체품이 만원이라면 12,000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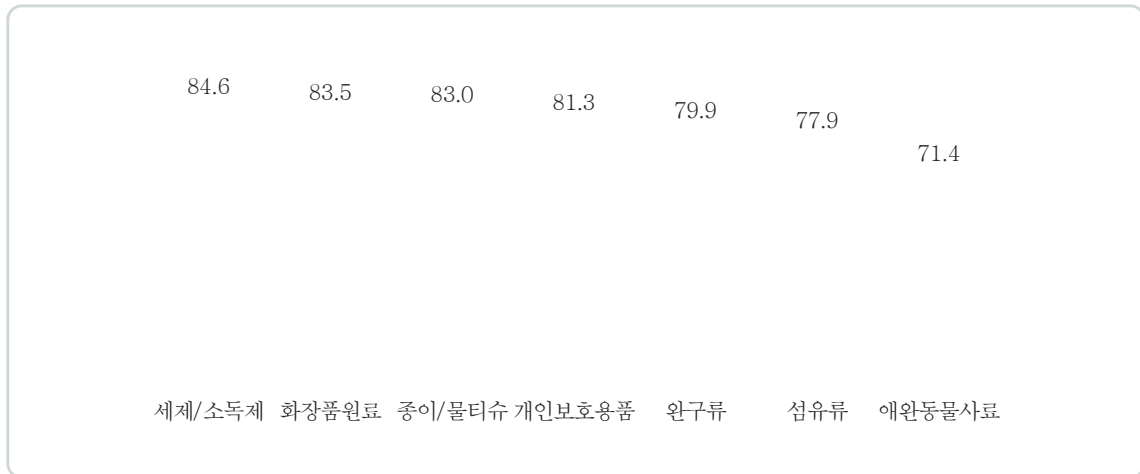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세제/소독제’가 100점 평균 8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화장품원료’ (83.5점), ‘종이/물티슈’ (83.0점), ‘개인보호용품’ (81.3점) 등의 순임.

[그림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Base: 전체, N=201, 점)



Q1.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표 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세제/소독제	(201)	52.7	35.3	9.5	2.5	-	84.6
화장품원료	(201)	53.2	28.9	16.4	1.5	-	83.5
종이/물티슈	(201)	49.8	35.3	12.4	2.0	0.5	83.0
개인보호용품	(201)	42.8	43.3	10.4	3.5	-	81.3
완구류	(201)	47.3	32.3	13.9	5.5	1.0	79.9
섬유류	(201)	33.8	46.8	16.4	3.0	-	77.9



<b>애완동물사료</b>	(201)	24.9	47.3	18.4	7.5	2.0	71.4
---------------	-------	------	------	------	-----	-----	------

Q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세제/소독제’가 7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종이/물티슈’ (79.2점), ‘개인보호용품’ (78.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품목별)

(Base: 전체, N=201, %)



Q2. 구매의사 관련: 귀하께서는 제품이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을 받을 경우 비인증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품목(대분류)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표 2]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이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Base: 전체, N=201,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	보통	별로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100점 평균
세제/소독제	(201)	41.8	39.8	14.4	4.0	-	79.9
종이/물티슈	(201)	40.3	40.8	15.9	1.5	1.5	79.2
개인보호용품	(201)	35.8	43.8	17.9	2.5	-	78.2
완구류	(201)	32.8	40.3	21.4	4.5	1.0	74.9
섬유류	(201)	21.4	55.7	18.9	3.5	0.5	73.5
애완동물사료	(201)	24.4	37.8	24.9	10.0	3.0	67.7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제도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인증제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등록제’ (34.3%), ‘등록제와 인증제 병행’ (24.4%) 등의 순임.

[그림 3]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제도

(Base: 전체, N=201, %)



Q3.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 (48.0%)이 ‘여성’ (31.0%)보다 인증제를 언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제도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인증제	등록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기타	
<b>전 체</b>	<b>(201)</b>	<b>40.8</b>	<b>34.3</b>	<b>24.4</b>	<b>0.5</b>	
<b>성별</b>	남성	(100)	48.0	21.0	0.0	0.0
	여성	(101)	31.0	27.7	1.0	1.0
<b>연령</b>	20대	(30)	33.7	16.7	0.0	0.0
	30대	(46)	37.6	21.7	0.0	0.0
	40대	(62)	13.3	24.2	0.0	0.0
	50대	(54)	70.0	25.9	1.9	1.9
	60대 이상	(9)	41.3	55.6	0.0	0.0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37.0	29.6	0.0	0.0
	300-499만원 이하	(75)	53.2	29.3	1.3	1.3
	500-599만원 이하	(55)	22.6	12.7	0.0	0.0
	600-799만원 이하	(22)	44.4	18.2	0.0	0.0
	800만원 이상	(22)	27.8	36.4	0.0	0.0
<b>가족 수</b>	1명	(5)	22.2	0.0	0.0	0.0
	2명	(24)	22.2	45.8	0.0	0.0
	3명	(53)	22.2	20.8	0.0	0.0
	4명	(95)	48.1	23.2	1.1	1.1
	5명 이상	(24)	38.7	20.8	0.0	0.0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32.1%), ‘민간인증제도’ (13.0%) 등의 순임.

[그림 4]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 등록제/인증제 병행 응답자, N=131, %)



○ Q4. (문3의 ‘2, 3’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 (65.2%)이 ‘여성’ (43.5%)보다 국가인증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표 4]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 등록제 /인증제 병행 응답자, N=1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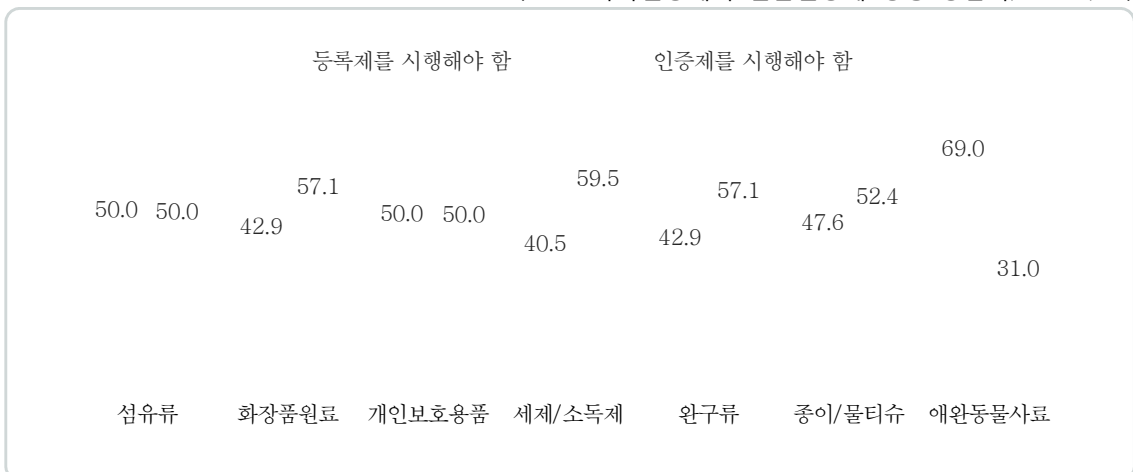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도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민간인증제도
<b>전 체</b>	<b>(131)</b>	<b>55.0</b>	<b>32.1</b>	<b>13.0</b>
<b>성별</b>	남성 (69)	65.2	21.7	13.0
	여성 (62)	43.5	43.5	12.9
<b>연령</b>	20대 (9)	33.3	44.4	22.2
	30대 (29)	75.9	20.7	3.4
	40대 (48)	54.2	22.9	22.9
	50대 (38)	47.4	44.7	7.9
	60대 이상 (7)	42.9	57.1	0.0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14)	35.7	50.0	14.3
	300-499만원 이하 (51)	54.9	37.3	7.8
	500-599만원 이하 (36)	69.4	16.7	13.9
	600-799만원 이하 (19)	57.9	15.8	26.3
	800만원 이상 (11)	27.3	63.6	9.1
	<b>가족 수</b>	1명 (3)	66.7	0.0
2명 (18)		33.3	44.4	22.2
3명 (36)		58.3	25.0	16.7
4명 (62)		58.1	33.9	8.1
5명 이상 (12)		58.3	33.3	8.3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

- 등록제를 시행해야하는 품목으로 애완동물사료가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제를 시행해야하는 품목으로 ‘세제/소독제’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품목별)

(Base: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 병행 응답자, N=42, %)



- Q5. 등록제와 인증제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

(Base: 비식용 유기가공품 등록제도/인증제도 도입 찬성 응답자, N=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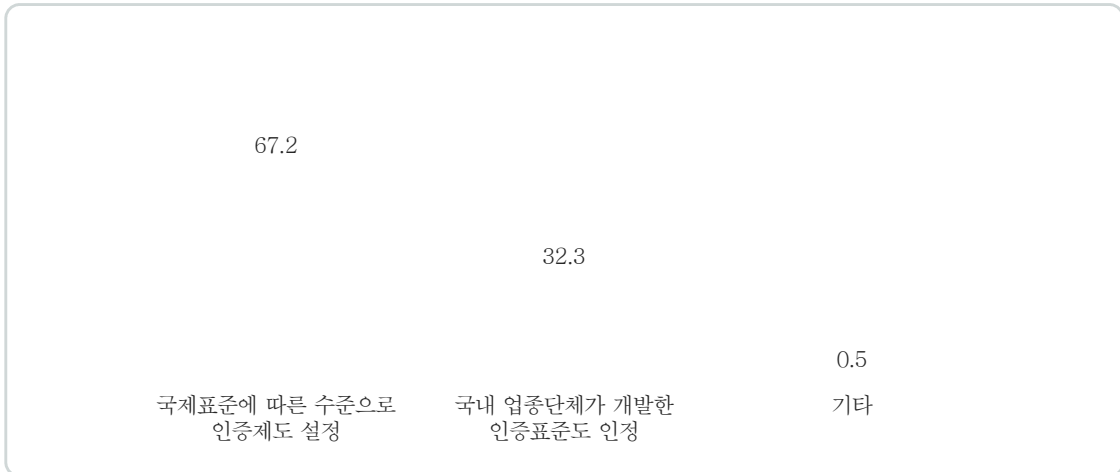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인증제	등록제
섬유류	(42)	50.0	50.0
화장품원료	(42)	42.9	57.1
개인보호용품	(42)	50.0	50.0
세제/소독제	(42)	40.5	59.5
완구류	(42)	42.9	57.1
종이/물티슈	(42)	47.6	52.4
애완동물사료	(42)	69.0	31.0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설정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설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인증표준도 인정해야한다는 응답은 32.3%로 나타남.

[그림 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Base: 전체, N=201, %)



Q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 (73.0%)이 ‘여성’ (61.4%)보다 국가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국가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인증표준도 인정	기타
<b>전 체</b>		<b>(201)</b>	<b>67.2</b>	<b>32.3</b>	<b>0.5</b>
성별	남성	(100)	73.0	27.0	0.0
	여성	(101)	61.4	37.6	1.0
연령	20대	(30)	60.0	40.0	0.0
	30대	(46)	73.9	26.1	0.0
	40대	(62)	67.7	32.3	0.0
	50대	(54)	64.8	33.3	1.9
	60대 이상	(9)	66.7	33.3	0.0
	가정 월평균소 득	299만원 이상	(27)	66.7	33.3
300-499만원 이하	(75)	66.7	32.0	1.3	
500-599만원 이하	(55)	72.7	27.3	0.0	
600-799만원 이하	(22)	72.7	27.3	0.0	
800만원 이상	(22)	50.0	50.0	0.0	
가족 수	1명	(5)	80.0	20.0	0.0
	2명	(24)	70.8	29.2	0.0
	3명	(53)	71.7	28.3	0.0
	4명	(95)	62.1	36.8	1.1
	5명 이상	(24)	70.8	29.2	0.0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인증

-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품목은 화장품원료가 69.2점으로 가장 높음.
-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해야한다는 품목은 ‘개인보호용품’, 종이/물티슈 ‘가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인증

(Base: 국내 표준 인정 응답자, N=65, %)



Q7. 인증제의 표준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

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품목에 대해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7]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표준 인증 (Base: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국내 표준 인정 응답자, N=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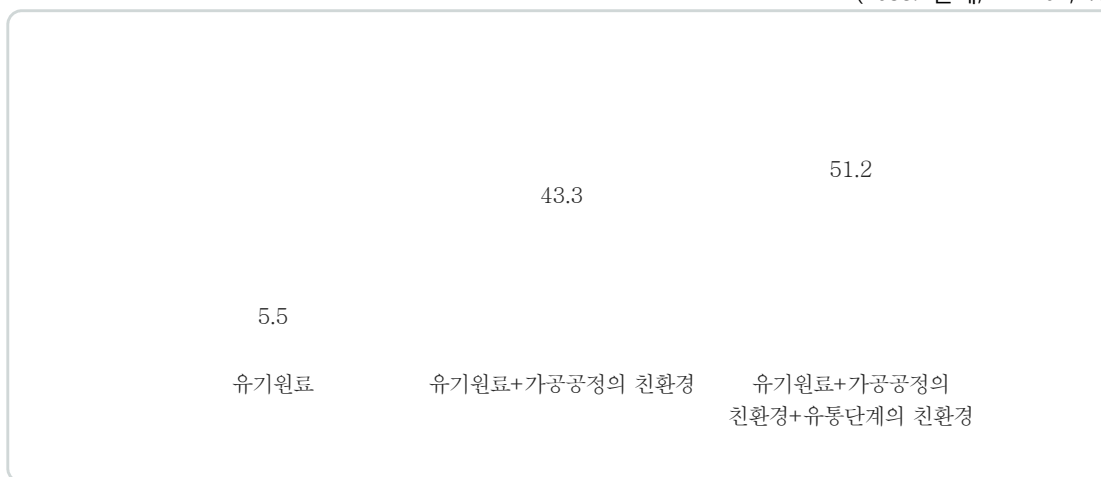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
섬유류	(65)	64.6	35.4
화장품원료	(65)	69.2	30.8
개인보호용품	(65)	52.3	47.7
세제/소독제	(65)	64.6	35.4
완구류	(65)	61.5	38.5
종이/물티슈	(65)	52.3	47.7
애완동물사료	(65)	60.0	40.0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43.3%), ‘유기원료’ (5.5%) 등의 순임.

[그림 8]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201, %)



Q8.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을 선택한 비율이 3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8]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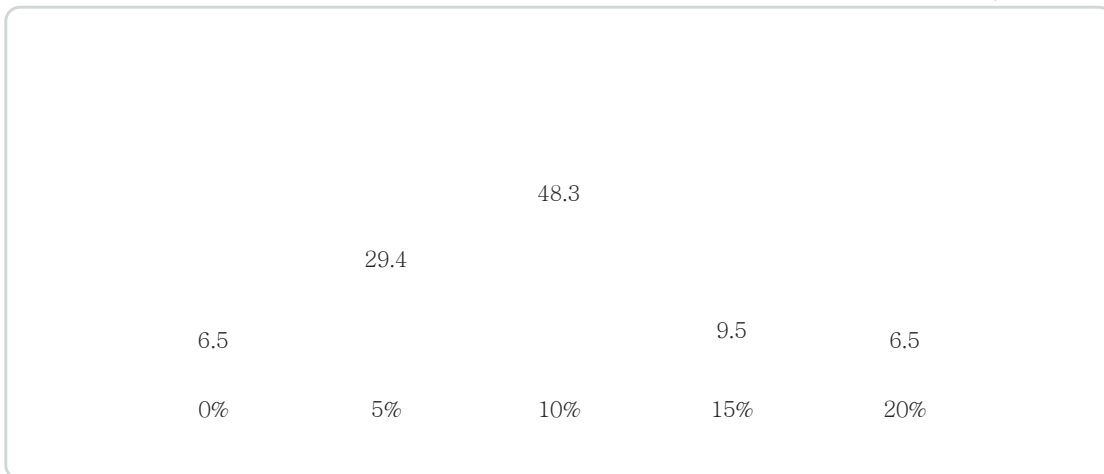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유기원료	유기원료+가공공정 의 친환경	유기원료+가공공정 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b>전 체</b>	<b>(201)</b>	<b>5.5</b>	<b>43.3</b>	<b>51.2</b>	
<b>성별</b>	남성	(100)	4.0	43.0	53.0
	여성	(101)	6.9	43.6	49.5
<b>연령</b>	20대	(30)	10.0	50.0	40.0
	30대	(46)	6.5	32.6	60.9
	40대	(62)	3.2	43.5	53.2
	50대	(54)	5.6	46.3	48.1
	60대 이상	(9)	0.0	55.6	44.4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3.7	37.0	59.3
	300-499만원 이하	(75)	5.3	42.7	52.0
	500-599만원 이하	(55)	5.5	50.9	43.6
	600-799만원 이하	(22)	4.5	50.0	45.5
	800만원 이상	(22)	9.1	27.3	63.6
<b>가족 수</b>	1명	(5)	0.0	40.0	60.0
	2명	(24)	0.0	33.3	66.7
	3명	(53)	7.5	41.5	50.9
	4명	(95)	6.3	47.4	46.3
	5명 이상	(24)	4.2	41.7	54.2

## ○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5%’ (29.4%), ‘15%’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9. 유기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 시 유기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남성과 여성 모두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9] 유기원료 인증된 친환경 가공품 구입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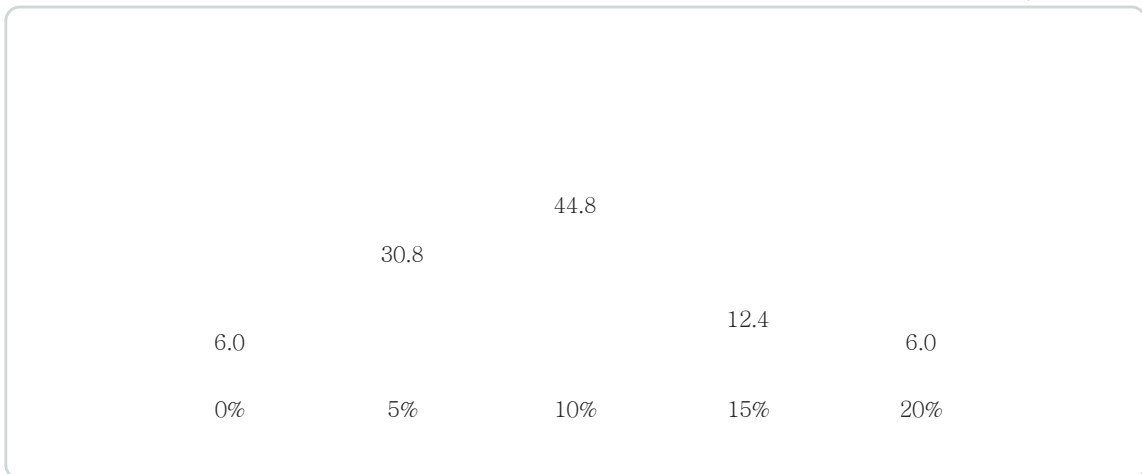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체</b>	<b>(201)</b>	<b>6.5</b>	<b>29.4</b>	<b>48.3</b>	<b>9.5</b>	<b>6.5</b>	
<b>성별</b>	남성	(100)	8.0	23.0	54.0	10.0	5.0
	여성	(101)	5.0	35.6	42.6	8.9	7.9
<b>연령</b>	20대	(30)	10.0	16.7	50.0	16.7	6.7
	30대	(46)	8.7	28.3	45.7	10.9	6.5
	40대	(62)	3.2	30.6	50.0	9.7	6.5
	50대	(54)	3.7	33.3	51.9	3.7	7.4
	60대 이상	(9)	22.2	44.4	22.2	11.1	0.0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11.1	51.9	29.6	3.7	3.7
	300-499만원 이하	(75)	9.3	30.7	46.7	6.7	6.7
	500-599만원 이하	(55)	3.6	20.0	50.9	18.2	7.3
	600-799만원 이하	(22)	0.0	31.8	63.6	4.5	0.0
	800만원 이상	(22)	4.5	18.2	54.5	9.1	13.6
<b>가족 수</b>	1명	(5)	0.0	40.0	60.0	0.0	0.0
	2명	(24)	12.5	41.7	33.3	8.3	4.2
	3명	(53)	7.5	34.0	47.2	5.7	5.7
	4명	(95)	6.3	21.1	51.6	12.6	8.4
	5명 이상	(24)	0.0	37.5	50.0	8.3	4.2

### ○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5%’ (30.8%), ‘15%’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10. 유기원료 + 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만 인증되는 경우(Q9)에 비해 가공공정의 친환경까지 인증되는 제품에 대해 얼마까지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나요?

- 남성과 여성 모두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 가공공정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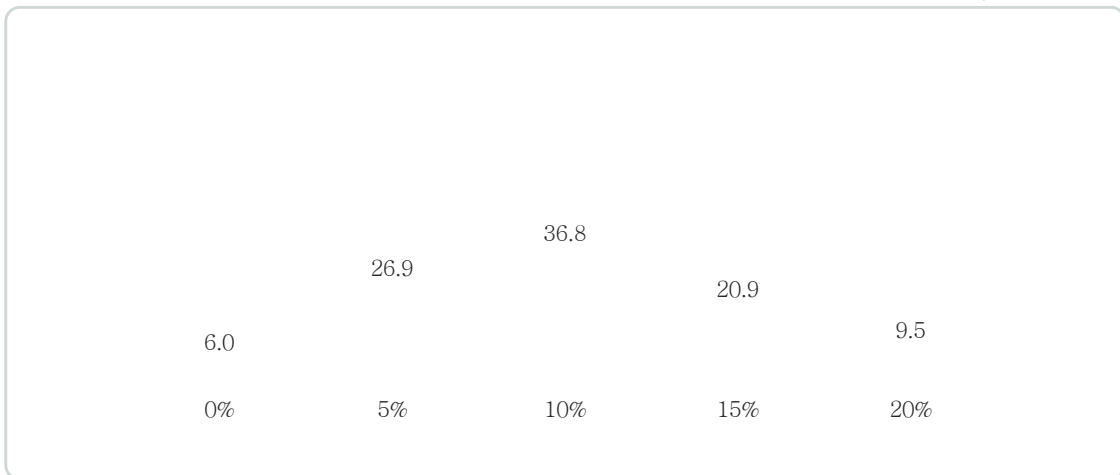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 체</b>	<b>(201)</b>	<b>6.0</b>	<b>30.8</b>	<b>44.8</b>	<b>12.4</b>	<b>6.0</b>	
<b>성별</b>	남성	(100)	7.0	25.0	51.0	13.0	4.0
	여성	(101)	5.0	36.6	38.6	11.9	7.9
<b>연령</b>	20대	(30)	6.7	20.0	50.0	20.0	3.3
	30대	(46)	8.7	32.6	43.5	8.7	6.5
	40대	(62)	4.8	27.4	45.2	16.1	6.5
	50대	(54)	3.7	37.0	44.4	9.3	5.6
	60대 이상	(9)	11.1	44.4	33.3	0.0	11.1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11.1	51.9	29.6	7.4	0.0
	300-499만원 이하	(75)	8.0	30.7	45.3	9.3	6.7
	500-599만원 이하	(55)	3.6	21.8	50.9	18.2	5.5
	600-799만원 이하	(22)	0.0	40.9	45.5	13.6	0.0
	800만원 이상	(22)	4.5	18.2	45.5	13.6	18.2
<b>가족 수</b>	1명	(5)	0.0	40.0	40.0	20.0	0.0
	2명	(24)	8.3	41.7	37.5	12.5	0.0
	3명	(53)	9.4	39.6	37.7	7.5	5.7
	4명	(95)	5.3	23.2	50.5	13.7	7.4
	5명 이상	(24)	0.0	29.2	45.8	16.7	8.3

## ○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시 추가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5%’ (26.9%), ‘15%’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11.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가 실시 된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경우(Q10)에 비해 유통단계의 친환경까지 인증되는 제품에 대해 얼마까지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나요?

- 남성과 여성 모두 1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 유통단계 친환경 인증 제품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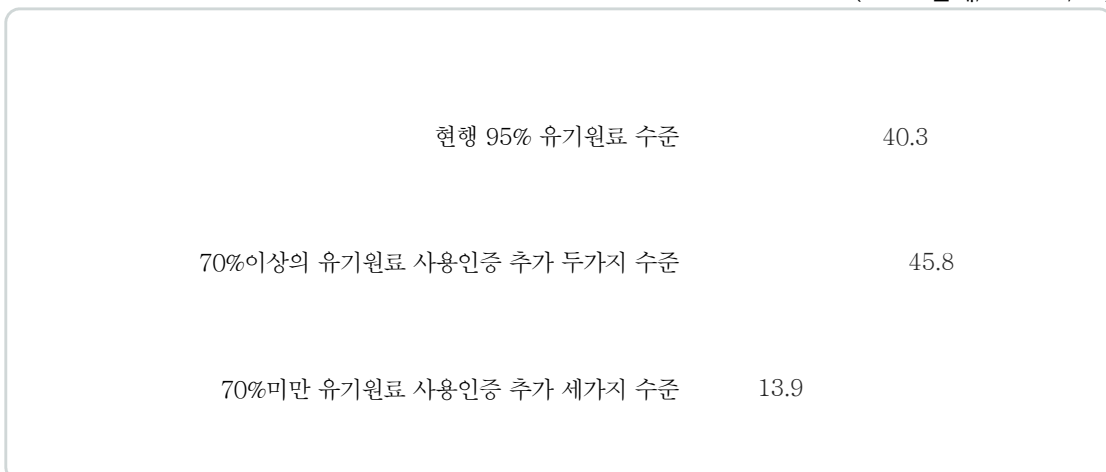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 체</b>	<b>(201)</b>	<b>6.0</b>	<b>26.9</b>	<b>36.8</b>	<b>20.9</b>	<b>9.5</b>	
<b>성별</b>	남성	(100)	8.0	19.0	36.0	29.0	8.0
	여성	(101)	4.0	34.7	37.6	12.9	10.9
<b>연령</b>	20대	(30)	6.7	13.3	43.3	23.3	13.3
	30대	(46)	8.7	26.1	41.3	15.2	8.7
	40대	(62)	4.8	33.9	24.2	25.8	11.3
	50대	(54)	3.7	25.9	42.6	22.2	5.6
	60대 이상	(9)	11.1	33.3	44.4	0.0	11.1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7.4	40.7	44.4	3.7	3.7
	300-499만원 이하	(75)	8.0	24.0	38.7	20.0	9.3
	500-599만원 이하	(55)	3.6	27.3	32.7	27.3	9.1
	600-799만원 이하	(22)	0.0	36.4	27.3	31.8	4.5
	800만원 이상	(22)	9.1	9.1	40.9	18.2	22.7
<b>가족 수</b>	1명	(5)	0.0	60.0	40.0	0.0	0.0
	2명	(24)	4.2	37.5	41.7	12.5	4.2
	3명	(53)	7.5	32.1	34.0	18.9	7.5
	4명	(95)	7.4	18.9	38.9	23.2	11.6
	5명 이상	(24)	0.0	29.2	29.2	29.2	12.5

### ○ 차등 인증제도 관련

-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시 70% 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음.

[그림 12] 차등 인증제도 관련

(Base: 전체, N=201, %)



Q12. (차등 인증제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은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 인증 추가를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표 12] 차등 인증제도 관련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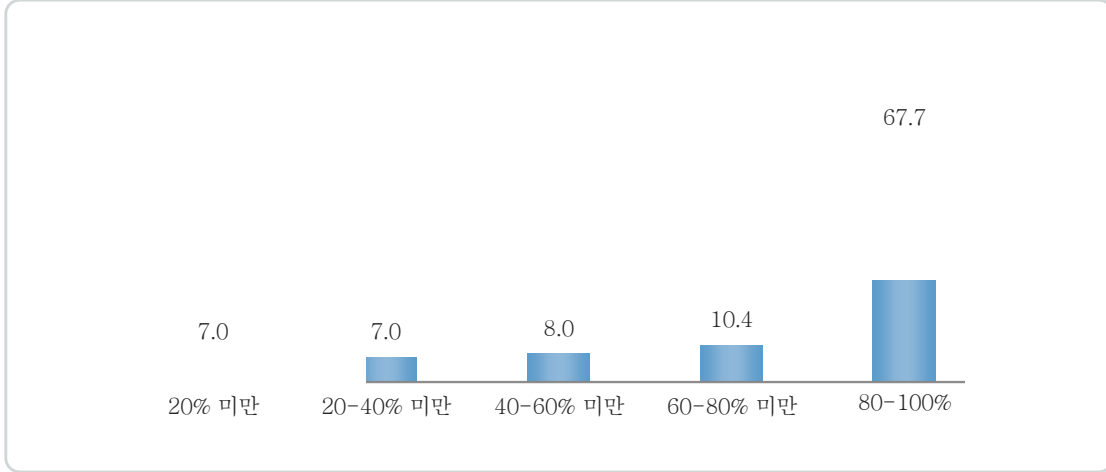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현행95% 유기원료 수준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두가지 수준	70%미만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세가지 수준	
<b>전 체</b>	<b>(201)</b>	<b>40.3</b>	<b>45.8</b>	<b>13.9</b>	
<b>성별</b>	남성	(100)	42.0	41.0	17.0
	여성	(101)	38.6	50.5	10.9
<b>연령</b>	20대	(30)	43.3	50.0	6.7
	30대	(46)	50.0	39.1	10.9
	40대	(62)	38.7	48.4	12.9
	50대	(54)	31.5	48.1	20.4
	60대 이상	(9)	44.4	33.3	22.2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63.0	25.9	11.1
	300-499만원 이하	(75)	38.7	45.3	16.0
	500-599만원 이하	(55)	30.9	58.2	10.9
	600-799만원 이하	(22)	45.5	50.0	4.5
	800만원 이상	(22)	36.4	36.4	27.3
<b>가족 수</b>	1명	(5)	80.0	0.0	20.0
	2명	(24)	41.7	54.2	4.2
	3명	(53)	45.3	39.6	15.1
	4명	(95)	37.9	50.5	11.6
	5명 이상	(24)	29.2	41.7	29.2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 수준

- 최고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 수준으로 ‘80-100%’ 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3]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수준

(Base: 전체, N=201, %)



Q13. (인증로고/표시 관련) 유기식품에 대한 국제기구인 IFOAM은 95% 이상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만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5% 미만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유기농산물과 비유기 원료, 첨가물의 혼합 가공품에 대해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과 여성, 전 연령층에서 ‘80-100%’ 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의 적절한 요구수준

(Base: 전체, N=201, %)

구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평균	
<b>전체</b>	<b>(201)</b>	<b>7.0</b>	<b>7.0</b>	<b>8.0</b>	<b>10.4</b>	<b>67.7</b>	<b>75.3</b>	
<b>성별</b>	남성	(100)	6.0	5.0	5.0	7.0	77.0	79.6
	여성	(101)	7.9	8.9	10.9	13.9	58.4	71.0
<b>연령</b>	20대	(30)	6.7	0.0	16.7	10.0	66.7	77.7
	30대	(46)	10.9	10.9	10.9	10.9	56.5	68.0
	40대	(62)	8.1	8.1	6.5	8.1	69.4	74.8
	50대	(54)	3.7	7.4	3.7	13.0	72.2	78.5
	60대 이상	(9)	0.0	0.0	0.0	11.1	88.9	88.8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11.1	3.7	7.4	11.1	66.7	75.2
	300-499만원 이하	(75)	6.7	4.0	4.0	10.7	74.7	79.2
	500-599만원 이하	(55)	9.1	10.9	14.5	10.9	54.5	67.5
	600-799만원 이하	(22)	0.0	9.1	4.5	9.1	77.3	81.1
	800만원 이상	(22)	4.5	9.1	9.1	9.1	68.2	75.6
<b>가족 수</b>	1명	(5)	0.0	20.0	20.0	20.0	40.0	70.0
	2명	(24)	0.0	0.0	8.3	12.5	79.2	83.3
	3명	(53)	7.5	3.8	11.3	9.4	67.9	75.5
	4명	(95)	6.3	9.5	5.3	11.6	67.4	75.3
	5명 이상	(24)	16.7	8.3	8.3	4.2	62.5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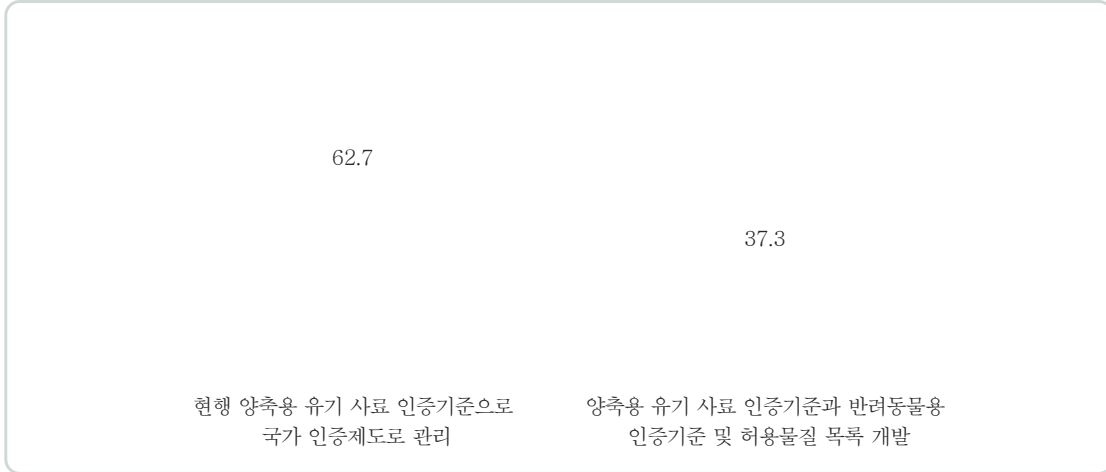


##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시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를 관리 해야한다는 비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Base: 전체, N=201, %)



Q14.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관련) 현재 국내 유기인증은 양축용 축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나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으며 미국 NOP의 경우 애완동물용 사료 인증은 축산용 사료에 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이 여성보다 현행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를 관리해야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14]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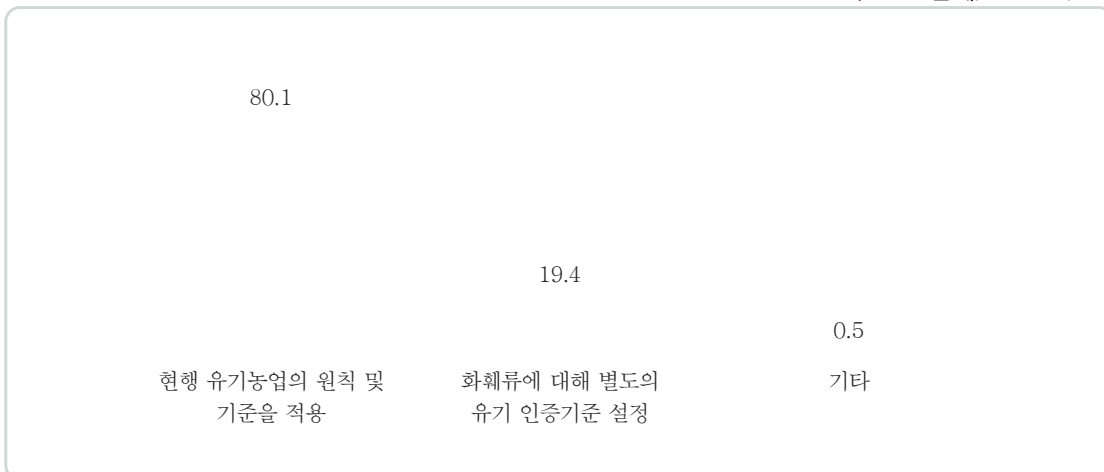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현행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국가 인증제도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반려동물용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b>전 체</b>	<b>(201)</b>	<b>62.7</b>	<b>37.3</b>
성별	남성	(100)	66.0
	여성	(101)	59.4
연령	20대	(30)	60.0
	30대	(46)	78.3
	40대	(62)	59.7
	50대	(54)	55.6
	60대 이상	(9)	55.6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70.4
	300-499만원 이하	(75)	62.7
	500-599만원 이하	(55)	60.0
	600-799만원 이하	(22)	63.6
	800만원 이상	(22)	59.1
	가족 수	1명	(5)
2명	(24)	70.8	
3명	(53)	66.0	
4명	(95)	61.1	
5명 이상	(24)	62.5	

###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 유기화훼류 도입 시 현행 유기농업의 원칙 및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는 비율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5]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Base: 전체, N=201, %)



Q15. (유기화훼류 인증 관련) 현재 유기 화훼류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이 여성보다 현행 유기농업의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5]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현행 유기농업의 원칙 및 기준을 적용	화훼류에 대해 별도의 유기 인증기준 설정	기타
<b>전 체</b>		<b>(201)</b>	<b>80.1</b>	<b>19.4</b>	<b>0.5</b>
<b>성별</b>	남성	(100)	84.0	16.0	0.0
	여성	(101)	76.2	22.8	1.0
<b>연령</b>	20대	(30)	90.0	10.0	0.0
	30대	(46)	89.1	10.9	0.0
	40대	(62)	72.6	27.4	0.0
	50대	(54)	77.8	20.4	1.9
	60대 이상	(9)	66.7	33.3	0.0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85.2	14.8	0.0
	300-499만원 이하	(75)	77.3	21.3	1.3
	500-599만원 이하	(55)	83.6	16.4	0.0
	600-799만원 이하	(22)	72.7	27.3	0.0
	800만원 이상	(22)	81.8	18.2	0.0
	<b>가족 수</b>	1명	(5)	100.0	0.0
	2명	(24)	79.2	20.8	0.0
	3명	(53)	81.1	18.9	0.0
	4명	(95)	78.9	20.0	1.1
	5명 이상	(24)	79.2	20.8	0.0

## ○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

-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표기’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신뢰 있는 기관의 인증 도입’ (17.3%), ‘홍보 필요’ (12.6%)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6]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

(Base: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의견 있음 응답자, N=127, %)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	30.7
신뢰 있는 기관의 인증 도입	17.3
홍보 필요	12.6
지속적인 유통 감시 관리	10.2
법적 처벌 강화	7.1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기	4.7
등급 세분화	3.1
전세계 공용 인증제 도입	3.1
유해성분 표시 추가	2.4

Q15. (유기화합류 인증 관련) 현재 유기 화합류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합류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1-16]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점

(Base: 유기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현행 표시제도 보완의견 있음 응답자,  
N=1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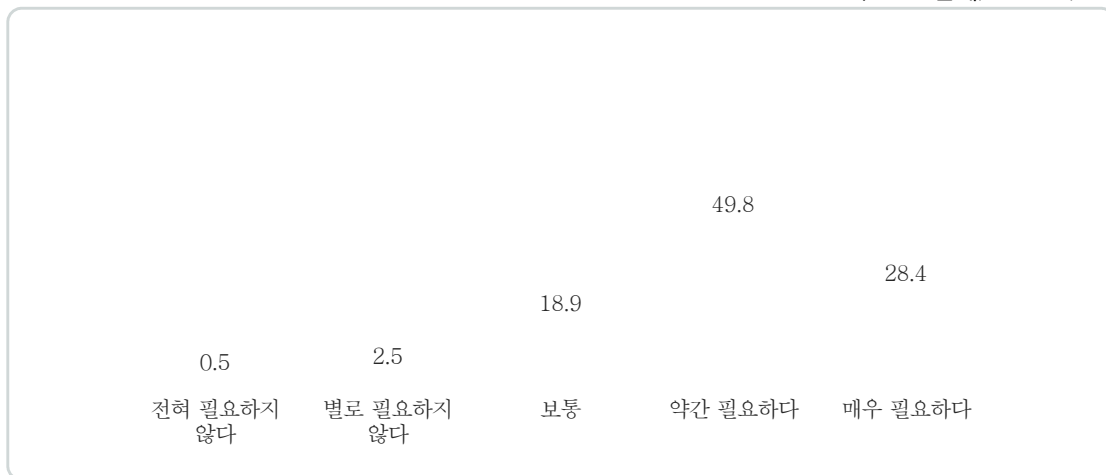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보완사항
1	(39)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
2	(22)	신뢰 있는 기관의 인증 도입
3	(16)	홍보 필요
4	(13)	지속적인 유통 감시 관리
5	(9)	법적 처벌 강화
6	(6)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기
7	(4)	등급 세분화
8	(4)	전세계 공용 인증제 도입
9	(3)	유해성분 표시 추가
10	(1)	공평한 제도 확립
11	(1)	동일한 기준 적용
12	(1)	식물성 사료와 동물성 사료의 정확한 구분 실시
13	(1)	양심적인 제조 및 판매
14	(1)	원료 가공 실명제 도입
15	(1)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따른 차등표시 실시
16	(1)	유기원료 사용비율을 높이면 좋겠음
17	(1)	유통경로의 단순화로 원가절감
18	(1)	정보공개 투명
19	(1)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 성립
20	(1)	천연원료 사용

## ○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응답자의 78.1%는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 내에 유기와 무농약을 구분하고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100점 평균 기준으로는 75.7점임.

[그림 17]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201, %)



Q17.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인증제도 내에 유기와 무농약을 구분하고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연령이 높을수록 유기와 무농약을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17] 인증제도 내 유기/무농약 구분, 무농약 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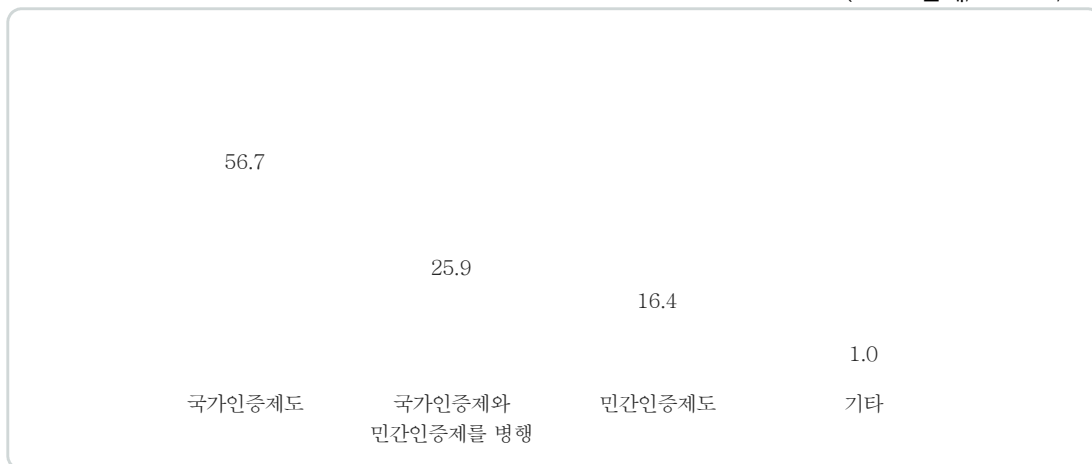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b>전체</b>	<b>(201)</b>	<b>0.5</b>	<b>2.5</b>	<b>18.9</b>	<b>49.8</b>	<b>28.4</b>	<b>75.7</b>	
성별	남성	(100)	1.0	3.0	14.0	51.0	31.0	77.0
	여성	(101)	0.0	2.0	23.8	48.5	25.7	74.5
연령	20대	(30)	0.0	3.3	26.7	46.7	23.3	72.5
	30대	(46)	0.0	2.2	17.4	58.7	21.7	75.0
	40대	(62)	1.6	4.8	17.7	43.5	32.3	75.0
	50대	(54)	0.0	0.0	18.5	50.0	31.5	78.2
	60대 이상	(9)	0.0	0.0	11.1	55.6	33.3	80.6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3.7	3.7	18.5	44.4	29.6	73.1
	300-499만원 이하	(75)	0.0	1.3	18.7	57.3	22.7	75.3
	500-599만원 이하	(55)	0.0	1.8	23.6	47.3	27.3	75.0
	600-799만원 이하	(22)	0.0	9.1	13.6	40.9	36.4	76.1
	800만원 이상	(22)	0.0	0.0	13.6	45.5	40.9	81.8
가족 수	1명	(5)	0.0	0.0	40.0	40.0	20.0	70.0
	2명	(24)	0.0	0.0	16.7	58.3	25.0	77.1
	3명	(53)	1.9	7.5	20.8	54.7	15.1	68.4
	4명	(95)	0.0	1.1	20.0	45.3	33.7	77.9
	5명 이상	(24)	0.0	0.0	8.3	50.0	41.7	83.3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25.9%), ‘민간인증제도’ (16.4%) 등의 순임.

[그림 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

(Base: 전체, N=201, %)



Q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피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인증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운영방식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도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민간인증제도	기타	
<b>전 체</b>	<b>(201)</b>	<b>56.7</b>	<b>25.9</b>	<b>16.4</b>	<b>1.0</b>	
성별	남성	(100)	62.0	22.0	16.0	0.0
	여성	(101)	51.5	29.7	16.8	2.0
연령	20대	(30)	56.7	13.3	26.7	3.3
	30대	(46)	65.2	23.9	10.9	0.0
	40대	(62)	51.6	25.8	22.6	0.0
	50대	(54)	57.4	33.3	7.4	1.9
	60대 이상	(9)	44.4	33.3	22.2	0.0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63.0	22.2	14.8	0.0
	300-499만원 이하	(75)	57.3	30.7	10.7	1.3
	500-599만원 이하	(55)	60.0	18.2	21.8	0.0
	600-799만원 이하	(22)	54.5	27.3	18.2	0.0
	800만원 이상	(22)	40.9	31.8	22.7	4.5
가족 수	1명	(5)	40.0	40.0	20.0	0.0
	2명	(24)	45.8	29.2	25.0	0.0
	3명	(53)	66.0	20.8	13.2	0.0
	4명	(95)	57.9	25.3	15.8	1.1
	5명 이상	(24)	45.8	33.3	16.7	4.2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

- 무농약 가공식품 도입 시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

(Base: 전체, N=201, %)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	55.7
유기농과 무농약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	43.8
기타	0.5

Q1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20대에서 무농약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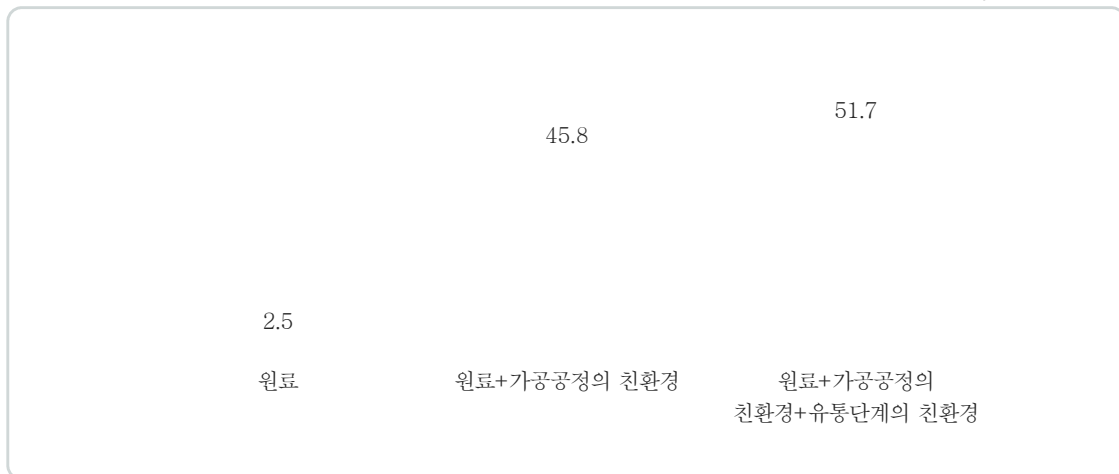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무농약 원료의 95% 이상 사용 시 인증	유기농 원료와 무농약 원료 혼합 95% 이상 사용 시 인증	기타	
<b>전 체</b>	<b>(201)</b>	<b>55.7</b>	<b>43.8</b>	<b>0.5</b>	
<b>성별</b>	남성	(100)	57.0	43.0	0.0
	여성	(101)	54.5	44.6	1.0
<b>연령</b>	20대	(30)	73.3	26.7	0.0
	30대	(46)	60.9	39.1	0.0
	40대	(62)	45.2	54.8	0.0
	50대	(54)	57.4	40.7	1.9
	60대 이상	(9)	33.3	66.7	0.0
<b>가정 월평균소득 특</b>	299만원 이상	(27)	59.3	40.7	0.0
	300-499만원 이하	(75)	56.0	42.7	1.3
	500-599만원 이하	(55)	50.9	49.1	0.0
	600-799만원 이하	(22)	54.5	45.5	0.0
	800만원 이상	(22)	63.6	36.4	0.0
<b>가족 수</b>	1명	(5)	60.0	40.0	0.0
	2명	(24)	41.7	58.3	0.0
	3명	(53)	58.5	41.5	0.0
	4명	(95)	55.8	43.2	1.1
	5명 이상	(24)	62.5	37.5	0.0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201, %)



Q20.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남성이 여성보다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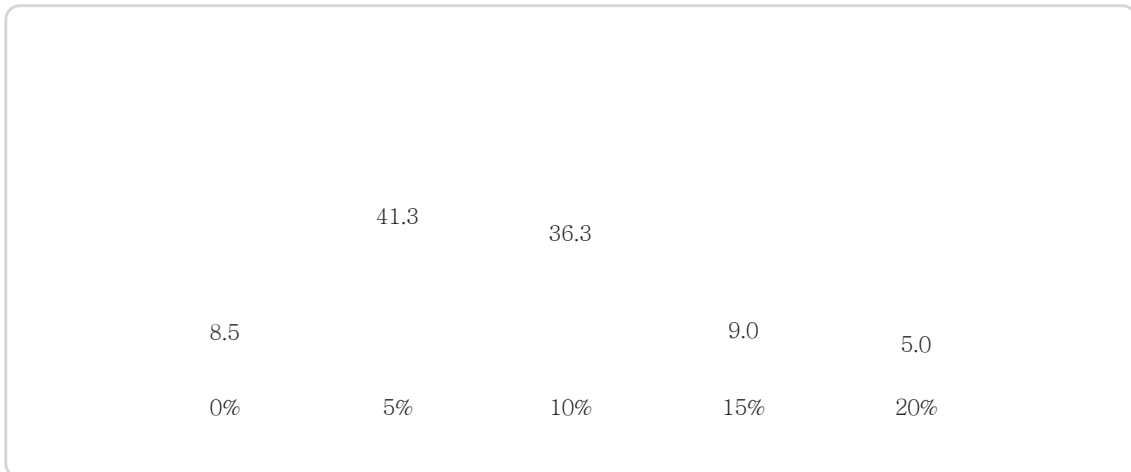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원료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 의 친환경
<b>전 체</b>	<b>(201)</b>	<b>2.5</b>	<b>45.8</b>	<b>51.7</b>
<b>성별</b>	남성 (100)	1.0	39.0	60.0
	여성 (101)	4.0	52.5	43.6
<b>연령</b>	20대 (30)	3.3	60.0	36.7
	30대 (46)	2.2	32.6	65.2
	40대 (62)	1.6	53.2	45.2
	50대 (54)	1.9	40.7	57.4
	60대 이상 (9)	11.1	44.4	44.4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0.0	37.0	63.0
	300-499만원 이하 (75)	4.0	46.7	49.3
	500-599만원 이하 (55)	1.8	54.5	43.6
	600-799만원 이하 (22)	0.0	59.1	40.9
	800만원 이상 (22)	4.5	18.2	77.3
	<b>가족 수</b>	1명 (5)	0.0	0.0
2명 (24)		0.0	37.5	62.5
3명 (53)		3.8	41.5	54.7
4명 (95)		3.2	53.7	43.2
5명 이상 (24)		0.0	41.7	58.3

## ○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 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실시 시 추가 지불 가격으로 5%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음.

[그림 21]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21.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만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Q20-1), 귀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여성이 남성보다 추가 지불 가격으로 5%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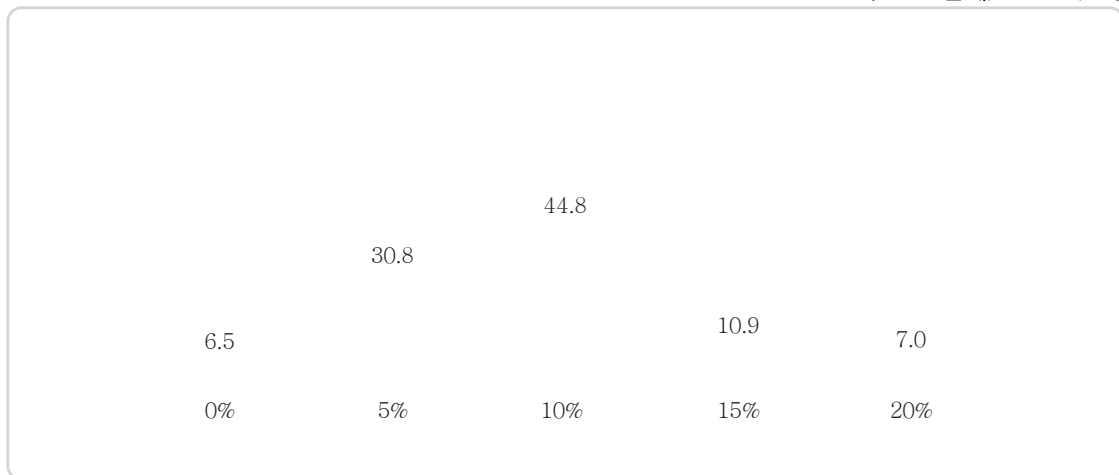
[표 21] 원료 함량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 체</b>		<b>(201)</b>	<b>8.5</b>	<b>41.3</b>	<b>36.3</b>	<b>9.0</b>	<b>5.0</b>
성별	남성	(100)	10.0	38.0	38.0	8.0	6.0
	여성	(101)	6.9	44.6	34.7	9.9	4.0
연령	20대	(30)	3.3	43.3	30.0	10.0	13.3
	30대	(46)	13.0	32.6	47.8	2.2	4.3
	40대	(62)	8.1	41.9	32.3	11.3	6.5
	50대	(54)	5.6	44.4	38.9	11.1	0.0
	60대 이상	(9)	22.2	55.6	11.1	11.1	0.0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11.1	51.9	29.6	3.7	3.7
	300-499만원 이하	(75)	13.3	37.3	37.3	9.3	2.7
	500-599만원 이하	(55)	1.8	47.3	32.7	12.7	5.5
	600-799만원 이하	(22)	4.5	45.5	36.4	4.5	9.1
	800만원 이상	(22)	9.1	22.7	50.0	9.1	9.1
	가족 수	1명	(5)	0.0	80.0	20.0	0.0
	2명	(24)	20.8	33.3	33.3	4.2	8.3
	3명	(53)	9.4	47.2	35.8	0.0	7.5
	4명	(95)	6.3	37.9	37.9	14.7	3.2
	5명 이상	(24)	4.2	41.7	37.5	12.5	4.2

### ○ 원료+가공공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 원료+가공공정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실시 시 추가 지불 가격으로 1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 원료+가공공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22.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Q20-2), 귀하

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남성과 여성 모두 1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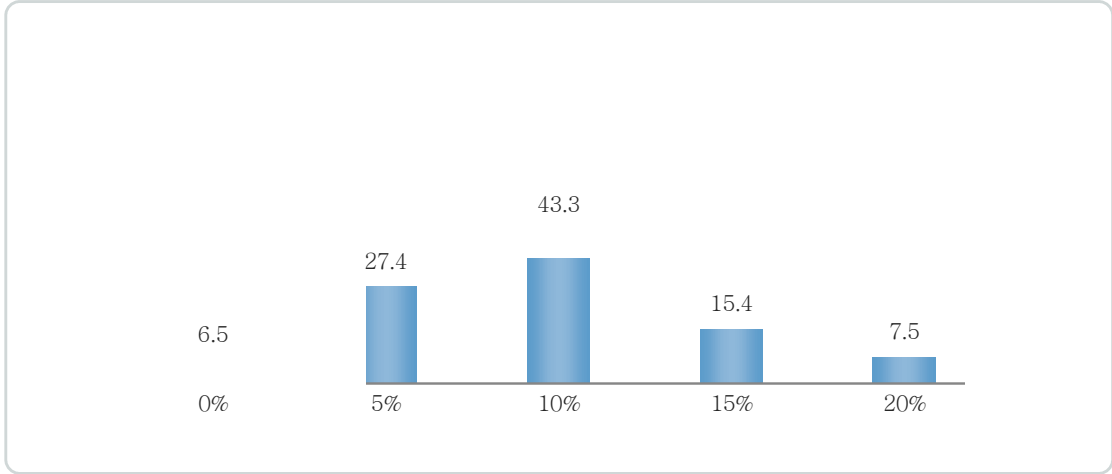
[표 22] 원료+가공공정 친환경 인증기준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구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체</b>	<b>(201)</b>	<b>6.5</b>	<b>30.8</b>	<b>44.8</b>	<b>10.9</b>	<b>7.0</b>
<b>성별</b>	남성 (100)	7.0	27.0	46.0	11.0	9.0
	여성 (101)	5.9	34.7	43.6	10.9	5.0
<b>연령</b>	20대 (30)	3.3	23.3	50.0	13.3	10.0
	30대 (46)	10.9	28.3	47.8	4.3	8.7
	40대 (62)	3.2	25.8	46.8	14.5	9.7
	50대 (54)	5.6	42.6	38.9	11.1	1.9
	60대 이상 (9)	22.2	33.3	33.3	11.1	0.0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11.1	44.4	33.3	3.7	7.4
	300-499만원 이하 (75)	6.7	30.7	44.0	13.3	5.3
	500-599만원 이하 (55)	1.8	30.9	49.1	10.9	7.3
	600-799만원 이하 (22)	4.5	31.8	50.0	9.1	4.5
	800만원 이상 (22)	13.6	13.6	45.5	13.6	13.6
<b>가족 수</b>	1명 (5)	0.0	40.0	40.0	0.0	20.0
	2명 (24)	8.3	41.7	41.7	4.2	4.2
	3명 (53)	9.4	32.1	47.2	0.0	11.3
	4명 (95)	3.2	30.5	44.2	18.9	3.2
	5명 이상 (24)	12.5	16.7	45.8	12.5	12.5

### ○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가격으로 10%를 응답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Q23.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의 친환경을 인증기준으로 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Q20-3), 귀하는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무농약/무항생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품에 비해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나요?

- 남성과 여성 모두 추가 지불 가격으로 10%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 원료+가공공정+유통단계 친환경 무농약 가공식품 구입 시 추가 지불 가격 (Base: 전체, N=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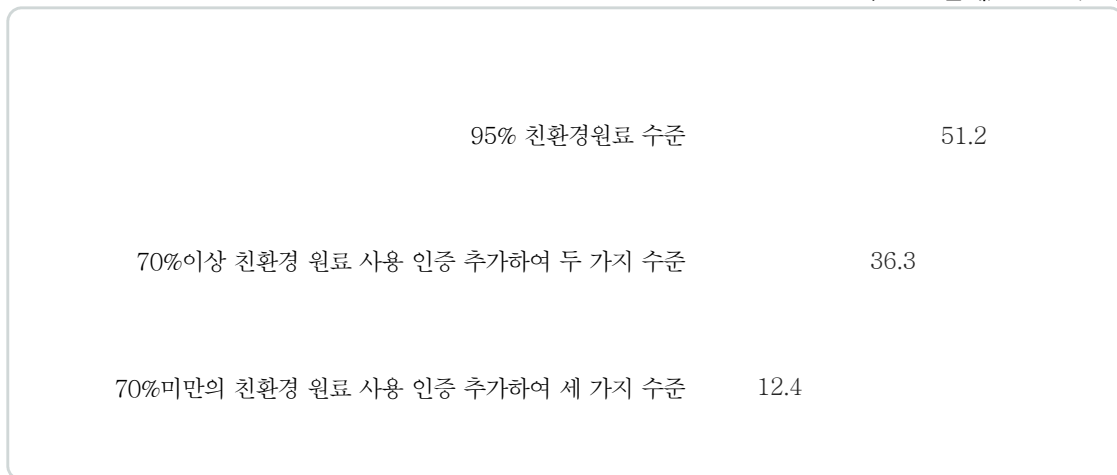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0%	5%	10%	15%	20%
<b>전체</b>		<b>(201)</b>	<b>6.5</b>	<b>27.4</b>	<b>43.3</b>	<b>15.4</b>	<b>7.5</b>
<b>성별</b>	남성	(100)	7.0	23.0	43.0	18.0	9.0
	여성	(101)	5.9	31.7	43.6	12.9	5.9
<b>연령</b>	20대	(30)	3.3	20.0	46.7	13.3	16.7
	30대	(46)	8.7	28.3	47.8	10.9	4.3
	40대	(62)	4.8	27.4	38.7	19.4	9.7
	50대	(54)	7.4	29.6	42.6	18.5	1.9
	60대 이상	(9)	11.1	33.3	44.4	0.0	11.1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7.4	40.7	44.4	3.7	3.7
	300-499만원 이하	(75)	9.3	24.0	44.0	16.0	6.7
	500-599만원 이하	(55)	1.8	27.3	45.5	18.2	7.3
	600-799만원 이하	(22)	0.0	36.4	27.3	31.8	4.5
	800만원 이상	(22)	13.6	13.6	50.0	4.5	18.2
<b>가족 수</b>	1명	(5)	0.0	20.0	80.0	0.0	0.0
	2명	(24)	8.3	41.7	33.3	12.5	4.2
	3명	(53)	9.4	30.2	47.2	5.7	7.5
	4명	(95)	4.2	23.2	42.1	23.2	7.4
	5명 이상	(24)	8.3	25.0	41.7	12.5	12.5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201, %)



Q2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과 여성 모두 95% 친환경원료 수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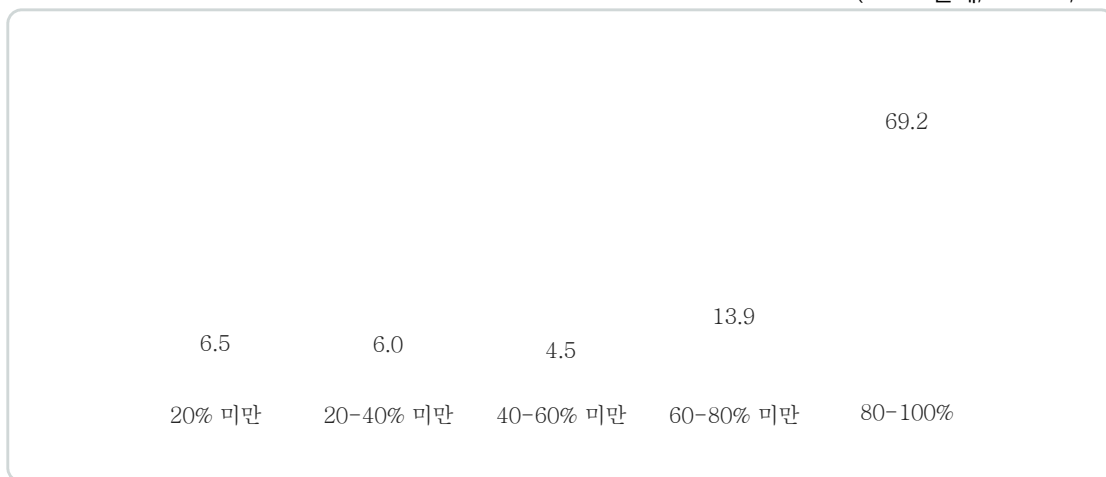
[표 2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95% 친환경원료 수준	70%이상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가지 수준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가지 수준	
<b>전 체</b>	<b>(201)</b>	<b>51.2</b>	<b>36.3</b>	<b>12.4</b>	
<b>성별</b>	남성	(100)	55.0	36.0	9.0
	여성	(101)	47.5	36.6	15.8
<b>연령</b>	20대	(30)	50.0	40.0	10.0
	30대	(46)	63.0	26.1	10.9
	40대	(62)	41.9	45.2	12.9
	50대	(54)	55.6	31.5	13.0
	60대 이상	(9)	33.3	44.4	22.2
<b>가정 월평균소득</b>	299만원 이상	(27)	77.8	14.8	7.4
	300-499만원 이하	(75)	53.3	38.7	8.0
	500-599만원 이하	(55)	43.6	40.0	16.4
	600-799만원 이하	(22)	31.8	59.1	9.1
	800만원 이상	(22)	50.0	22.7	27.3
<b>가족 수</b>	1명	(5)	60.0	40.0	0.0
	2명	(24)	62.5	25.0	12.5
	3명	(53)	50.9	37.7	11.3
	4명	(95)	51.6	34.7	13.7
	5명 이상	(24)	37.5	50.0	12.5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시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

-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80-100%’ 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5]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할때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201, %)



Q25. 인증로고/표시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성과 여성 모두 ‘80-100%’ 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할때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201, %)

구 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평균	
<b>전 체</b>	<b>(201)</b>	<b>6.5</b>	<b>6.0</b>	<b>4.5</b>	<b>13.9</b>	<b>69.2</b>	<b>77.0</b>	
성별	남성	(100)	6.0	5.0	1.0	12.0	76.0	80.7
	여성	(101)	6.9	6.9	7.9	15.8	62.4	73.3
연령	20대	(30)	0.0	3.3	6.7	26.7	63.3	81.5
	30대	(46)	8.7	10.9	4.3	8.7	67.4	72.8
	40대	(62)	11.3	6.5	4.8	14.5	62.9	73.1
	50대	(54)	3.7	3.7	3.7	11.1	77.8	81.2
	60대 이상	(9)	0.0	0.0	0.0	11.1	88.9	84.7
가정 월평균소득	299만원 이상	(27)	11.1	7.4	3.7	3.7	74.1	76.5
	300-499만원 이하	(75)	4.0	4.0	2.7	17.3	72.0	80.9
	500-599만원 이하	(55)	7.3	7.3	9.1	14.5	61.8	73.1
	600-799만원 이하	(22)	4.5	0.0	4.5	22.7	68.2	77.7
	800만원 이상	(22)	9.1	13.6	0.0	4.5	72.7	73.5
가족 수	1명	(5)	0.0	20.0	20.0	0.0	60.0	69.2
	2명	(24)	0.0	0.0	4.2	12.5	83.3	86.5
	3명	(53)	7.5	3.8	3.8	11.3	73.6	78.1
	4명	(95)	4.2	8.4	5.3	15.8	66.3	76.5
	5명 이상	(24)	20.8	4.2	0.0	16.7	58.3	68.8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80-100%’ 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Base: 전체, N=201, 명)

구 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1	철저한 관리
2	성분표시에 명확히 표기
3	생산 가공자의 실명제 도입
4	엄격한 인증 제도 시행
5	철저한 검사
6	인증이 확실해야 할 것이다.
7	무농약 표시와 함께 인증 제도를 해야한다
8	판매자의 양심이 중요하죠
9	정확하고 철저하게 검사
10	인증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11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명시

12	정직한 인증검사
13	제대로 된 인증시스템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함
14	인증제도를 도입하는것보다 관리하는게 더 중요할것같다
15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검증제도 도입
16	투명성 강화
17	유효기간
18	현재의 인증제도도 좋다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다
19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정확한 관리감독과 원산지 농민에 대한 처우 개선
20	친환경 농산물
21	차별화된 인증표시와 확실하고 정확한 검증
22	관리가 필요함
23	철저한 품질검사와 유통
24	농약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다른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
25	규정을 제정한 후 검사과정에서 문제발견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수단 마련
26	정확한수치를 표시해 주었으면 한다
27	공청회후 결정
28	검사기관
29	홍보가 필요함
30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
31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소비자가 신뢰할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되어야한다
32	정확한 표기 및 홍보
33	정말 무농약을 했는지 잘 점검을 해야함
34	청렴하면 좋겠다.
35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6	인증마크 획득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37	신뢰도
38	단순히 무농약 가공식품으로 인증 할 것이 아니라 무농약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여 함량에 따른 차등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39	국가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0	꼼꼼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41	식품의 안전도
42	실제 무농약인지를 확인해야한다. 비리 적발등 제 3자 투입
43	일반소비자도 이해 할 수 있는 쉬운 용어 사용
44	무농약이라는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45	최근 얼마동안 무농약이라고해서 인증받는데 아니라. 처음부터 확인해야된다.
46	성분표시를 믿을수있게관리되었으면한다

47	확실한 시행
48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사
49	인증 조건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50	철저한 감시 관리
51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2	신뢰받는 기관의 철저한 인증 검사
53	비싸지않아야한다
54	각종인증제도의병행과홍보강화 구분 증강
55	인증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인증을 갱신
56	국내의 인증제도도 믿을게 못되기 때문에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함
57	무농약 기준이 정확해야 할것 같아요
58	인증절차 강화
59	퍼센트비율
60	청렴하게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61	철저한 관리감독과 인증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62	현행 만족

[표 2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계속)

(Base: 전체, N=201, 명)

구 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63	정부가 인증하고 소비자 단체가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4	무농약인증제품은 확실히 90이상 무농약 제품이어야 한다
65	저부의 강력한 감독
66	사용농약의 전성분과 독성을표기
67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
68	크게 기재 후 판매
69	우리나라 정부 운영
70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줬음 좋겠다
71	인증을 할때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 되어 함
72	빨리 인증제도가 도입 되었으면 함
73	좀더 철저한 관리
74	검증 결과를 수시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오픈
75	현재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음
76	실명제 도입
77	관리 감독
78	알보기쉽게 표기
79	국민에게 홍보
80	강력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
81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추적
8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83	뉴스나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를 많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84	철저한원산지관리
85	위반 시 처벌 강화
86	보다 철저한 인증이 필요
87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88	공정성
89	정확하게
90	실제 제조과정의 청결도와 유통과정의 청결도를 상시로 체크해야한다.
91	유해물질여부
92	국제 기준을 잘 지켜야하며 이미 국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더 엄격하면 할 필요 없음
93	무농약 저농약이 때로 구분이 안감 무농약인 것을 확실히 표시했음

[표 2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계속)

(Base: 전체, N=201, 명)

구 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94	지속적이 행정단속
95	정직하게 표기를했으면한다
96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
97	미세한 농약양도 기재
9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생산 유통해야 한함
99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지 표시가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음
100	엄격한 관리
101	외국의 사례처럼 무농약가공식품 유기사용 식품의 함양에 따른 인증제도 도입
102	위반 시 투명하고 강력한 처벌 필요
103	제대로 공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104	무농약 가공식품의 기준점 확실히 제시..
105	생산 전과정이 무농약이 진짜 무농약으로 소비자는 생각함
106	농약의 사용여부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107	포장을 한 채로 농약을 뿌려도 무농약이라는데 기준강화가 필요함
108	제발 선진국처럼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109	무공해 원료사용
110	정확한 기준
111	신뢰가 필요함
112	혼합된 후의 친환경 퍼센트와 그 전의 친환경 퍼센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113	철저한 인증
114	무농약의 개념이 확실히 세워진 다음 무농약 가공식품인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115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116	정확하고 투명한 인증제도 실행
117	정확하고 철저한 검증 체제의 보완
118	철저한 검사
119	무농약이란 안전문구와 안심적인 설명이 필요함
120	확실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121	믿을 수 있어야 함
122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노력
123	홍보부족
124	완전히 농약을 쓰지 않은 것인지 감사 및 수시 시찰이 필요

[표 2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계속)

(Base: 전체, N=201, 명)

구 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125	까다로운 검사 필요
126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127	좀 더 믿음이 가는 인증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음
128	믿을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와 검사 검수가 필요함
129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130	가지 표기되었으면 좋겠음
131	인증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함
132	실사를 통한 관리감독
133	확인 및 검증장치 철저관리
134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135	엄격한 관리
136	우리나라 시정에 맞춘 별도의 등록기준을 설정하는 데 현실적인 수준에서만 정해지면 안될 것 같음
137	글자크기 확대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2) 무농약 가공식품 업체

ID				
----	--	--	--	--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업체)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업체 일반현황 ]**

■ 업체명		■ 응답자명	
■ 응답자 번호	(    ) - (    ) - (    )		
■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Quata 확인란 ]**

구분	대분류	소분류
	1차생산자	① 농업    ② 축산    ③ 임업    ④ 수산    ⑤ 기타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① 농업가공 ② 축산가공 ③ 임업가공 ④ 수산가공 ⑤ 기타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① 판매    ② 유통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① 수입	

**□ Screen Question**

☞ 작성요령 : 한 업체가 1차 생산과 가공 또는 유통을 겸할 경우 **(1-1)과 (1-2)**를 모두 응답하게 함.

**SQ1. (Quata 확인란의 '1차생산자'에게만 질문) 귀 업체/농가에서는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을 생산하나요?**

① 예 ⇒ (1-1)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종료

**SQ2. (Quata 확인란의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판매/유통자'에게만 질문) 귀 업체에서는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가공품을 가공/유통하나요?**

① 예 ⇒ (1-2)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종료

**SQ3. (Quata 확인란의 '친환경 인증기관'에게만 질문): 귀 업체에서는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 인증 업무를 하나요?**

① 예 ⇒ (1-3)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종료

##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1-1. 귀 업체/농가가 인증 받은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구분	인증 품목명
1) 무농약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 무항생제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 기타( )	품목:

1-2. 귀 업체가 가공/유통하는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구분	인증 품목명
1) 무농약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 무항생제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 기타( )	품목: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은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 인증제도」란 친환경(유기 포함)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제품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었다는 것을 인증기관이 평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현행 인증제도는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것만 있는데,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경우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만을 95%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외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3. (문2의 '3,4,5' 응답자에게만 질문)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4. (문2의 '3,4,5' 응답자에게만 질문)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②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③ 기타( )

5.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① 원료
- ②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 차등 인증제도와 인증로고/표시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EU는 가공품의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유기"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의 형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제품 성분 표시면에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또는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EU에서는 유기 가공품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범위가 유기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 (차등 인증제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한다
- ② 70%이상의 친환경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 ③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7. (인증로고/표시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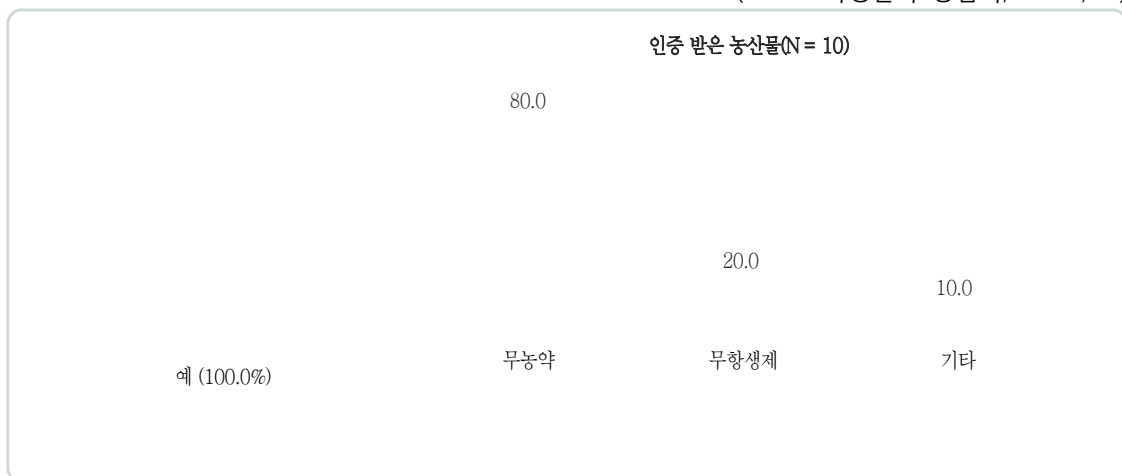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인증받은 농산물

-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80-100%’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무항생제가 20.0%로 나타남.

[그림 26]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인증받은 농산물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10, %)



Q1-1. 귀 업체/농가가 인증 받은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요?

[표 27] 무농약/무항생제 농수축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생산여부, 인증받은 농산물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10, %)

구 분		사례 수	무농약	무항생제	기타
<b>전 체</b>		<b>(10)</b>	<b>80.0</b>	<b>20.0</b>	<b>10.0</b>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3)	100.0	0.0	33.3
	취급자	(7)	71.4	28.6	0.0
대분 류	1차생산자	(10)	80.0	20.0	1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3)	100.0	0.0	33.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	100.0	0.0	33.3

### ○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

-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으로 무농약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무항생제가 46.8%로 나타남.

[그림 27]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10, %)



Q2 귀 업체가 가공/유통하는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표 28] 가공/유통 품목 중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품목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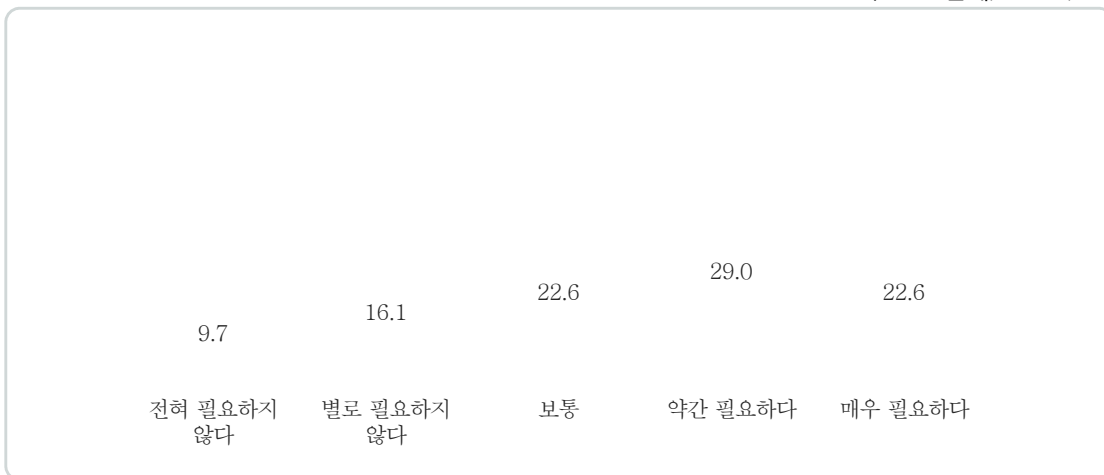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수	무농약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해조류)	기타
<b>전 체</b>		<b>(10)</b>	<b>61.3</b>	<b>46.8</b>	<b>1.6</b>	<b>6.5</b>
<b>구분</b>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3)	73.3	40.0	6.7	26.7
	취급자	(7)	57.4	48.9	0.0	0.0
<b>대분 류</b>	1차생산자	(10)	70.0	20.0	0.0	2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3)	66.7	41.7	8.3	25.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	63.8	46.8	0.0	2.1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5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100점 평균 기준 59.7점으로 나타남.

[그림 2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62, %)



Q3.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외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표 2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62, %)

구 분		사례 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b>전 체</b>		<b>(62)</b>	<b>9.7</b>	<b>16.1</b>	<b>22.6</b>	<b>29.0</b>	<b>22.6</b>	<b>59.7</b>
<b>구분</b>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13.3	20.0	20.0	20.0	26.7	56.7
	취급자	(47)	8.5	14.9	23.4	31.9	21.3	60.6
<b>대분류</b>	1차생산자	(10)	20.0	20.0	10.0	0.0	50.0	6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16.7	16.7	33.3	8.3	25.0	52.1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8.5	14.9	19.1	36.2	21.3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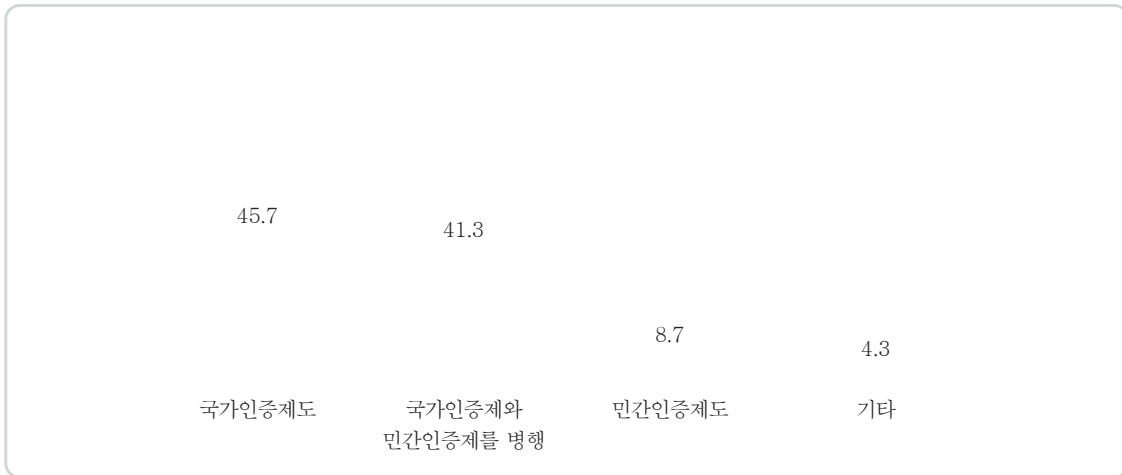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국가인증제도를 선택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41.3%), ‘민간인증제도’ (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Q4. (Q3의 ‘3,4,5’ 응답자에게만 질문)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3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구분	구분	사례수	국가인증제도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민간인증제도	기타
	<b>전체</b>	<b>(46)</b>	<b>45.7</b>	<b>41.3</b>	<b>8.7</b>	<b>4.3</b>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0)	40.0	50.0	0.0	10.0
	취급자	(36)	47.2	38.9	11.1	2.8
대분류	1차생산자	(6)	66.7	33.3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8)	50.0	50.0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6)	41.7	41.7	11.1	5.6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은 유기농 무농약 원료 혼합 95%이상 사용시 인증,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 시 인증합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유기농 무농약 원료 혼합 95%이상 사용시 인증	43.5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합	43.5
기타	13.0

Q5. (Q3의 '3,4,5' 응답자에게만 질문)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3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기준

(Base: 인증제도 필요성 보통, 필요하다 응답자, N=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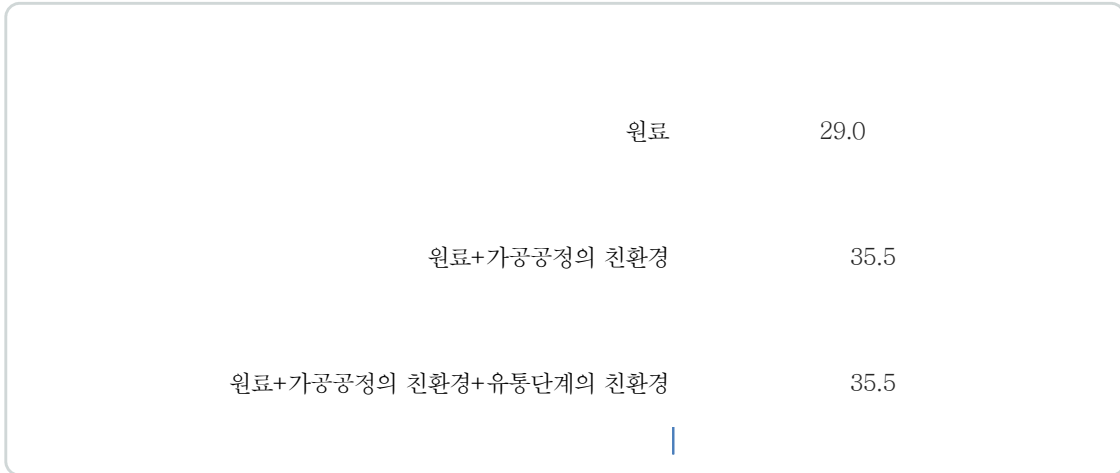
구분	구분	사례 수	유기농 무농약 원료 혼합 95%이상 사용시 인증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합	기타
	<b>전 체</b>	<b>(46)</b>	<b>43.5</b>	<b>43.5</b>	<b>13.0</b>
<b>구분</b>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0)	70.0	30.0	0.0
	취급자	(36)	36.1	47.2	16.7
<b>대분류</b>	1차생산자	(6)	83.3	16.7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8)	75.0	12.5	12.5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36)	36.1	50.0	13.9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62, %)



Q6.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 한가요?

[표 3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62, %)

구분		사례 수	원료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b>전체</b>		<b>(62)</b>	<b>29.0</b>	<b>35.5</b>	<b>35.5</b>
<b>구분</b>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20.0	60.0	20.0
	취급자	(47)	31.9	27.7	40.4
<b>대분류</b>	1차생산자	(10)	30.0	40.0	3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25.0	50.0	25.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29.8	31.9	38.3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 제도 시행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95% 친환경 원료 수준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비율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62, %)

95% 친환경 원료 수준	71.0
70%이상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두 가지 수준	16.1
70% 미만의 친환경 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세 가지 수준	12.9

Q7. (차등 인증제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3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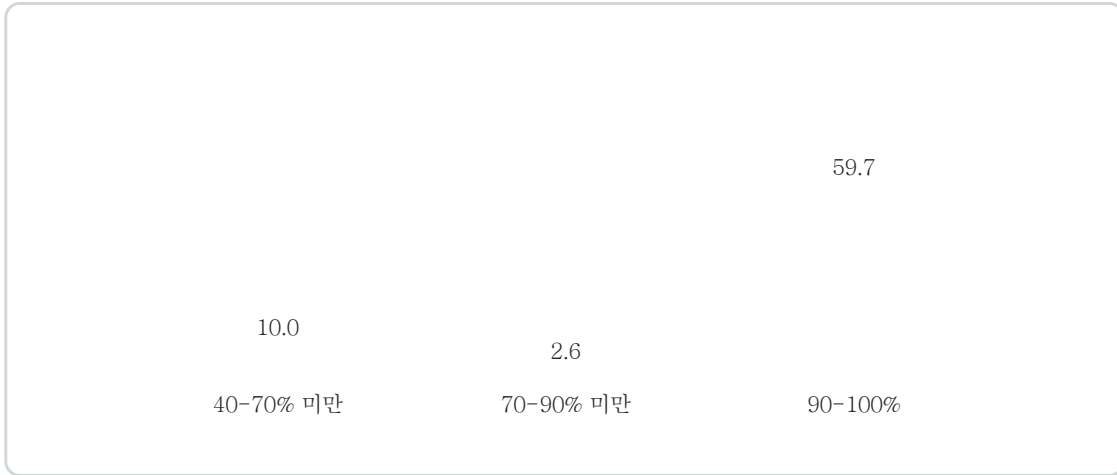
구분	구분	사례 수	95% 친환경원료 수준	70%이상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두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세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b>전체</b>		<b>(62)</b>	<b>71.0</b>	<b>16.1</b>	<b>12.9</b>
<b>구분</b>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53.3	33.3	13.3
	취급자	(47)	76.6	10.6	12.8
<b>대분류</b>	1차생산자	(10)	80.0	2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58.3	33.3	8.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70.2	12.8	17.0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은 90-100%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 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

(Base: 전체, N=62, %)



Q8. (인증로고/표시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4] 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사용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수준

(Base: 전체, N=62, %)

구분		사례 수	40-70% 미만	70-90% 미만	90-100%	평균
전체		(62)	17.7	16.1	77.4	88.0
구분	무농약가공식품 업체	(15)	46.7	33.3	46.7	78.0
	취급자	(47)	8.5	10.6	87.2	91.2
대분류	1차생산자	(10)	10.0	0.0	90.0	90.9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12)	16.7	25.0	66.7	86.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47)	19.1	17.0	76.6	87.5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은 다음과 같음.

[표 35]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Base: 반대하는 응답자, N=26, 명)

구 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할 점
1	기존 단순가공과 원료 100% 가공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수입산 유기제품 사용하는 것도 인정해야한다. 수입산 유기 설탕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3	무농약이 불가능하다.
4	말 그대로 무농약 95%가 되어야함.
5	유기농이 되려면 95%가 되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래면 차등인증을 한다는 것이 아니냐 유기농이라 볼 수 없다.
6	인증을 해줘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서 불신이 없어야겠다.
7	유전자 조작이 있으면 안된다. ex) 콩
8	저농약(GAP)과 무농약 중간인증제가 도입되면 좋겠다.
9	사후관리중요
10	인증을 잘 지켜야 한다.
1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 제도 반대 하므로 할 말 없다.
12	인증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제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13	검증을 확실하게 하여야한다.
14	정확한 실험해서 검증해야함.
15	인증 받은 뒤 관리 잘 해야 함.
16	정부인증 95%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17	인증 받으면 잘 지켜야 된다.
18	마크를 차별화해서 볼때 빨리 구분 할 수 있는 마크가 나오면 좋겠다.
19	인증마크 줄때 확실한 검증 해야 함.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3) 비식용유기가공품 업체

ID				
----	--	--	--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업체)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업체 일반현황 ]

■ 업체/농가명		■ 응답자명	
■ 응답자 번호	(    ) - (    ) - (    )		
■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Quata 확인란 ]

구 분	대분류	소분류
	1차생산자	① 농업    ② 축산    ③ 임업    ④ 수산    ⑤ 기타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① 농업가공 ② 축산가공 ③ 임업가공 ④ 수산가공 ⑤ 기타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① 판매    ② 유통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① 수입	

## □ Screen Question

☞ 작성요령 : 한 업체가 1차 생산과 가공 또는 유통을 겸할 경우 (1-1)과 (1-2)를 모두 응답하게 함.

**SQ1. (Quata 확인란의 '1차생산자'에게만 질문) 귀 업체/농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나요?**

① 예 ⇒ (1-1)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종료

**SQ2. (Quata 확인란의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판매/유통/수입자'에게만 질문) 귀 업체에서는 친환경 가공품을 가공/유통/수입하나요?**

① 예 ⇒ (1-2)문항으로

② 아니오 ⇒ 조사종료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1-1. 귀 업체/농가가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구분	인증 품목명
1) 유기농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 무농약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 무항생제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 기타( )	품목:

1-2. 귀 업체가 가공/유통/수입하는 품목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 【 참고 】

비식용 유기농/무농약 가공품(1-2, 2-2, 3-2)의 예는 세제, 샴푸, 화장품, 의류, 침구류, 생리대 등임. (1-2, 2-2, 3-2)은 국내인증제도가 없으므로 해외인증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인증제도명	인증 품목명
1-1) 유기농(식용)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1-2) 유기농(비식용)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1) 무농약(식용)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2) 무농약(비식용)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1) 무항생제(식용)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2) 무항생제(비식용) 예:사료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 기타( )		품목: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공산품을 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나 이는 탄소마일리지 표시제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 등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인증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미 농무성 NOP에서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도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공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국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로고 예시 】**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1)~(2-7)

☞ **작성요령** : 품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예를 제시함.

품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섬유류					
2-2. 화장품원료					
2-3. 개인보호용품					
2-4. 세제/소독제					
2-5. 완구류					
2-6. 종이/물티슈					
2-7. 애완동물사료					

**【 예시 】**

품목	예시			
섬유류	1) 성인 의류	2) 유아 의류	3) 침구류	4) 봉제인형
화장품원료	1) 화장품원료			
개인보호용품	1) 생리대	2) 면봉		
세제/소독제	1) 주방세제	2) 세탁세제	3) 소독제	
완구류	1) 신생아용품(딸랑이, 치발기)			
종이/물티슈	1) 벽지, 장판	2) 물티슈		
애완동물사료	1) 고양이통조림			

3.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

십시오.

- ① 등록제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 허용)
- ② 인증제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과는 별도로 직접 인증제도를 운영)
- ③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4. (문3의 '② , ③'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5. (문3의 '③' 응답자에게만 질문) ※ 등록제와 인증제 관련: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 】**

등록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증제는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제와는 별도로 인증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것임.

품목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	인증제를 시행해야 함
	①	②
5-1. 섬유류		
5-2. 화장품원료		
5-3. 개인보호용품		
5-4. 세제/소독제		
5-5. 완구류		
5-6. 종이/물티슈		
5-7. 애완동물사료		

6. (문3의 '② , ③'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 ②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함.
- ③ 기타( )

7. (문6의 '②' 응답자에게만 질문) ※ 인증제의 표준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품목에 대해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품목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
	①	②
7-1. 섬유류		
7-2. 화장품원료		
7-3. 개인보호용품		
7-4. 세제/소독제		
7-5. 완구류		
7-6. 종이/물티슈		
7-7. 애완동물사료		

8.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농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참고 】

가공과정, 유통단계의 친환경이란 유기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일례로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과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① 유기원료
- ②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 차등 인증제도와 인증로고/표시 관련

미국, 캐나다, 호주, EU는 가공품의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유기"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의 형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제품 성분 표시면에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또는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EU에서는 유기 가공품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범위가 유기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 (차등 인증제도 관련) 비식용 유기농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②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③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10. (인증로고/표시 관련)** 유기식품에 대한 국제기구인 IFOAM은 95% 이상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만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5% 미만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과 비유기 원료, 첨가물의 혼합 가공품에 대해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11.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관련)** 현재 국내 유기인증은 양축용 축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나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으며 미국 NOP의 경우 애완동물용 사료 인증은 축산용 사료에 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 ②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 ③ 기타: ( )

**12. (유기화훼류 인증 관련)** 현재 유기 화훼류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 】**

① 은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작물의 윤작 및 간작기준, 시비기준, 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함을 의미

- ①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 ② 화훼류에 대해 별도의 유기 인증기준 설정
- ③ 기타: ( )

**13.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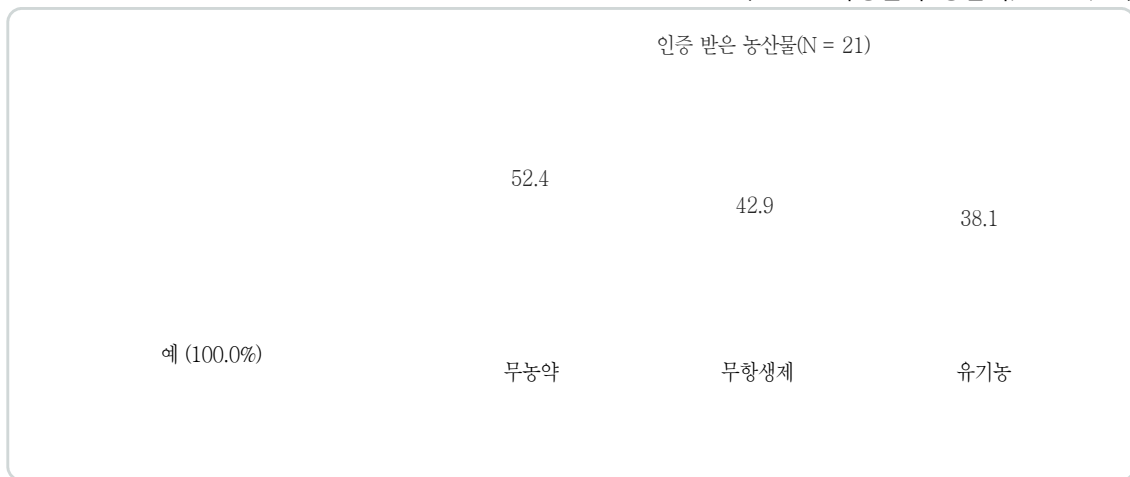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부

- 친환경농산물 생산 하는 업체/농가가 인증 받은 농산물은 52.4%로 무농약이 가장 높음.

[그림 34]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부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21, %)



Q1-1. 귀 업체/농가가 인증 받은 농산물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표 36] 친환경농산물 생산 여부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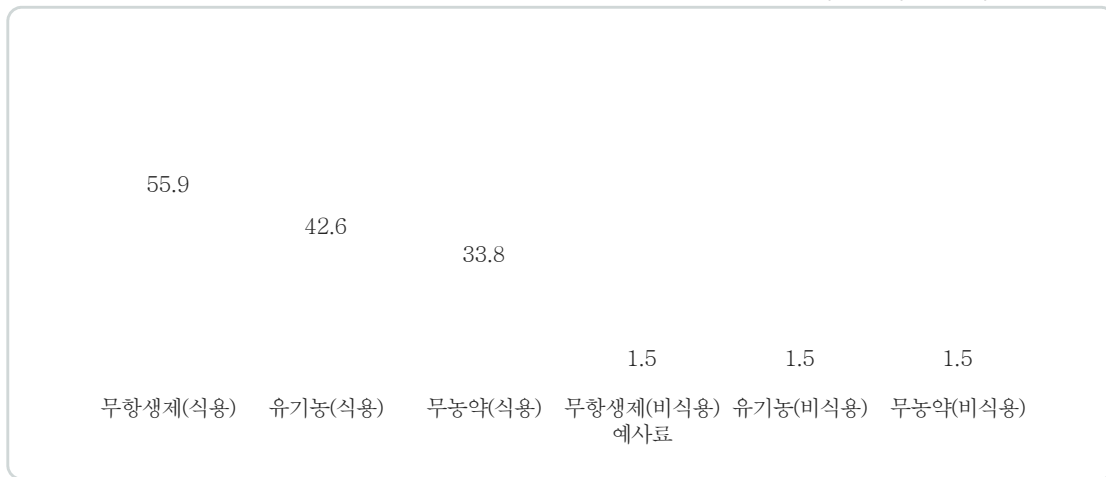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농
<b>전 체</b>		<b>(21)</b>	<b>52.4</b>	<b>42.9</b>	<b>38.1</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	-	-	-
	취급자	(21)	52.4	42.9	38.1
대분류	1차생산자	(21)	52.4	42.9	38.1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9)	33.3	55.6	44.4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12)	50.0	41.7	33.3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	-	-	-
1차생산자	농업	(13)	84.6	7.7	61.5
	축산	(9)	11.1	88.9	11.1
	임업	(1)	100.0	0.0	10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5)	60.0	20.0	80.0
	축산가공	(5)	20.0	80.0	20.0
	임업가공	-	-	-	-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8)	37.5	50.0	37.5
	유통	(7)	71.4	28.6	42.9

## ○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인증

-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무항생제가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유기농(식용)’ (42.6%), ‘무농약(식용)’ (33.8%) 등의 순임.

[그림 35]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인증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21, %)



Q2. 귀 업체가 가공/유통/수입하는 품목 중 친환경인증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표 37] 가공/유통/수입 품목 중 친환경

인증

(Base: 1차생산자 응답자, N=21, %)

구 분		사례 수	무항생제 (식용)	유기농 (식용)	무농약 (식용)	무항생제 (비식용) 예사료	유기농 (비식용)	무농약 (비식용)
<b>전 체</b>		<b>(68)</b>	<b>55.9</b>	<b>42.6</b>	<b>33.8</b>	<b>1.5</b>	<b>1.5</b>	<b>1.5</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33.3	66.7	33.3	0.0	33.3	0.0
	취급자	(65)	56.9	41.5	33.8	1.5	0.0	1.5
대분류	1차생산자	(12)	41.7	33.3	33.3	8.3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5)	60.0	37.8	26.7	0.0	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1)	52.9	47.1	37.3	2.0	2.0	2.0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100.0	0.0	0.0	0.0	0.0
1차생산자	농업	(8)	25.0	50.0	50.0	0.0	0.0	0.0
	축산	(5)	80.0	0.0	0.0	20.0	0.0	0.0
	임업	(1)	0.0	100.0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10.5	73.7	57.9	0.0	0.0	0.0
	축산가공	(26)	100.0	11.5	0.0	0.0	0.0	0.0
	임업가공	(1)	0.0	0.0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1)	53.7	46.3	39.0	0.0	0.0	0.0
	유통	(31)	51.6	51.6	32.3	3.2	3.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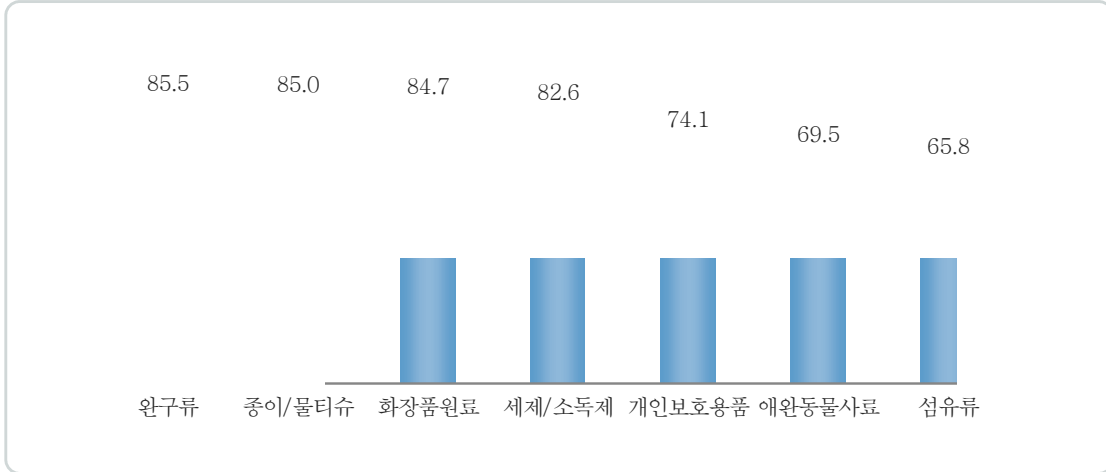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한 품목으로 ‘완구류’가 100점 평균 8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종이/물티슈’ (85.0점), ‘화장품원료’ (84.7점), ‘세제/소독제’ (82.6점) 등의 순임.



[그림 36]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Base: 전체, N=77, %)



Q3.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비식용 유기농식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 38]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필요성

(Base: 전체, N=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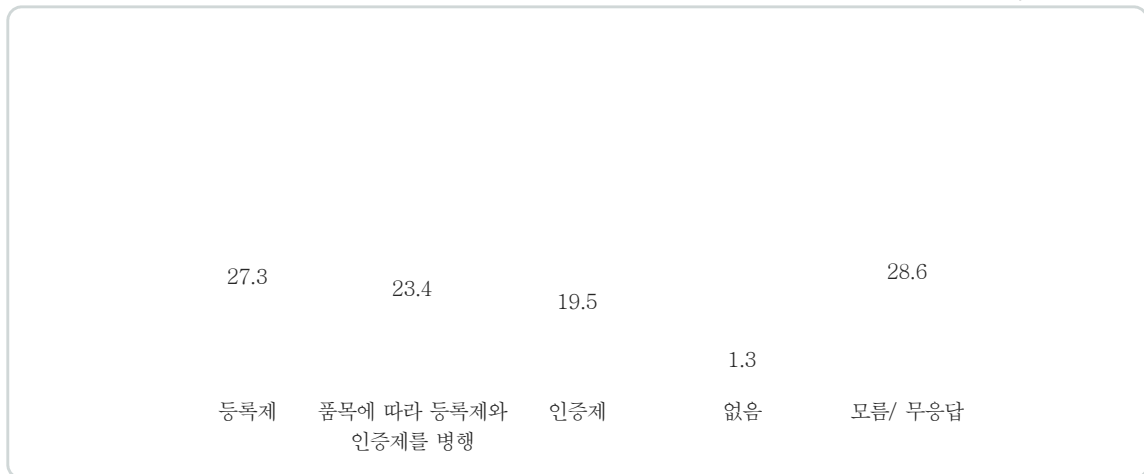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완구류	(77)	24.7	10.4	2.6	2.6	-	85.5
종이/물티슈	(77)	23.4	11.7	1.3	1.3	1.3	85.0
화장품원료	(77)	24.7	10.4	2.6	1.3	1.3	84.7
세제/소독제	(77)	22.1	13.0	6.5	1.3	-	82.6
개인보호용품	(77)	14.3	11.7	9.1	1.3	1.3	74.1
애완동물사료	(77)	13.0	11.7	11.7	5.2	-	69.5
섬유류	(77)	14.3	7.8	7.8	6.5	2.6	65.8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등록제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23.4%), ‘인증제’ (19.5%) 등의 순임.

[그림 37]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

(Base: 전체, N=77, %)



Q4.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66.7%)이 ‘취급자’(17.6%)보다 인증제를 언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9]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방식

(Base: 전체, N=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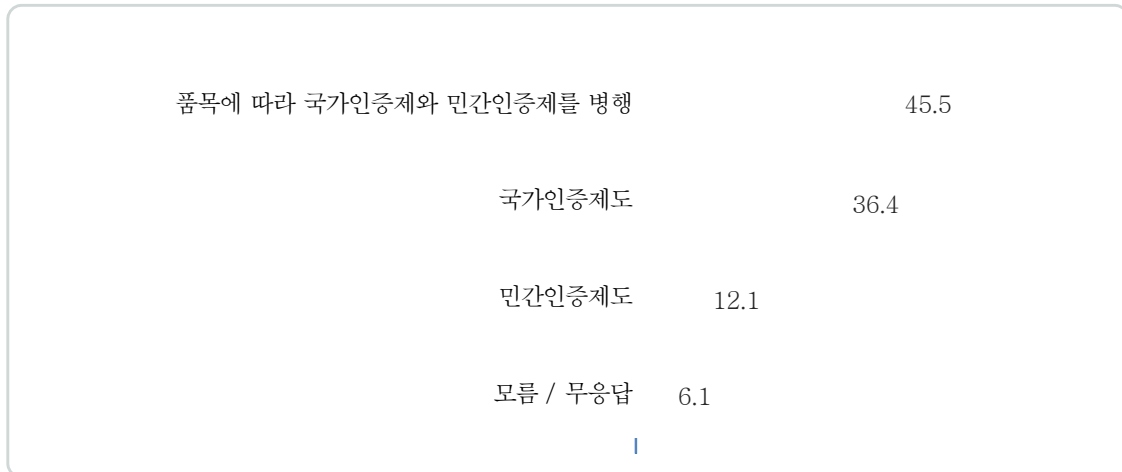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등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인증제	없음	모름/무응답
<b>전 체</b>		<b>(77)</b>	<b>27.3</b>	<b>23.4</b>	<b>19.5</b>	<b>1.3</b>	<b>28.6</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33.3	0.0	66.7	0.0	0.0
	취급자	(74)	27.0	24.3	17.6	1.4	29.7
대분류	1차생산자	(21)	52.4	14.3	14.3	0.0	19.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26.1	32.6	17.4	2.2	21.7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25.9	22.2	22.2	1.9	27.8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100.0	0.0	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61.5	15.4	7.7	0.0	15.4
	축산	(9)	33.3	11.1	22.2	0.0	33.3
	임업	(1)	0.0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26.3	31.6	21.1	0.0	21.1
	축산가공	(27)	22.2	33.3	14.8	3.7	25.9
	임업가공	(1)	100.0	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2)	19.0	19.0	26.2	2.4	33.3
	유통	(34)	20.6	35.3	20.6	2.9	20.6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으로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음.

[그림 38]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Q5. (Q4의 '2,3'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취급자는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음.

[표 40]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운영 방식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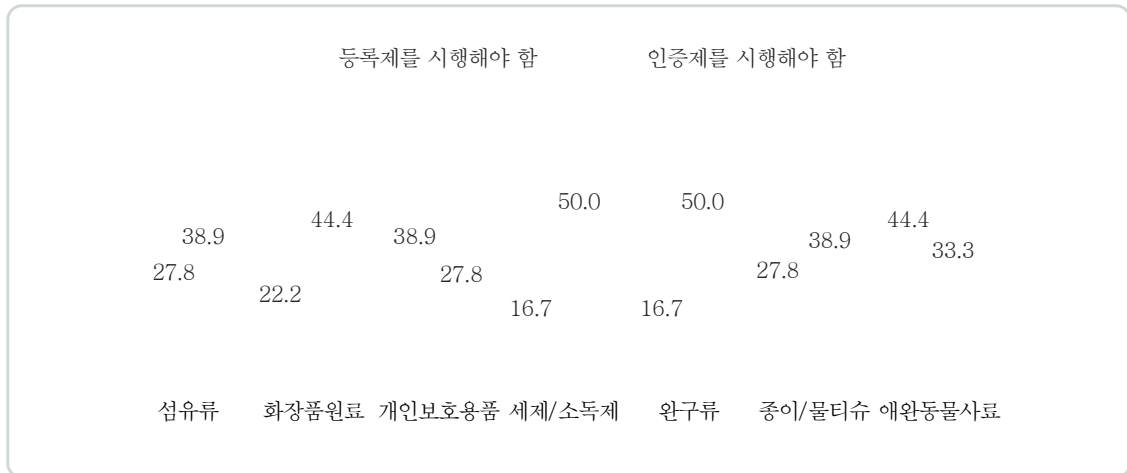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국가인증제도	민간인증제도	모름/무응답
<b>전 체</b>		<b>(33)</b>	<b>45.5</b>	<b>36.4</b>	<b>12.1</b>	<b>6.1</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2)	0.0	50.0	50.0	0.0
	취급자	(31)	48.4	35.5	9.7	6.5
대분류	1차생산자	(6)	50.0	33.3	16.7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23)	47.8	34.8	8.7	8.7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24)	45.8	37.5	8.3	8.3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100.0	0.0	0.0	0.0
1차생산자	농업	(3)	66.7	0.0	33.3	0.0
	축산	(3)	33.3	66.7	0.0	0.0
	임업	(1)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0)	40.0	30.0	20.0	10.0
	축산가공	(13)	53.8	38.5	0.0	7.7
	임업가공	-	-	-	-	-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19)	42.1	42.1	5.3	10.5
	유통	(19)	52.6	31.6	5.3	10.5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시행품목

-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품목은 애완동물사료가 44.4점으로 가장 높음.
- 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품목은 ‘세제/소독제’, ‘완구류’가 5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9]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시행품목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모름/무응답 미제시

Q6. (Q4의 ‘3’ 응답자에게만 질문) ※등록제와 인증제 고나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41]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시행품목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구분	사례수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 (%)	인증제를 시행해야 함 (%)	모름/거절 (%)
식유류	(18)	27.8	38.9	38.9
화장품원료	(18)	22.2	44.4	38.9
개인보호용품	(18)	38.9	27.8	38.9
세제/소독제	(18)	16.7	50.0	38.9
완구류	(18)	16.7	50.0	38.9
종이/물티슈	(18)	27.8	38.9	38.9
애완동물사료	(18)	44.4	33.3	33.3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40]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54.5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	36.4
모름 / 무응답	9.1

Q7. (Q4의 ‘2,3’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취급자는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표 42]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Base: 인증제,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응답자, N=33, %)

구 분		사례 수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함	모름/무응답
<b>전 체</b>		<b>(33)</b>	<b>54.5</b>	<b>36.4</b>	<b>9.1</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2)	0.0	100.0	0.0
	취급자	(31)	58.1	32.3	9.7
대분류	1차생산자	(6)	33.3	66.7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23)	69.6	21.7	8.7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24)	54.2	37.5	8.3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3)	0.0	100.0	0.0
	축산	(3)	66.7	33.3	0.0
	임업	(1)	0.0	10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0)	60.0	30.0	10.0
	축산가공	(13)	76.9	15.4	7.7
	임업가공	-	-	-	-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19)	57.9	31.6	10.5
	유통	(19)	57.9	31.6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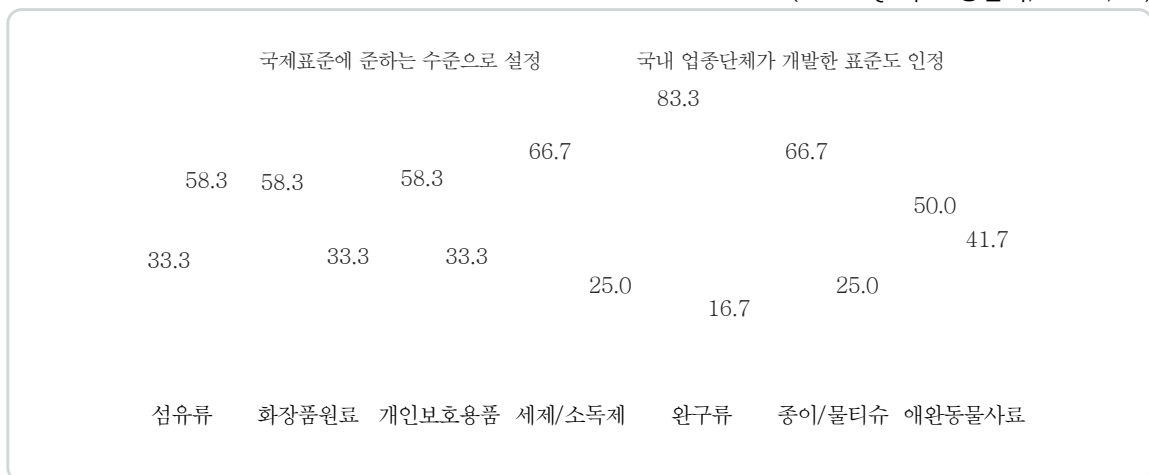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업종단체 개발표준 인정범위

-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품목은 완구류가 83.3점으로 가장 높음.
-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해야한다는 품목은 섬유류가 5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업종단체 개발표준 인정범위

(Base: Q7의 '2' 응답자, N=12, %)



\*모름/무응답 미제시

Q8. (Q7의 '2' 응답자에게만 질문) ※인증제의 표준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 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품목에 대해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표준으로 인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43]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국내 업종단체 개발표준 인정범위

(Base: Q7의 '2'응답자, N=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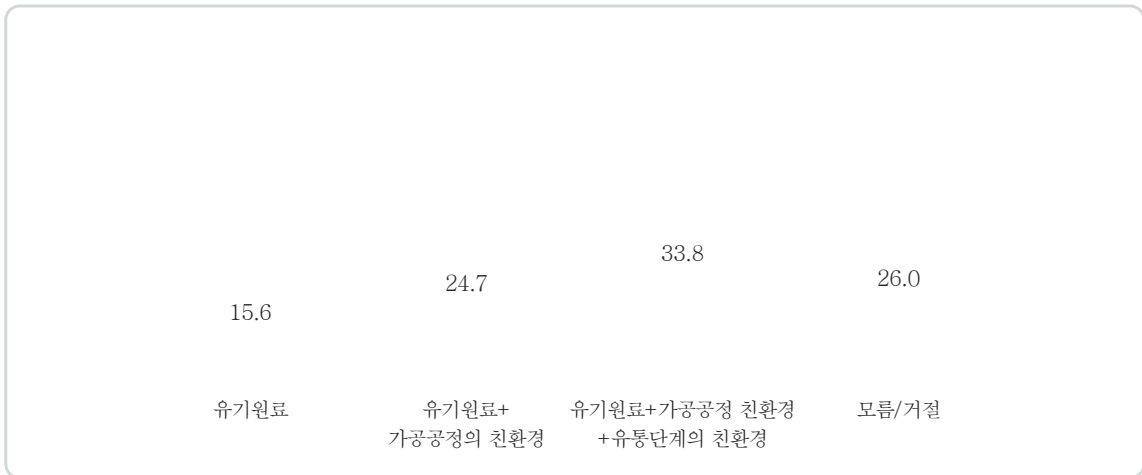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	모름/무응답
섬유류	(12)	33.3	58.3	8.3
화장품원료	(12)	58.3	33.3	8.3
개인보호용품	(12)	58.3	33.3	8.3
세제/소독제	(12)	66.7	25.0	8.3
완구류	(12)	83.3	16.7	-
종이/물티슈	(12)	66.7	25.0	8.3
애완동물사료	(12)	50.0	41.7	8.3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유기원료+가공공정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24.7%), ‘유기원료’ (15.6%) 등의 순임.

[그림 42]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77, %)



Q9.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을 선택한 비율이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 범위

(Base: 전체, N=77, %)

구 분		사례 수	유기원료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모름/거절
<b>전 체</b>		<b>(77)</b>	<b>15.6</b>	<b>24.7</b>	<b>33.8</b>	<b>26.0</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33.3	66.7	0.0
	취급자	(74)	16.2	24.3	32.4	27.0
대분류	1차생산자	(21)	23.8	23.8	38.1	14.3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17.4	23.9	37.0	21.7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16.7	27.8	33.3	22.2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23.1	23.1	46.2	7.7
	축산	(9)	22.2	22.2	33.3	22.2
	임업	(1)	0.0	10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10.5	26.3	47.4	15.8
	축산가공	(27)	22.2	22.2	29.6	25.9
	임업가공	(1)	0.0	0.0	10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2)	11.9	23.8	35.7	28.6
	유통	(34)	23.5	20.6	35.3	20.6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 제도 시행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서 차등 인증제도에 반대하며 95% 유기원료 수준 일원화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3]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77, %)

차등 인증제도에 반대하며 95% 유기원료 수준 일원화	46.8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두 가지 수준	14.3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세 가지 수준	7.8
모름/거절	31.2

Q10. (차등 인증제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45]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 제도 시행

(Base: 전체, N=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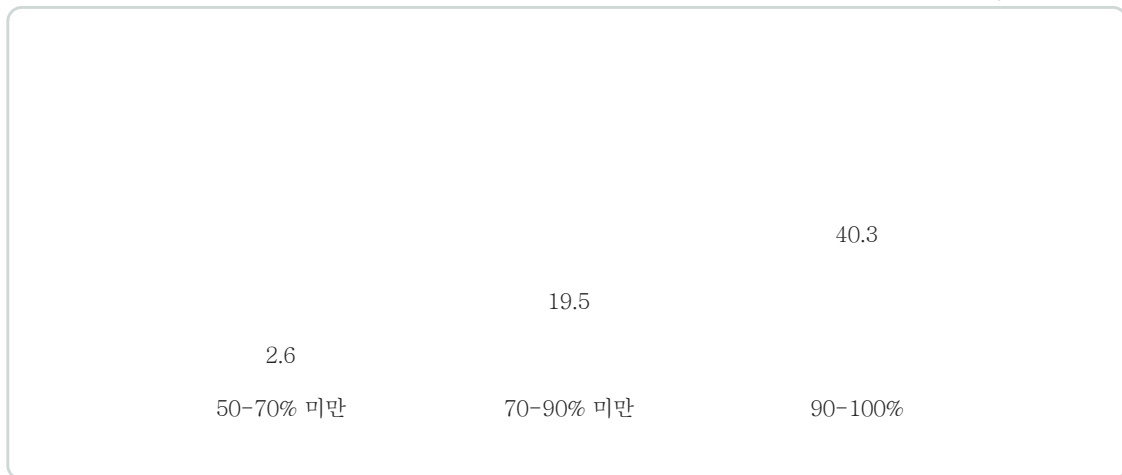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차등 인증제도에 반대하며 95% 유기원료 수준 일원화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두가지 수준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인증 추가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모름/거절
<b>전 체</b>		<b>(77)</b>	<b>46.8</b>	<b>14.3</b>	<b>7.8</b>	<b>31.2</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33.3	66.7	0.0
	취급자	(74)	48.6	13.5	5.4	32.4
대분류	1차생산자	(21)	61.9	9.5	0.0	28.6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54.3	13.0	6.5	26.1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48.1	14.8	11.1	25.9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69.2	0.0	0.0	30.8
	축산	(9)	44.4	22.2	0.0	33.3
	임업	(1)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57.9	5.3	10.5	26.3
	축산가공	(27)	48.1	18.5	3.7	29.6
	임업가공	(1)	100.0	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2)	40.5	16.7	9.5	33.3
	유통	(34)	55.9	8.8	14.7	20.6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으로 90-100%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77, %)



Q11. (인증로고/표시 관련) 유기식품에 대한 국제기구인 IFOAM은 95%이상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만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5% 미만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유기 농산물과 비유기 원료, 첨가물의 혼합 가공품에 대해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46]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로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 수준

(Base: 전체, N=77,  
%)

구 분		사례 수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무응답	평균
<b>전 체</b>		<b>(77)</b>	<b>2.6</b>	<b>19.5</b>	<b>40.3</b>	<b>37.7</b>	<b>85.8</b>
<b>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100.0	0.0	0.0	71.7
	취급자	(74)	2.7	16.2	41.9	39.2	86.8
<b>대분류</b>	1차생산자	(21)	4.8	19.0	52.4	23.8	85.6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4.3	17.4	41.3	37.0	86.4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3.7	22.2	40.7	33.3	85.6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0.0	100.0	0.0	90.0
<b>1차생산자</b>	농업	(13)	7.7	7.7	61.5	23.1	87.5
	축산	(9)	0.0	44.4	33.3	22.2	80.7
	임업	(1)	0.0	0.0	100.0	0.0	95.0
<b>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b>	농업가공	(19)	5.3	15.8	52.6	26.3	87.9
	축산가공	(27)	3.7	22.2	33.3	40.7	84.1
	임업가공	(1)	0.0	0.0	0.0	100.0	
<b>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b>	판매	(42)	2.4	21.4	38.1	38.1	86.3
	유통	(34)	2.9	17.6	47.1	32.4	87.6



##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으로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9.0%로 가장 높음.

[그림 45]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Base: 전체, N=77, %)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39.0
양축용 유기사료와 차별화 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24.7
모름 / 무응답	36.4

Q12.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관련) 현재 국내 유기인증은 양축용 축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나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도 없으며, 미국 NOP의 경우 애완동물용 사료 인증은 축산용 사료에 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47]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방식

(Base: 전체, N=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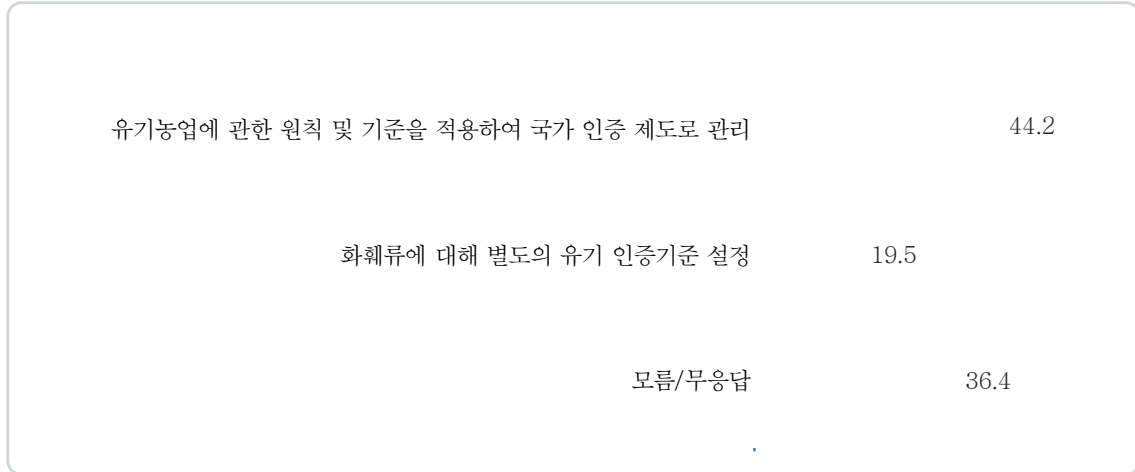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사료와 차별화 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모름 / 무응답
<b>전 체</b>		<b>(77)</b>	<b>39.0</b>	<b>24.7</b>	<b>36.4</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66.7	33.3
	취급자	(74)	40.5	23.0	36.5
대분류	1차생산자	(21)	57.1	19.0	23.8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39.1	26.1	34.8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42.6	24.1	33.3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61.5	15.4	23.1
	축산	(9)	44.4	22.2	33.3
	임업	(1)	100.0	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47.4	21.1	31.6
	축산가공	(27)	33.3	25.9	40.7
	임업가공	(1)	0.0	10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2)	42.9	21.4	35.7
	유통	(34)	38.2	26.5	35.3

##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방식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 시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 제도로 관리가 44.2%로 가장 높음.

[그림 46]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방식

(Base: 전체, N=77, %)



Q13. (유기화훼류 인증 관련) 현재 유기 화훼류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48] 유기화웨이류 인증기준 도입방식

(Base: 전체, N=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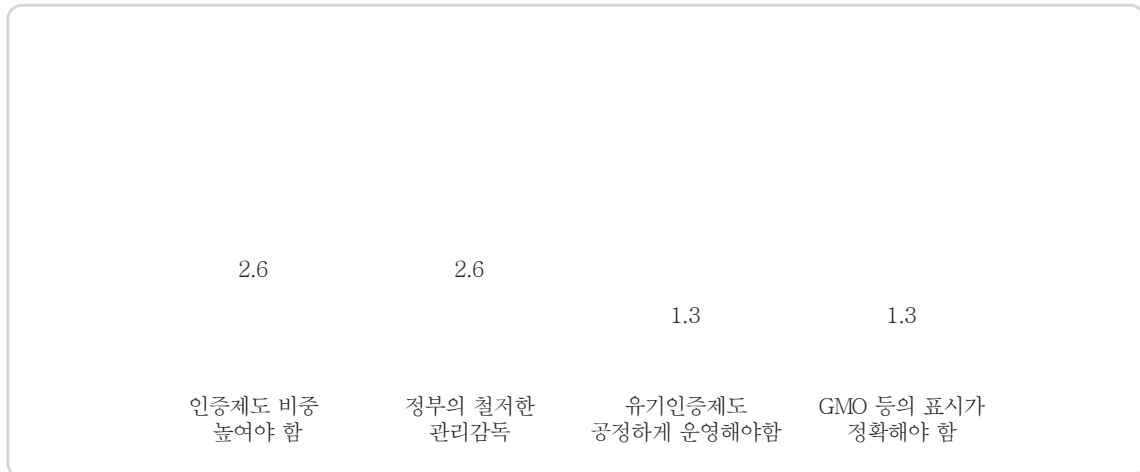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화웨이류에 대해 별도의 유기 인증기준 설정	모름/무응답
<b>전 체</b>		<b>(77)</b>	<b>44.2</b>	<b>36.4</b>	<b>19.5</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33.3	33.3	33.3
	취급자	(74)	44.6	36.5	18.9
대분류	1차생산자	(21)	47.6	23.8	28.6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43.5	34.8	21.7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42.6	33.3	24.1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100.0	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46.2	15.4	38.5
	축산	(9)	44.4	44.4	11.1
	임업	(1)	0.0	0.0	100.0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57.9	21.1	21.1
	축산가공	(27)	33.3	44.4	22.2
	임업가공	(1)	0.0	100.0	0.0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판매	(42)	42.9	35.7	21.4
	유통	(34)	38.2	38.2	23.5

##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할 점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인증제도 비중을 높여야함,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7]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할 점

(Base: 전체, N=77, %)



Q14. 마지막 질문이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주세요.

[표 49]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반영할 점

(Base: 전체, N=77, %)

구 분		사례 수	인증제도 비중 높여야 함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유기인증제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	GMO 등의 표시가 정확해야 함	없음	모름/무응답
<b>전 체</b>		<b>(77)</b>	<b>2.6</b>	<b>2.6</b>	<b>1.3</b>	<b>1.3</b>	<b>51.9</b>	<b>40.3</b>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취급 자	비식용유기 가공품 업체	(3)	0.0	0.0	0.0	0.0	100.0	0.0
	취급자	(74)	2.7	2.7	1.4	1.4	50.0	41.9
대분류	1차생산자	(21)	4.8	4.8	4.8	4.8	33.3	47.6
	농수축산물 가공품 생산자	(46)	2.2	2.2	2.2	0.0	65.2	28.3
	농수축산물 가공품 판매/유통자	(54)	1.9	0.0	1.9	0.0	59.3	37.0
	농수축산물 가공품 수입자	(1)	0.0	0.0	0.0	0.0	100.0	0.0
1차생산자	농업	(13)	7.7	0.0	0.0	7.7	46.2	38.5
	축산	(9)	0.0	11.1	11.1	0.0	22.2	55.6
	임업	(1)	0.0	0.0	0.0	0.0	10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생산자	농업가공	(19)	5.3	5.3	0.0	0.0	73.7	15.8
	축산가공	(27)	0.0	0.0	3.7	0.0	59.3	37.0
	임업가공	(1)	0.0	0.0	0.0	0.0	100.0	0.0
농수축산 물 가공품 판매/유통 자	판매	(42)	0.0	0.0	2.4	0.0	59.5	38.1
	유통	(34)	2.9	0.0	0.0	0.0	61.8	35.3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4) 유기 가공식품 업체

ID				
----	--	--	--	--



유기가공식품 차등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업체 일반현황 ]

■ 업체/기관명		■ 응답자명	
■ 응답자 번호	( ) - ( ) - ( )		
■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Quata 확인란 ]

구	대분류	소분류		
분	농수축산물 가공품 취급자	① 가공	② 유통	③ 수입

□ Screen Question

SQ1. 귀 업체에서는 유기농수축산물 가공품을 가공/유통하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 조사종료

미국, 캐나다, 호주, EU는 가공품의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유기”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의 형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제품 성분 표시면에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또는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EU에서는 유기 가공품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범위가 유기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70~95%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보조표시면, 원재료 표시란에 ‘유기’표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찬성한다

2-1. 문2에서 ①(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문2에서 ②(찬성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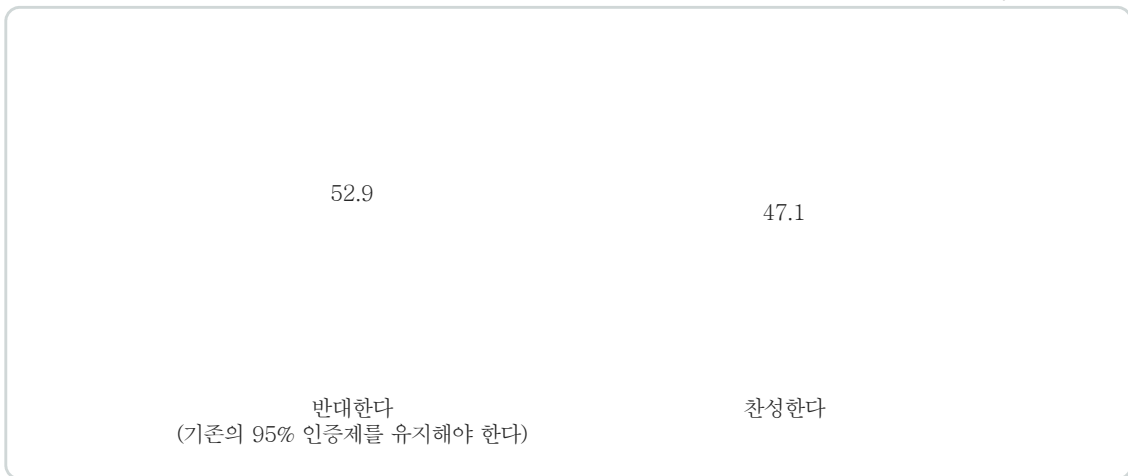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

-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해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가 52.9%로 가장 높음.

[그림 48]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51, %)



Q1.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50]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원료(70~95%) 사용 인증제 추가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51, %)

구 분		사례 수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	찬성한다
전 체		(51)	52.9	47.1
소분류	가공	(49)	53.1	46.9
	유통	(2)	50.0	50.0

## ○ 반대하는 이유

- 유기원료 사용 인증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 51] 반대하는 이유

(Base: 반대하는 응답자, N=26, 명)

구 분	반대하는 이유
1	확실한 95% 유기식품 인증과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
2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3	유기농을 한다면 95% 이상이어야하고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이니깐 개인이 작물을 하니까 그들은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4	유기농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너무 폭이 넓다. 90%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6	다른 성분이 들어가는 것은 유기농제품의 의미가 없다.
7	95% 유기농식품으로 판매가 높기 때문이다.
8	일단 퍼센트가 낮고 경쟁업체가 많이 생길 것 같다
9	100% 유기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유기농의 순수성이 본질을 흐린다. 유기농은 유기적인 순수성 95%를 유지해야한다.
11	함량이 높아야 할 것 같다.
12	95% 이상이 되어야 유기농이다.
13	유기농 함량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14	95% 이하이면 비유기 재료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15	유기농 100%인데 70%가 나온다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16	100%을 원한다.
17	범위가 넓어진다.
18	차별화 하기 위해 반대한다.
19	무분별로 유기농식품이 나올 것 같다.
20	30%에 독소가 들어 있을 수 있어 의미가 없다
21	그동안 99%로 해왔는데 반대한다. 범위가 확대 되는 것 반대.
22	이전에는 유기농 부재료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유기농 부재료가 많아서 %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
23	%를 낮추면 유기농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24	유기농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25	기존대로 하면 한다.
26	95% 이하면 유기농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찬성하는 이유

- 유기원료 사용 인증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표 52] 찬성하는 이유

(Base: 반대하는 응답자, N=24, 명)

구 분	반대하는 이유
1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완화를 하면 유기의 마크도 많이 들어가서 좋다.
2	제품의 원재료만 유기인증이고 그 외 추가적인 것은 풀어주는것도 좋다.
3	제품군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4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완제품도 비싸 대중적이지 못하다.
5	유기인증 내기가 까다롭다.
6	가공을하면 농약성분이 없어진다.
7	100%원료를 제공해도 하청가공업체에서 부재료를 첨가하다보니 완하 하는것이 좋겠다.
8	다른업체가하면 저희 회사가 손해를 본다.
9	친환경이니까
10	우리업체는 100%를 하지만 다른 업체를 위해서 찬성한다.
11	유통에서 수월할것같다.
12	별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13	너무 까탈스럽다.
14	유기농이 남용되면 안된다.
15	농가적인 수입면으로 도움될 것 같다.
16	% 낮아지면 일하기가 쉽다.
17	원재료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8	유기원료가 그만큼은 들어 있어야한다.
19	원료수급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20	현행제도와 비교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1	유기가공식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찬성한다.
22	유기농 제품 확대를 위해서 찬성한다.
23	유기농으로 인증되면 마케팅쪽으로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찬성한다.
24	단순 제품이 아닌 사용원료가 여러개 사용할 때는 제품개발,제조 할때 편리하다.

가. 인증기관

○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유기농)

- 유기농 인증 품목으로 야채류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벼’ (36.1%), ‘쌀’ (25.0%), ‘과일류’ (16.7%)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5) 인증기관

ID				
----	--	--	--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조사**  
(인증기관)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업체 일반현황 ]

■ 인증기관명		■ 응답자명	
■ 기관연락처	( ) - ( ) - ( )		

□ Screen Question

SQ1. 귀 인증기관에서는 유기 농수축산물 인증 업무를 하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 조사종료

## ▣ 유기가공식품 차등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1. 귀 업체가 인증하는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구분	인증 품목명
1) 유기농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2) 무농약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3) 무항생제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4)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제시)
■ 기타( )	품목:

미국, 캐나다, 호주, EU는 가공품의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유기"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의 형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제품 성분 표시면에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또는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EU에서는 유기 가공품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범위가 유기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70~95%의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보조표시면, 원재료 표시란에 '유기'표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대한다(기존의 95% 인증제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찬성한다

2-1. 문2에서 ①(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문2에서 ②(찬성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4년 7월 1일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동 협정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유기농 원료 95% 이상으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미국 농무부 (USDA)의 유기농 인증 로고를 부착, 수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기농식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동 협정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식용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공산품을 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나 이는 탄소마일리지 표시제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 등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인증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미 농무성 NOP에서 화장품,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농식품도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공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국제 비식용 유기농식품 인증 로고 예시 】**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용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도입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4.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식용 유기농식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4-1)~(4-7)

☞ 작성요령 : 품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예를 제시함.

품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1. 섬유류					
4-2. 화장품원료					
4-3. 개인보호용품					

4-4. 세제/소독제					
4-5. 완구류					
4-6. 종이/물티슈					
4-7. 애완동물사료					

**【 예시 】**

품목	예시			
섬유류	1) 성인의류	2) 유아의류	3) 침구류	4) 봉제인형
화장품원료	1) 화장품원료			
개인보호용품	1) 생리대	2) 면봉		
세제/소독제	1) 주방세제	2) 세탁세제	3) 소독제	
완구류	1) 신생아용품(달랑이, 치발기)			
종이/물티슈	1) 벽지, 장판	2) 물티슈		
애완동물사료	1) 고양이통조림			

5.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등록제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 허용)
- ② 인증제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과는 별도로 직접 인증제도를 운영)
- ③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6.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7. ※ 등록제와 인증제 관련: 비식용 유가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 】**

등록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준/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제품에 "유기"라는 표시 및 인증로고 부착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증제는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해외 인증제와는 별도로 인증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것임.

품목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	인증제를 시행해야 함
	①	②
7-1. 섬유류		



7-2. 화장품원료		
7-3. 개인보호용품		
7-4. 세제/소독제		
7-5. 완구류		
7-6. 종이/물티슈		
7-7. 애완동물사료		

8.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 ②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함.
- ③ 기타( )

9. ※ 인증제의 표준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품목에 대해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증표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품목	국제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인정
	①	②
9-1. 섬유류		
9-2. 화장품원료		
9-3. 개인보호용품		
9-4. 세제/소독제		
9-5. 완구류		
9-6. 종이/물티슈		
9-7. 애완동물사료		

10.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참고 】**

가공과정, 유통단계의 친환경이란 유기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일례로 유기섬유인증제도인 GOTS는 원료 조성 기준뿐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방직, 호제, 편직 및 제직, 전처리과정 및 습식공정, 염색, 프린팅, 마감, 액세서리 등에 대해 인증기준이 있고 이들을 준수하면 유기섬유가공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 ① 유기원료
- ②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 ①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 ② 화훼류에 대해 별도의 유기 인증기준 설정
- ③ 기타: ( )

1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조사**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은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이들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 인증제도」란 친환경(유기 포함)적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제품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맞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었다는 것을 인증기관이 평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현행 인증제도는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것만 있는데,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경우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해조류)만을 95%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6.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외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점	2점	3점	4점	5점

17.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 ②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 ③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 ④ 기타( )

1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②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 ③ 기타( )

19.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 ① 원료
- ②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 ③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한 차등 인증제도와 인증로고/표시 관련

(문 2는 기존 제도인 “유기”가공식품에 차등인증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20은 신규로 도입하려는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한 차등인증제도와 관련한 질문임)

미국, 캐나다, 호주, EU는 가공품의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경우 “유기”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70~95%의 유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유기 사과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00%의 유기성분을 함유” 등의 형태로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제품 성분 표시면에 해당 유기성분에 대해서만 “유기농” 또는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EU에서는 유기 가공품으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범위가 유기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한다
- ② 70%이상의 친환경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 ③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21. (인증로고/표시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 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2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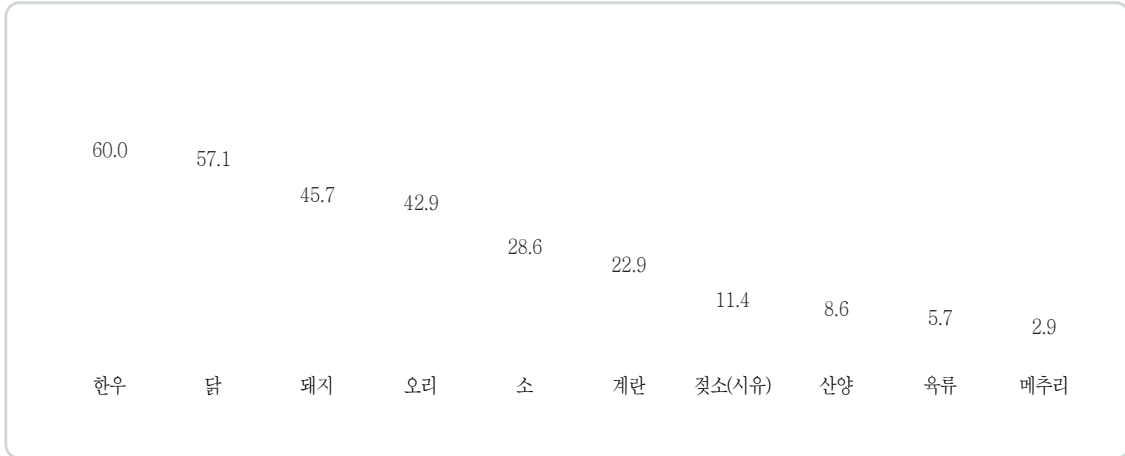


## ○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무항생제)

- 무항생제 인증품목으로 한우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한우’ (60.0%), ‘닭’ (57.1%), ‘돼지’ (45.7%)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무항생제)

(Base: 무항생제 품목 인증자, N=35, %)



Q1. 귀 업체가 인증하는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복수응답 가능)?

[표 55] 인증하는 품목의 종류(무항생제)

(Base: 무항생제 품목 인증자, N=35, %)

구 분	사례수	한우	닭	돼지	오리	소
전 체	(35)	60.0	57.1	45.7	42.9	28.6

구 분	사례수	계란	젓소(시유)	산양	육류	메추리
전 체	(35)	22.9	11.4	8.6	5.7	2.9

## ○ 인증제 추가 반대 이유

-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62.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이유로 유기원료 함량이 적어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2] 인증제 추가 반대 이유

(Base: 인증제 추가 반대 응답자, N=23, %)

		반대 이유(N = 23)	
찬성 한다 37.8	반대 한다 62.2	유기원료 함량이 적어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의미 없음	60.9
		소비자의 혼동	30.4
		현 인증제에 만족함	8.7
		인증기관 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서	8.7
		해외 기준에 없는 인증제이기 때문에	4.3
		유기농 및 가공품의 가치하락이 염려됨	4.3
		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유기가공품화가 필요함	4.3
		타국과의 동등성 인정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3

Q2-1. Q2에서 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56] 70~95%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생각(반대)

(Base: 인증제 추가 반대 응답자, N=23, %)

구 분	사례수	유기원료 함량(70%)이 적어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의미가 없음	소비자의 혼동	현 인증제에 만족함	인증기관 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전 체	(23)	60.9	30.4	8.7	8.7

구 분	사례수	해외 기준에 없는 인증제이기 때문에	유기농 및 가공품의 가치하락이 염려됨	경쟁력있는 고품질의 유기가공품화가 필요하므로	타국과의 동등성 인정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체	(23)	4.3	4.3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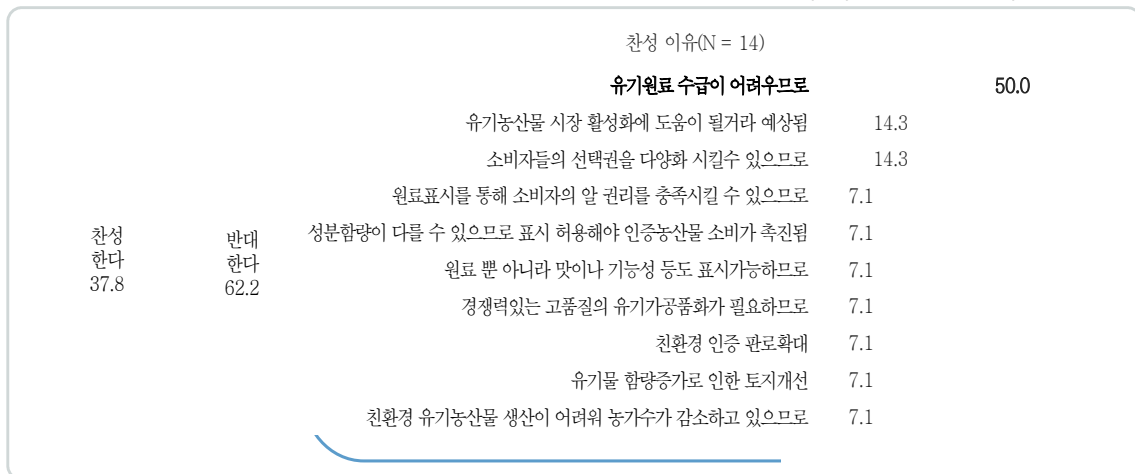


○ 인증제 사용 찬성 이유

- 응답자의 37.8%는 인증제 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은(50.0%) 유기원료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라 응답함.

[그림 53] 인증제 사용 찬성 이유

(Base: 인증제 사용 찬성 응답자, N=14, %)



Q2-2. Q2에서 찬성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57] 인증제 사용 찬성 응답자

(Base: 인증제 사용 찬성 응답자, N=14, %)

구 분	사례수	유기원료 수급이 어려우므로	유기농산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 예상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 시킬수 있으므로	원료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를 허용해야 인증농산물 소비가 촉진됨
전 체	(14)	50.0	14.3	14.3	7.1	7.1
찬성	(14)	50.0	14.3	14.3	7.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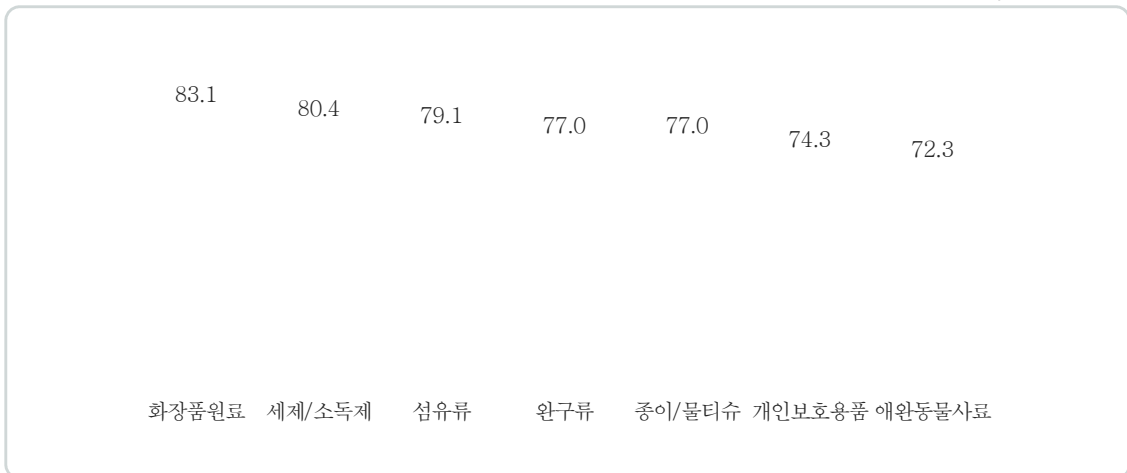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원료 뿐 아니라 맛이나 기능성 표시가 등도 하므로	소비자들에게 바쁜 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인증 판로 확대	유기물 증가로 토지 개선	유기농산물 생산이 어려워 농감소하고 있으므로
전체	(14)	7.1	7.1	7.1	7.1	7.1
찬성	(14)	7.1	7.1	7.1	7.1	7.1

### ○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

-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 화장품 원료가 8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세제/소독제’ (80.4점), ‘섬유류’ (79.1점), ‘완구류’ (7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37, 점)



Q4. 우리나라 법령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 비식용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표 59]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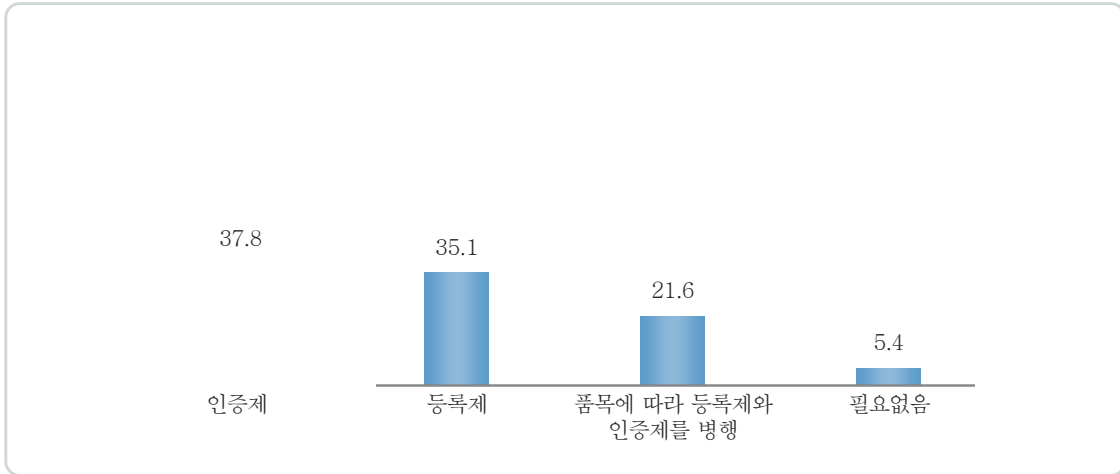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점 평균
화장품원료	(37)	62.2	21.6	8.1	2.7	5.4	83.1
세제/소독제	(37)	56.8	21.6	13.5	2.7	5.4	80.4
섬유류	(37)	51.4	27.0	13.5	2.7	5.4	79.1
완구류	(37)	51.4	21.6	16.2	5.4	5.4	77.0
종이/물티슈	(37)	48.6	27.0	13.5	5.4	5.4	77.0
개인보호용품	(37)	45.9	18.9	27.0	2.7	5.4	74.3
애완동물사료	(37)	37.8	27.0	27.0	2.7	5.4	72.3

### ○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가장 좋은 방법

- 비식용 유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증제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등록제’ (35.1%),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가장 좋은 방법

(Base: 전체, N=37, %)



Q5. (인증제도 도입 방식)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다음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60]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가장 좋은 방법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인증제	등록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필요없음
전 체	(37)	37.8	35.1	21.6	5.4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7]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

(Base: 전체, N=37, %)



Q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61]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우리나라 도입 시 가장 좋은 운영방식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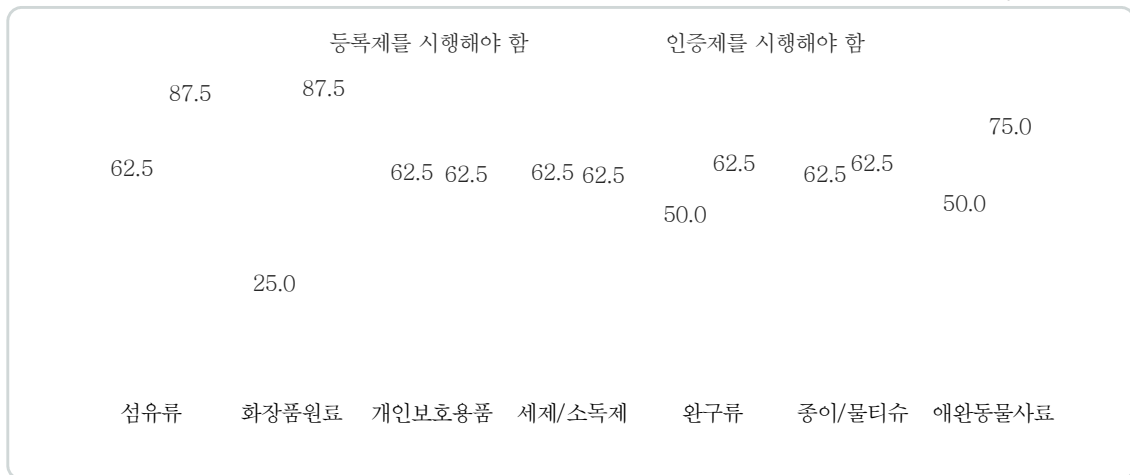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증제	등록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
전체	(37)	37.8	32.4	29.7

## ○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

-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 섬유류, 개인보호용품, 세제/소독제, 종이/물티슈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으로 섬유류와 화장품원료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8]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

(Base: 전체, N=37, %)



Q7. (Q5의 '3' 응답자에게만 질문) ※ 등록제와 인증제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품목에 따라 등록제와 인증제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등록제도와 인증제도를 각각 어떤 품목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

[표 62] 등록제와 인증제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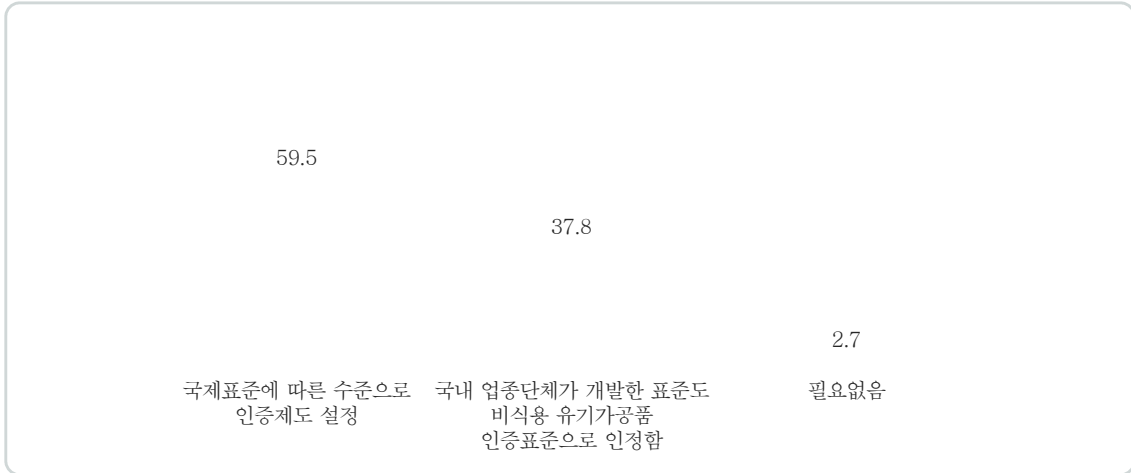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등록제를 시행해야 함 (%)	인증제를 시행해야 함 (%)
화장품원료	(37)	62.5	87.5
세제/소독제	(37)	25.0	87.5
섬유류	(37)	62.5	62.5
완구류	(37)	62.5	62.5
종이/물티슈	(37)	50.0	62.5
개인보호용품	(37)	62.5	62.5
애완동물사료	(37)	50.0	75.0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설정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설정에 대해서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해야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9]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표준 설정

(Base: 전체, N=37, %)



Q8.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표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63]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표준 설정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국제표준에 따른 수준으로 인증제도 설정	국제표준 외에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도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표준으로 인정	필요없음
전 체	(37)	59.5	37.8	2.7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로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0]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Base: 전체, N=37, %)



Q9. (인증기준 범위 관련)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표 64]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Base: 전체, N=37, %)

구분	사례수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유기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전체	(37)	48.6	51.4



## ○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

-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음.

[그림 61]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	64.9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 인증 표시기준 추가 두 가지 수준	24.3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인증 표시기준 추가 세 가지 수준	10.8

Q10.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6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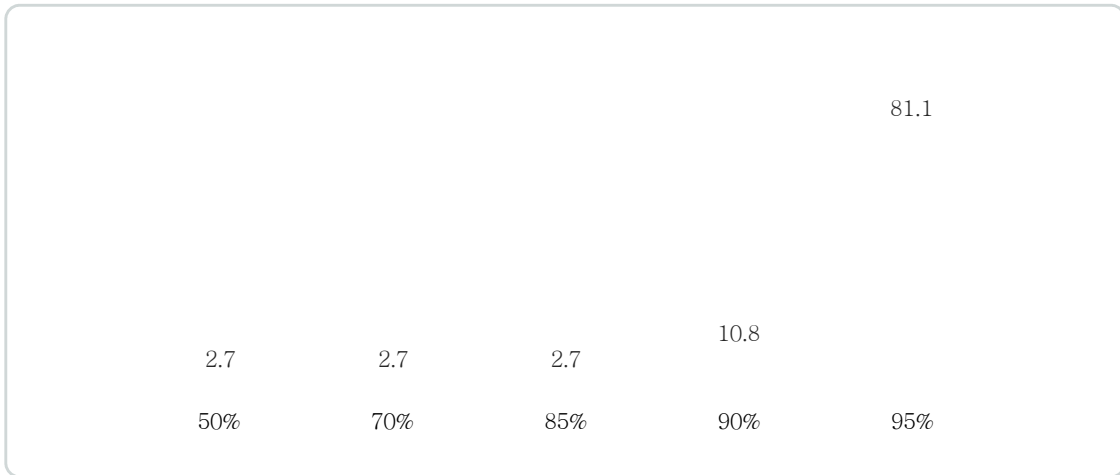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차등 인증제도 시행에 반대하며 현행 95% 유기원료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70%이상의 유기원료 사용에 대한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두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 미만의 유기원료 사용비율에 대해서도 인증 표시기준을 추가해 세 가지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전 체	(37)	64.9	24.3	10.8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 수준 적정량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정량은 95%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2]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 적정량

(Base: 전체, N=37, %)



Q11. (인증로고/표시 관련) 유기농산물과 비유기 원료, 첨가물의 혼합 가공품에 대해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66]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기원료 함량 요구 수준 적정량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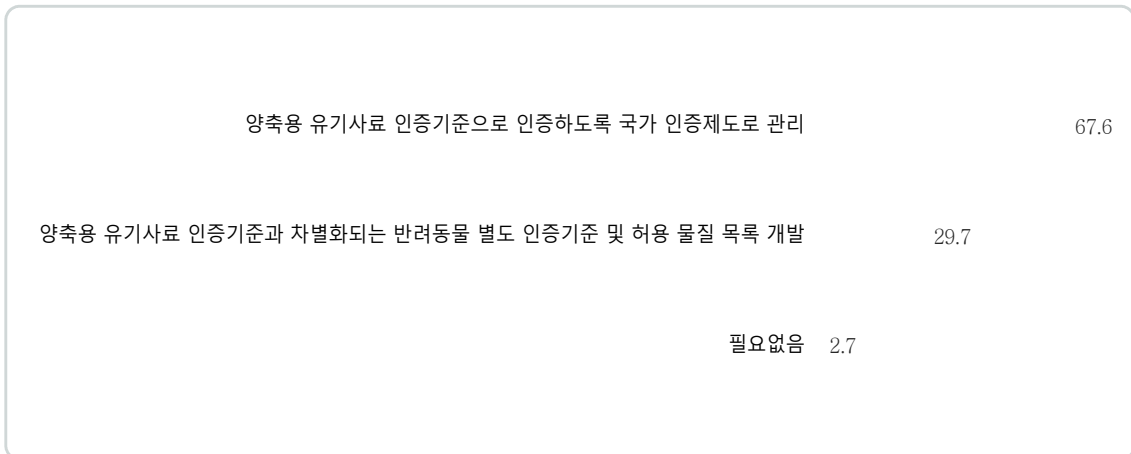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50%	70%	85%	90%	95%	평균
전 체	(37)	2.7	2.7	2.7	10.8	81.1	92.30

##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양축용 유기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3]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Q12.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 관련) 현재 국내 유기인증은 양축용 축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나 반려동물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도 없으며 미국 NOP의 경우 애완동물용 사료 인증은 축산용 사료에 준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67]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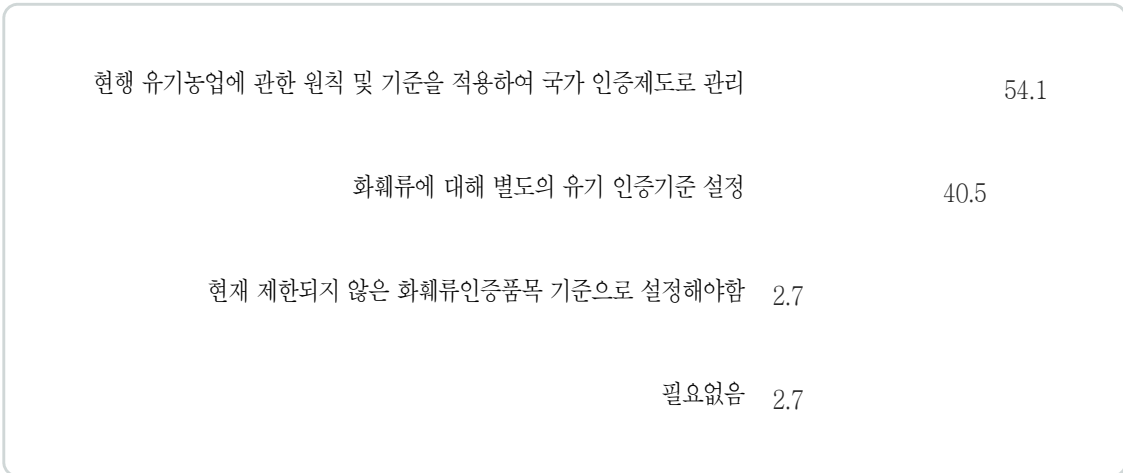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현행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으로 인증하도록 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양축용 유기 사료 인증기준과 차별화되는 반려동물용 별도 인증기준 및 허용물질 목록 개발	필요 없음
전 체	(37)	67.6	29.7	2.7

##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인증제도로 관리해야한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4]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Q13. (유기화훼류 인증 관련) 현재 유기 화훼류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민간기구는 없다.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68] 우리나라의 유기화훼류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생각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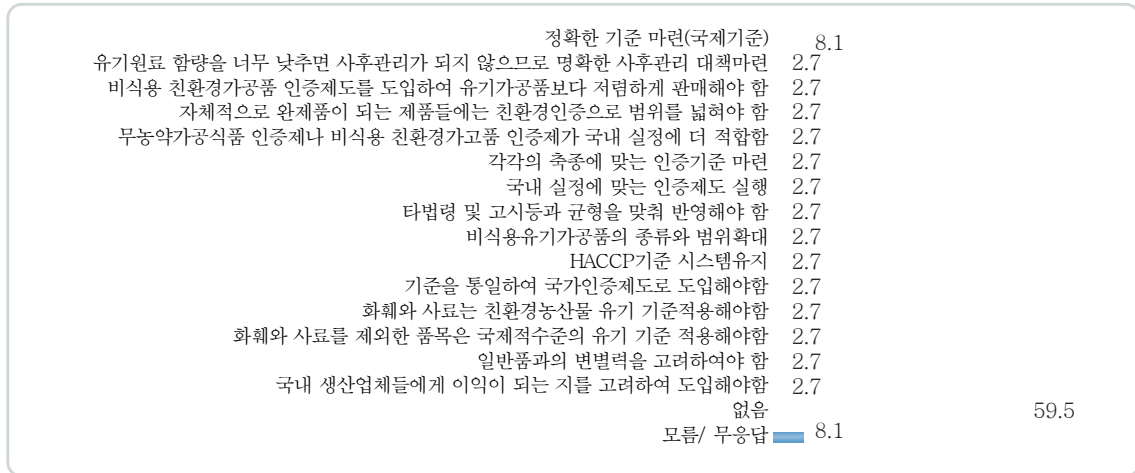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현행 유기농업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인증제도로 관리	화훼류에 대해 별도의 유기 인증기준 설정	현재 제한되지 않은 화훼류인증품목 기준으로 설정해야함	필요 없음
전 체	(37)	54.1	40.5	2.7	2.7

##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정확한 기준 마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5]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37, %)



\*3%미만 응답자 미제시

Q14.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반영해야할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69]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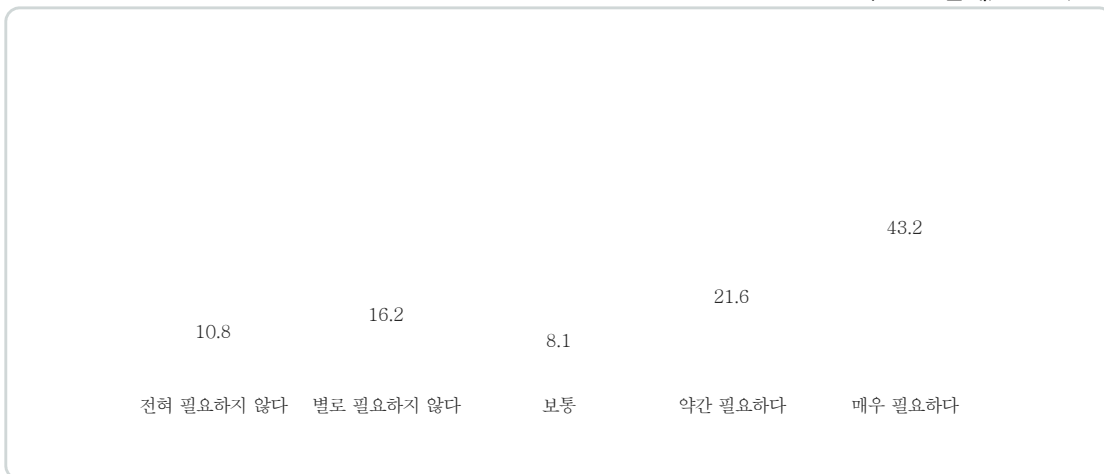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반영해야 할 점
1	(3)	정확한 기준 마련(국제기준)
2	(1)	유기원료 함량을 너무 낮추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사후 관리 대책마련
3	(1)	비식용 친환경가공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유기가공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함
4	(1)	자체적으로 완제품이 되는 제품들에는 친환경인증으로 범위를 넓혀야 함
5	(1)	무농약가공식품 인증제나 비식용 친환경가공품 인증제가 국내 실정에 더 적합함
6	(1)	각각의 축종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
7	(1)	국내 실정에 맞는 인증제도 실행
8	(1)	타법령 및 고시등과 균형을 맞춰 반영해야 함
9	(1)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종류와 범위확대
10	(1)	HACCP기준 시스템유지
11	(1)	기준을 통일하여 국가인증제도로 도입해야함
12	(1)	화훼와 사료는 친환경농산물 유기 기준적용해야함
13	(1)	화훼와 사료를 제외한 품목은 국제적수준의 유기 기준 적용해야함
14	(1)	일반품과의 변별력을 고려하여야 함
15	(1)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고려하여 도입해야함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6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100점 평균 기준 67.6점으로 나타남.

[그림 6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37, %)



Q15.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외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5점 만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표 7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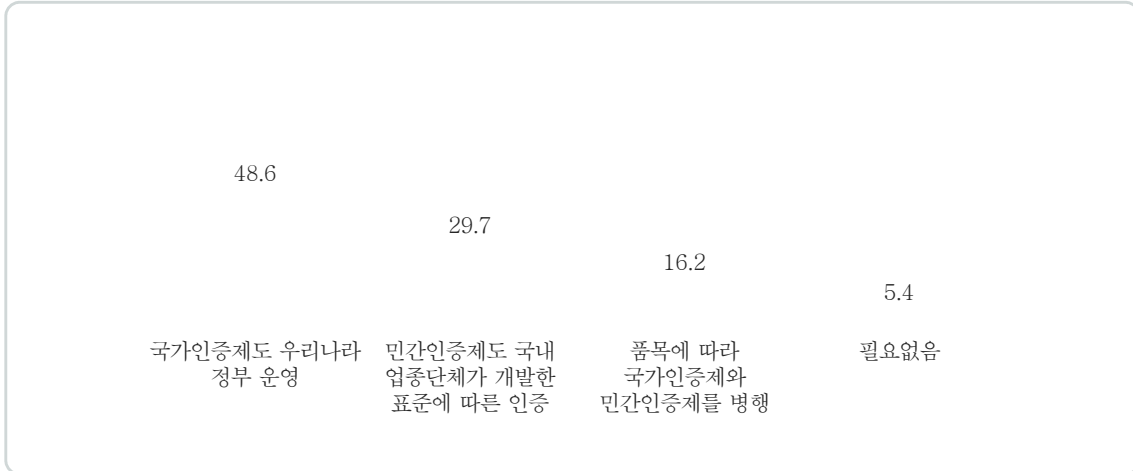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00점 평균
전 체	(37)	10.8	16.2	8.1	21.6	43.2	67.6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를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7]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

(Base: 전체, N=37, %)



Q1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피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7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운영방식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도 우리나라 정부 운영	민간인증제도 국내 업종단체가 개발한 표준에 따른 인증	품목에 따라 국가인증제와 민간인증제를 병행	필요 없음
전 체	(37)	48.6	29.7	16.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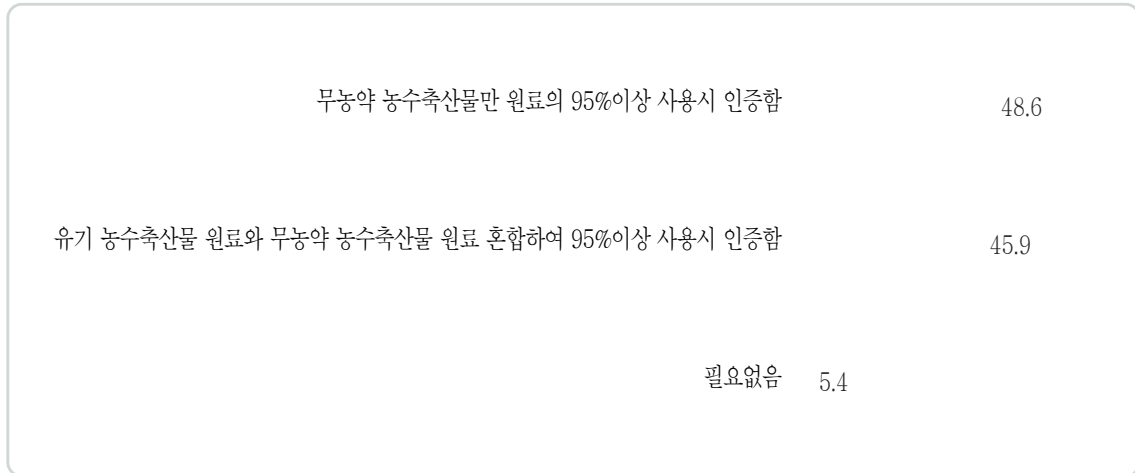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기준으로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해야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8]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

(Base: 전체, N=37, %)



Q17.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7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기준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무농약 농수축산물만 원료의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유기 농수축산물 원료와 무농약 농수축산물 원료 혼합하여 95%이상 사용시 인증함	필요 없음
전 체	(37)	48.6	45.9	5.4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로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9]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Base: 전체, N=37, %)



Q18. 인증기준 범위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한가요?

[표 7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기준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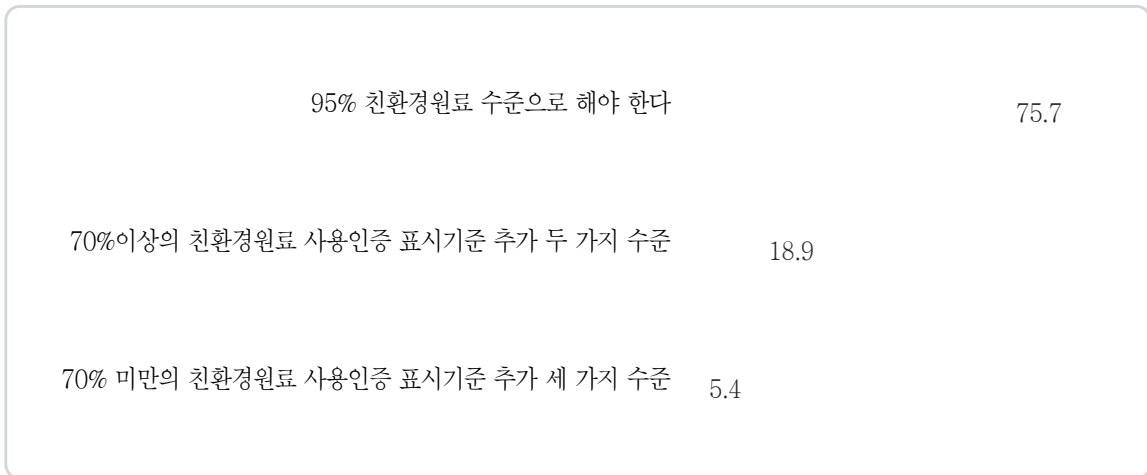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	원료+가공공정의 친환경+유통단계의 친환경
전 체	(37)	59.5	40.5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 제도 시행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은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0]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 시행 (Base: 전체, N=37, %)



Q19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74]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시 원료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인증 제도 시행 (Base: 전체, N=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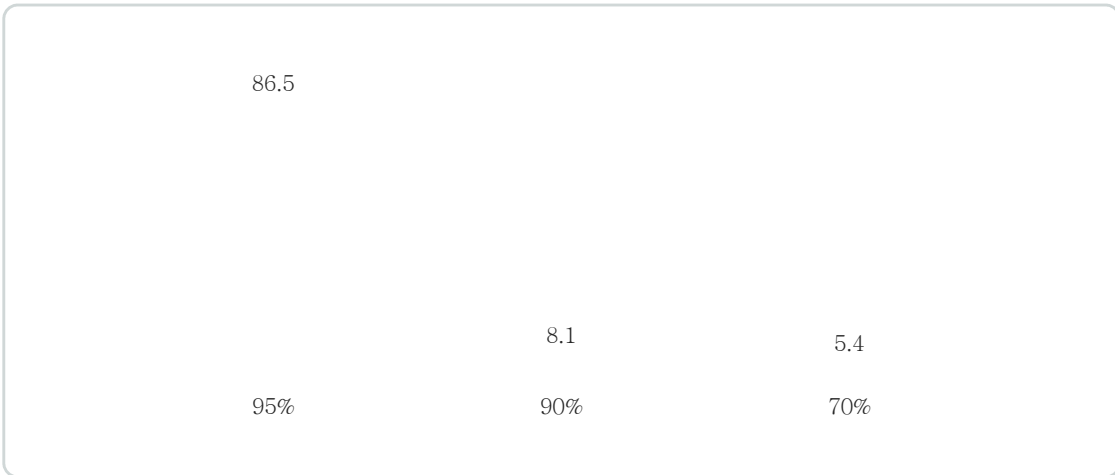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95% 친환경원료 수준으로 해야 한다	70%이상의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추가 두 가지 수준	70% 미만의 친환경원료 사용인증 표시기준 추가해 세 가지 수준
전 체	(37)	75.7	18.9	5.4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에 대한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은 95%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1]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37, %)



Q20. (인증로고/표시 관련)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원료함량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75]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로고 최소 무농약/무항생제 함량 요구수준

(Base: 전체, N=37, %)

구분	사례수	95%	90%	70%
전체	(37)	86.5	8.1	5.4

##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반영해야함, 정확한 기준마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72]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37, %)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반영해야함	8.1
정확한 기준마련	8.1
무농약인증과 유기인증의 확실한 차별화 필요	5.4
심사원 양성 필요	5.4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5.4

Q23.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3%미만 응답자 미제시

[표 76]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37, %)

구 분	사례수	반영해야 할 점
1	(3)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반영해야 함
2	(3)	정확한 기준 마련
3	(2)	무농약인증과 유기인증의 확실한 차별화 필요
4	(2)	심사원 양성 필요
5	(2)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6	(1)	세척제/소독제 사용시 유기가공식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필요
7	(1)	설탕등의 원료는 무농약가공식품 원료에 유기원료도 포함시켜야 함
8	(1)	해외에서만 나는 원료도 국내기준에 따라 무농양농산물 인증을 허가해야 함
9	(1)	무농약가공식품 생산시 유기원료 사용해도 무농약가공식품으로 인증 및 표시 하도록 해야 함
10	(1)	국내실정에 맞는 인증제도 실행
11	(1)	원료에 대한 기준만 무농약인증을 허용하고 그외는 유기식품 인증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함
12	(1)	유기가공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필요
13	(1)	현재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무농약 원료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인증제 도입을 해야 함
14	(1)	원재료를 제외하고 유기인증기준과 동등하게 도입하였으면 함
15	(1)	HACCP기준 시스템유지
16	(1)	무농약 가공식품의 기준은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을 준용해야 함
17	(1)	일반품과의 변별력을 고려하여야 함

부록 5.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 총 결과

(6) 친환경 식당

ID				
----	--	--	--	--



**친환경 농축산물사용 우수식당 인증제도 개선방안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위탁을 받은 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의 전문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책연구용역 **[친환경인증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인증/표시기준 설정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 주관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업체 일반현황 ]

■ 업체명		■ 응답자명	
■ 응답자 번호	( ) - ( ) - ( )		
■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Quata 확인란 ]

구분	대분류	소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① 한식당 ② 반찬가게 ③ 급식업
	빵집, 떡집, 카페 등	① 빵집 ② 떡집 ③ 카페

현재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 하에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주황색(60점 이상), 청색(70점 이상), 녹색(80점 이상)으로 구분된 현판을 부착해 주고 식당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현판의 예 >

1.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대해 국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대한다(기존처럼 민간인증기관의 자체인증으로 관리해야 한다)
- ② 찬성한다

1-1. 문1에서 ①(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문2에서 ②(찬성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식당, 반찬가게, 급식업만) 현행 우수식당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격도의 순서는 ①녹색 ②청색 ③주황색).

구분	친환경농산물우수식당	해당업종	한식당, 반찬가게 등	조사 결과
	평가 품목	세부 평가		
주황색	쌀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채소 (근채,엽채)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채소(근채, 엽채)를 100% 사용 여부 2. 자가 재배 농산물일 경우 재배방법 등 친환경농법을 이용했는지 재배지 방문 및 확인서 작성 3. 재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산자, 생산지, 재배방법 등 확인서 작성 후 전체 사용품목 또는 사용량의 10% 이내 허용		가 . 부
청색	쌀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채소 (근채,엽채)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채소(근채, 엽채)를 100% 사용 여부 2. 자가 재배 농산물일 경우 재배방법 등 친환경농법을 이용했는지 재배지 방문 및 확인서 작성 3. 재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산자, 생산지, 재배방법 등 확인서 작성 후 전체 사용품		가 . 부



		목 또는 사용량의 10% 이내 허용	
	잡곡류	1.국내산 잡곡류 100% 사용 여부 ① 잡곡류에 밀 포함 (국내산 우리밀 또는 우리밀 밀가루)	가 . 부
	과실 (과채,과수)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과실(과채, 과수) 사용 여부 (권장사항) ① 권장사항은 등급 적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녹색	쌀	1.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채소 (근채,엽채)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채소(근채, 엽채)를 100% 사용 여부 2. 자가 재배 농산물일 경우 재배방법 등 친환경농법을 이용했는지 재배지 방문 및 확인서 작성 3. 재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산자, 생산지, 재배방법 등 확인서 작성 후 전체 사용품목 또는 사용량의 10% 이내 허용	가 . 부
	잡곡류	1.국내산 잡곡류를 100% 사용 여부 ① 잡곡류에 밀 포함 (국내산 우리밀 또는 우리밀 밀가루) ② 밀 사용시 국내산 무농약 우리밀 이상 20% 이상 사용	가 . 부
	과실 (과채,과수)	1. 과채는 무농약 이상을 30% 이상 사용 여부 2. 과수는 국내산 이상 사용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수는 제외)	가 . 부
	육류	1. 국내산 무항생제 축산물 이상 사용 2. 주재료가 아닌 부재료로 사용 시 국내산 이상 사용 가능	가 . 부
	양념류	1. 주원료를 국내산 100% 사용 여부 ①해당 양념류는 <b>된장,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b> ②그 외 양념류는 국내산 이상 사용 (권장사항) ③권장사항은 등급 적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 부

2-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 ① 기준이 너무 낮다
- ② 너무 엄격하다

2-2.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② 항목별 평가기준 중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하면 좋겠음
- ③ 양념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음
- ④ 기타 의견(주관식):

2-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 (빵집만) 현행 우수식당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친환경우수빵집		해당업종	빵집	조사 결과
	평가 품목	세부 평가			
청색	밀	1. 우리밀 사용 여부			가 . 부
	발효	1. 빵의 경우 발효는 천연발효종을 사용할 것			가 . 부
	유제품	1. 빵에 들어가는 유제품은 천연제품을 사용할 것 ① 천연버터, 자연치즈 등 천연제품 사용 여부			가 . 부
녹색	밀	1. 무농약 우리밀 이상 사용 여부			가 . 부
	발효	1. 빵의 경우 발효는 천연발효종을 사용할 것			가 . 부
	유제품	1. 빵에 들어가는 유제품은 천연제품을 사용 여부 ① 천연버터, 자연치즈 등 천연제품 사용 ② 우유는 무항생제 이상 사용			가 . 부
	달걀	1. 무항생제 이상 사용 여부			가 . 부
	부재료	1. 채소류, 육류(육가공품), 과실류 등을 사용할 경우 ① 채소류는 국내산 무농약 이상 ② 육류는 국내산 이상 ③ 과실류는 무농약 이상 (권장사항) ④ 권장사항은 등급 적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 부

3-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 ① 기준이 너무 낮다
- ② 너무 엄격하다

3-2.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② 항목별 평가기준 중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하면 좋겠음
- ③ 유제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음
- ④ 기타 의견(주관식):

--

3-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카페만) 현행 우수식당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친환경우수카페		해당업종	카페	조사 결과
	평가 품목	세부 평가			
녹색	커피	1. 유기농 커피 사용 여부 2. 공정무역 커피 사용 (권장사항)			가 . 부
	차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사용 여부 ① 국내 생산이 없는 경우 수입산 허용			가 . 부
	유제품	1. 우유는 무항생제 이상 사용 여부			가 . 부
	채소류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사용 여부			가 . 부
	과실 (과채,과수)	1. 과채는 무농약 이상을 30% 이상 사용 여부 2. 과수는 국내산 이상 사용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수는 제외)			가 . 부
	기타	1. 사이드 메뉴인 육류(육가공품은)국내산 이상 사용 2. 사이드 메뉴인 빵은 우리밀 이상 사용 3. 소스류 중 버터 등은 천연 제품 사용 4. 첨가물 중 설탕은 유기농 사용			가 . 부

4-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 ① 기준이 너무 낮다
- ② 너무 엄격하다

4-2.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② 유기농, 유기농+공정무역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③ 유제품에 대해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기준을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④ 기타 의견(주관식):

4-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떡집만) 현행 우수식당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친환경우수떡집		해당업종	떡집	조사 결과
	평가 품목	세부 평가			
주황색	쌀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청색	쌀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첨가물	1. 유기농 설탕 사용 여부 2. 국내산 천일염 사용 여부 3. 천연색소 사용 여부			가 . 부
녹색	쌀	1. 국내산 무농약 이상 쌀을 100% 사용 여부			가 . 부
	첨가물	1. 유기농 설탕 사용 여부 2. 국내산 천일염 사용 여부 3. 천연색소 사용 여부			가 . 부
	부재료	1. 국내산 이상 사용 여부			가 . 부

5-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 ① 기준이 너무 낮다
- ② 너무 엄격하다

5-2.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② 무농약 이상 쌀을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세분화하면 좋겠음
- ③ 참기름 등 첨가물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음

④ 기타 의견(주관식):

5-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6.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대해 국가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해야 할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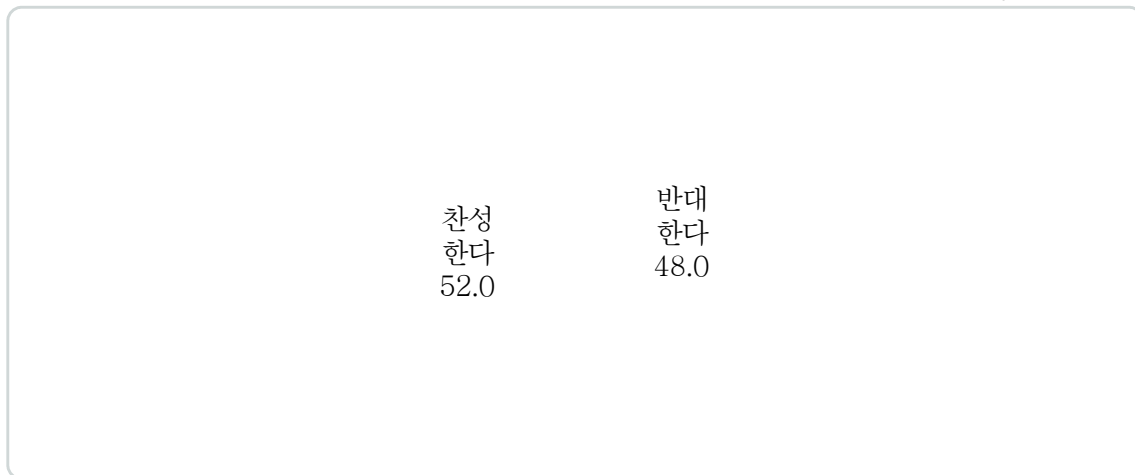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 ○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여부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0%로 나타남.

[그림 73]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여부

(Base: 전체, N=100, %)



Q1.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대해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식당, 반찬가게 등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54.3%로 ‘빵집 떡집 카페 등’ (46.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7]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여부

(Base: 전체, N=100, %)

구분	사례수	반대한다	찬성한다	
<b>전체</b>	<b>(100)</b>	<b>48.0</b>	<b>52.0</b>	
<b>대분류</b>	한식당, 반찬가게 등	(70)	45.7	54.3
	빵집, 떡집, 카페 등	(30)	53.3	46.7
<b>한식당, 반찬가게 등</b>	한식당	(63)	46.0	54.0
	반찬가게	(7)	42.9	57.1
<b>빵집, 떡집, 카페 등</b>	빵집	(10)	40.0	60.0
	떡집	(10)	60.0	40.0
	카페	(10)	60.0	40.0

## ○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

- 4명 중 1명은(25.0%)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를 꼽음
- 다음으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서’, ‘평가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기존의 민간인증제도로 충분해서’ 가 14.6%로 나타남.

[그림 74]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

(Base: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응답자, N=48, %)

		반대 이유(N = 48)	
찬성 한다 52.0	반대 한다 48.0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낮아서	25.0
		실효성 의심스러워서	14.6
		평가기준 까다로울 것 같아서	14.6
		기존의 민간인증제도로도 충분해서	14.6
		친환경 재료 단가높아 메뉴가격 상승되어서	10.4
		원재료 가격비싸 운영이 어려워서	8.3
		업종/규모등에 따른 현실성 떨어져서	6.3
		좋은 식당과 나쁜식당으로 구분되는 느낌이어서	4.2
		지나친 간섭 우려되어서	4.2

Q1-1. 문1에서 ①(반대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미만 응답 미제시

- ‘한식당, 반찬가게 등’, ‘빵집, 떡집, 카페 등’ 에서 모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8]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

(Base: 국가인증제 도입에 반대 응답자, N=48, %)

구 분	사례수	신뢰도 낮아서	실효성 의심스러워서	평가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민간인증제도로 충분해서	
<b>전 체</b>	<b>(48)</b>	<b>25.0</b>	<b>14.6</b>	<b>14.6</b>	<b>14.6</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2)	25.0	18.8	9.4	12.5
	빵집 떡집 카페 등	(16)	25.0	6.3	25.0	18.8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29)	24.1	20.7	3.4	13.8
	반찬가게	(3)	33.3	0.0	66.7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4)	50.0	0.0	75.0	0.0
	떡집	(6)	0.0	0.0	16.7	33.3
	카페	(6)	33.3	16.7	0.0	16.7

구 분	사례 수	단가상승으로 인한 메뉴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이 비싸 운영이 어려워져서	업종/규모 등에 따른 현실성 떨어져서	좋은 식당과 나쁜 식당으로	지나친 간섭이 우려 되어서	
<b>전 체</b>	<b>(48)</b>	<b>10.4</b>	<b>8.3</b>	<b>6.3</b>	<b>4.2</b>	<b>4.2</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2)	6.3	9.4	6.3	3.1	6.3
	빵집, 떡집, 카페 등	(16)	18.8	6.3	6.3	6.3	0.0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29)	6.9	10.3	6.9	3.4	6.9
	반찬가게	(3)	0.0	0.0	0.0	0.0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4)	0.0	0.0	25.0	0.0	0.0
	떡집	(6)	33.3	0.0	0.0	16.7	0.0
	카페	(6)	16.7	16.7	0.0	0.0	0.0

## ○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이유

- 4명 중 1명은(25.0%) 국가인증제 도입 반대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를 꼽음.
- 다음으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서’, ‘평가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기존의 민간인증제도로 충분해서’ 가 14.6%로 나타남.

[그림 75]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이유

(Base: 국가인증제 도입에 찬성 응답자, N=52, %)

찬성 이유(N= 52)			
찬성 한다 52.0	반대 한다 48.0	국가인증에 대한 신뢰도 상승	30.8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주어서	26.9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신뢰도 상승	13.5
		식당에 대한 신뢰도 상승	11.5
		식당의 이미지 등 가치상승되어서	5.8
		공신력이 있어서	3.8
		건강에 관심많은 소비자육구 충족되어서	3.8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3.8
		매출향상 기대되어서	3.8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폭 확대되어서	3.8

Q1-2. 문1에서 ②(찬성한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미만 응답 미제시

- 한식당, 반찬가게 등에서는 ‘국가인증에 대한 신뢰도 상승’ (36.8%)이, 빵집, 떡집, 카페 등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주어서’ (42.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9] 국가인증제 도입 찬성 이유

(Base: 국가인증제 도입에 찬성 응답자, N=52, %)

구 분	사례수	국가인증제 대한 신뢰도 상승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주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	식당에 대한 신뢰도 상승	식당의 이미지 등 가치상승 되어서	
<b>전 체</b>	<b>(52)</b>	<b>30.8</b>	<b>26.9</b>	<b>13.5</b>	<b>11.5</b>	<b>5.8</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8)	36.8	21.1	13.2	13.2	5.3
	빵집, 떡집, 카페 등	(14)	14.3	42.9	14.3	7.1	7.1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34)	38.2	20.6	11.8	14.7	5.9
	반찬가게	(40)	25.0	25.0	25.0	0.0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6)	16.7	50.0	0.0	0.0	16.7
	떡집	(4)	25.0	25.0	50.0	25.0	0.0
	카페	(4)	0.0	5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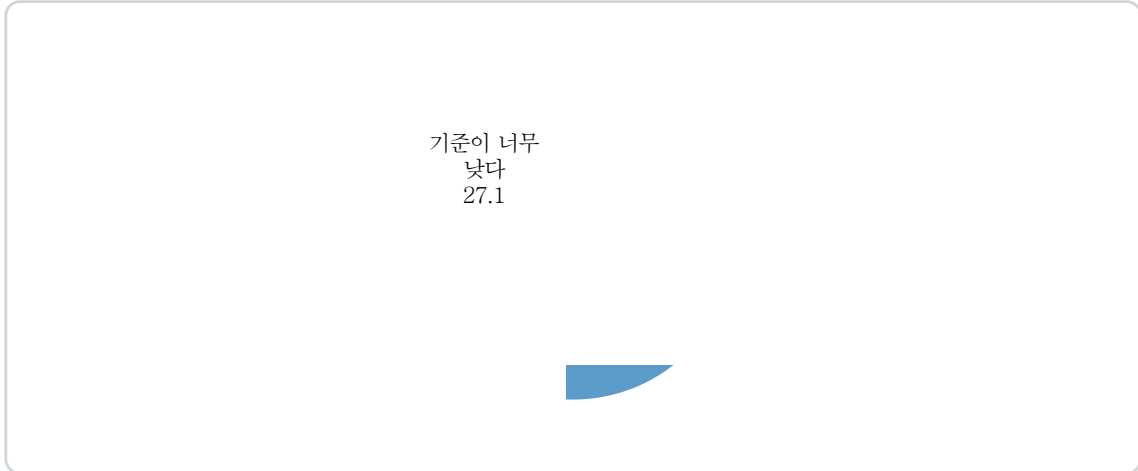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공신력이 있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육구 충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상승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폭 확대	
<b>전 체</b>	<b>(52)</b>	<b>3.8</b>	<b>3.8</b>	<b>3.8</b>	<b>3.8</b>	<b>3.8</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38)	5.3	5.3	2.6	5.3	0.0
	빵집, 떡집, 카페 등	(14)	0.0	0.0	7.1	0.0	14.3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34)	2.9	5.9	0.0	5.9	0.0
	반찬가게	(40)	25.0	0.0	25.0	0.0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6)	0.0	0.0	0.0	0.0	16.7
	떡집	(4)	0.0	0.0	0.0	0.0	0.0
	카페	(4)	0.0	0.0	25.0	0.0	25.0

## ○ (한식당, 반찬가게)우수식당 지정기준

-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남.

[그림 76]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전체, N=70, %)



Q2-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맞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응답은 한식당에서 71.4%, 반찬가게에서 85.7%로 나타남.

[표 80]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국가인증제 도입에 찬성 응답자, N=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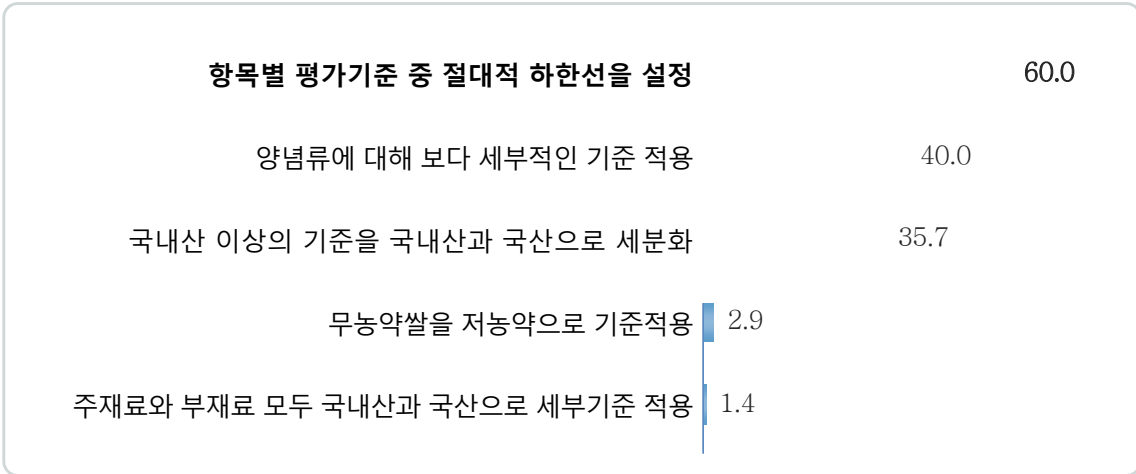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기준이 너무 낮다	너무 엄격하다
전 체		(70)	27.1	72.9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63)	28.6	71.4
	반찬가게	(7)	14.3	85.7

## ○ (한식당, 반찬가게)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항목별 평가기준에서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음.

**[그림 77]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한식당, 반찬가게, 급식업 사업자 N=70, %)



Q2-2. 평가품목과 세분화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복수응답)

- 한식당과 반찬가게 모두 항목별 평가기준의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1]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한식당, 반찬가게, 급식업 사업자, N=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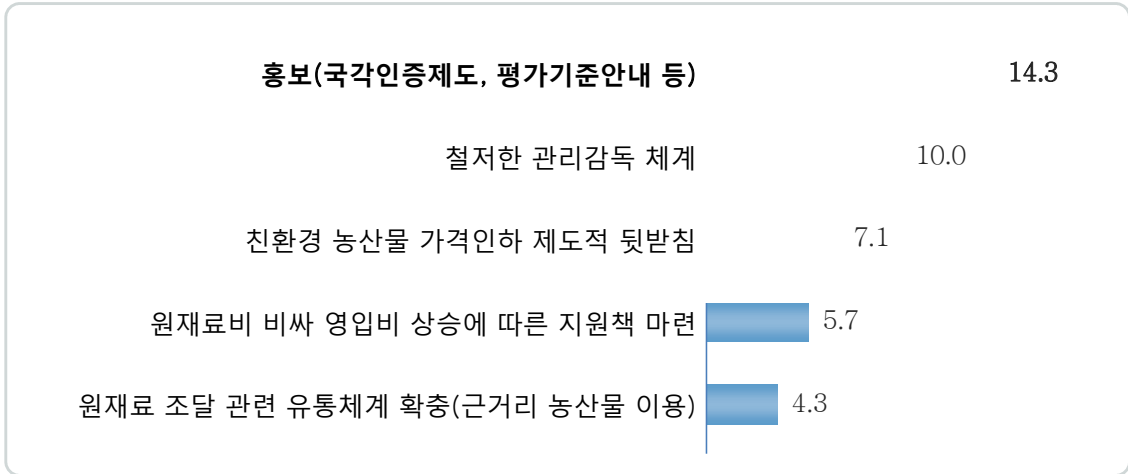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항목별 평가기준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	양념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무농약쌀을 저농약으로 기준적용	주재료와 부재료 모두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부기준 적용
전 체		(70)	60.0	40.0	35.7	2.9	1.4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63)	61.9	39.7	36.5	3.2	1.6
	반찬가게	(7)	42.9	42.9	28.6	0.0	0.0

**○ (한식당, 반찬가게)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홍보가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10.0%), ‘친환경 농산물 가격인하 제도적 뒷받침’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8]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한식당, 반찬가게, 급식업 사업자 N=70, %)



Q2-2.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한식당에서는 ‘홍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11.1%)가 반찬가게에서는 ‘홍보’ (42.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82]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한식당, 반찬가게, 급식업 사업자, N=70, %)

구 분		사례수	홍보(국가인증 제도, 평가기준 안내 등)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친환경 농산물 가격인하 제도적 뒷받침	비싼 원재료비로 영입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 확충
<b>전 체</b>		<b>(70)</b>	<b>14.3</b>	<b>10.0</b>	<b>7.1</b>	<b>5.7</b>	<b>4.3</b>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63)	11.1	11.1	7.9	6.3	4.8
	반찬가게	(7)	42.9	0.0	0.0	0.0	0.0
구 분		사례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전문적인 관리방안	꾸준한 관리방안	현실성 있는 제도마련	과도한 인증기준 완화
<b>전 체</b>		<b>(70)</b>	<b>2.9</b>	<b>2.9</b>	<b>2.9</b>	<b>2.9</b>	<b>2.9</b>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63)	3.2	3.2	3.2	3.2	1.6
	반찬가게	(7)	0.0	0.0	0.0	0.0	14.3

## ○ (빵집)우수식당 지정기준

-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60.0%로 나타남.

[그림 79]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전체, N=10, %)



Q3-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맞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표 83]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전체, N=10, %)

구 분	사례수	기준이 너무 낮다	너무 엄격하다
전 체	(10)	40.0	60.0
빵집	(10)	40.0	60.0

## ○ (빵집)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유제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항목별 평가기준 중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 (60.0%),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0]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빵집 사업자 N=10, %)



Q3-2. 평가품목과 세분화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복수응답)

[표 84]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빵집, 떡집, 카페 등 사업자, N=10, %)

구 분	사례수	유제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	항목별 평가기준 중 절대적 하한선을 설정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전 체	(10)	70.0	60.0	20.0
빵집	(10)	70.0	6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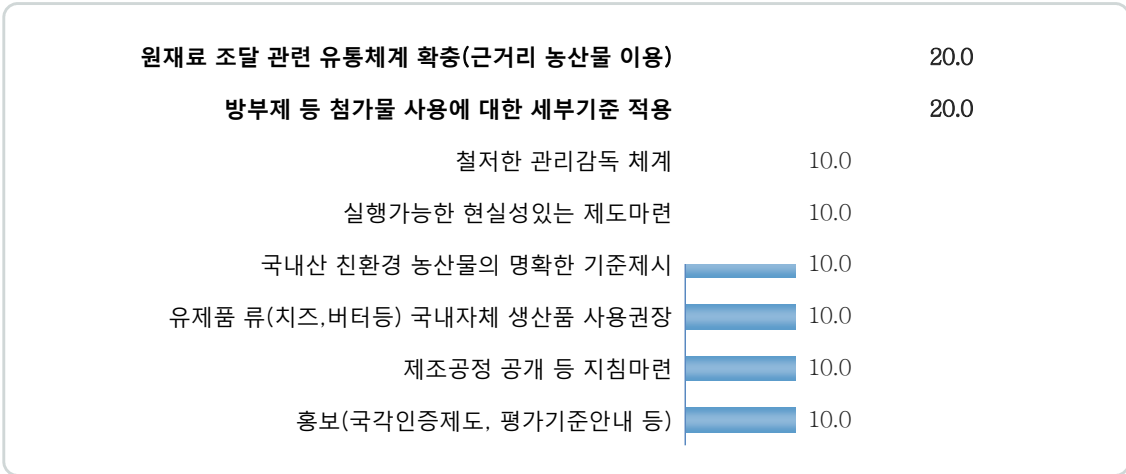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천연버터, 자연치즈 등 천연제품 세부기준	유제품관련 무항생제, 유기농의 세부기준
전 체	(10)	10.0	10.0
빵집	(10)	10.0	10.0

### ○ (빵집)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를 확충’, ‘방부제 등 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이 2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빵집 사업자 N=10, %)



Q3-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표 85]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빵집, 사업자, N=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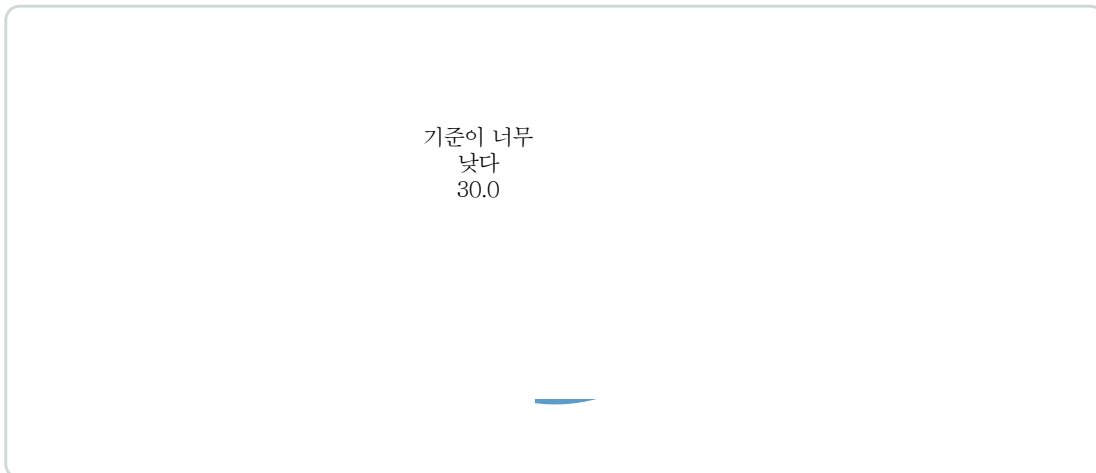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 확충	방부제 등 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마련
전체	(10)	20.0	20.0	10.0	10.0
빵집	(10)	20.0	20.0	10.0	10.0
구분	사례수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의 명확한 기준제시	유제품류 국내자체 생산품 사용권장	제조공정 공개 등 지침마련	홍보
전체	(10)	10.0	10.0	10.0	10.0
빵집	(10)	10.0	10.0	10.0	10.0

## ○ (카페)우수식당 지정기준

- 우수식당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70.0%로 나타남.

[그림 82]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카페 사업자, N=10, %)



Q4-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맞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표 86]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전체, N=10, %)

구 분	사례수	기준이 너무 낮다	너무 엄격하다
전 체	(10)	30.0	70.0
카페	(10)	30.0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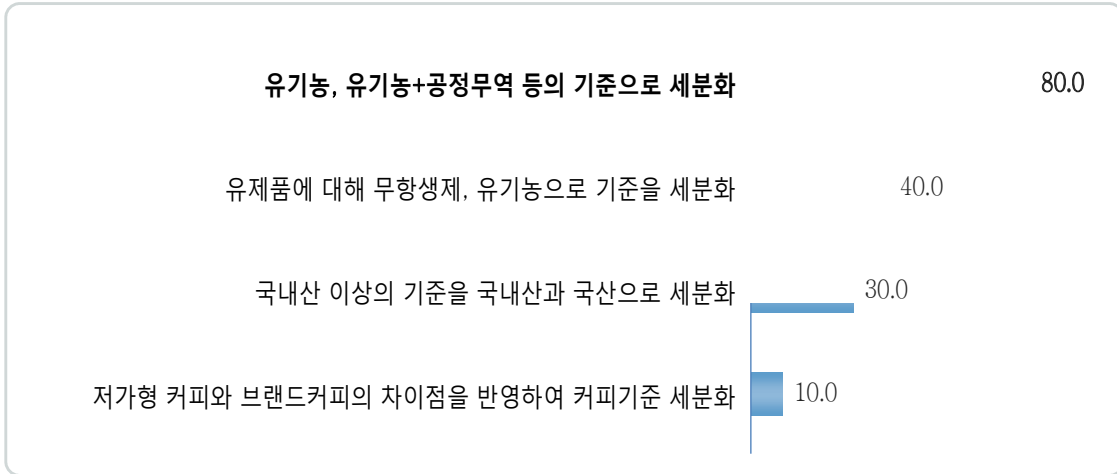
## ○ (카페)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유기농, 유기농+공정무역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유제품에 대해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기준을 세분화’ (40.0%),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3]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카페 사업자 N=10, %)



Q4-2. 평가품목과 세분화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복수응답)

[표 87]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카페 사업자, N=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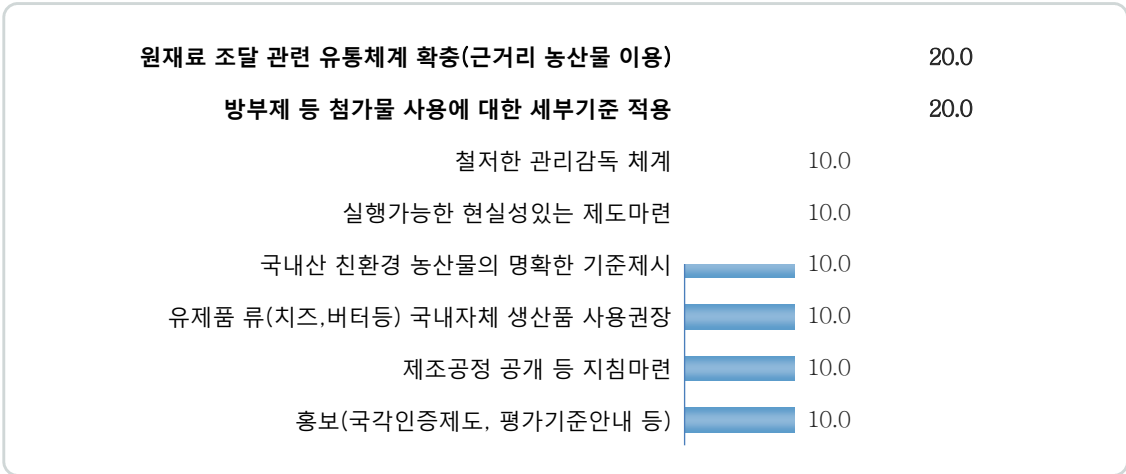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유기농, 유기농+공정무역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	유제품에 대해 무항생제, 유기농으로 기준을 세분화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저가형 커피와 브랜드커피의 차이점 반영해 커피기준 세분화
전체	(10)	80.0	40.0	30.0	10.0
카페	(10)	80.0	40.0	30.0	10.0

### ○ (카페)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원재료 조달 관련 유통체계를 확충’, ‘방부제 등 첨가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이 2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4]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카페 사업자 N=10, %)



Q4-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시오.

\* '없음' (20.0%) 미제시

[표 88]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카페 사업자, N=10, %)

구 분	사례수	친환경 농산물 가격인하 제도적 뒷받침	비싼 원재료비로 인한영입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꾸준한 관리방안	과도한 인증기준 완화
<b>전 체</b>	<b>(10)</b>	<b>20.0</b>	<b>20.0</b>	<b>10.0</b>	<b>10.0</b>
<b>카페</b>	(10)	20.0	20.0	10.0	10.0
구 분	사례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련 인증제도 관리	친환경 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	일반재배방식과 친환경 재배방식 차이점 이해도 높이기	사업주 교육
<b>전 체</b>	<b>(10)</b>	<b>10.0</b>	<b>10.0</b>	<b>10.0</b>	<b>10.0</b>
<b>카페</b>	(10)	10.0	10.0	10.0	10.0

## ○ (떡집)우수식당 지정기준

- 떡집 사업자 모두 우수식당 지정기준이 엄격하다고 응답함.

[그림 85]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떡집 사업자, N=10, %)



Q5-1. 위 우수식당 지정기준은 너무 낮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합니까?

[표 89] 우수식당 지정기준 엄격 여부

(Base: 전체, N=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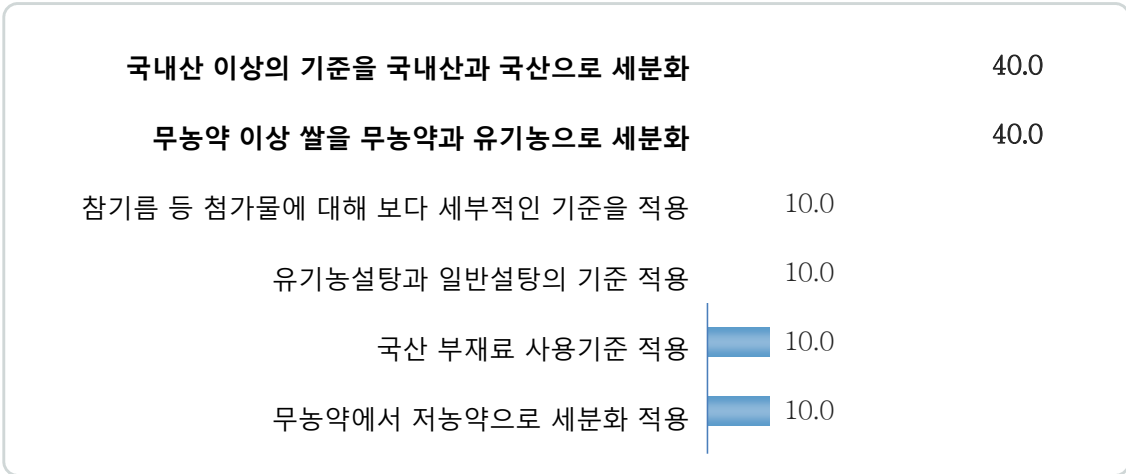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준이 너무 낮다	너무 엄격하다
전체	(10)	30.0	70.0
떡집	(10)	30.0	70.0

## ○ (떡집)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으로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무농약 이상 쌀을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세분화’ (40.0%)의 견이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참기름 등 첨가물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 ‘유기농 설탕과 일반설탕의 기준을 적용’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6]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떡집 사업자 N=10, %)



Q5-2. 평가품목과 세분화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복수응답)

[표 90] 평가품목과 세부평가기준 세분화 방법

(Base: 떡집 사업자, N=10, %)

구 분	사례수	국내산 이상의 기준을 국내산과 국산으로 세분화	무농약 이상 쌀을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세분화	참기름 등 첨가물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
전 체	(10)	40.0	40.0	10.0
떡집	(10)	40.0	4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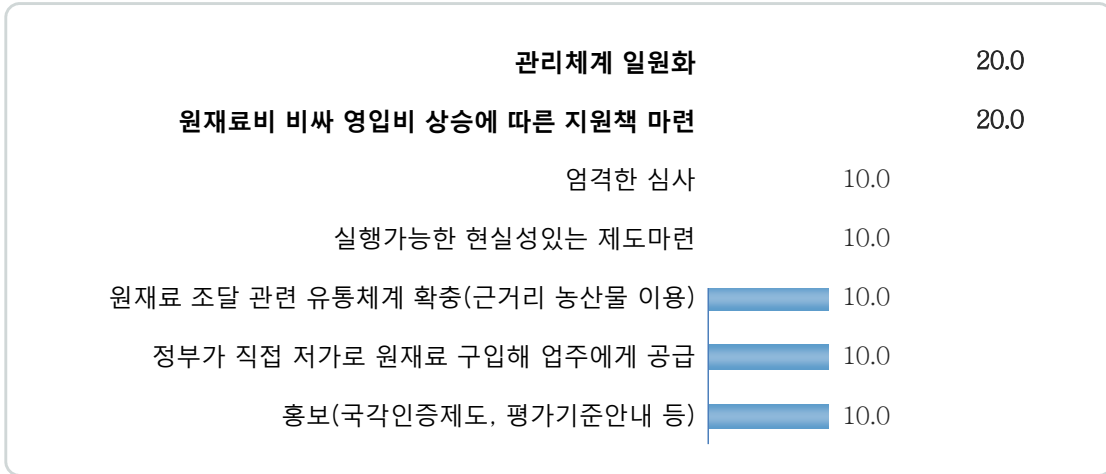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유기농설탕과 일반설탕의 기준 적용	국산 부재료 사용기준 적용	무농약에서 저농약으로 세분화 적용
전 체	(10)	10.0	10.0	10.0
떡집	(10)	10.0	10.0	10.0

### ○ (떡집)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비싼 원재료로 인한 영입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이 2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는 ‘엄격한 심사’,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7]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떡집 사업자 N=10, %)



Q5-3.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음' (20.0%) 미제시

[표 91] 친환경 우수식당 제도 개선방안

(Base: 떡집 사업자, N=10, %)

구 분	사례수	관리체계 일원화	원재료비 비싸 영입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엄격한 심사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도마련
<b>전 체</b>	<b>(10)</b>	<b>20.0</b>	<b>20.0</b>	<b>10.0</b>	<b>10.0</b>
떡집	(10)	20.0	20.0	10.0	10.0
구 분	사례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련 인증제도 관리	친환경 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	일반재배방식과 친환경 재배방식 차이점 이해도 높이기	
<b>전 체</b>	<b>(10)</b>	<b>10.0</b>	<b>10.0</b>	<b>10.0</b>	
떡집	(10)	10.0	10.0	10.0	

##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으로 홍보가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꾸준한 사후관리’ (8.0%), ‘친환경 식자재 상승에 대한 지원’ (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8]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100, %)

홍보	14.0
꾸준한 사후관리(컨설팅)	8.0
친환경 식자재 상승에 대한 지원	7.0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련 인증제도 관리	6.0
정부차원의 원재료비 인하방안	6.0
엄격한 심사	5.0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5.0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확충(근거리 농산물 이용)	5.0
심사위원 신상공개 등 투명성확보	5.0
공정한 평가	4.0
정확한 인증기준 명시	4.0

Q6.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에 대해 국가인증제도 도입시 반영해야 할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3.0% 미만 응답 미제시

[표 92]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국가인증제도 도입 시 반영해야 할 점

(Base: 전체, N=100, %)

구 분	사례수	홍보	꾸준한 사후관리 (컨설팅)	친환경 식자재 상승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련 인증제도 관리	정부차원의 원재료비 인하방안	엄격한 심사	
<b>전 체</b>	<b>(100)</b>	<b>14.0</b>	<b>8.0</b>	<b>7.0</b>	<b>6.0</b>	<b>6.0</b>	<b>5.0</b>	
대분류	한식당, 반찬가게 등	(70)	15.7	10.0	8.6	5.7	4.3	5.7
	빵집, 떡집, 카페 등	(30)	10.0	3.3	3.3	6.7	10.0	3.3
한식당, 반찬가게 등	한식당	(63)	14.3	7.9	9.5	6.3	4.8	6.3
	반찬가게	(7)	28.6	28.6	0.0	0.0	0.0	0.0
빵집, 떡집, 카페 등	빵집	(10)	10.0	10.0	0.0	0.0	10.0	0.0
	떡집	(10)	10.0	0.0	0.0	0.0	10.0	10.0
	카페	(10)	10.0	0.0	10.0	20.0	10.0	0.0

구 분	사례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심사위원 신상공개 등 투명성확보	공정한 평가	정확한 인증기준 명시	
<b>전 체</b>	<b>(100)</b>	<b>5.0</b>	<b>5.0</b>	<b>5.0</b>	<b>4.0</b>	<b>4.0</b>	
<b>대분류</b>	한식당, 반찬가게 등	(70)	1.4	2.9	5.7	2.9	4.3
	빵집, 떡집, 카페 등	(30)	13.3	10.0	3.3	6.7	3.3
<b>한식당, 반찬가게 등</b>	한식당	(63)	1.6	3.2	6.3	1.6	4.8
	반찬가게	(7)	0.0	0.0	0.0	14.3	0.0
<b>빵집, 떡집, 카페 등</b>	빵집	(10)	10.0	20.0	10.0	0.0	0.0
	떡집	(10)	30.0	0.0	0.0	20.0	10.0
	카페	(10)	0.0	10.0	0.0	0.0	0.0

## 부록 6. 반려동물 유기 사료 농관원 고시안

###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 ① 인증기준

#### 5. 비식용유기가공품

##### ○ 가축용 유기사료

심사 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p>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p> <p>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p> <p>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p> <p>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p>
라. 제조시설 기준	<p>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p> <p>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p>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p>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p> <p>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p> <p>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p>
바. 세척 및 소독	<p>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p>

	<p>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p> <p>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사. 포장	<p>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p> <p>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p> <p>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p> <p>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p>
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p>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p> <p>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p> <p>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p>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p>1)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p> <p>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p>

	<p>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p> <p>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p>
○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가. 일반원칙	<p>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 제조 및 가공 등에 적용한다.</p> <p>2) <u>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준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이하 두 가지 인증을 실시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사료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u></li> <li>- <u>상업적으로 유기원료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사료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u></li> </ul> <p>3) 2)의 하단의 경우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p> <p>4) <u>인증의 표시는 제 12조를 준용하되, 별표4의 4항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함량에 따른 유기농 표시는 별표1의 5항 2호를 따른다.</u></p>
나. 제조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용 유기사료 제조시설 기준을 준용한다.</li> </ul>
다. 사용가능 원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에 허용된 원료, 첨가물, 가공보조제 외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의 사용이 허용된다.</li> <li>- 규칙 별표1의 나항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li> <li>- 천연의 비타민제, 미네랄제, <u>아미노산제를 상업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화학합성 원료를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u></li> </ul>

## ②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 (제한적 표시 제품)
	원료함량 95% 이상	원료함량 70%이상	원료함량 70%미만 (특정원료)
유기사료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	○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	○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	○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	○	○

부록 7.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6. 8. 26.>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별표 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 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p>는 산업의 부산물</p> <p>○ 오줌</p>	<p>○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p>
<p>○ 사람의 배설물</p>	<p>○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p> <p>○ 고온발효: 50° 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p> <p>○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p> <p>○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p>
<p>○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p>	
<p>○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p>	<p>○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p>
<p>○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p>	<p>○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p>
<p>○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p> <p>○ 나무 숲 및 나뭇재</p>	<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p>
<p>○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p> <p>○ 석회소다 염화물</p> <p>○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p> <p>○ 마그네슘 암석</p> <p>○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p> <p>○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p> <p>○ 점토광물(벤토나이트·필라이트 및</p>	<p>○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p> <p>○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p>

<p>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p> <p>○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p> <p>○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p>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 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 $P_2O_5$ )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 (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 <i>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 <i>Derris</i> spp., <i>Lonchocarpus</i> spp 및 <i>Terphrosia</i>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 <i>Quassia</i> ) 추출물	○ 쿠아시아( <i>Quassia amar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 <i>Ryania</i> ) 추출물	○ 라이아니아( <i>Ryania specios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 <i>Azadirachta indica</i> )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지 않을 것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인지질(lecithin)	
○ 카제인(유단백질)	
○ 버섯 추출액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腐熟)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 물로만 추출할 것
○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에틸렌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파라핀 오일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황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

	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성 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덧에만 사용할 것)
○ 메타알데하이드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덧에만 사용할 것)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일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비누(Potassium Soaps)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기계유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융성불임곤충	

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구분	세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식	곡물류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물 성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곡물 부산물 (강피류)	곡쇄류 · 밀기울 · 말분 · 보릿겨 · 쌀겨 · 쌀겨 탈지 · 옥수수피 · 수수겨 · 조겨 · 두류피 · 낙화생피 · 면실피 · 귀리겨 · 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제약 부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	○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
	유지류	옥수수유, 대두유, 면실유, 채종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팜유 및 쌀겨기름	
	박류 (단백질류)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 · 들깻묵 · 참깻묵 · 채종박 · 면실박 · 낙화생박 · 고추씨박 · 아마박 · 야자박 · 해바라기씨박 · 피마자박 · 옥수수배아박 · 소맥배아박 · 두부박 · 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근괴류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무 및 당근	○ 곡물류와 같음
	식품가공 부산물	두류 가공 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
	해조류	해조분	○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동 물 성	섬유질류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 정선 부산물, 임산 가공 부산물, 볏짚, 보리짚,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 풋베기 사료작물, 옥수수 속대, 사탕수수박, 사탕무우박, 감귤박 및 발효사료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단백질류	어분 · 어즙흡착사료, 유 · 유제품 및 육분 · 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양식하지 않은 것일 것(어분 · 어즙흡착사료에 한함)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
	무기물류	골분 · 어골회 및 패분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유지류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도 9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광물성	식염류	암염 및 천일염	○ 천연의 것일 것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산1칼슘 · 인산2칼슘 · 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광물질 첨가물	나트륨 · 염소 · 마그네슘 · 유황 · 칼륨 · 망간 · 철 · 구리 · 요오드 · 아연 · 코발트 · 불소 · 셀레늄 · 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혼합 광물질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당함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구 분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산미제	젓산,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일 것. 다만, 배합사료에 1퍼센트 미만 사용되는 보조사료 중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해당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항응고제	활성탄	
결착제	천연 결착제	
유화제	천연 유화제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천연 항곰팡이제	
향미제	천연 향미제	
규산염제	제올라이트 · 벤토나이트 · 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착색제	천연 착색제	
추출제	유카추출물 · 타우마린 · 목초 추출물 · 해초 추출물 및 과일 추출물	

완충제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올리고당류	갈락토 올리고당, 플라кто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대두 올리고당,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효소제	아밀라제, 알칼리성 프로테아제, 키시라나아제, 피타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생균제	엔테로кокка스페시엄,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아미노산제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비타민제 (프로비타민 제 포함)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명칭(한)	명칭(영)	국제 분류번호 (INS)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	허용범위	허용 여부	허용범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구아검	Guar gum	412	○	제한 없음	×	

구연산	Citric acid	33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구연산삼나트륨	Trisodium citrate	331 (iii)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일음료	×	
구연산칼륨	Potassium citrate	332	○	제한 없음	×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333	○	제한 없음	×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여과보조제
글리세린	Glycerin	422	○	제한 없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할 수 있음)	×	
퀸라야추출물	Quillaia Extract	999	×		○	설탕 가공
레시틴	Lecithin	322	○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	×	
로커스트콩껍	Locust bean gum	410	○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220	○	과일주	×	
밀납	Beeswax	901	×		○	이형제
백도토	Kaolin	559	×		○	청징 (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벤토나이트	Bentonite	558	×		○	청징 (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비타민 C	Vitamin C	300	○	제한 없음	×	
DL-사과산	DL-Malic acid	296	○	제한 없음	×	
산소	Oxygen	948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산탄검	Xanthan gum	415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524	○	곡류제품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가공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525	×		○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526	○	토르티야	○	산도 조절제
아라비아검	Arabic gum	414	○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	
알긴산	Alginic acid	400	○	제한 없음	×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401	○	제한 없음	×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402	○	제한 없음	×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511	○	두류제품	○	응고제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508	○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509	○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응고제
오존수	Ozone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규소	Silicon dioxide	551	○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이산화염소 (수)	Chlorine dioxide	926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29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 Di-, Tribasic)	339 (i) (ii) (i) (ii)	○	가공치즈	×	



젖산	Lactic acid	270	○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 제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327	○	과립음료	×	
제일인산칼슘	Calcium phosphate, monobasic	341 (i)	○	밀가루	×	
제이인산칼륨	Potassium Phosphate, Dibasic	340 (ii)	○	커피화이트너	×	
조제해수염화 마그네슘	Crude Magnesium Chloride (Sea Water)		○	두류제품	○	응고제
젤라틴	Gelatin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젤란검	Gellan Gum	418	○	과립음료	×	
L-주석산	L-Tartaric acid	334	○	포도주	○	포도주 가공
L-주석산나트륨	Disodium L-tartrate	335	○	케이크, 과자	○	제한 없음
L-주석산수소칼 륨	Potassium L-bitartrate	336	○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	제한 없음
주정 (발효주정)	Ethanol (fermented)		×		○	제한 없음
질소	Nitrogen	941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카나우바왁스	Carnauba wax	903	×		○	이형제
카라기난	Carrageenan	407	○	식물성제품, 유제품	×	
카라야검	Karaya gum	416	○	제한 없음	×	
카제인	Casein		×		○	포도주 가공
탄닌산	Tannic acid	181	×		○	여과보조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500 (i)	○	케이크, 과자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탄산수소 나트륨	Sodium bicarbonate	500 (ii)	○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	
세스퀴탄산나	Sodium	500	○	케이크, 과자	×	

트립	sesquicarbonate	(iii)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504 (i)	○	제한 없음	×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503 (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수소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	503 (i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501 (i)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포도 건조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170 (i)	○	식물성제품,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	제한 없음
d-토코페롤 (혼합형)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306	○	유지류 (d-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트라가칸스검	Tragacanth gum	413	○	제한 없음	×	
퍼라이트	Perlite		×		○	여과보조제
펙틴	Pectin	440	○	식물성제품, 유제품	×	
활성탄	Activated carbon		×		○	여과보조제
황산	Sulfuric acid	513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황산칼슘	Calcium sulphate	516	○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	응고제
천연착향료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제한 없음(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	
미생물 및	Preparations of		○	제한 없음(「식품위	○	제한 없음(「식품

효소제제	Microorganisms and Enzymes			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Fortifying nutrients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	×	

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및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종 세척제만 사용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별표 2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물질

1의2.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 섬유가공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p>○ 다음 각 호의 물질은 우측 칸에 기재한 사용가능 조건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p> <p>가) 물</p> <p>나) 식물성 섬유 및 식물유래 원료</p> <p>다) 동물성 섬유 및 동물유래 원료</p> <p>라) 광물질 및 광물질 유래 원료</p> <p>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유기농수축산물 또는 이들의 유기가공품</p> <p>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효능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천연 대체제가 없는 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4호)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적합한 음용수, 광천수, 증류수, 삼투압 처리수 또는 해수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li> <li>• 보관 및 운송시 살충제 및 살생물제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 별표1 가항 2)에 기재된 물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ul>

나. 유기 세제류 및 개인보호용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p>○ 다음 각 호의 물질은 우측 칸에 기재한 사용가능 조건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p> <p>가) 물</p> <p>나) 광물질 및 광물질 유래 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유기 및 천연화장품 표준 협의체(COSMOS-standard AISBL)가 제정한 유기 및 천연 화장품 표준(COSMOS-standard)제2판(2013. 10.21.)의 부록4에 등재된 물질</li> <li>- 유기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0호)의 별표 1에 등재된 물질</li> </ul> <p>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유기농수축산물 또는 이들의 유기가공품</p> <p>라) 국제 유기 및 천연화장품 표준 협의체(COSMOS-standard AISBL)가 제정한 유기 및 천연 화장품 표준(COSMOS-standard)제2판(2013. 10.21.)의 부록1에 등재된 허용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농수축산물 원료</p> <p>마) 국제 유기 및 천연화장품 표준 협의체(COSMOS-standard AISBL)가 제정한 유기 및 천연 화장품 표준(COSMOS-standard)제2판(2013. 10.21.)의 부록3에 등재된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부록 2에 등재된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된 농수축산물 원료</p> <p>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효능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천연 대체제가 없는 다른 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4호)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적합한 음용수, 광천수, 증류수, 삼투압 처리수 또는 해수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li> <li>• 광물질 및 그 유래 원료는 인위적인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출공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li> <li>• 라) 내지 마)에 해당하는 원료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나 그 유래물이 아니어야 하며, 살아있는 동물이나 도축한 동물에서 바로 추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동물성 원료의 경우에는 동물조직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 및 천연화장품 표준(COSMOS-standard) 제2판(2013. 10.21.)의 부록1에 등재된 방법만을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하고, 해당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li> <li>• 마)에 해당하는 원료는 미량의 무기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알코올과 기타 발효 부산물은 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li> </ul>

##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 2)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p>○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 (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 해당하는 보조제</p>	<p>○ 제1호가목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 조정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p> <p>○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할 것</p> <p>○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p>

## 부록 8. 유기·친환경 음식점 인증안

[별표 1]

### **허용물질의 종류** (제3조제1항 관련)

####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 라. 유기음식점 등[신설]

1) 원료 또는 식재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과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만,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2) 조미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물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

- [별표 1]의 제1항 다.목의 1)호에서 허용하는 물질

-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에 따라 선정된 허용물질

3) 조리 및 급식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 제1항 다.목의 2)호에서 정한 물질

마. 그 밖에 별표 2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물질

####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라. 친환경음식점 등 : 제1항 라.목에서 정한 물질[신설]**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 (제9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 “친환경식당”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집단급식소 중에서 제2호의 친환경농수산물이나 제2의2호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또는 제4호의 유기식품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등을 말한다.

4-2. 유기음식점 [신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조리, 유통·취급 등의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유기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서화된 유기 관리(취급) 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인증을 받으려는 유기음식점의 유기 원료·식재료 함량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순중량 또는 순용량의 95% 이상 또는 70% 이상을 유기 농수산물 또는 이들의 유기적 가공품으로만 사용할 것.
나. 가공원료	1) 유기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원료 또는 식재료는 모두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이어야 한다. 2) 유기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미료·향신료 등은 [별표 1]의 제1항 다.목의 1)호에서 허용하는 물질이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에 따라 선정된 허용물질이어야 한다. 3)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6)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조리방법	1) 모든 원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조리 등의 취급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2) 조리 방법은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일 것. 3) 방사선 조사처리를 사용하지 말 것
라. 해충 및 병원균등 유해 생물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물리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1의 제1호가.목 2)호에서 정한 물질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 2) 1)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처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음식점 시설이나 설비·기구의 세척 및 살균·소독을 위해서는 별표1의 다.목 2)호에서 허용하는 물질만 사용하되,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유기가공식품 등의 원료 또는 식재료의 세척, 살균·소독을 위해서는 별표1의 다. 목 1)호에서 그러한 용도로 허용하는 물질만 사용할 것 3) 1) 또는 2)의 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식기	1)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식기와 급식방법을 사용할 것 2) 식기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재질(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 재질 권장)을 사용할 것
사.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품의 수송 또는 운반방법을 선택하고,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원료 또는 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별표 4의 제2항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별표 11]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제1항 관련)

#### 4-2. 친환경음식점 [신설]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원료관리	1) 원료로 사용하는 무농약 이상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보관할 것 2) 무농약 이상 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나. 표시관리	무농약 이상 원료의 함량 비율을 기준으로 95% 이상을 금장, 95~70 %를 은장, 50~70%를 동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강원섭. (2008). 친환경 양봉! 21세기의 대안입니다. 양봉협회보, 337, 33-34.

강현수. (2014).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최종보고서: 충남연구원.

황명철, 김태성, (2013) NHERI 리포트 제217호 (2013.6.27.)

황명철, 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농협경제연구소 리포트 제 215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14년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Dec. 2014, pp.11-27

한국소비자원. (2010), 유기섬유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시험결과보고서, 1-41